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2009

“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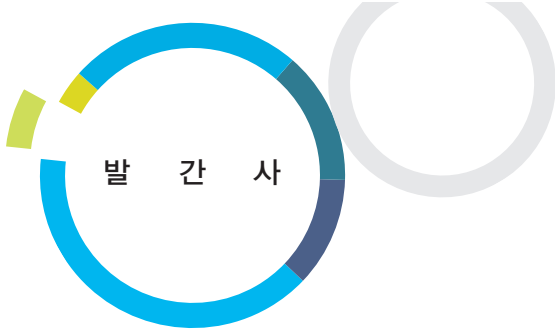
“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이 책은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한 백서입니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낸 규제개혁의 과제와 내용, 성과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창업과 투자는 크게 촉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규격, 녹색 수요 창출 등 ‘신성장동력 규제개혁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등 기업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전경련이 국내 전문가와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고,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도 4단계나 올라서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끌어주신 규제개혁위원들과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나라, 세계에 앞서가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올해에는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2010년도 규제개혁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화,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는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품격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 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제 확대, 규제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규제개혁 인프라를 확충하여 규제관리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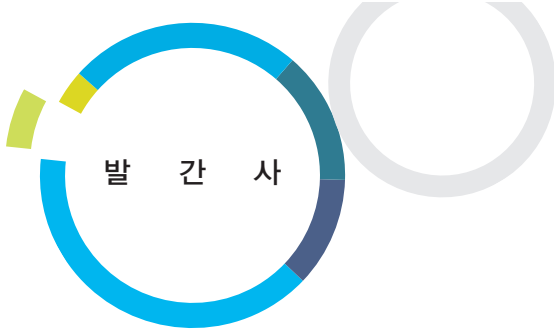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경제위기를 넘어 더 큰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나라, 세계에 앞서가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장

정문진



발 간 사

2009년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사에 남을만한 일들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속으로 세계경제가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이 경제회복에 전전긍긍했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과 규제개혁 양면에서 획기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경이를 이룩하였고,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라는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기는 기회' 라는 대통령의 위기관리 태세와 능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모두의 힘과 인내와 동참이 잘 어우러져 이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더 밝은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한 해로서, 이런 노력은 규제개혁 전선에서 더 한층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5월에 단행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빠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투자와 소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이고,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민간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평상시의 시각과 자세로 규제를 보고 다루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인식이 컸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실은 경제난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창업과 투자를 불필요하게 가로막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중소기업, 자영업을 옥죄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 가운데 280건의 규제를 엄선하여 경제가 충분히 회복될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이 기간을 잘 넘긴 대상규제는 영구적인 개혁조치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추진된 이 조치는 민간의 큰 환영을 받았고 민간투자와 소비의 진작에 매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1997~98년 기존규제 50% 철폐(및 완화) 조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던 우리나라가 규제개혁 수단의 혁신 측면에서 OECD 국가들의 선봉에서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 주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작년 하반기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부터 창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75건에 달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하였습니다.

이런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 외에도 작년 한 해는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연구해 문제제기한 미등록규제에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민간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평상시의 시각과 자세로 규제를 보고 다루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인식이 컸습니다.”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2,000여건의 규제를 신규로 등록시켰습니다. 한편 이 작업에서 배제된 부처청의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원에서 2010년에는 고시, 훈령 등에 숨어 있는 미등록규제도 대대적으로 발굴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이용빈도가 낮았던 규제일몰제도의 전면적인 확대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등록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몰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확대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제상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규제일몰제의 일괄처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기존규제의 개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설·강화규제의 사전 심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품질이 불량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지하고 차단하는 직접적 효과도 크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관료의 선례답습 성향, 무사안일한 문제대처 방식과 관성에 썩기를 막고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008년 말에 규제영향분석지침을 대폭 개정하고 작년 한 해 이 지침의 정신에 따라 충실한 규제심사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체 957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한 171건 가운데 65%에 달하는 110건에 대하여 철화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작년은 선진화된 규제정보화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규제개혁의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작년 한 해는 참으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벅찬 적은 인력으로 이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규제개혁위원님들의 헌신, 김호원 전임 규제개혁실장 지휘 하에 밤낮없이 수고한 직원 모두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작년 8월 전경련 조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가 연초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였고,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0)에서도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로 평가받게 된 것을 다 함께 기뻐하면서 2010년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하고 기약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장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 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 2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 3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 4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국민
규제개혁에서 시작합니다.



- ❶ 규제개혁위원들과 만찬간담회
- ❷ 대전 천양원 방문
- ❸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방문
- ❹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체 방문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2009

CONTENTS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2009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1. 규제개혁의 의의	25
	2. 2009년 규제개혁 추진	26
제2절	규제개혁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개요	29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1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7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39
	2. 등록대상 규제사무	39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40
	4. 국제수준(품질) 비교	42

■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1. 추진 개요	49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50
제2절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1. 추진 개요	53
	2. 과제별 주요내용	53
	3.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효과	58
제3절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방안 마련	
	1. 추진 개요	59
	2. 세부 개선과제	59
제4절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과제 추진	
	1. 검사·인증 및 검사대행기구 관련 규제합리화	65
	2.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68
제5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73

CONTENTS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77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78
	2. 금융위원회	84
	3. 공정거래위원회	125
	4. 관세청	141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 지식경제부	145
	2. 중소기업청	169
	3. 특허청	171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해양부	177
제5절	농림·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255
	2. 산림청	299
제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310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노동부	323
	2. 환경부	340
	3. 기상청	381

제8절	교육·과학 및 문화 분야	
	1. 교육과학기술부	384
	2. 문화체육관광부	395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가족부	425
	2. 식품의약품안전청	483
	3. 여성부	507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510
	2. 외교통상부	516
	3. 국가보훈처	519
	4. 국방부	522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1. 행정안전부	526
	2. 소방방재청	533
	3. 경찰청	539
	4. 법무부	542
	5. 국무총리실	548
	6. 국민권익위원회	551
	7. 감사원	552
제12절	평가	554

CONTENTS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1. 규제 일몰제 개요	569
	2. 기존 규제 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570
	3.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	570
제2절	미등록 규제 정비	
	1. 개요	572
	2. 미등록 규제 정비결과	573
제3절	규제정보화 추진	
	1. 추진 배경 및 경과	574
	2.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내용	574
	3. 향후 추진계획	575
제4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577
	2.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578
	3.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578
제5절	행정조사 제도 운영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580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581
	3. 행정조사 정비내용('09년도 정비사례)	582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 개관	584
	2. OECD 국제회의 참석	584
	3. 세계은행 주관 워크숍 및 컨퍼런스 참석	590
	4.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 참석 (International Regulatory Reform Conference, '09. 11. 5 ~ 6, 스웨덴 스톡홀름)	592
	5. 규제개혁 경험전수 : 개도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594
제7절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595
	2. 현장점검 총평	596
	3. 세부 점검결과	597
	4. 향후 후속조치 계획	605

CONTENTS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09년 규제개혁 평가	
	1. 규제개혁 평가 개요	609
	2. 2009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610
	3. 부문별 평가결과	611
제2절	2009 규제개혁 : 평가와 향후과제	
	I. 서론	613
	II. 규제개혁 평가 틀	614
	III. 2009 규제개혁 평가	615
	IV. 향후과제	628
제3절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633
	2.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634

■ 특별기고

제1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1. 서론	639
	2. 우리나라의 고용상황	640
	3. 경제성장,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642
	4. 고용창출 제약요인과 시사점	643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644

제2절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유연성과 절제 : 위기극복의 필수 조건	650
	1. 구조 : 한국의 경쟁력 현주소와 함의	651
	2. 충격 : 글로벌금융위기의 진전 양상과 대책 및 그 함의	652
	3. 충격 이후의 전세계적 변화의 본질 : 끝을 알 수 없는 심대한 불확실성	653
	4. 유연성과 절제의 아름다움 : 규제개혁	654

■ 부록

1. 규제개혁 관련법령 등	
가. 행정규제기본법	659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71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680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684
나. 경제분과위원회(2009년)	687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2009년)	688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Regulatory Reform Book

제1절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1절 | 2009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75, smlee@pmo.go.kr)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왜도난미와 같은 해결보다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

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도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09년 규제개혁 추진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잘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과 시장이 자유롭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1년 동안 정부는 금산분리완화, 수도권규제완화 등 핵심정책성 규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을 총괄관리하며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말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와 국민 고통이 가중되면서, 2009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대감이 더욱 증가하였다.

민간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과 더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위기극복 이후 미래산업을 대비하는 선제적인 제도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이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규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기존규제에 대한 「개별적·부분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전 부처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여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하였고, ‘효력상실형 일몰’ 외에 일정주기(원칙 3년)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내용을 재검토·재설계하는 ‘재검토행 일몰’을 신설·운영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2)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2008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정책성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2009년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성 규제 등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였다.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매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발굴·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경우, 2009년에는 1,327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963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3) 각종 건의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한 검토 강화

2009년에는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시적규제유예, 신성장동력 등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하여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수립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불수용과제는 총리실에서 재검토하는 등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규제개선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만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예산과 인력, 조직, 제도를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이행실태 현장점검도 추진하였다.

(4) 규제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규제대안 분석을 강화하는 등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규제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는 2009년말에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중기영향평가와 경쟁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일원적으로 추진토록하는 등 입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9년 8월에는 규제심사와 등록규제에 대한 질적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개통하였다.

2009년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8월 전경련에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가 2009년 2월 조사결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였고,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0)'에서도 그 전해에 비해 4계단 상승한 19위로 평가받았다.

제2절 | 규제개혁 추진 체계

•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el. 2100-2276, bhlee@pmo.go.kr)

1. 추진 체계 개요

(1) 추진 체계의 변화

참여정부에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규제신고센터는 2008년 2월 폐지되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08.3월).

(2) 업무 추진 체계

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관리 및 평가, 규제 관련 제도의 운영을 담당한다.

②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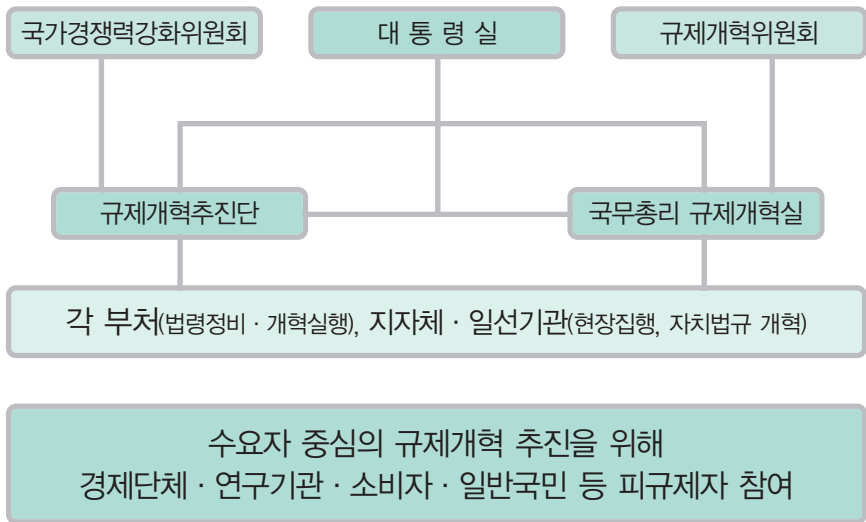
③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③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정 운 찬	국무총리
	최 병 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위원 (6)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달 곤	행정안전부 장관
	최 경 환	지식경제부 장관
	권 태 신	국무총리실장
	정 호 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석 연	법제처장

구 분	성 명	현 직
민간위원 (17)	강 정 애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 훈 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은 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 세 형	매일경제 논설실장
	김 정 호	자유기업원장
	김 태 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노 형 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
	배 재 근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교수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 총 영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ombudsman
	왕 상 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유 상 현	영산대 행정학부 교수
	이 주 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장 지 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 우 진	연세대 보건정책학과 교수
	최 정 진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홍 은 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2) 회의운영

①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②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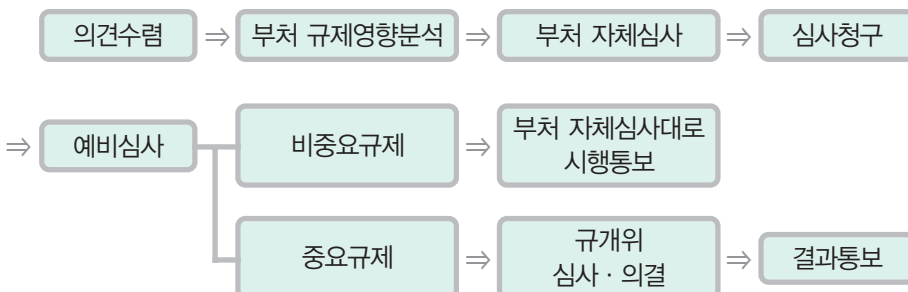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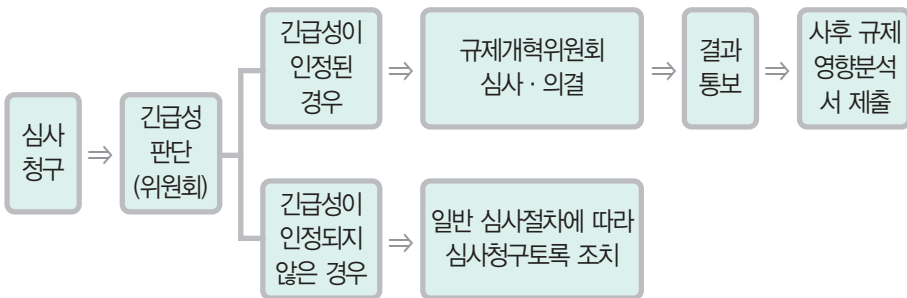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①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1·2분과위, 행정사회분과위 등 3개 분과위로 운영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08. 4월부터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8~9인, 정부위원 4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09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장 지 중(위원장) 강 정 애 김 정 호 김 세 형 심 영 섭 안 충 영 유 상 현 이 주 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경청 (17개 부처)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홍 은 희(위원장) 권 훈 정 김 은 미 김 태 윤 노 형 민 배 재 근 왕 상 한 정 우 진 최 정 진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23개 부처)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기구

① 규제심사위원회

■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

■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 추진 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 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구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기구

①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 추진 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②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 2100-2276, bhlee@pmo.go.kr)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계획’을 수립(’98.3.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99.2.22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에 규제 등록 사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성격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규제등록기준을 개편해,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를 하나의 단위를 통합해 등록했던 기존의 기준을 바뀐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를 분리·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타 법령의 규제와 연관성이 있거나 전체 규제 내용 파악에 용이한 경우 서로 관련규제로 연결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향후 규제등록의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알기쉬운 등록규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 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고, 이후 각종 규제 합리화와 유사규제 통폐합 등으로 2008년 12월말에는 총 5,186건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2,300여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해 12월말까지 1,912건을 등록시켰으며, 그 결과 2009년 12월 말 현재 6,740건(주규제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2009.12.31)

소관부처	'08.12월 등록규제수	규제수					증감 소계	'09.12월 등록규제수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합 계	5,186건	273건	1,912건	106건	415건	322건	+1554건	6,740건
국무총리실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공정거래위원회	116건	2건	0건	0건	1건	2건	-1건	115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0건	0건	0건	0건	1건	-1건	1건
방송통신위원회	138건	0건	0건	0건	0건	5건	-5건	133건
금융위원회	759건	221건	99건	0건	370건	2건	-52건	707건
법제처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국가보훈처	16건	0건	8건	0건	0건	0건	8건	24건
기획재정부	113건	0건	12건	2건	2건	1건	11건	124건
통일부	20건	0건	2건	0건	4건	2건	-4건	16건
외교통상부	2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0건
법무부	72건	0건	0건	1건	2건	2건	-3건	69건
국방부	9건	0건	13건	0건	0건	0건	13건	22건
행정안전부	146건	0건	0건	19건	4건	8건	7건	153건
교육과학기술부	247건	0건	239건	5건	3건	0건	241건	488건
보건복지가족부	616건	2건	166건	23건	2건	233건	-44건	572건
문화체육관광부	160건	5건	75건	2건	1건	3건	78건	238건
여성부	17건	3건	0건	2건	0건	0건	5건	22건
지식경제부	295건	3건	108건	19건	3건	15건	112건	407건
환경부	327건	3건	59건	10건	2건	8건	62건	389건
노동부	221건	0건	86건	0건	1건	2건	83건	304건
농림수산식품부	416건	8건	218건	7건	8건	0건	225건	641건
국토해양부	929건	14건	708건	7건	3건	21건	705건	1,634건
대검찰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국세청	9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9건
관세청	36건	2건	0건	1건	0건	9건	-6건	30건
조달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통계청	3건	0건	2건	0건	0건	0건	2건	5건
병무청	6건	0건	0건	0건	0건	3건	-3건	3건
경찰청	97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97건
소방방재청	108건	1건	5건	0건	0건	4건	2건	110건
농촌진흥청	5건	0건	5건	0건	0건	0건	5건	10건
산림청	67건	0건	10건	1건	1건	1건	9건	76건
기상청	8건	4건	4건	0건	0건	0건	8건	16건
중소기업청	35건	2건	42건	7건	0건	0건	51건	86건
특허청	17건	0건	12건	0건	0건	0건	12건	29건
식품의약품안전청	86건	3건	16건	0건	6건	0건	13건	99건
문화재청	33건	0건	17건	0건	0건	0건	17건	50건
해양경찰청	37건	0건	6건	0건	2건	0건	4건	41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방위사업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4. 국제수준(품질) 비교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가.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개요

OECD는 회원국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한 지수(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를 개발하여 '98, '05, '08년 3차례에 걸쳐 측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회원국에 배포하고 각국이 작성한 답변서를 취합하여 분석하되, 점수화·서열화하지는 않으며, 각국은 측정 결과를 각국의 규제개혁 역량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08년 기준으로 작성된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보고서는 '09.12월 OECD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 수준

우리나라는 OECD 규제원칙에 따른 규제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접근성과 명확성, 허가절차 간소화, 규제 평가, 규제개혁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회원국 중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협소한 규제영향분석 범위와 지속적인 행정부담 측정프로그램의 부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의 규제관리시스템 수준

-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제정책을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관리도구의 활용을 확산시키는 추세
 - 특히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이 증가
- 영국,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의 규제관리시스템은 OECD 규제원칙에 잘 부합하며, 과거 미흡했던 일본, 프랑스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

다.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의 강·약점 분석

(1)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정책 및 제도적 장치

- 규제개혁관리를 위한 제도적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규제품질제고 및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실이 제도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규제개혁 관련 교육, 규제정책과 경쟁·시장개방 정책과의 연계성은 캐나다·영국 등과 함께 가장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는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영향분석 교육 및 매뉴얼 발간, 경쟁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부적 차원의 명시적 규제정책 •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 및 지침 • 다른 정책과의 연계 • 국제기준의 고려 • 중앙 규제감독기구의 권한 	

(2) 투명성, 공공협약의 절차의 개방성

- 규제 접근성과 규제절차의 명확성 및 적법절차는 캐나다·미국 등과 함께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규제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정보 검색과 매년 초 각 부처의 규제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우수 사례로 보고서 본문에 소개되었다.
- 규제 신설 과정에서의 공공협약절차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처가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의무화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다.
 - 다만,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영국·뉴질랜드(12주), 미국(8주), 캐나다·일본(4주)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짧고(20일), 협의과정의 품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위법령의 입법계획 공개 • 상·하위법령의 입안절차 표준화 • 공공협의 의무화 • '쉬운 용어' 사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 공공협의 과정의 품질 모니터링

(3) 신설규제의 품질 제고 도구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의 검토 과정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 신설시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에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 대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다.
- 규제영향분석 과정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를 통해 약 30%의 규제초안을 수정한 것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 반면, 규제영향분석의 범위가 협소한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19개국 시행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 과정 - 상·하위 법령안에 대한 RIA 실시 - 규제 필요성 및 대안검토 의무화 - RIA 결과의 공개 - RIA가 규제안 수정에 미치는 효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의 범위 - 위험평가, 시장개방·빈곤·특정사회집단 영향평가

(4) 기존규제의 품질 제고 전략

- 면허·허가절차 간소화, 규제평가 및 기존규제 개선 과정은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 G4C와 법원의 인터넷등기소,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단일창구를 통한 인허가 발급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국민의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반면, 행정부담 축정은 향후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15개국 시행중)이 없으며, 행정부담 측정 대상 집단에 시민과 기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영역, 비영리집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창구를 통한 인허가 발급 - 국가차원의 인허가수 파악·감축 • 규제검토 및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 - 주기적 검토 및 표준화된 평가 - 규제일몰제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담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 - 공공영역·비영리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담 측정

라.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개혁추진체제와 역량 등 측면에서 규제관리 최선두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의 규제관리시스템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계량화에 있어 분석의 질 제고 및 위험분석 영향평가 등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행정부담의 경우, 최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향후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정책이 확산 중이므로(네덜란드·덴마크 등 다수의 회원국은 행정부담의 양을 먼저 측정한 후 2010년까지 총 25%를 감축할 계획),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과 관련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는 잘 구축된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협의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입법예고 기간의 연장 및 협의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협의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를 활용한 규제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므로, 향후

규제정보화시스템 확산시 정부 내부의 규제심사 지원뿐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Regulatory Reform Book

-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제2절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 제3절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방안 마련
- 제4절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과제 추진
- 제5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제1절 |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75, smlee@pmo.go.kr)

1. 추진 개요

2009년 규제개혁방향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산업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토지·기업·서비스업·환경·노동 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인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09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08.12.14)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과제는 당초 연초에 발굴한 1,002개 과제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1,327개에 달했다.

과제 발굴은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토록 하였으며, 규제의 건수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대안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규제를 발굴하였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였는 바,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품질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추진하고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축소*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09.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의 공장으로 축소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 유도('09.3 주택법시행령 개정)
 -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 7년→5년, 85㎡ 초과 5년→3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09.4,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휴업·휴직수당 : 우선지원대상 기업 임금의 2/3→3/4, 대기업 1/2→2/3
- 비상장회사 공시 제외대상 회사의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0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의무 폐지 및 매립시설 공동사용 허용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
 - ('0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산업단지 조성시 평균 250억원 설치비 절감(2.5억/톤×100톤/단지)
- 금융기관 예금보험료를 인하('09년 약 3천억원 경감)하여 금융회사 부담 완화('09.6 예금보험법시행령 개정)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가능하도록 복합용도제 도입('09.7. 국토계획법 국회 제출, 상임위 계류)
- 수도권내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감면하여 수도권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을 지원('09.11 농지법시행령 개정)

■ 서민취약 계층 및 국민 불편 해소

-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09.4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서민층의 자동차 관리부담 완화('0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대상차량은 연간 약 67만대로, 검사일원화에 따라 연간 34억원(대당 5,000여원) 검사비용 절감 예상
-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자의 편의 제고 ('09.5,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 미지급연금 지급청구(14일→7일), 이의신청(30~60일→7일) 등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6개월→9~24개월)을 통해,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09.6,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가능토록 개선하고,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09.9 여권실무편람 개정)

■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09.2, 중소기업 용자사업 추진요령 및 추진지침 개정)

- 소방검사 중복실시 제외 및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로 영세업자의 소방검사 부담 완화(’09.3,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2개 법률 국회 제출, 상임위 계류)
* 3만 8,000여개 소방대상물의 중복검사 개선, 56만개 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유예 혜택

-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는 공장의 대상규모를 확대 (1만㎡ → 3만㎡ 미만)하여 소규모 공장 설립시의 부담 경감
(’09.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진입장벽 완화(보유 전문인력 3명→2명, 납입자본금 70억원 → 50억원)로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
(’09.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제2절 |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02-2100-2312, hsg36@pmo.go.kr)

1. 추진 개요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제개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280개 과제를 확정 발표하였다.

2. 과제별 주요내용

가. ‘한시적 규제유예’ 개념 및 추진배경

‘한시적 규제유예’란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다수의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시도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규제개혁실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왔고, 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모든 규제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제로 인해 이미 형성된 많은 이해관계의 시슬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항구적인 폐지·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생산적인 논란 속에서 좌초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개혁실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가 극히 어려운 동안만이라도 규제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던 민간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 방향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방침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규제개혁실에서는 소위 저인망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상과제를 발굴·선정하는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국내 대기업, 공장증축 제한에 묶여있는 중소기업,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많은 기업·영업자들과 각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실에 직접 건의과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측면에서의 비상대책이라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각 부처에서도 소관 규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 규제를 개혁해도 되는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로 인해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규제 소관부처에서 1차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였으며, 규제개혁실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최대한 건의과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부처와의 협의·조정과정은 릴레이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실무선에서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 1단계로 규제개혁실장 주재 회의, 2단계 사무차장 주재 회의, 3단계 국무총리실장 주재 회의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하루종일 4~5회에 걸치는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이렇게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선별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상과제는 280건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대상과제를 검토·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정부적인 비상대책이라는 금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마른수건을 다시 한번 짰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선정기준

(1) 민간의 창업과 투자 애로요인 해소

먼저 창업 및 투자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단기간 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경우 현재 건폐율이 20%인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전국의 13만개 기존공장 중 약 39%인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용도지역내에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개발면적과 합산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접제한이 도입된 '03년 이전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연접규제를 향후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로 경기도에서만 약 4,000억원 정도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 개혁 조치는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투자규모 2조 9,000억원)의 사업기간을 약 1년 단축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중에서 창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였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감면이 어려운 경우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2)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경감

기업의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업상 불편을 주는 집합교육이나 행정검사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추가하여 의료법인의 신규투자도 이끌어 내고, 환자들의 편의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특구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였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잘 정돈만 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낭만적인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등 식품·공중위생업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향후 2년간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 종업원이 없는 영세업소는 하루 영업을 포기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암암리에 교육비만 내고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정도 있었다. 작은 개혁 조치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79만명에 이르는 영세업자들이 영업상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지방경제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이 연구전담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본다. 이번에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880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를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2년간 60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또한, 지방의 창업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금년 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기간을 2011년까지 2년 연장하였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약 1,70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해서는 대출 학자금이 연체된 학생(약 1만명)에 대해서 현행 6개월 연체시 채무 불이행자 등록하던 것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등록을 유예토록 하였으며, 생계와 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원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연간 약 6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제외 대상기준

한시적 규제유예는 실험적이고 잠정적인 문제 해결 방식임을 감안하여 과제선정 과정에서 환경기준, 위생기준, 토지의 용도별 입지기준 등 환경·안전 및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나 그에 비해 효과가 더 큰 과제는 신중히 대상에 선정하였다. 다만 보완장치를 추가하여 유예토록 하였다. 예를 들어, 보전지역내 공장 증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지역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3.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효과

규제개혁 과제 총 280건을 확정된 이후,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약 1개월 만에 하위규정사항 150건을 개정하여 2009.7.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12월말 기준 총 280건 중 완료 256건, 현재 추진중인 24건의 과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창업·투자 및 고용창출은 규제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사회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른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 추경과 함께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 의지를 적극 표명하여 기업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효과와, 시간적 특례라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 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3절 |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방안 마련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92, yang2105@pmo.go.kr)

1. 추진 개요

가. 추진 배경

- 정부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립('09.5)한「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이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된 바, 정책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규제개혁 작업 착수
- 17개 신성장 동력 중 제도개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8개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전경련 등 경제단체,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업종별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 1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2. 세부 개선과제

가. 신재생 에너지

-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 도시공원내 공원관리시설 등 기존 건축물 옥상 및 도로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
- 기존 발전소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허가 면제범위를 확대(3,000kw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만 허가를 면제 → 용량에 상관없이 허가를 면제)하고, 바이오가스·수력·지열 발전기에 대해 용량 300kw 미만에 한해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 기존 하천의 보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적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유기성폐기물을 혼합한 액비를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를 거쳐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
- 바이오디젤 생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기업 보증사업’ 대상업종에 포함하여 우대하고 용융탄산염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도 정부보급사업에 참여시켜 설치비용 지원

나. 방송통신융합

- 모바일인터넷 숫자주소(WINC)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0으로 시작하는 WINC를 할당하고 WINC 다량 이용 할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업자(283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주문형 비디오(VOD)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에 한해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터널, 도시철도,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한 위성DMB 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방송분쟁조정제도를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로 확대
- 경미한 통신용 첩탐은 일반적인 시설물과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신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면책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장이 전국에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괄신고·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편의 제고

다. 그린수송시스템

- 대기관리권역 소재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확대·구매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제정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의 상용화에 대비한 PHEV 충전 관련 전기요금제도 마련

- 레저선박 수송자동차의 견인장치 안전규격을 완화하고 선박법·선박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선박용 엔진의 형식 승인대상을 50마력 미만(선박 길이 6.5m)에서 600마력 미만(선박 길이 50m)으로 확대하는 등 레저선박 및 해양레저 활동 관련 규제 정비
- 경전철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전철 중심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철도종사자 탑승의무, 방화관리자 선임 및 상주의무를 완화하고, 민간투자 경전철사업 추진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

라. MICE·관광

- 고궁·박물관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제한적 개방·활용토록 하고, MICE 참가자 출입국 편의제고를 위해 공항공사내 전담부서 운영 및 MICE참가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국제 전시시설 요건을 완화(옥내 전시면적 2,000㎡ 이상 → 총 전시면적 2,000㎡ 이상)하고 보세전시장의 설영특허절차 간소화(매 전시회 → 일정기간 일괄신청 허용)
- 도시공원내 유희시설에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범퍼카·바이킹 등) 설치를 허용하고,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의 이중 등록절차(해운법의 면허 및 관광진흥법의 등록)를 일원화하는 등 관광·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마. 글로벌 교육

-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분교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교사(校舍) 최소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사업장의 고객대상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하향 조정(종업원 200명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4년제 대졸자로 한정된 자격요건을 독학사 등 다양한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학사학위간 동등한 학력 불인정을 개선하고, 전문대 이수기간별(2년, 3년) 실무경력 기간요건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학력간 차별조항 개선
- 교(원)장 자격취득시 전문대학 근무경력 차별을 개선하고 사립대학 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허용

바. 글로벌 헬스케어

-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입대 치과의원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의 추가적인 검진행위에 대해 별도의 검진행위로 구분될 경우 의료수가(보험급여) 인정하는 한편,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확대(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추가)
- 국립대병원의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의 종류에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의료법상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일반여행업(관광진흥법) 등록이 없더라도 순수 치료목적의 국내체류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에 한하여 숙박 및 항공권 구매알선 허용
-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시 처분기준(30%, 60%)을 30%로 단순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병원의 의료인 인적사항 변경신고 폐지 및 병원의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를 연장(3년→4년)하는 한편,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토록 되어 있는 각종 신고절차를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일원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입원실이 없어 폐기물량이 적은 소규모 의원에서 배출하는 일반 의료폐기물의 수거주기를 완화(2주→1개월)하고,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심의수수료 부담 완화(중전 병·의원 수대로 부과 → 1개의 광고로 인정) 등 추진

사.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GMP 수준에서 관리되는 범위내에서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의약품 제조공장 이전시 식약청의 GMP 인증기간을 단축(120일→90일, 영업매출 연간 780억원 증가 예상)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확대(약사, 한약사 →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포함)하고,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에서 국내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기준 완화하여 희귀의약품 대상 확대
- 50W 이상 고주파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절차를 일원화(의료기기법(식약청)과 전파법(방통위)에 의해 각각 허가 → 전파법상 허가(형식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 절차를 간소화(동일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소별 각각 품목허가 → 현장실사를 거칠 경우 하나의 제조소 품목허가로 간소화)

아. 콘텐츠·SW

- 영상물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모바일 게임물 개인개발자에 대해 심의수수료 인하(30% 수준)하는 한편, 게임·영상물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부 결정(청소년보호위)을 등급심의기관(등급심의위)으로 일원화 하는 등 게임·영상물 심의비용·절차 간소화
-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 방영 전후, 관련 캐릭터 등이 나오는 방송광고 제한을 완화(전면 금지 →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허용)하고, 방송사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의무(전체 프로그램의 1%) 산정시 어린이·청소년의 주시청 시간대에 방영한 경우 가점을 부여(30% 수준)하는 등 방송광고·애니메이션 제한 합리화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시, SW 발주 초기단계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통합사업제안요청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전체 사업 중 발주기관에 인수된 완성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제도정비

자. 기타 분야

- LED 수요창출 및 불법 현수막 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하는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10.6)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합신청을 허용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업종(부동산업, 금융, 숙박·음식점업 등) 중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투자 허용
- 식품제조시 사용가능한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을 확대('먹는해양심층수'만 가능 → '농축수', '해양심층수 소금' 등 4개 품목 추가)하고, 유기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기검사(매년 1회)와 중복되는 인증유효기간 제도(1년) 폐지

제4절 |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과제 추진

1. 검사·인증 및 검사대행기구 관련 규제합리화

• 집필자 : 전창현 사무관(02-2100-2317, chjeon@pmo.go.kr)

가. 추진 개요

현행 법령상 운영되는 검사·인증제도 18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기술발달, 품질향상 등 여건 변화추세에 맞추어 검사 일원화, 검사 주기 조정, 검사대행기구의 복수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42개 과제를 개선

금번 개선방안은 그간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발달 등에도 불구하고, 시대·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 법정검사 실태조사」결과('09.10월)

- 연간 평균 대기업 9.2회(수수료 1,090만원), 중소기업 6.5회(280만원)
- 문제점 : 과도한 검사주기(31%), 유사 검사 중복(30%), 형식적·불필요검사(25%), 검사기관 부족(10%) 등

나. 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 (1) 유사·중복 검사를 핵심검사로 통합하고, 통합이 어려운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거나, 1회 동시검사로 일원화

현 행	개 선
◇ 압력용기(보일러 등) 검사 - 사업장내 압력용기 종류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2~4년 주기로 검사(3개 검사) ⇒	○ 1개 기관에 검사신청시 3개 기관 동시검사 협의 의무화 및 새로운 검사방법 적용시 공장가동 중지 4년→8년으로 완화 * one-stop service 제공 및 공장가동 중지 손실액 연간 최대 3,400억원 절감
◇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검사 - 의료기관의 동일한 의료장비에 대해 복지부 품질검사(의료영상품질관리원), 식약청 안전검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에서 각각 실시 ⇒	○ 각 검사대행기구를 상호지정, 1개의 기관에서 동시검사가 가능토록 개선 * one-stop service 제공
◇ 도시가스 사용시설 검사 - 하나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1년) 및 산업안전보건공단(4년)에서 각각 검사 실시 ⇒	○ 가스안전공사 검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활용(산업안전보건공단 설비검사 면제) * 중복 검사 면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2) 검사주기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조기술 발달, 제품 품질향상 정도를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검사 면제 등) 도입

현 행	개 선
◇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에너지진단 - 최초 설비 설치시 및 3~5년마다 에너지 진단 실시 ⇒	○ 진단결과 우수사업자의 경우 다음 진단 1회 면제, 친에너지 설비 설치시 첫 진단 면제 * 업체당 1회 진단 비용 약 2천만~1억원 절감
◇ LPG 용기 재검사 - 500L 이하 LPG용기에 대해 1~3년마다 검사 ⇒	○ 안전관리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구연수에 따라 2~5년으로 완화 * 검사 비용 연간 약 200억원 절감
◇ 열사용기자재 압력용기 검사 - 2년마다 검사 ⇒	○ 안전성에 큰영향 없는 사용압력 0.1Mpa 이하에 대해 3년으로 연장 * 검사 비용 연간 약 2억원 절감
◇ 단체표준 인증 사후관리심사 - 형광등 등 단체표준을 받은 후 매년 제품 및 공장심사 ⇒ * 총 91개 품목 15개 단체인증 운영	○ 공장심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하고, 정기검사 결과 우수기업의 제품심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 * 품목당 심사수수료 50만~수천만원 절감

(3) 검사 여건변화에 따라 형식적·불필요한 검사대상·항목을 축소하고, 공장가동 중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현 행	개 선
◇ 방송통신기기 인증 - 형식승인(69종)·형식검정(37종)·형식등록(62종)·전자파적합등록(118종) 등 4개 제도로 운영 ⇒	○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신고(검사면제) 제도로 간소화 및 품목별 완화 - 승인 → 등록(완화) : 컴퓨터 등 180여종 - 등록 → 신고(완화) : 전자책자 등 10여종 * 인증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 어선 설비검사 - 선박 교체·수리와 관계없이 별도 검사 ⇒	○ 선박 전문수리업체에서 교체·수리시 별도 해당 설비 검사 면제 * 불필요한 검사부담 완화
◇ 무대시설 안전진단 - 객석수 1천석 미만, 구동무대기계·기구수 40개 미만의 무대시설의 경우에는 5년마다 검사 실시 ⇒	○ 공연장 구분기준에서 '객석수'를 삭제하여 3년주기(1,000석 이상, 무대기계·기구 40개 이상) 중 일부를 5년 주기로 완화

(4) 독점운영하는 검사대행기구를 복수·경쟁화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적 분산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

현 행	개 선
◇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분리 - 승인 : 교통안전공단 ⇒ - 신고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형식승인, 형식신고 업무를 1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 검사대행기구를 상호지정하여 복수화
◇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독점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추가 지정하여 복수화
◇ 농업기계 형식검사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독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민영)을 추가지정하여 복수화
◇ 자동차배출가스 결합검사 및 인증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독점 ⇒	○ 환경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여 복수화

(5) 검사 난이도 및 기술수준 등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강제인증을 임의인증으로 완화

현 행	개 선
◇ 압력용기 검사 수수료 - 내용적 크기에 따라 부과(3만 5,000~4만 9,000원) ⇒	○ 검사난이도, 기술수준, 검사소요시간 등을 종합분석하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 LED 조명기기 인증 수수료 - 안전인증 : 약 300만원 ⇒ - KS인증 : 약 250만~400만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약 250만원 내외	○ 중소기업의 경우 KS인증 수수료 할인(20%) 제도 도입
◇ 주택성능 등급인증 - 1,000세대 이상 주택성능 인증을 받아 표시토록 의무화(5개 분야 20개 항목) ⇒	○ 주택성능 등급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인증을 선택할수 있도록 임의인증제도로 개선

이번 검사(인증)제도의 개선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검사주기 완화, 검사 면제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 공장가동 중지 등 검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15개 검사주기 개선에 따른 직접 비용 절감액만 연간 약 4,000억원 기대

중복검사의 완화를 비롯하여 검사에 동원되는 인력·시간 등 간접적인 기회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yjks@pmo.go.kr)

가.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정비 및 성과에 따른 관리방식으로의 환경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 녹색성장 등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삭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
-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2) 기본방향

- 성과에 따른 입지규제 체계로 전환 및 총량관리제의 탄력적 운영
-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 중복규제 적용 배제

-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나. 주요 개선과제

(1) 용도지역별 사업장 규모기준의 입지제한 합리화

① 대기 분야

-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10톤 이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을 제한
 ⇒(개선) 기존사업장의 인수합병, 증설 등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② 수질 분야

-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 오염발생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면서, 수계 등에 영향이 없거나 부하량이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도 입지를 제한
 ⇒(개선)폐수배출시설에 대한 新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신·증설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

(2) 특별대책지역내 규모에 따른 일률적 사업장 입지 제한 합리화

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현행)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에서 총량 관리 대상물질(NO_x, SO_x 및 PM₁₀)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 제한
 ⇒(개선) 사업장 총량제 시행시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폐지 및 허가권자가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입지여부 결정

②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현행)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필지분할 시점, 6개월 거주 등 신설에 준하여 엄격하게 고시 규정을 적용

⇒(개선) 신규 입지가 아니며 수질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개축 등을 허용

(3) 총량관리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① 대기 지역배출허용 총량제도의 개선

○(현행) '07년 대기총량 할당시(1단계) 과거 기준 자료만으로 산정되어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의 사업장 현재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총량제 실시

⇒(개선) 2005년 1월 이전에 가동 개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재 여건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배출량을 할당(대상: 약 112개소)하고, 초대형사업장(발전소 등 27개소)을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는 등의 별도 통합관리방안 마련

② 수질 총량제도의 탄력적 운영

○(현행) 개발허용량이 남는 지자체가 부족한 지자체에 이전하고, 이를 통해 오염삭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서도 가능하나 이와 같은 모범 사례가 저조하여,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산악지역 등도 삭감 대상 지역으로 지정

⇒(개선) 지자체 사이의 개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출권 교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오염총량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삭감 여력 등을 감안하여 부하량을 할당

(4) Clean SYS 시설 설치의 경우 과정상 중복규제 개선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매 30분 평균치를 적용하여 단발성 상승도 기준 초과가 가능하여 기업부담 가중

⇒(개선) 기업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1시간 평균치로 개선

② 자기측정 및 기록·보존 의무

- (현행) 배출시설 운영시 오염물질을 자기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 (개선) Clean SYS 설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Clean SYS 미설치 배출구에 대해서 자기측정 횟수 개선(예: 1회/주→1회/월)

(5) 배출부과금(기본/초과 부과금) 제도 개선

- (현행) 대기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시에도 부과하며, 면제(0)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70% 이상 삭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최대한 저감해도 면제 이외의 별도 인센티브가 없음
- ※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일부 면제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감안한 차등 감면 등을 실시 중이나 TMS 부착시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족
- ⇒ (개선) 대기의 경우 실시간 저감여부 확인이 가능한 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기준의 70% 이상 삭감시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
- ※ 수질의 경우 실시간 측정되는 TMS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폐수 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 이하로 배출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 도입

(6) 대기 분야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전 가능 배출한도 확대

- (현행) 배출허용 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 미사용 총량의 20%만 이전가능
- ⇒ (개선) 배출량 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및 배출 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4~5차연도 이전한도를 확대

(7) 대기 분야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시설 확대

- (현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 일부 시설은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나, 다른 시설은 일반 배출농도기준 적용

⇒ (개선) 총량규제 적용사업장내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토록 확대

제5절 |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집필자 : 신재광 사무관 (Tel. 2100-2283, shinjk@pmo.go.kr)

1. 개요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건의·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08. 2. 29)하고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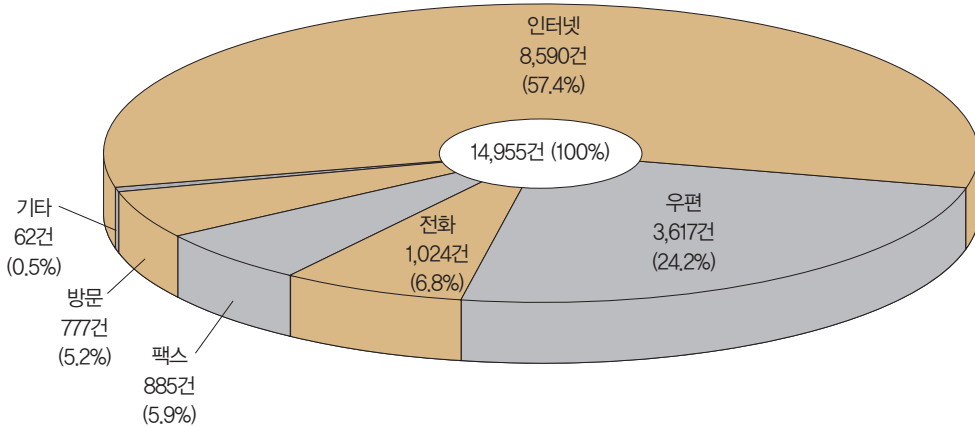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8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전 화 : 02-2100-2283
- F A X : 02-2100-2289, 인터넷 : <http://www.rrc.go.kr>

2. 규제건의 처리상황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건의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건의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만 4,955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 접수가 8,590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4.2%), 전화(6.8%), 팩스(5.9%), 방문접수(5.2%) 순이었으며, 특히 2009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건수의 66.7%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제안 비율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2009년도에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525건으로서 그중 487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38건은 처리 중에 있다. 처리완료된 487건 중 274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 의제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제도로써 일반화하기 어려운 213건은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규제건의 처리실적('09. 1~12월)

접수건수	완 료			추진중	해소율
	계	해 소	정책참고		
525	487	274	213	38	52.2%

규제건의 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환경부, 복지부 소관사항이 약 58.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규제건의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09. 1~12월)

구 분	합 계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안부	지경부	기 타
건 수	525	142	114	56	39	36	138
비 율	100%	27.0%	21.7%	10.6%	7.4%	6.8%	26.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Regulatory Reform Book

- 제1절 개요
-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 제4절 국토·해양 분야
- 제5절 농림·수산 분야
- 제6절 방송통신 분야
- 제7절 노동·환경 분야
- 제8절 교육·과학 및 문화 분야
-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 제12절 평가

제1절 | 개요

• 집필자 : 신재광 사무관(T.2100-2283 shinjk@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09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968건(비중요 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 중 113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09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9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기획재정부	6	11	4		5	2
금융위원회	28	69	60	1	6	2
공정거래위원회	9	32	20	2	9	1
관세청	4	5	5			
지식경제부	53	67	62		5	
중소기업청	2	3	3			
특허청	5	6	6			
국토해양부	80	164	149	2	6	7
농림수산식품부	29	93	85	1	5	2
산림청	6	12	12			
방송통신위원회	9	23	15		6	2
노동부	17	27	23	2	1	1
환경부	41	72	59	1	7	5
기상청	2	5	3		2	
교육과학기술부	7	22	17		2	3
문화체육관광부	18	40	29	3	5	3
보건복지가족부	60	180	135	9	16	20
식품의약품안전청	39	63	52	1	7	3
여성부	3	5	1			4
통일부	5	10	10			
외교통상부	2	2	2			
국가보훈처	3	4	3		1	
국방부	2	8	8			
행정안전부	3	15	10		4	1
소방방재청	7	8	6		1	1
경찰청	1	4	2			2
법무부	6	12	10		1	1
권익위원회	1	1			1	
감사원	1	1	1			
국무총리실	1	4	1		1	2
계	450	968	793	22	91	62

제2절 |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92, yang2105@pmo.go.kr)

1. 기획재정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7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5건에 대해서 개선 권고하고, 6건은 원안대로 의결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375차 경제분과 (2009. 1. 9)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내용 1 * 중요 3, 비중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77차 경제분과 (2009. 1. 22)	원안의결 1	강 화 1 * 중 요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제202차 본회의 (2009. 2. 4)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27)	원안의결 1	내 용 1 * 비중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79차 경제분과 (2009. 6. 11)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91차 경제분과 (2009. 12. 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 중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6 개선권고 5 철회권고 0	신 설 2 강 화 7 내용심사 2 중 요 7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신설 1, 강화 2, 내용 1)

■ 심사내용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를 비거주자로 인정하던 것을 “2년 이상 실제 체재한 자”로 변경하는 등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현 정비(강화)
 - ☞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시귀국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의 체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동 체재기간은 비거주자 인정을 위해 필요한 2년 거주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 권고
- 금융기관이 외환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가·등록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유와 외국환업무 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여 기존 6개월 이하 업무제한 사유로 일괄규정되어 있던 위반사유를 경미한 1회성 위반인 경우에는 3개월 업무제한 처분대상으로 하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처분을 적용(강화)
 - ☞ 외국환거래내용 보고·자료제출·검사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정보 제공 등을 1년에 3회 이상 한 경우 등록 및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금융기관·외국환중개회사 등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는 국민경제 및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며, 동 사유를 1년에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6개월의 업무제한조치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3회 이상 위반의 경우는 등록인가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계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술(내용)

- ☞ 자본시장통합법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타법에서의 금융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임된 범위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외국환중개회사가 최초 납입자본금 요건 충족 후 70%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외국환중개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상대방을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한국은행 등으로 제한(신설)
 - ☞ 외국환중개사 유지자본금 제한은 중개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자 보호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시중의 8개 외국환중개사 모두 유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추가 비용부담이 없으며, 외국환중개회사 거래상대방을 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환업무규정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정비에 해당되므로 원안 의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지역경쟁제한 대상금액을 WTO GPA 국제입찰대상 양허금액 수준으로 상향(일반건설 : 50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76억원/09년 기준), 전문건설 : 5억원 미만→7억원 미만, 물품·제조 등 : 고시금액 미만(1.9억원)→고시금액 미만(2억원)(강화)
 - ☞ 지역경쟁제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특정지역 이외의 타지역 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입찰참여가 배제되는 진입규제에 해당하나,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높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으며 대상금액 상향(50억원→76억원)으로 새로이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비중이 전체 공사비중에서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공사의 지역경쟁제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일반건설 : 50억원 미만→150억원 미만, 전문건설 : 5억원 미만→7억원 미만, 물품·제조 등 : 고시금액 미만(6.7억원)→고시금액 미만(6.9억원)(강화)
- ☞ 지역경쟁제한제도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내용 1)

■ 심사내용

- ☞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행위유형별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토록 함(내용)
- ☞ 민간투자사업 시장의 건전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담합행위 등을 행한 자를 일정기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추정가격이 76억원 미만인 공사를 공동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4대강(한강·낙동강·

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강화)

-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효력기간을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2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10년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을 고시금액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도 고시금액(76억원) 미만으로 유지(강화)

-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경쟁제한적 성격이 더욱 강한 '지역제한 입찰제'의 대상공사도 76억원 이상 공사임을 감안할 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서 제출자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체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과정에서 보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강화)

- ☞ 제재대상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제재기간을 획일적으로 6개월로 규정하여 용역업체에게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고 정보누출 횟수에 따라 처벌기간을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정보누출의 심각성, 그로 인한 피해규모, 주계약자와 하청업체 및 정보를 누출한 개인의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수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벌점제 등을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보화관련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 미이행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10/100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신설)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토록 하는 것이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계약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 금융위원회

* 집필자 : 한영철 전문위원(Tel. 2100-2324, ychan@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2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7건, 강화 32건 등 총 6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9건 중 6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6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 권고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376차 경제분과 (2009. 1. 1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2, 비중요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2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29)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제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2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27)	원안의결 4	신 설 4 *비중요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18)	원안의결 2	강 화 2 *비중요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3 *비중요 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5)	원안의결 4	강 화 4 *비중요 4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210차 본회의 (2009. 7. 7)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 중 요 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381차 경제분과 (2009. 7. 7)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제381차 경제분과 (2009. 7. 7)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6)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6)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218차 본회의 (2009. 11. 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 중요 1, 비중요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1. 20)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390차 경제분과 (2009. 12. 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 설 3 * 중요 1, 비중요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222차 본회의 (2009. 12. 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 중요 1, 비중요 1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5)	원안의결 4	신 설 4 * 비중요 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5)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5)	원안의결 7	신설 2, 강화 5 * 비중요 7
계		원안의결 62 개선권고 6 철회권고 1	신설 37, 강화 32 * 중 요 9, 비중요 60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감액기준 설정(신설)

-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시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의 정정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

☞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의 다른 면제수준*으로 감액기준을 설정하였고,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에서 주식공개상장시 신고한 주식수의 20% 이내 정정은 정정신고서 제출 없이도 효력발생 인정

○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 가능범위 명시(강화)

-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외파생거래의 성격·현실을 반영하여 위험회피 목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 ①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 있고
- ② 장외파생거래의 발생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의 발생손익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일부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과도한 KIKO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초과하는 사태 발생

☞ 본 규제는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금융투자업자와 고객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성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견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공매도 제한 근거 마련(강화)

- 증권시장의 안정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증권거래소 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09.2.4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령에서 인정되는 차입공매도를 하위규정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단일조치보다는 특정종목, 업종, 전면금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매도를 제한하는 원칙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예) 1차적으로 특정종목, 업종에 대해 공매도를 실시하고, 공매도의 지나친 급증(공매도 비중 0% 이상), 증권시장의 하락세 급증(00% 폭락)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매도 전면 금지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기간을 정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개선권고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강화)

- 모집·매출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펀드의 구조 및 공시를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포함) 기재 및 정정사항에 포함

☞ 파생상품 공시 강화는 파생상품 발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혁신 저해 등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파생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명시(신설)

- 자본시장통합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대상에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을 10%(발행 주식 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처분하는 주식 등의 비율) 또는 최대주주가 되거나 벗어나는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설정

☞ 동 규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량취득·처분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강화)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거래 신고의무 등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은행 신고사항과 기타기관 신고사항 위반으로 구분하고 은행 신고 위반의 경우 기타기관 신고 위반의 50%로 산정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대부업자 등의 교육(신설)

- ① 대부업 등의 교육은 업체의 대표자 및 업무총괄인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②교육내용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보고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하고 ③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규정

☞ 동 규제는 법률에서 의무화된 대부업자의 교육이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부업자 등의 광고시 문안과 표기방식 기준 설정(신설)

- 광고시 대부업자는 상호의 글자크기를 상표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식별이 용이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광고 사항과 차별화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표기하도록 규정

☞ 동 규제는 대부업 광고내용 중 대부계약사항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이견이 없고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절차 마련(신설)

- ① 대부업자 등은 6월말 및 12월말을 기준으로 년 2회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②보고서의 구성항목은 일반현황(등록지역, 상호, 대표자 등), 지점현황, 자산·부채 현황 및 대부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동 규제는 대부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의 항목과 제출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별도 이견이 없고 이행상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신설)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교육의무 미이행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 과태료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 동 규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위반 횟수별로 행정처분내용을 차등적용토록 합리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예금보험료 조정(강화)
 - '09년 1월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보험료 부담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

* 기금의 사전적립목표치를 정하고 기금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

예금보험료율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 은행	0.1%	0.08%
· 투자매매·중개업자	0.2%	0.15%
· 보험(생보·손보) 및 증권	0.3%	0.15%
· 저축은행	0.3%	0.35%

* 예금보험료 = 예금의 평균잔액 x 예금보험료율

☞ 동 개정안은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편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동의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강화)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 * 확정기여형 : 사용자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운영수입은 근로자에게 귀속
 - ** 개인퇴직계좌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수령액을 운영하는 저축계정

☞ 동 규제는 현재 퇴직연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기관 파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 T/F에서 마련되었고, 피규제자가 동의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의무 부과(신설)
 -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이행내용을 이행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함
 - * 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과 유지를 위해 설계한 품질관리제도가 적절히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
- ☞ 본 규제는 증선위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감사인(회계법인)의 이행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의무 도입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추가적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 기존에도 감사인은 증선위의 의결에 대한 이행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행보고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8)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제출주기 단축(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

☞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를 단축시킨 것으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은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서 위험총량이 큰 금융투자업의 경우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고, 규정변경예고 기간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대상범위를 축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본 개정안의 피규제자는 총 146개사(금융투자업자)였으나,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장외파생 매매업 또는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44개에 한정하였음

○ 겸영금융투자업자(예:보험사, 은행) 장외파생상품 위험한도 보고제도 도입(신설)

- 위험한도를 내부기준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위험한도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토록 함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한도 변경시 금감원장에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겸영투자업자의 리스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고의무가 필요하고, 보고의무 부과에 따른 추가적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무증권 편입최소한도 규정(강화)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채권, 기업어음)에 투자하도록 최소편입비율 설정

☞ MMF의 채무증권 최소편입비율 규제는 시중 단기자금의 지나친 유입을 방지하여 MMF의 대량환매 등 시장불안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본 : MMF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
미국 : MMF 재산의 40% 이상을 증권에 투자

-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투자자 대상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적정성 심사절차 의무화(신설)

☞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투자자 대상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심사토록 하는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4, 강화 3)

■ 심사내용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대상자 및 자격요건 규정(신설)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대상자를 ①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②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

*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

☞ 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 대상자 및 자격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업무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과 동일하므로(신규채용 불필요) 추가적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파생상품거래의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거래건전성 확보를 통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큰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 의무대상 규정(신설)

-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 의무대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로 규정

- ① 자본시장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회사
- ② 동법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
- ③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 위험평가 의무대상을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 규정

- ①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 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할 것

☞ 자본시장법에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대상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규제대상이 한정 또는 축소되어 평가대상자의 추가적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경영실태평가 의무대상자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령에 상향입법하는 것이고, 위험평가 의무대상자는 과거 증권거래법 체제에 비해 자산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특정영업 금융투자회사로 한정하여

규제대상이 축소

○ 임직원 겸직제한 합리화(강화)

- 집합투자업자는 계열사 중 집합투자업자와만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치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임직원 겸직가능 여부

구분	개정이전	개정이후	규제
1	△△투신 - △증권(O)	△△투신 - △△증권(X)	강화
2	△△투신 - △생명(X)	△△투신 - △△생명(O)	완화
3	△△증권 - △△생명 펀드운용팀(O)	△△증권 - △△생명 펀드운용팀(X)	강화
4	△△증권 - △△전자(X)	△△증권 - △△전자(O)	완화

☞ 계열사간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피규제자수가 제한적이고,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겸직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허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94개사

** 보험회사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을 영위치 않는 임직원(예 : 보험업 담당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영위치 않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

○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 및 적용방법(신설)

-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범위 : ①파생상품 ②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③파생펀드(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등 제외)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고위험상품(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담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정보를

파악하고 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경고해야 할 의무

- 적정성 원칙 적용방법 :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본시장법에서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범위 및 방법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불편초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상되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 크다고 인정되고, 파생상품 중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규제대상을 한정할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100% 재간접투자가 허용되는 역외펀드 요건(신설)

- 국내펀드 재산의 100%를 역외펀드(외화자산으로만 운용)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재간접투자*)으로 운용하는 경우, 동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금융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재간접투자 : 펀드가 직접 주식, 채권 등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동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것

☞ 역외펀드 국내판매제도와 규제차익** 발생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역외펀드에 한하여 재간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른 국내투자자 보호 등 무형의 편익이 발생하고, 입법예고절차 이외에 이해관계자와(외국계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논의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역외펀드에 재간접형식으로 100% 투자시 금융위 등록을 요하는 '역외펀드판매'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등록이 필요 없는 규제차익이 발생

○ 5% 보고* 시기 조정(강화)

– 경영참여 목적에 관계없이 신규보고(신규 5% 취득)의 경우에는 5일내 보고

* 관련 정보공시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 보유 및 1% 이상 변동시 보유자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 동 규제는 경영권 관련정보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규 5% 보고에 한정되며, 주식매집 정보 및 경영권 관련정보를 시장에 적시 전달하여 시장전체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 등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미국 : 일정지분(10%) 이상이거나 신규보고의 경우 경영참가 목적 관계없이 신속보고

일본 : 경영참가 목적에 관계없이 신속보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추가 (강화)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 추가

* 회사존립 등 기업의 주요경영 항목에 대해 공시토록하고 위반시 공적제재를 적용하는 제도

☞ 본 규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주식관련사채 발행관련 공시를 기존 수시공시에서 주요사항보고서로 이관하여,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상장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다수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입법예고기간의 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비용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의견 반영하여,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서식을 일치 및 1회만 제출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운영
예정

(1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등
사전심사 강화(강화)

-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4% 이상 소유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규제완화)하면서 그
대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별도 의견이 없고,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등 사전심사 강화(강화)

- PEF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4% 이상 소유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PEF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규제완화)하면서 그 대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별도
의견이 없고,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강화)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사항 추가

- 주요출자자의 타 회사 출자지원을 위한 은행지주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등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항목 추가
 - 은행지주회사 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등
- 은행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시 주요출자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 과징금 수준 강화
 - 신용공여한도 위반액의 20% 이하→40%
- ☞ 산업자본의 재무구조 부실이 은행지주회사의 동반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법 등에 유사규정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강화)
 -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대상 확대
 -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승인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 현행 : 금융감독 당국은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 점검시에만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
 - * 산업자본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을 받은 산업자본
- ☞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필요최소한의 사후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 독일·일본 등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검사권 보유

(11)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금리연동형 보험의 이율(공시이율) 결정시 조정율의 범위제한(강화)

- 보험회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의 이율* 결정시, 공시기준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pm 20\%$ (80~120%)이내로 제한

* 금리연동형 보험의 이율 = 공시기준이율 × 조정률

** 객관적인 내·외부지표(자산운용이익률, 회사채, 국고채 등)에 일정 마진율을 가감(예 : 회사채수익률-1%)하여 결정하고,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예 : 약관, 사업방법서 등)에 명시

※ 현행 조정률 범위는 -20% (80~ $\infty\%$)로 하한에만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상한선에도 규제(80~120%)를 설정

- ☞ 공시이율의 조정범위의 상한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의 이율결정 과정의 객관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간 부당차별*(신·구계약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수***를 고려하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회사는 판매시에는 조정률을 높이 설정하여 높은 이율을 보장, 판매가 중단된 상품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낮게 적용하여 낮은 이율을 제공할 소지가 있음

** 보험회사의 추가적 규제비용은 없음

*** 22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신설)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가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내에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함

- ☞ 중복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을 공지하고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 중복가입 확인에 따른 보험료부담 최소화 등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적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미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을 구축

(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책임규정(강화)

- 해킹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 기술적으로 열등한 선의의 금융이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해킹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신전문업 등에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 동의

- ☞ 단,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책임경감을 위한 구체적 예외기준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및 시행할 것을 권고

○ 포인트·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제(신설)

-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여 사전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하고,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의무가 면제

☞ 발행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행제도와 같이 포인트·마일리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자가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안 철회를 권고

• 마일리지는 전통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예: 교통카드, 전화카드 등)과 달리 마케팅 차원에서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성격이 차이

• 특히 마일리지·포인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급여력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상환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되어 왔고 문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과 포인트·마일리지 비교

구 분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마일리지
주요목적	지급수단	경품(보너스)
비용부담	고객의 현금 또는 예금	제휴가맹점 마케팅 비용
경쟁산업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대체 마케팅 수단
예시	교통카드(T-money), 전화카드 등	Ok캐시백 등

(1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실손의료보험의 사전신고 기준 명확화(신설)

-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신고상품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심사

현행·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입원	전액보장 가능 (단,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100% 생보사는 80%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본인부담금 10% 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외래 약제비	방문회당 5,000원~1만원 공제 (보험사 자율)	의원:1만, 병원:1.5만, 종합전문병원:2만(원) 건당 8,000원 공제

시행시기 (부칙 제1조~3조)

~ 공고('09.7.18 예상)	공고 이후 ~ '09.9.30	'09.10.1 ~
개정규정을 적용치 않음 (갱신시에도 100% 보장)	100%보장 계약체결 가능 (단, 계약체결 3년 후 개정규정 적용 하여야 함)	개정규정 적용

☞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10%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토록 하는 규정으로서, 현행 100% 보장상품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다 의료수요 발생 및 건보재정 악화의 부작용이 있고, 동 보험의 손해율이 109.4%인 점을 감안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과다한 의료수요 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장비율을 더욱 축소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후 90% 보장상품으로 갱신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예정)고시일로부터 2주 뒤인 '09. 8. 1부터 시행하도록 개선권고하는 한편, 동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2년간 시행 후 정책효과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 권고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시행령) 및 세부유형(감독규정)(강화)

-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 및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시행령)
 - 신용카드 등의 이용조건 등을 허위·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 카드사 임직원 등에 과도한 성과금, 강제할당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감독규정)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 지급 행위
-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축소변경 금지 및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 영업직에도 성과금 지급 금지행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업직 임직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모든 고객이 부가서비스 변경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방법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규정(신설)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 금융위가 정하는 자격증 취득자,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시험을 합격한 자(단,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절차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인의 인적사항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금융위에 등록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제한적이고 기존 채권추심종사자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규제비용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임직 채권 추심인 : 1만2,000명

○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승인요건(강화)

- 주요출자자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 최대주주, 출자총액의 10% 이상 출자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요건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

- 지배주주의 정의 및 승인요건 규정

- 정의 : 최대주주, 30% 이상의 출자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요건 : 주요출자자 요건과 동일함

☞ 법률에서 위임한 주요출자자·지배주주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제한적이고 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업자의 피해가 없고, 타업권과 비교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30개 신용정보회사

** 전자금융거래업,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은 주요 출자자(또는 주요주주)의 개념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규정

(1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수수료 상한 설정(신설)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수수료를 2만원 이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등록수수료 상한 설정은 협회의 임의적 수수료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 2만원은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시설요건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적절한 수준이고, 여타 금융권**의 등록수수료에 비해 그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등록업무 전담 인력(2명)의 인건비, 전산개발 및 유지비, 임대료 등

** 보험설계사의 등록수수료 6,000원, 보험대리점 2만원, 개인보험 중개사 5만원 등(상한이 아닌 실제 납부금액)

○ 신용정보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신설)

- 신용정보회사(조회업, 조사업, 추심업 및 평가업)는 모두 외감법상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

☞ 신용정보회사의 부적격 회계처리*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업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가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 발생을 방지할 장치가 없고, 규제 신설로 인한 규제비용**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 : '06년 2개사 → '07년 4개사 → '08년 2개사

** 전업신용정보회사(30개) 중 22개사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외감대상에 기편입되어 8개 채권추심회사가 신규 외부감사 의무가 발생

(1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신설)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및 주주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동 근거가 없을 경우 주요출자자 파악이 어려워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금융지주회사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은행법령과 비교하여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발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식초과보유 승인처리기간 연장(강화)

- 한도초과*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필요

☞ 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심사기간이 여타 금융업*에 비해 짧고,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정례회의가 월 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심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기간 : 60일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 적격성 심사 자료제출 기한(신설)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시기를 결산 또는 반기 가결산 후 1개월 이내 제출토록 명확화

☞ 현재 금융위는 결산 및 가결산 시점에서 자료 제출을 매번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피규제자는 결산 및 가결산 후 1개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므로 준비기간이 비교적 충분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발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사실상 영향력 행사여부 등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신설)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및 그 주주에 대해 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자료제출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운영하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가 불충분한 경우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해당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발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식초과보유 승인처리기간 연장(강화)

- 한도초과*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은행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적격성 심사 필요

☞ 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심사기간이 여타 금융업*에 비해 짧고,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정례회의가 월 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심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기간 : 60일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 적격성 심사 자료제출 기한(신설)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시기를 결산 또는 반기 가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명확화

☞ 현재 금융위는 결산 및 가결산 시점에서 자료 제출을 매년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피규제자는 결산 및 가결산 후 1개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므로 준비기간이 비교적 충분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비금융주력자 등의 경영관여 기준 중 이사선임 수(신설)

- 비금융주력자 등의 경영관여 기준 중 이사 선임수 기준을 1명으로 설정한

☞ 주식의 분산소유 구조가 일반화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경영에 관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사 선임수를 상향조정하면 감독 측면에서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고, 규정변경 예고기간중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비금융주력자 등의 경영관여기준 중 이사 선임 수(신설)

- 비금융주력자 등의 은행 경영관여 기준중 이사 선임 수 기준을 1명으로 설정
- ☞ 주식의 분산소유 구조가 일반화된 은행의 경우 1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경영에 관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사 선임수를 상향조정하면 감독 측면에서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고, 규정변경 예고기간중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펀드 판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을 하향 조정(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판매수수료 상한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5.0%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0%
판매보수 상한	펀드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0%	펀드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 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인 경우 연 1.5%)

* (예시) 1년 이내 : 1.5% → 1~2년 : 1.2% → 2년 이후 : 0.9%

- *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부담(일회성)
- * 판매보수 :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펀드가 부담(계속)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 경우 판매수수료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업계관행으로 판매보수 위주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함으로써 판매보수 위주운용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도 규제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

* 펀드운용사와 달리 판매사의 경우 판매 이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데 판매보수가 펀드 순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문제 발생

** 판매보수는 펀드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펀드투자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높은 보수를 장기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판매보수를 계속 인출하여 투자자의 불만 요인 야기

☞ 다만, 동 시행령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판매보수율에 대한 연구 및 판매보수 폐지시 영향분석 등을 거쳐 판매수수료 자유화 등 가격경쟁 촉진 및 판매보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동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개선 권고(재검토형 일몰)

○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신설)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신규 도입하면서 적격투자자의 범위, 차입가능한도,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한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규정

☞ 제도 도입초기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만큼 규제의 목적성이 인정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강화(강화)

-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①자회사 등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②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과 금융업 수행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추가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추가되는 항목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성이 인정되고,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발생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업종 확대(강화)

-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때 포함되는 자회사 등의 범위에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을 새로이 포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규제의 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규제 편익에 비해 규제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신용카드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적용(강화)

-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규제 중 ①불공정 모집 금지 ②모집수수료율 공시 및 상품설명 의무 ③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 규제 ④모집방법 제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신용카드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모집방법에 있어 현행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전화모집을 인정하는 한편 ⑤판매상품 제한과 ⑥모집인수 제한 규제는 현재처럼 예외를 인정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요 규제(시행령 제40조)〉

- ① 불공정 모집 금지 : 대출 등을 이용한 꺾기 금지
- ② 모집수수료율 공시 및 상품 설명 의무
- ③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 : 특정회사 상품은 25%까지만 가능
- ④ 모집방법 제한 : 점포내 모집 및 인터넷 모집만 가능
- ⑤ 판매상품 제한 :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만 판매 가능
- ⑥ 모집인수 제한 : 임직원은 2인만 보험모집 가능

☞ 본 규정은 신용카드사와 여타 금융기관간 보험상품 판매시 규제 차별 해소를 위해, 방카슈랑스 도입(2003년) 이후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았던 5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의 적용대상인 5대 신용카드사의 반발이 있기는 하나, 이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과도한 특혜를 시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 유예기간을 더 이상 계속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신용카드사에 기존 특혜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대안이 제시될 경우 여타 금융권으로부터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업무위탁회사의 범위 확대(강화)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상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업무위탁회사의 범위를 현행 3개 분야(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사고조사)에서 보험업과 밀접한 14개 분야로 확대

☞ 최근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감독당국의 검사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탁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근거가 법령이 아닌 금융위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현재에도 사실상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신규 규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설정(신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공모자금의 예치비율 및 기관	공모발행 금액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예치자금의 인출사유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시 또는 상장폐지시
예치자금의 배분기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예치자금 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권(최초 공모전 주권 제외)의 보유비율에 따라 배분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격 및 최소투자범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
합병대상법인 선정	최초 공모전 합병대상법인 특정 금지

☞ 공모자금 예치기관 제한은 회사 경영진이나 예치기관 등의 자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치자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인정되나, 예치기관을 증권금융회사 한 군데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사례(미국)에 비추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시장참가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예치기관간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자금 예치기관을 현재의 증권금융회사에서 은행신탁 등으로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

- 공모자금 의무예치비율, 공모자금 인출사유, 예치자금 우선반환, 합병대상법인 최초 공모전 특정 금지 등은 선진국 사례와 동일하게 규정
- 금융투자업자의 자격 및 최소투자금액 제한은 제도 도입 초기 공모투자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발기인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발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발기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

미국 방식과 국내 방식의 비교

구 분	미국 방식 ¹⁾	국내 방식
공모자금 의무예치비율	공모금액의 90% 이상	좌동
공모자금 예치기관	은행 에스크로 계정 또는 신탁계정 예치 (예치자금은 단기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증권금융회사 (투자자예탁금 보호기관)
예치자금 인출사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시 또는 상장폐지시	좌동
예치자금 우선반환	공모주주 우선반환	좌동
회사해산시 예치자금 배분기준	공모주주 주권비율에 따라 배분	좌동
발기인인 금투업자의 자격 제한	해당사항 없음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발기인인 금투업자의 최소투자금액	해당사항 없음	발행금액의 5% 이상 보유
합병대상법인 선정	최초 공모전 특정 금지	좌동

주 : 1) 미국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으나, SEC의 증권신고서 심사규정 및 상장규정에 반영

○ 체감식 판매보수의 세부 적용 기준(신설)

- 펀드 장기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체감식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제한

☞ 판매보수율의 체감시점으로 설정된 2년이 국내 펀드 투자자의 평균투자기간(1년~1년6개월)보다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자의 비용부담 완화라는 동 규제의 목적성에 부합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설정(신설)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①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 ②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③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④영업손실이 최근 2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등으로 제한

* 자본시장법시행령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의 대상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동 규제가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자산 70억~100억원인 주식회사 가운데 ①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 ②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 또는 ③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확대(강화)

☞ 우리의 외감대상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매출액 기준의 경우 경기상황, 환율 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외감대상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외감대상 선정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을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우리의 경우 외부감사대상 선정기준은 4개(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인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 2개(자산, 주주수), 일본 2개(자본금, 부채), 영국과 독일이 3개(자산, 매출액, 종업원수)임

외국의 외부감사대상 선정기준

국가	외부감사대상 선정기준	근거법
미국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중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주주 500인 이상 장외등록법인	증권거래법
일본	자본금 5억엔(64억원) 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엔 이상 주식회사	상법의 특례법률
영국	모든 회사, 단 소회사 [자산 280만파운드 이하, 매출액 560만파운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는 면제	회사법
독일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 단 소회사 [자산 401.5만유로 이하, 매출액 803만유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는 면제	상법
싱가폴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단 휴면회사 또는 감사면제회사 [종업원수 20인 이하이고 수입 500만싱가포르달러 이하]는 면제	회사법

* 출처: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적절한가?"(정영기, 조현우, 2007.9.)

- 매출액은 자산 부채와 달리 업종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환율 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외감대상 여부인지 예측하기가 곤란
 - 더욱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1월 외감대상 기준을 상향조정(자산 7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한 점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큰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로 설정(신설)

☞ 국제회계기준이 전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용범위도 2007. 3월 발표한 로드맵의 내용과 동일하여 관련기관(중기청,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단기사채의 요건 정의(신설)

- 등록발행 가능한 사채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

- ①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② 만기한도 : 1년 이내일 것
- ③ 사채금액을 일시 납입할 것
- ④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 ⑤ 주식 관련 권리 부여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 ⑥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할 것

☞ 단기사채 제도의 목적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발행요건 제한은 불가피하고, 발행요건으로 규정된 내용도 도입 목적(단기성 조달, 실물 미발행 및 표준화를 통한 유통시장 발전)과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진국의 예

- 영국 : 최소발행금액 10만파운드, 만기한도 1년
- 미국 : 최소발행금액 10만달러, 만기한도 270일
- 일본 : 최소발행금액 1억엔, 만기한도 1년

○ 단기사채 등록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지정(신설)

- 단기사채 등록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으로 제한

☞ 단기사채제도의 도입 목적(실물 미발행, 유통시장 발달)을 고려할 때 “발행(등록)업무”와 “결제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 “예탁결제원”만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해외의 경우에도 증권예탁기관이 단기채무증권에 대한 등록업무를 수행 (미국 DTCC, 일본 JASDEC)

○ 참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신설)

-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단기사채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시장법에 의한 예탁결제제도에서도 예탁결제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탁결제원에게 예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신설)

- 의무 및 금지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벌칙 부과 기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자 등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등록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등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물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발행인관리계좌부,

권리자계좌부 및 참가기관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과태료 부과 기준

- 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②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예약결제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등

☞ 벌칙이나 과태료는 단기사채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최후의 안정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양형 결정에 있어서도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세부 양형을 조정할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7)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험자회사의 지주회사 대주주와의 보고대상 거래 기준(신설)

-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총자산의 0.5%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기준(총자산의 0.5% 이상)도 미국의 뉴욕주 보험법상 중요거래 보고기준(보험사 자산의 0.5% 이상)을 참고한 것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28)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 5)

■ 심사내용

- 사외이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①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가 있는 자 ②사외이사 2개 이상 겸직자 ③해당 금융기관의 주식을 1% 이상 보유자 등을 추가(강화)

* 중요한 거래관계

-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계약
- 전산용역, 금융관련 조사연구, 부동산 등 자산관리 등 용역 계약
-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 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 등
- 자본금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기술제휴한 법인 등

현행 결격요건 :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

☞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인 만큼 여타 금융회사에 비해 경영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사외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현재 운용중인 은행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금융지주회사 등 여타 기관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간 차별화된 결격요건을 조정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자산은 종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 산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중치를 자산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강화)

* 자산 종류별 가중치

-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등 현금성 자산 : 100%
- 은행간 대여금 등 : 100%
-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대출 등 : 90%
- 국공채 : 60~100%(신용등급별 차등)
- 회사채 : 50~90%(신용등급별 차등)
- 주식 : 35%(비상장), 55%(상장) 등

- ☞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국가신용리스크 및 금융시스템리스크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율 산정시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자산이 언제든지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실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가중치 역시 영국, 홍콩 등 주요국을 참고하여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안전자산 보유최저한도*를 의무화(신설)
 - * 최저보유한도 설정 : 금융회사가 다음 방식 중 택일 허용
 - ①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 \times 2/12 \times (1-최저차환율*)
 - * 최저차환율은 금번 위기 이후 차환율이 가장 낮았던 3개월 가중 평균치
 - ②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 * 우선 2%로 시행하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검토
 -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은행이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지원자급에 의존한 점에 비추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정부의 대응책 마련기간(2개월)과 해당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최저차환율)이 반영되어 있어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중장기 대출 자원조달 산정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하고, 규제 비율을 현행 최소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강화)
 - * 중장기대출자원조달 비율 =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재원 /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대출
 - ☞ 외차대출재원의 차입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수의 은행들이 외화대출재원의 차입구조 단기화로 인해 외화유동성 부족을 경험한 점에 비추어 외화대출재원의 차입구조를

장기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기채원조달의 개념도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 변경을 통해 국제적인 정합성도 제고된 점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운영(강화)

-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지표 설정 운영, 위기상황시의 자금유출 금액 추정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화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험한 만큼 외화유동성에 대해 별도의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기구(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에서도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환과생상품거래에 구체화한 「외환과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신설)

- 은행은 기업과의 외환과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대상이 되는 실물거래를 확인하고, 타금융회사와의 기체결 거래실적을 확인하고 거래 한도에서 차감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은행이 일부 기업의 신용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외환과생상품 거래를 과도하게 체결하여 손실을 입은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외환과생상품 거래시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강화)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조달 규제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시 제재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 신설에 따라 동비율 위반시 제재비율을 총자산 대비 3%로 규정

☞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안전자산 보유의무 신설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가 크게 강화된 만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재비율도 은행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 공정거래위원회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등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2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3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2건 중 9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건에 대해서는 철회 권고하고, 21건은 원안대로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2. 11)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10)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 비중요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14)	원안의결 1	내 용 1 * 비중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17)	원안의결 2	내 용 2 * 비중요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 비중요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등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80차 경제분과 (2009. 7. 2)	개선권고 1	내 용 1 * 중 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11차 본회의 (2009. 7. 2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4 철회권고 2	신설 3, 강화 5 * 중요 7, 비중요 1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제383차 경제분과 (2009. 7. 23)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8차 경제분과 (2009. 12. 2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강 화 7 * 중요 3,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21 개선권고 9 철회권고 2	신 설 7 강 화 21 내용심사 4 * 중 요 12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일반 지주회사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보고서 제출항목에 '거래현황'을 추가

☞ 금융·비금융회사 동시 허용시 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거래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시기가 연 1회에 불과하고, 금융-비금융회사간 거래현황에 한정하므로 규제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신설 3, 강화 4)

○ 상조업종을 고시에 추가하여 표시·광고시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표시만 해당), 사업자의 재무상태(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금융기관 예치율)(신설)

*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 또한 2분 미만의 TV광고시 재무상태와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막으로 방송시간의 1/5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분 이상의 TV광고(기존 규제 애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신설(전 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 이상 표시)

☞ 최근 급증하는 상조업체의 부도·잠적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로, 공정위 자체 규개위에서 실효성 있게 표시·광고사항을 간소화(법인명, 서비스지역 등 삭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였고, 서비스

성격상 보험업과 유사한 상조업의 재무상태 공개는 보험업법*과 비교해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보험업은 책임보험금 대비 순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조직·인력·재무상황 등을 공시해야 함

○ 중고차매매업종을 고시에 추가하여 광고시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신설)

- 광고해야 하는 사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조 서식), 자동차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매매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부여)

*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한정함

☞ 최근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급증하는 중고차 허위매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현재도 일부 중고차매물정보제공 사이트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07년 조사 결과 온라인 매매차량의 68.1%가 허위매물로 나타남

○ 해외연수프로그램업종을 고시에 추가하여 표시·광고시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신설)

-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비용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근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학원운영업종의 중요정보고시사항에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 부담 여부를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추가부담 금액도 표시하도록 의무화(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총학원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경쟁제한적 요소도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자동차부품업종의 중요정보 고시사항으로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을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위험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자동차부품업종 중 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강화)

☞ 연료절감장치 장착으로 인한 자동차 주행이상 또는 화재 발생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고시사항으로 ‘광고시 제시한 가격’ 외의 추가경비 유무에 대해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여행상품 가격’과 ‘선택경비’로 단순화하여 선택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으로 표시하고 선택경비는 유무만을 광고하도록 의무화(강화)

☞ 최근 여행사들이 기본가격을 저렴하게 광고하고 선택비용을 고가로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중요정보고시사항을 상품에 표시한 경우 그 표시 사실을 광고하면 광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요정보고시사항의 표시장소로 첨부물도 인정하고 있으나, 표시와 광고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광고사항의 경우

표시와 상관없이 광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장소에서 첨부물(소비자가 내용을 살펴보기 어려움)을 삭제하고, 제품이 포장용기에 들어 있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강화)

-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 장소를 실효성 있는 장소로 개정하는 규제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과징금 및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40점)을 설정

- ☞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부당감액(80점), 부당반품(60점) 등과 비교하여 협의거부·해태의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선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과 같이 최저점인 40점을 부여하였고, 규제의 적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상반된 의견*을 절충한 안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중소기업중앙회 : 80점으로 상향조정 / 대한건설협회 : 20점으로 하향조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기업집단 공시 사항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공시주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업 제외)

- 공시내용 : 기업집단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공시빈도 및 시기 : 분기별 공시 원칙, 예외적으로 연1회 또는 반기별 공시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 미공시(1,000만원), 허위공시(1,000만원), 공시누락(500만원), 지연공시(100만원+1일당 5만원)
- ☞ 출중제 폐지 대신 도입된 기업집단 공시제도(법 제11조의4)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별기업별 공시 사항의 일부를 기업집단별로 종합·공시하는 것이므로 기업 부담이 크지 않으며,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업결합 양 당사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간별 기본 과태료 금액과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7,000만원),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기준(매1일에 0.5%씩 가산),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기준(5년내 1회 위반시마다 20%씩 가중)을 규정
- 사후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사후신고 대상: 자산·매출액이 2조원 이하인 기업간 결합(단 임원겸임의 경우 등에는 2조원 이상인 기업이 포함되어도 사후신고)

- 사전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 사전신고 대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대규모기업)이 참여하는 결합

☞ 현재 시행중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위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하고 지연일수·위반횟수에 대한 가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이해당사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존 규정 대비 사후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만~100만원, 사전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250만~1,500만원 하향 규정

** 기존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기준: 30일(100% 가중), 6개월(50% 추가가중)
기존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기준: 2회 위반시 50%, 3회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150% 가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산정기준 보완(강화)

-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현행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등 기간 산정기준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계약서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기존 청약철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악의적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유로 추가(강화)

☞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피규제자가 제한적(다단계판매업자 66개)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대학생 등 정보가 취약한 자를 허위명목으로 유인하여 다단계판매를 위한 설명회나 교육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벌 부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화)

☞ 통상적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피규제자가 제한적(다단계판매업자 66개)이고 이해관계자 의견*보다 완화된 규제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청회에서는 방문판매업까지 이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허위명목 유인은 주로 다단계판매업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수용 곤란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위 또는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거부 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불편 및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 법령개선 통보 사안이며, 여타 부과기준*에 비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규제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스팸 규제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등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심사 1)

○ 공시대상회사의 공시의무사항, 공시빈도 및 시기 규정

공시항목(4)	공시내용(21)
일반현황(5) - 연회 공시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2) - 연회 공시	⑥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3) - 연회 공시	⑧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⑨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매트릭스 형태로 공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계열회사간 거래는 매트릭스 형태로 공시) - 분기별 공시 원칙, 예외 인정	⑪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⑫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반기)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연회)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공시빈도는 정보변경빈도, 적시 정보제공 필요성, 정보생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회, 반기, 분기로 구분

- 공시기한은 연 1회 공시는 5월 31일, 반기별 공시는 2월 28일·8월 31일, 분기별 공시는 5월 31일·8월 31일·11월 30일·2월 28일임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대한 반기별 공시제도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므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완화시 상품·용역잔액현황이 포함된 계열회사간 채권채무잔액의 공시빈도도 이와 동일하게 완화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현행 반기별 공시(고시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연1회 공시로 변경하되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공시 의무 면제(고시안 제4조제1항제4호마목)는 삭제하고,
-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을 현행 분기별 공시(고시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연 1회 공시로 변경할 것을 권고
-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각종 공시제도(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정보공개, 기업집단현황공시 등)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3/4분기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강화 5)

-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신설)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15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수급사업자의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 서면증거를 통한 분쟁발생 사전 방지, 분쟁시 수급사업자의 입증 용이 등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와 지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재계약 어려움 등 부작용 발생정도에 대해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일몰제(2년)를 적용하고 규제도입의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제3조제6항의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계약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이 경우 해당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명시할 의무 부과
 - 또한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서면에 반영하고, 확정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
 - ☞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내용 확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서 누락 또는 불완전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타 입법례(일본)와 비교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강화)
 - 법에 명시된 부당한 감액의 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감액으로 간주(기존에는 수급사업자가 감액의 부당성 입증)
 - ☞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은 보장해주는 반면,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에 따른 장기계약 기피,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변경 등 국내 중소기업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회 권고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강화)

☞ 대·중소기업간 공동개발과 기술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지침 등 하위규정에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

* 단서조항(예시) : 다만, 중소기업의 동의를 있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활동의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제공이 정당한 것으로 본다.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원사업자는 해당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강화)

- 다만 발주자가 해당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면제함

☞ 개정안 제16조제2항 본문 중 ‘조정받은 내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으로, 단서 중 ‘내역’을 ‘사유와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문 중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별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명단공개 적합성 심의를 위해 하도급법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 심의를 거친 대상사업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 행정처분을 근거로 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중복

처벌적이고 과도하므로 철회 권고

- 하도급법에 실태조사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신설)

-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 하향조정)

☞ 제22조의2 제1항의 ‘실태조사’는 서면 실태조사인지 범 위반에 따른 본조사인지 불분명하므로 ‘서면 실태조사’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의 ‘하도급 거래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하도급 거래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출석요구 불응, 허위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법인 1억원으로 상향, 개인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조사방해·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상향(강화)

☞ 조사방해 등은 피조사자가 범위반행위를 은폐하여 얻는 이익이 과징금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보다 커 발생하므로, 과태료 상한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8)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강화 1)

-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 등 경영자료를 부당하게 취득,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강화)

- ☞ ‘중요한 매출정보 등 경영자료’ 및 ‘부당한 취득’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과잉규제가 우려되므로, ‘중요한 매출정보 등 경영자료를 부당하게 취득’을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 포함)를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7)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청약철회 등의 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강화)

- ☞ 시행시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으나, 기술적·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대표자 정보·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강화)

* 피규제자 범위 : 현행)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자
→ 개정안) 선불결제수단 발행자 전체로 확대

- ☞ 선불결제수단의 선지불 후구매 속성상 사이버몰 이용 수에 관계없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선불결제수단 발행자 전체로 규제를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나, 시행 2년 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도록 함(강화)

- ☞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단서규정 삭제시 사업자가 아닌 중고 물품을 일회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에게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서조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을 한정할 것을 권고

* 구체적인 신고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통신판매자 중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10회 이상 또는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인 자만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

○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를 온라인상으로 표시·광고 및 고지토록 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하도록 함(강화)

- 단, 이미 제품에 표시된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는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같음

☞ 재화 등의 원산지표시를 온라인상으로 표시·광고·고지토록 하고 계약서면에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는 타 법령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수준의 내용인 점, 이해관계자(온라인쇼핑협회)의 이견을 반영하여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있을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에 예외를 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강화)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성명·주소 등의 사항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및 소비자에 제공

- 통신판매중개자는 잘못된 신원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

에게 고지할 의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자로 오인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와 중개의뢰자의 연대배상책임 의무는 통신판매의뢰자의 허위정보 제공 등 기만적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나,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동내용은 삭제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한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강화)

☞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시정조치 내용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요건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강화)

☞ 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남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관세청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08, ljss1@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의 규제심사
- 심사대상 5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09. 05. 08)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09. 05. 0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09. 06. 23)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09. 06. 23)*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5	신 설 5 * 비중요 5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설 2)

○ 특송업체의 등록신청 및 통관편의 제한(신설)

-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일반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자체시설 이용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신설

* 통관시, 자체시설이 아닌 세관의 지정장치장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업체

- 특송업체가 관세법등 관련규정* 위반시 7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내의 특송창고 반입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1. 세관검사에 필요한 마약 등 우범물품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수입금지물품 등이 반입된 경우

2. 불법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세관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신설)

-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할 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참고 : 특송창고 표준모델 lay-out에 의한 시설요건 구비

- 검색 및 검사시설: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및 물품 검사대

- 인력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 판독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 이상, 매년 1회 이상 X-ray 판독교육 이수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신설 1)

○ 전자 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지정기간 신설 등(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 신설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비지정업체보다 검사비율이 낮고 신속한 통관편의(1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신청에 관한 요건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취소 요건 신설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신설 1)

-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신설)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요약)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과 분리, 구획하여 보관 · 창고바닥은 내수처리 · 창고내부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시설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관리 · 변질우려가 있을 시 서늘한 곳 보관 · 유통기한 경과 및 부적합한 식품류는 별도장소 보관 · 바닥, 벽면, 천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보관
냉장냉동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보관 영하 18℃, 냉장보관 영상 10℃ 이하

* 513개 영업용 보세창고

** 식약청,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물검역원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신설 1)

- 수입통관 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확대(신설)

- 물품을 수입·양도한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유통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유통이력 대상물품)에 4개 품목을 추가

- 공업용 천일염
- 공업용 대두유
- 냉동복어(금밀복에 한함)
- 안경테

* 유통이력신고제도

-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것(Traceability)

- 지정품목의 협회(대두가공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 염업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및 소비자 단체와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제3절 | 산업·에너지 분야

• 집필자 : 최태호 사무관(Tel. 2100-2293, choith@pmo.go.kr)

1. 지식경제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40건, 내용심사 21건 등 총 6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7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3.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3.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78차 경제분과 (2009.4.13)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5 * 비중요 5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4.1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5.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6.1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효율관리기저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가격표시제 운영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7.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10차 규개위 (2009.7.7)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7)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 비중요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7.23)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 비중요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7.28)	원안의결 3	강 화 3 * 비중요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7.28)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7.28)	원안의결 6	강화 5, 내용심사 1 * 비중요 6
도시가스사업법 회계분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8.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8.14)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9.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9.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9.16)	원안의결 5	강화 4, 내용심사 1 * 비중요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9.18)	원안의결 3	강 화 3 * 비중요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16차 규개위 (2009.10.8)	개선권고 1	신 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예비심사 (2009.10.16)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대외무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20)	원안의결 3	강 화 3 * 비중요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2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91차 경제분과 (2009.12.10)	개선권고 1	강 화 1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제392차 경제분과 (2009.12.22)	개선권고 1	강 화 1
계	-	원안의결 62 개선권고 5	신설 6 강화 40 내용심사 21 * 비중요 62

나. 2007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내용심사)
- ☞ 규제자가 거부·방해·기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로 소수이고,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회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 연구결과의 실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절차와 대통령령에 위임한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5)

■ 심사내용

- 용제판매소 등록요건에 저장시설요건을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저장시설 위치를 한정하며 모든 일반판매소에 대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의무를 부여(강화)

- ☞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신설)
 - ☞ 판매가격 공개는 원안동의하고, 공개제도에 대하여는 규제일몰제를 적용(시한 '11.4.30)하되, 시행 1년6개월 후('10.10.31)까지 공개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동 제도의 폐지·완화·유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개선권고
-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제품을 판매·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강화)
 -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1리터당 0.5원에서 0.6원으로 상향 조정
 - ☞ 구체적인 수수료는 업무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제품으로 현행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외에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석유중간제품을 추가(강화)
 - 또한 누구든지 상기의 연료를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차량연료로 사용시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은 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여

차량 안전성의 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등 그 취지를 고려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게 정기보고 및 판매가격의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대체연료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3가지 연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강화)

☞ 동 규제 관련 피규제자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의 산정이 곤란하나 그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법률이 규정한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종합시책 수립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및 재산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임차인 선정방법,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과정상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제도를 운영(법 제12조 내지 제23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온열시트'를 추가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7개 품목 추가(강화)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최초 수입·제조사에 공인기관에서 제품 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공장출고 또는 수입통관하여 판매하는 제품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 제조자·수입자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하는 제품

☞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자율안전확인대상 1개 품목과 안전·품질표시대상 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5년)을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 취득을 통해 투자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별로 구체화(내용심사)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9)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관리대상의 신규지정 및 품목별 적용범위 확대, 효율기준 강화 및 측정방법을 개선(강화)

☞ 에너지 절약과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촉진효과 등을 고려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가격표시제운영요령(고시)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가공식품, 일용잡화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 확대(강화)
 - ☞ 정확한 비교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 비정상적 가격인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제조업체)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표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며, 이에 따라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을 확대(강화)
 -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제조업체)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표시비용)이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과정상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제도를 운영(법 제12조 내지 제23조)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우산·양산 추가(강화)

-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제조·수입업체 30여개)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표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내용심사)
- ☞ 법률에서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에너지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업자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내용심사)
- ☞ 냉난방온도 제한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09.12.31까지 유예하고, 온도제한조치 전에 1주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둘 것을 개선 권고

(1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08.10)하기 위해 신설된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의무를 부여(강화)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발전용가스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상기 3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신설)

☞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가스도입·도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가스도입·도매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발전용가스사업자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행보다 강화되는 규제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스공급계획 제출의무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자를 추가(강화)

☞ 가스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5년간 가스공급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가스요금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판매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 부과(강화)

☞ 가스수요자 보호를 위해 판매약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전용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가스공급권역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 ☞ 가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시 사업자간 조정을 통해 대처하기 위해 조정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 관계부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정책의 체계적인 정보 구축 및 종합적인 정책수립·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엔지니어링기술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공동기술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처벌을 규정(강화)
 -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기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설계도서 : 설계전반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의 설계도(Design Drawing)와 시공방법, 자재 종류, 등급, 공사시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인 시방서(Specification, 상세서)

- ☞ 사업참여 기술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기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에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강화)
 - ☞ 공장설립 승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서류보완 요구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강화)
 - ☞ 산업용지를 본래 조성취지에 맞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강화)

- ‘지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현행 3가지 외에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추가

☞ 분양공고내용 중 공급가격(분양가격)이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변경시 승인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어 분양가 인상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과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급자 취급 부주의 등 인적오류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 강화(강화)

☞ 유사 안전관련 법령*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육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장소를 전국 27개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사 입법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운송자, 2년 1회(16시간)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21시간)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2년 1회(6~24시간)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5,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현재 전부 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13개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하고, 생산단계검사**는 일부 품목만 의무화(강화)

- KS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심사를 받은 제품은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하되, 동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규정

* 설계단계검사 : 일정형식의 제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시 해당 제품이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실시하는 검사

** 생산단계검사 :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양산할 경우 샘플링검사를 통해 일정한 기술기준 중 안전확보에 필요한 중요기준에 적합한지 실시하는 검사

☞ KS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사고사례 및 불량제품 유통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타법 및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가입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에 기존의 용기에 충전된 사용시설 외에 '소형저장탱크에 충전된 사용시설'을 추가(강화)

- 다만, 소형저장탱크 사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 소형저장탱크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은 사업을 개시 및 재개시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법률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현행 사업 등의 휴지나 폐지시 신고절차 외에 개시 및 재개시 7일 전까지 신고토록 규정(내용심사)
 - ☞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 등의 개시 및 재개시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 벌크로리를 이용해 위탁운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을 규정(강화)
 - ☞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고 벌크로리 위탁운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조율하여 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화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역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토치불꽃 제외) 사용 행위를 금지(강화)
 - ☞ 역화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최근 증가하는 인적 오류에 의한 가스사고와 각종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강화)
 - ☞ 유사 안전관련 법령*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육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장소를 전국 27개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사입법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운송자, 2년 1회(16시간)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21시간)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2년 1회 (6~24시간)

(19) 도시가스사업법 회계분리기준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산 등에 대해 형태별, 기능별, 시설별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준수하여야 하고, 자산 등의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회계 분리보고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내용심사)
- ☞ 법률의 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2012년 도입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안전관리제도별 관리대상 품목변경을 반영(강화)
- ☞ 전기용품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규정(강화)

- ☞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21)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및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자료(기업비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9조)함에 따라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료제출 범위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내용심사)
- ☞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제에 의한 피규제자 및 연간 규제유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략물자의 경우·환적 등의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법 제33조 제5항)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변경(내용심사)

- ☞ 법률에서 규정한 과징금 상한에 대해 세부행위별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점, 모두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자유무역지역 관련 관세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물품의 취급 및 관리 등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물품 반출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의 기준을 준용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법상 한도액 범위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KS인증 가스제품에 대하여 종전에는 검사 전부를 생략하였으나, KS인증 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대해 검사를 전부 실시하되 3년간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산단계 검사를 면제하는 등 조치(강화)
 - ☞ KS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사고사례 및 불량제품 유통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타법 및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KOLAS인정 의무제도를 폐지하되 5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시 변경지정신청을 하도록 함(내용심사)
 -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용접 또는 용단용으로 LPG를 사용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LPG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압가스자동차에 충전하는 경우 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함(강화)
 - ☞ 역화사고 방지를 위해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안전점검기준에 추가하고, 고압가스자동차(CNG버스)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대장의 보존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도록 하며, 고압가스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강화)

- ☞ 최근 증가하는 인적 오류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안전관련 법령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점, 교육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고압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등급별 지급보험금액을 1급 8,000만원부터 14급 5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강화)
- ☞ 여타 의무보험과 대비 지급보험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지급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기술이전·사업화전문기관(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지정·취소 및 사업화실적 보고 의무화 규정(강화)
-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정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57개 기술거래기관 등)의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술거래사의 등록요건을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서 해당 경력 및 자격을 갖추고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변경(강화)

☞ 기술거래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거래사에게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이 기술평가 의뢰시 지식경제부장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강화)

☞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을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제한할 수 있다’를 ‘우대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우대가 가능한 입찰대상을 공사로 한정(물품, 용역은 제외)하며, 규제일몰제(2년, 재검토형)를 적용하도록 개선 권고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강화 2)

■ 심사내용

○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같은 장소 또는 기존 등록·신고에 사용한 시설을 이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재등록 또는 재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등록취소 처분 이후 명의만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이후 6개월 경과 이후 다시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위한 허위서류 발급 금지(강화)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영수증 발급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7) 대외무역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 현재 대외무역 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법률화하고,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임(내용심사)
- ☞ 물품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된 '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의무부과를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풍력발전설비의 대형화, 해상예의 설치 경향 등에 따라 토목기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를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발전시설의 종류에 신규 전원설비인 풍력, 태양열, 연료전지를 추가(강화)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사고의 범주에 10만볼트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설비 사고를 추가(강화)

☞ 전기안전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전기안전 점검을 받도록 함(강화)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주식소유를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체화(내용심사)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0) 에너지융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강화)

☞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제20호는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31) 안정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제·개정(강화 1)

■ 심사내용

○ 공산품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등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의 합리화(강화)

- 섬유제품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범위 확대 및 검사 강화
- 공산품 석면안전기준 제정

☞ 섬유제품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는 행정예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흠결이 있는 점, 지식경제부 내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미흡한 점, 섬유제품 관련 국제적 추세와 달리 한국에만 동 규제를 도입함에 따른 비관세장벽 논란 및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 대립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는 철회 권고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범위 확대는 시행시기 1년 유예 권고
- 공산품 석면안전기준 제정안은 원안 통과

2. 중소기업청

• 집필자 : 양지연 사무관(Tel. 2100-2292, yang2105@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7)	원안의결 1	신설1 * 비중요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30)	원안의결 2	신설2 *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3 개선권고 0 철회권고 0	신설 3 강화 0 내용심사 0 중요 0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 심사내용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의무 및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 제출 의무 규정(신설)

-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여타 지원센터 지정 요건 사례와 비교해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설 2)

■ 심사내용

-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조합)에 대하여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안에 따라 경쟁입찰 참여정지(3개월~2년), 경쟁입찰 참여자 취소 및 재신청 금지(3개월~2년) 등의 제재규정 마련(신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판로지원법 제정에 따라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여건의 변경시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직접생산증명을 반납하도록 규정(신설)
-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3. 특허청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상표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리사법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1	내용 1 * 비중요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2	내용 2 * 비중요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1	내용 1 * 비중요 1
변리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2)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6	신설 2 내용심사 4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기존의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내용심사)
 -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1호	50만원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2호	50만원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3호	2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 기존규정 : 특허청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 '07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여타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법령인 특허법시행령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기존의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내용심사)

-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1호	50만원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2호	50만원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법 제98조 제1항제3호	2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 기존규정 : 특허청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 '07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여타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법령인 특허법시행령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

○ 전문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기준 및 처분기준(내용심사)

- 선행디자인의 조사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업무에 필요한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 관련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확보하고 증명서류 제출

-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등)를 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없어야 함

- 동법 제25조의3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경우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절차 반영

* 최종심사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자문기관

-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제2호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3) 영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 전문조사기관 지정을 통해 디자인심사의 전문성,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처분기준 규정을 통해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여타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가 추진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반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기존의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내용심사)

- 위반행위를 유형화하여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화

* 기존규정 : 특허청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내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부경법 제20조 제1항	500 1,000 2,000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 또는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300 600 1,2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100 200 400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기피행위를 한 경우	부경법 제20조 제1항	50 100 200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 '07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여타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변리사법 개정안(신설 2)

○ 중소기업 등 특허출원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시 편의 도모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신설)

-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
- 정보의 공개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특허출원의뢰인이 특허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변리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제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변리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 등의 정보를 자율제공 중이며, 정보 비공개나 일부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

○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신설)

- 단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
- 변리사회는 연수교육 시간, 방법, 절차와 연수 제외대상 등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변리사회는 효율적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단체에 연수교육 위탁 가능
-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위해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 가능

☞ 소규모 사무소*는 국내외 법령 변경, 첨단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취약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변리사 1~2인이 근무하는 사무소가 전체의 85.7%로 자율학습이 어려운 실정

** 현재 변리사들은 시험합격 이후 특허청 주관 실무교육 4주 이후에는 의무 보수교육 부재

제4절 | 국토·해양 분야

• 집필자 : 이은영 사무관(Tel. 2100-2296, na5407@pmo.go.kr)
 최신희 사무관(Tel. 2100-2297, chois9@pmo.go.kr)
 김기영 사무관(Tel. 2100-2298, kky21@pmo.go.kr)

1. 국토해양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레스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등 80개의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신설 51건, 강화 47건, 내용심사 63건, 존속기한 연장 3건 등 총 164건)
- 심사대상 164건 중 2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6건은 개선권고, 나머지 156건은 원안의결함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1.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1.29)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2.17)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건축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2.2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2.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3.03)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3.0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3.0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09.03.17)	원안의결 1	존속기한연장 1 * 비중요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3.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3.24)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4.06)	원안의결 1	존속기한연장 1 * 비중요 1
선박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4.10)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4.1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5.0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 비중요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5.0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2, 존속기한연장 1 * 비중요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5.2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6.04)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6.05)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6.05)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9.06.05)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철도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6.09)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79회 경제분과 (09.06.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 요 1
해운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6.16)	원안의결 4	신설 4, * 비중요 4
선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6.16)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 비중요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6.23)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6.2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6.2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6.26)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제380회 경제분과 (09.07.023)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 중요 1,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7.01)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0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7.0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06)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개항질서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7.10)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9.07.17)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22)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2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11회 본위원회 (09.07.23)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신 설 3 * 중요 2, 비중요 1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회 경제분과 (09.07.23)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7.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7.23)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 비중요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84회 경제분과 (09.08.13)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 요 1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8.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8.14)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도시개발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8.18)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 비중요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8.25)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 비중요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385회 경제분과 (09.09.10)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 3, 신설 2 * 중요 2, 비중요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9.11)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09.09.0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14회 본위원회 (09.09.17)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214회 본위원회 (09.09.1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중요 1, 비중요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09.09.22)	원안의결 6	내용심사 6 * 비중요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09.09.22)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삭도·궤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9.25)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9.2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09.2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9.2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86회 경제분과 (09.10.08)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강화 1, 신설 1 * 중요 1, 비중요 1
건축법 개정안	예비심사 (09.10.09)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0.20)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주택법 개정안	예비심사 (09.10.23)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09.10.27)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87회 경제분과 (09.10.29)	원안의결 7	내용심사 5, 신설 2 * 중요 1, 비중요 6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09.10.30)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03)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09.11.13)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09.11.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11.20)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2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24)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09.11.24)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09.11.24)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9.12.18)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 비중요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392회 경제분과 (09.12.2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 화 3 *중 요 3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제392회 경제분과 (09.12.22)	개선권고 1	신 설 1 *중 요 1
계		원안의결 156 개선권고 6 철회권고 2	신설 51, 강화 47, 내용심사 63, 존속기한연장 3 *중요15, 비중요149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고시)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중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의 이행 기간 동안에는 품질인증용 골재의 판매·제공이 금지됨(신설)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개요 〉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인증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하며 품질인증은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201개사가 인증을 받은 상황

☞ 同개정안은 형식상으로는 규제신설에 해당하나, 현재 고시(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 변동은 없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들로서 '08년 12월 현재 70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인증받은 업체는 201개사업

- 품질인증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피심사업체의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공정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품질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생산시설 배치도, 공정도 등)에 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함(강화)

☞ 同개정안은 인증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로서 기본적으로 품질인증은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더욱이 피규제자 수도 적고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소음부담금 부과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하되,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5·6등급은 시행일로부터 2년6개월까지 ()안의 비율 적용(강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현행(%)	30	25	20	15	10	-
개정안(%)	30	30	30	25	20(15)	15(10)

* 소음부담금 = 착륙료 X 소음부담금 부과요율

* 소음이 가장 심한 항공기가 1등급이며, 전체 항공기 중 99%가 5등급 항공기임(신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36억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1/2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경감할 수 있는바, 가중 사유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강화)

* (가중사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경우

* (경감사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경우,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사업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현재에도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시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처분시 가중·감경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4) 건축사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을 등록하고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일정기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신설)

* 등록업무는 건축사 등록원(신설)이 담당하고, 교육시간 및 방법·등록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함

☞ 同개정안은 건축사 상호인정 등 시장개방에 대비, 건축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자 국제건축가연맹(UIA) 권고기준을 법령에 수용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인 건축사협회 등과도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사 : 약 1만6,000명

○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신설)

☞ 同개정안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법무사·회계사·노무사·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격의 경우에도 보증

또는 공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 피규제자의 의견도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강화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同개정안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가·건축설계사·설계사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타법에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5)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전기식 건설기계 및 등화장치의 세부 안전기준 마련(강화)

*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 고전압 위험표시를 부착토록 함,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기준을 별표에 규정, 고장·파손시 작동하는 전기차단장치 구비, 보호접지기구 규정, 오조작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구비, 전기배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단자는 충격 및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의 동작 또는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 등화장치 안전기준 :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별(15km 이하, 15~50km, 50km 이상)로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등) 설치의무 부과, 차폭등·번호등·제동등·방향지시등·후부반사기등·후미등·후퇴등·안개등·주차등·상부끝단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광도, 등광색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

☞ 同규정은 전기식 건설기계* 등장에 따라 이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건설기계의 야간이동 증가에 대응해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대한건설

기계산업협회 등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시장참여자에 대한 영향도 미미한 점(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종래에는 경유식 건설기계가 다수를 차지

(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골재채취 허가절차상 허가권자의 검토사항*과 신청자의 제출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골재채취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함(강화)

* 허가권자의 검토사항(법 제22조 제6항)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의 품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제22조의 3에 따른 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

현 행	개정안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1. (삭 제)
2. 골재채취용 등록증사본	2. 좌 동
3. 위치도	3. 좌 동
4. 중·횡단면도, 실측평면도	4. 좌 동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5. ———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 ———.
6. 채취구역내 기타 권리자의 동의서	6. 좌 동
7. 골재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함)	7. — (— 배타적경제수역과 육상골재에 한함)
8. 공동 신청시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존골재의 품질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22조의3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9. 좌 동
	10. 법 제22조의 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서

☞ 同개정안은 법률규정과 상충되는 부분(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골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골재채취업체 수 : 약 1,100개

○ 골재채취 허가시 검토사항 중 하나인 「신청자의 골재채취능력*」 평가

방법**을 개선, 시설·장비능력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업체들의 시설·장비 보유를 권장하여 업체의 규모화·선진화를 도모(실적평가와 시설·장비능력 가중치 비율을 6:4에서 2:8로 변경, 다만 공포 후 2년간은 4:6 비율 적용)(강화)

*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체가 1년 동안 골재를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놓은 수치(m³)로서 골재협회가 매년 2월에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6월에 평가결과를 일괄발표함(평가수수료는 무료)

**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 + 시설·장비능력 ± 신인도 평가

*** 실적평가는 전년도 골재채취 실적을 의미하며, 시설·장비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함

☞ 同개정안은 시설·장비를 충분히 보유한 골재채취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골재채취업체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점, 공포 후 2년간은 가중치를 4:6으로 정하는 등의 완충기간(골재협회 의견 반영)을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는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내용심사)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기준에 비하여 과하지 않으며, 추가되는 규제비용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증금액 : 1,000만원 이상(서울 등 7개), 2,000만원 이상(경기, 인천)

(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 기종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에 있어 이를 시행규칙 별표7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내용심사)

*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구 분	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2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년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마. 터널용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 색칠한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

- ☞ 同개정안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한 것으로 피규제·의무에 실질적 변동이 없음은 물론 피규제지* 수도 미약한 것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수건설기계 소유자는 41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준속기한연장 1)

-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동 규제 준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준속기한연장)

* 경량충격음(2009.4.22 → 2014.4.22), 중량충격음(2010.6.30 →

2015.6.30) 각 연장

- ☞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정온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주민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정할 수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주택지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은 경우로 정함(내용심사)

- ☞ 토지보상금 증가로 주택건설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사업지구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인바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외에 시험연구 계획서와 연구기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제작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강화)

- ☞ 일반자동차를 시험·연구용으로 임시운행 허가 신청하여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리콜 전 소비자가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기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을 정함(내용심사)

* 보상금 산정기준 : 지정정비업체의 통상적인 결함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

* 보상금 청구절차 : 수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 등에 보상청구

*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 등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 리콜 전 수리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제작사와 자동차 소유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공업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준속기한연장 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부과율 적용시한(2009.4.29)을 3년(2012.4.29) 연장(준속기한연장)

☞ 현재까지 부과율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부과율 또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선박안전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위험규칙(IMDG Code**) 개정안이 채택('08.5.16)됨에 따라 포장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교육 훈련 의무화 규정이 발효('10.1.1)되고, 그 시기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해상운송 관련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14)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 등>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기준 마련(강화)

현 행			개 정(안)					
[별표 1의2]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별표 1의3]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9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4개월	좌동	좌동	시정명령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	"	시정명령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	"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	"	시정명령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	"	시정명령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	"	시정명령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1조제1항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0호의2	영업정지 4개월	"	"	시정명령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8.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0호의3	영업정지 2개월	"	"	시정명령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9.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2개월						

현 행			개 정(안)				
[별표 1의3]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			[별표 1의3]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의2호	채취중지 4개월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4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채취중지 3개월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채취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취소		
4.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채취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제7호	채취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허가취소		

* < 위임근거 >

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1조(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 ...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골재채취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08.7.24)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법에서 위임하였으나 법령미비로 규정하지 못했던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취소기준을 정함

(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주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명확히 하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 주체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함은 물론 구조계산 범위를 기존의 16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과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함(강화)

※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지진구역 안에 있는 주요 건축물(동법 시행규칙안)

- ☞ 건축 관계자 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2007~2010년)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재에도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없는 점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기술사 고유업무 영역 설정(36개 과제)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고, 직통계단은 피난안전구역과 직접 연결되도록 함(신설)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에서는 제외되므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한 반면, 안전을 위한 필요성이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공동주택과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그 범위를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확대
- ☞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고시원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0㎡ 이상 업무 또는 숙박시설용 건축물에는 방송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강화)
 - * 현재 공동주택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되어 있는데,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임
- ☞ 同규정은 방송수신설비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설치비용(공동주택) : 개별은 약 4만5,000원/세대, 공동은 약 3만원/세대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존속기한연장 1)

■ 심사내용

- 운수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유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횟수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추가(강화)
 - * 허가차량대수의 증차·감차, 시·군을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등

- ☞ 애초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경우와 유가보조금의 반복적 부정수급자에게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공제조합의 보고서 제출의무·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근거 마련(신설)
 - ☞ 화물연합회에서 부대사업으로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독립성, 책임성, 지급능력 및 경영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강화)
 - ☞ 위법한 자가용화물차 유상행위 차량에 대해 실질적 운행을 금지 시킴으로써 위법 유상운송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운송사업자의 운임 신고 의무 기간 연장(준속기한연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법 제5조) 부칙 제2조에서 2009.12.31까지 설정한 준속기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2004년도 처음 준속기한 5년 설정)
 -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 *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 구난형 차량 및 컨테이너 견인차의 운임신고제도는 화물운송시장 여건이 특별히 변화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및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일정기간('12.12.31)까지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同시행령에서 안전기준을 정하는 건설기계의 구·장치항목을 정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처분기준을 규정(신설)

위 반 행 위	과 태 료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기준 등 위반	100만원
조향·제동장치 기준 등 위반	30만원
승차장치·방화장치 기준 등 위반	5만원
기타 기준 위반	3만원

*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와 달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의 시정 위해 同法 개정

** 안전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건설기계가 도로에서 운행될 경우의 안전 증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 항목,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면서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 수 : 대상업체-1만1,000개, 등록건설기계 총수-35만대, 도로운행가능 타이어식-약 24만대, 주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덤프·믹서트럭 등-약 9만대

(1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박람회 개최 전까지 지원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취소 요건을 강화(강화)
 - 사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내 → 1년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 승인후 1년내 → 6개월내 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시기가 확정('12.5.12)되어 있는 국제행사이며, 실제 준비기간이 3년('09~'11년)에 불과함에 따른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사업자의 주민소득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실시, 분묘이장 주민참여 등 소득창출사업지원, 주민고용지원 등 실시(내용심사)
 - ☞ 지역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주민지원대책의 구체적 사업내역·지원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강화 1)

-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최초 사용신고 외에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소유권 변경신고시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강화)
 - ☞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강화하여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신설 1)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따른 보행장애자가 탑승한 경우 이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 법률 제정당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개정안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행자는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하여(어선은 제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통보(신설)
-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코드('10.1.1발효)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용절차를 마련하고, 준해양사고를 분석한 후 관계인에게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철도안전법 개정안(강화 1)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열차 운행중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강화)
- ☞ 승객의 선로추락·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승강장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하여 진입 열차의 안전운행을 방해(승객 불편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관리비 비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말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내용심사)

* 공개대상은 300세대(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임

- ☞ 입법취지를 고려해 관리비 비목을 매월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안을 승인하되, 향후 법률개정시 주민 등의 자율적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추진할 것을 부대권고

(24) 해운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 부여 근거 마련, 면허기준 명확화 및 휴업시 인가(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법 제29조 제1항 제13호) : 면허를 취소 또는 전부·일부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음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여객선의 선령기준 20년 이하로 명확화

※ 위반시 제재(법 제29조 제1항 제8호) : 면허를 취소 또는 전부·일부를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국내 기항지 사이의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 ☞ 면허조건 부여는 면허시 여객의 안전과 관련된 조건을 붙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고, 면허기준 중 선령기준 또한 「해운법시행규칙」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며, 내항운송여객사업자의 휴업(6개월 이내)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휴업보다 기간이 짧은 휴항의 경우에도 인가를 하고 있고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상여객 운송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한 여객운송행위를 제한(신설)
 - 이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사실상 경쟁항로를 포함한다)일 것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운항횟수와 운항시각에 있어 유사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일 것
 - 위의 영업행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일 것
- ☞ 화물선은 등록제로 운영되면서도 여객선(면허)과 동일하게 여객운송이 가능하여 여객을 수송할 경우 여객운송사업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제한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명의대여 금지 및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마련(신설)
 - ☞ 타 교통수단 관련법령에서는 이미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내항여객선의 경우에도 여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 대여로 인한 운송시장 질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항공·철도·자동차 등 타운송사업은 이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여는 만일의 사고시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의 상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도모하고자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여객의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및 여객선내 조타실 또는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 일정행위 금지(신설)

- ☞ 항공·철도 및 자동차 등 타 운송사업에는 이미 유사 규정이 있고, 안전한 해상여객 운송을 위해서 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선원법 개정안(신설 3, 강화 4)

■ 심사내용

- 근로 계약체결시 자문·검토 기회부여,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표준근로 계약서 선내비치 의무 부여(신설)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계약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선원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선원에게 주어야 함
 -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 선박소유자는 표준선원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과 그 밖의 선원의 처우에 관한 기준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내에 갖추두어야 함. 다만 국내항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어선법에 의한 어선은 제외
- ☞ 2006 해상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2001년부터 종래의 각종 해사노동 협약과 권고를 2001년부터 약 5년간의 통합작업을 거쳐,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
- 근로시간 기준 설정 및 휴식시간 간격 부여(강화)
 - 근로시간이 임의의 24시간 기간 중 14시간,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선박은 24시간 항행하고, 그에 따라 해상노동은 24시간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해상노동의 특수성
 - 휴식시간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며, 휴식시간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다만, 인명·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시간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 2006 해상노동협약의 내용을 국내에 수용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원송환 제도 개선(강화)
 -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선원을 지체없이 송환
 -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송환비용을 송환중의 운임·숙박 및 식비 외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반 비용까지 확대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 송환 관련 규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
- ☞ 2006 해상노동협약상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협약 내용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규칙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함(강화)
- ☞ 2006 해상노동협약상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내급식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영요건 강화(강화)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수탁업무변경시도 같음)

- ※ 신고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선원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
 -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 등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불만이 제기되면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 2006 해사노동협약상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원직업소개사업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원근로감독 및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 강화(신설)
 - 선원근로감독은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의 주기는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됨
 -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불만사항을 선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선내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함
 -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의 준수 여부와 유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소지 등을 점검함
- ☞ 2006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도 신설(신설)
 -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MLC)의 발급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중사선 등으로 함
 - 선박소유자에게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 및 게시할 의무를 부과
 - MLC의 발급시 검사내용과 양식, 그 검토 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MLC 검사는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로 구분

-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6개월)를 발급
- 선박소유자가 결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006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관련하여 보장사업자·분담금관리자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범위를 구체화*하고 무보험사고의 경우 경찰에 인적사항 정보 요구 근거를 추가(신설)

* 보험 회사·종목·가입자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 시기·종기,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번호 등

- ☞ 구상권 행사를 위해 미비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며, 보장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7)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도선법에 도선기 계양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내용심사)

- ☞ 도선기 계양으로 도선선의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면허증의 재발급 미이행’ 등과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인 100만원을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면허 취소 또는 6개월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세부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선원의 자격 및 훈련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과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0.08%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등 유사법령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혈중알코올농도(음주량)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의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선소 상시근무 운항관리자와 조선소와 일시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운항관리자의 강제도선 면제를 위한 자격 규정을 정함(내용심사)
 - ☞ 해양사고 방지 및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강제도선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시운전자의 승무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함(신설)

- ☞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 규제비용이 거의 없는 데 반하여 불법적인 주민 동의서 거래의 방지 등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시설이 축소된 것을 반영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보존 목적에 반하는 12개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강화)

* 입지제한 12개 시설 : 공공시설(공공청사, 경찰훈련시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농림·수산시험연구시설), 제조업소(500㎡ 이하 시설을 말함, 500㎡ 이상은 공장으로 분류하여 기존에도 입지를 제한), 재활용집하시설, 화물차 차고지

-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해제(2020년까지 약 300km²)·규제완화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점, 신규로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 대부분은 공공이 설치하는 공공·공익 시설이며 민간 피규제자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법률개정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점,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개발제한구역 보존·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건폐율·용적률제한 외에 층수제한을 추가하여 층수를 5층으로 제한(강화)

- ☞ 동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부분(70%)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건물에 대한 규제이며(주규제 대상은 공공시설), 기존 일반건물 중 5층 이상 건축물비율(0.3%)이 미미하여 피규제자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원 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부과기준 : 허가사항 위반시 건물시가·공시지가×위반면적×(30~50%), 신고사항 위반시 건물시가·공시지가×위반면적×(15~25%)

* 5,000만원 초과시 5,000만원만 부과하고 5,000만원 미만은 그대로 부과, 영리목적·상습위반자는 50% 가중, 영농·생계형은 50% 감경 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이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부과면제, 동·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경우 2년내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대집행비용을 납부한 경우 2년간 부과 면제

- ☞ 동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상 이행강제금 부과상한의 50%를 원칙적 상한으로 설정하고, 생계형위반자·이전대상자·자진철거서약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1)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이력,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신설)

- ☞ 중고차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50% 이상 허위매물로 추정)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규정인 점, 인터넷 광고에 한해 규제가 도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보장계약증명서 비치 후 국내항 입·출항 의무 및 분담유수령량 보고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시행령에서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으로 부과금액 설정(내용심사)

☞ 법 개정시('09.4.29 국회통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하였던 위반행위가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그 부과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절차 규정,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절차 규정, 외국에서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통보해야 할 보장계약정보 통보절차 및 통보내용 등 규정(내용심사)

☞ 선박연료협약('08.11.21 발효)의 국내법 수용 및 법개정('09.4.29)으로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 배상 체질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손해배상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34)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온실(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뿐 이에 추가(강화)

* 경작자는 통상 토지 점용허가를 받은 후 수확률 제고, 상품작물 재배 등을 위해 온실 설치, 현재 온실은 하천점용허가 대상도 아니고, 금지사항도 아님

* 4대강 하천부지내 경작자는 약 5만명, 비닐하우스 설치동수는 약 2만8,640동으로 추정

☞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시 통수단면* 축소에 의한 홍수위험 가중 및 하천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홍수피해 저감 및 하천경관보전을 통한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관광산업 등 산업연계효과 유도가 가능한 점,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인 점, 기존 경작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시 예상되는 비닐하우스 철거 등에 대한 보상방안(비용보상)이 마련되어 있는 점,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통수단면은 물이 흐르는 단면을 의미

○ 하천법상(제46조 7호)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를 규정(내용심사)

*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 의견을 수용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소관 제15조제1항제2호에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하천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하천훼손을 사전예방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동규정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하천법 제98조제1항)

(35) 개항질서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선박의 정박 제한 및 방법(신설)

- 선박이 부두, 잔교, 안벽, 계선부표, 돌핀 등 항만시설 부근 수역에서 임의 정박 또는 정류를 금지하도록 함
-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이외에 각 항만별 정박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함
-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예비용 닻을 내릴 준비를 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수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방법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 항만시설물 부근 수역에서 선박의 선장에게 해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하며, 기존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해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적액체위험물(散積液體危險物) : 산적하여 운송되는 액체물질로서 액화가스물질, 액체화학품, 인화성액체물질 및 유해성액체물질 등으로 구분됨

- 대상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등) 및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교육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당연 지정취소하고,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기존 고시로 규정했던 교육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박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항로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선박교통을 저해하는 장애물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당해 행위의 급속 실시를 위해 이행기간을 정한 계고처분 없이 대집행 가능

☞ 항로상의 장애물을 우선 제거하여 선박의 충돌사고 사전 예방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1세대가 2개 이상의 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하나의 주택만 선택·계약체결토록 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함(신설)

* 85㎡ 이하 주택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85㎡ 초과 주택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임대주택 정책 취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임대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4%)이 공공 임대주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존에는 분양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급량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공고하는 외에 변동사항 공고의무는 없었으나, 순번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강화)

☞ 예비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택분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입안과정에서 피규제자의 건의를 반영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당초 무기한 공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택협회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60일로 한정함

(37)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사업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대한 조치명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결과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음(내용심사)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5.27)으로 항만이나 해상구조물 등의 설치시 선박 통항 안전성에 대한 사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진단서 검토 결과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를 시행령에서 확인하는 수단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총톤수 3,000톤 이상의 대형 부선이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과 해당 사업장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관리선박 척 수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적정 인원 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 기상악화시 자율적인 운항통제를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예부선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대형사고의 방지를 도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일정한 경력·자격 요건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선박의 척 수를 현재 선사들의 기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인원수를 감안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상교통관제구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연안해역 중 항행 위험이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해역’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할 해상교통 관제 구역을 정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사업·기준 및 진단대행자 등록요건 등을 정함(내용심사)
 - “해상교통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연안통항대역,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등에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 ☞ 법률에서 위임한 해상교통 안전 진단대상사업을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진단기준 및 작성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객관적인 표준 절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회 이상 수렴하였으며, 진단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업무의 실효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비 및 인력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하고, 등록결격 및 취소 처분기준도 타 입법사례를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매 비행 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액체·분무·젤류 보안 통제 지침’에 따라 기내반입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함(신설)

- ☞ 종래 일반적 감독권에 근거해 지침으로 운영되던 보안점검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규제이며 규제의 실질적 내용이 기존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기존에도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제14조제1항에 근거)에 따른 보안점검 및 ICAO 권고와 ‘액체·분무·젤류 보안통제 지침’(제32조에 근거)에 의해 기내반입 금지조치를 실시 중

(4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 분양대금 납입 규정 및

시정명령 관련 공표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가중·경감기준을 마련(신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분양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법 제12조 제1항제1호	2,000	5,000	10,0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1항제2호	2,000	5,000	10,0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공표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1항제2호	1,000	2,000	5,000

☞ 同法은 건축물의 사전분양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행정형벌의 합리화’ 추진에 의해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과기준을 정한 것임

기존규제(행정형벌)가 행정질서벌로 완화되고 위반행위별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 상황과 행태에 따른 가중·감경기준까지 규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한 점,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부동산개발업협회’와 협의를 거친 점,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종래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환자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 불응시 제재가 없었으나, 열람청구 불응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청구 불응시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함(내용심사)
 - ☞ 외출·외박 기록 관리에 관한 여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탁기관의 검사·보고요구·질문 등 불응시 제재가 없었으나, 검사불응·방해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함(내용심사)
 - ☞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

(4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시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신설)
 - ☞ 공동주택내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50만명 이상 市는 30대/100세대, 기타 市·郡은 50대/100세대), 자전거주차장은 동별 출입구 및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며, 아크릴·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지붕 및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신설)
 - ☞ 자전거주차장 설치여부 및 규모 등은 주민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권고
-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린홈의 성능·건설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신설)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인 그린홈 보급을 촉진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요소 기술을 확대적용하고 성능등급을 나누어 사업자의 선택이 가능토록 운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되, 그린홈의 성능·건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내용은 성능기준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43)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선박보유량은 총톤수 5,000톤 이상에서 1만톤 이상으로 자본금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강화)

☞ 등록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기성 용·대선 관행 등으로 유발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부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원안 동의하되, 현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시행시기 2010.1.1)하고, 과도한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일몰제(3년)를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44)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개선 및 녹색물류인증제 도입(신설)
 -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정당함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등 발생시 인증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물류기업이 정기점검 신청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
 - 녹색물류인증제도(친환경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한 물류·화주기업을 평가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를 도입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녹색물류인증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인증 수수료 부과 사항을 규정
- ☞ 인증센터가 인증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그간 고시로 규정하였던 종합물류기업 정기점검 수수료 부과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녹색물류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심사 및 정기정검 수수료 부과는 인증제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변경등록 미이행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강화)
- ☞ 기존 벌금(1,000만원 이하) 규정을 사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5)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구조물의 안전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수역을 통항하여서는 아니 됨(신설)
-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상에 설치된 해양구조물 주위에 안전해역을 설정하고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양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원유, 중유, 경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1,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에서 통항을 금지함(강화)
- ☞ 현행 연안 가까이서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조선은 경유나 중유 적재로 한정되어 있으나, 바이오디젤, 원유 등 경유나 중유처럼 점성이 높은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해상(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 발생시 난파물소유자에게 난파물의 보고·표시 및 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직접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비용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강화)
- ☞ 난파물 제거 제정보증을 위한 국제협약('07.5)에 따라 공해(公海)상에서 발생한 난파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안국의 개입권이 신설되었으나 국내 법률에 수용이 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소유자에게 이동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고, 이동·제거명령 미이행시 정부가 직접 이동·제거하고 비용은 장애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함(신설)
- ☞ 개항질서법에 따라 개항장에서는 항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새로이 선박의 항로로 편입되는 운하·하천 등에서 항행장애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내용심사)

$$\text{해양환경개선부담금} = \text{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 \times \text{단위당 부과금액} \times \text{부과계수}$$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 1,000ℓ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1,000kl 이상인 경우 1,000kl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5 감액

* 단위당 부과금액 : 880원 /ℓ
 * 부과계수 : 원유·중유(1.4~1.96), 윤활유(1.0~1.4), 선용연료유(0.6~0.72), 휘발유 등(0.3~0.42)

-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전쟁 또는 자연재해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단,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 모든 점에서 과실이 없고 제3자에 대해 만전의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함
-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 복원에 대한 오염자책임의 원칙(해양환경관리법 제7조)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도 자체는(법 제19조, 부칙 제1조) 법률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위당 부과금액을 상법상 선주책임한도액에 근접하는 수준인 350원/ℓ(이해관계인인 해운조합·선주협회와 국토해양부 합의)로 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이고,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보상은 국제협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적용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험적용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추후 법개정시 검토할 것을 부대 권고

(47)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개정('09.6.9)에 따른 면허체계변경(정기 → 국제, 부정기 → 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안전운항 관련 위반시 과징금 :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은 종전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과징금과 동일, 소형항공운송사업 과징금은 종전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비해 33~70%로 완화

* 면허·등록사항 위반시 과징금 :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은 종전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과징금과 동일, 소형항공운송사업 과징금은 종전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비해 20~100%로 완화

☞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며(면허 명칭만 변경)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완화된 점, 규제비용이 낮은 수준인 점('08년 기준 과징금 부과실적 1억 5,000만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승인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경량항공기 정비 후 항공정비사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사항, 설치해야 하는 무선설비의 구체적 내용(관계기관교신용 무선전화, 기압고도정보제공 트랜스폰다 각 1대)을 정함
- 인명·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낙하물 투하금지, 지상물 식별불능 상태에서 비행 금지, 항공일지 비치 등을 조종사의 구체적 준수사항으로 정함
-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수준 이상으로정함

☞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 증진을 위한 위임사항(주로 절차사항)을 정한 점, 보험가입의무 내용은 자동차책임보험 수준인 점, 무선설비 설치의무 내용도 관계센터와 교신을 위한 최소한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운송사업용 이외에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조종사의 지식·기량에 대해 자격인정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종사 자격인정이

필요한 대상 항공기*를 정함(내용심사)

* 최대 이륙중량 5,700kg 초과, 1개 이상의 터보제트엔진 장착, 승객 9석 이상, 3대 이상의 항공기운용 법인 소속 비행기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국제기준(ICAO 부속서6) 변경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연간 20만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항공법 개정에 따른 면허체계변경(정기 → 국제, 부정기 → 국내·소형 항공운송)을 반영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항공기수·자본금 등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국제는 3대·150억원, 국내는 1대·50억원), 면허신청·변경절차를 정함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등록 신청·변경절차를 정함

☞ 종전 정기·부정기항공운송 면허기준과 동일하거나 완화되었으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종래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비하여 등록기준이 완화된 점*, 면허신청, 변경절차 등도 실질적으로 개정 전과 동일하여 추가적 규제비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본금 수준을 부정기(50억원) → 소형(19석 이하/20억원, 9석 이하/10억원)으로 완화

(49) 도시개발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임대주택건설계획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도 포함토록 함(강화)

* 개발계획 수립자는 형식적으로는 지정권자(시·도지사) 등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공공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건설업체 등)가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 최근 용산 재개발사업 현장의 참사사건이 시사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및 세입자 등과의 갈등은 주로 주거 및 생활안정 관련 문제에서 발생

현재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의 이행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건물소유자만 공급받을 수 있어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미흡한 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명문화 함(신설)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확보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현행법은 세입자 및 환지방식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근거가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은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피규제자인 사업시행자의 수가 미미하고 더욱이 이들 피규제자의 경우 에도 세입자 등과의 분쟁완화로 인한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비용절감효과 향유가 가능하며, 개정안 마련시 도시개발제도개선 TF(지자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09.2~)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점 및 他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동법 제4조의2, 제36조 및 제50조)

** 현재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공급 의무제도를 합헌으로 판단('05)

○ 사업시행자는 관계서류나 도면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관리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시켜야 하나 열람의 구체적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자로 하여금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관리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함(강화)

☞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자료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나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논란과 비리 등의 발생으로 개발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강화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할 뿐 아니라 관리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사업추진 유도를 통한 사업비 절감 도모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은 물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도 조사·측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강화)

☞ 택지개발지구내 보상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계획법상 토지출입 등 허가절차가 준용되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람 후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금지됨)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1~2년이 소요되며, 그 사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보상투기가 성행

-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지원을 위해 택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 등에게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신설)

☞ 효율적 택지정보체계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정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정보제공 대상이 공공성이 강한 공공택지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신설 2, 강화 3)

■ 심사내용

-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강화)
 - * 기존에 건설공사 일부(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 궤도공사·난방공사)만 표시제한 의무를 부과해 옴

☞ 공사 수주업체가 발주자 등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로, 허위광고 및 표시는 발주자의 적격업체 선정을 방해하여 수주질서 문란 및 발주자 피해·국민안전 저해로 귀결

따라서 발주자가 정확한 정보에 의해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정안 관련 피규제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3대 건설협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시장경쟁의 제한적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인 건설업등록업체 수는 5만5,464개('08년말)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되나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일괄하도급 예외를 인정해 오던 것을 삭제함(강화)

* 턴키공사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하는데, '99년 턴키공사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예외 인정

-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생산단계 확대로 공사비 누출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도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그간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발주자 입장에서 시공 효율상 도움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적용사례도 희박하여 거의 사문화된 조항임

* 민간건축공사 중 턴키공사로 발주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또한 건설업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시공(전부 또는 일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현재의 조항은 턴키공사에 제공되는 일종의 특별한 혜택이었던 점, 향후에도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원칙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 점,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며 그간 적용사례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피규제자인 건설업등록업체 수는 5만5,464개('08년말)

- 건설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건설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이나 관리·감독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의 개선을 통한 보증심사 내실화를 추진

따라서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업무*에서 보증업무를 분리하여 보증제도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업의 운영을 위해 보증사업의 범위·보증계약의 내용·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된 '보증 규정' 마련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신설)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공제조합 사업을 심의·의결 및

감독 수행

☞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모는 103조원으로 이의 부실화시 발주기관 및 국민의 피해발생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혼란 초래가 우려됨

* 최근 5년간 3개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총 2,001억원 적자(전문건설공제조합 : △1,213억원, 설비건설공제조합 : △119억원, 건설공제조합 : △669억원), 또한 '98년 주택공제조합 부실로 정부에서 5,000억원과 은행권에서 2,000억원을 투입, 총 3조2,500억원을 85% 감자한 사례가 있음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건설보증 심사의 내실화 및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향후 보증시장 개방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큰 점,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히 공제조합 감독기준은 건설보증의 특징을 고려, 국제보험기준과 보험업법상의 감독기준 수준으로 마련 필요

○ 장비대여업자, 자재·부품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도가 없어 건설업체 부도시(특히 저가투찰에 따른) 연쇄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추진 지연은 물론 대부분 발주자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증가로 발주자도 피해를 보는 실정임

이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를 도입,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 등(하도급자 계약 포함)의 지급을 포괄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향후 하위법령에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로 적용대상 제한 예정(신설)

*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해당 금액은 현행대로 발주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수급인이 부담

☞ 동제도 도입으로 건설자재·장비업체의 대금 관련 권리가 법령상 보호되고, 공기지연 등에 따른 공사차질 등 발주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등 그 필요성에 동의

다만, 수급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아래 조치 개선권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공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대금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으로 한정하여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것(법 문구 수정),

수급인의 이중부담 문제는 하도급 계약사항 등*을 통한 원·하도급자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하도급업자가 대금지급 보증에 대한 확인서 또는 보증서 등 제출

- 뇌물수수는 1차 위반시 경제벌(과징금)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말소로 실효성을 제고

* 현행 뇌물수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입찰담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부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즉, 1차 위반시 수수액의 20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5년간 등록결격사유) 입찰담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5년간 등록결격사유)(강화)

☞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및 부패·부조리 근절로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5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85㎡ 이하 규모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으로 정함(강화)

☞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등 시세차익 환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안으로 채택된 점, 대상이 수도권·공공택지·GB 50% 이상·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제한적인 점, 기존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주택(대부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5년 제한 지역에 해당)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 적용시 대부분 7년 전매제한 기간의 적용대상인 점(10년 제한 주택은 4,500세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하고, 토지임대료 증액은 약정 체결 후 2년 내에는 불가하며, 2년 후에는 평균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산정토록 하여 기준설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토지임대주택은 주로 공공에 의해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지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을 적용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75%,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25%를 각각 부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함(내용심사)

- ☞ 월별 임대료 원칙을 고려할 때 보증금형태로 전환시 금리를 “금융기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토지소유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상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 예를 따른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하되, 전매제한 기간 이내라도 전매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생업상 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 또는 해외로 이전,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이혼으로 주택을 배우자에 이전 등)는 전매를 허용함(내용심사)
- ☞ 주택법에 따른 현행 전매제한 기간중 최장기간(5년)을 고려하여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필요성이 여타 주택에 비해 더욱 큰 점,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기존 주택법 내용과 동일하며 전매 허용사유를 주택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토지소유자는 1,0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토록 함(내용심사)
- ☞ 법률상 과태료 기준(2,000만원) 이내에서 위반행위 경중 및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차량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시간 등 택시미터기로 수집되는 운행정보(영업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함(신설)

- ☞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조항의 “관할관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특정지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부칙규정 마련)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전국적 확대여부를 포함한 개선사항을 도출(검토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재검토 및 보완토록 개선 권고

(55)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항공법 제118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회수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운수권과 주간 2회 이상의 화물운수권의 경우 2개 이상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운수권을 배분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하여 재배분하도록 함(내용심사)
 - ☞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항공운수권의 회수·재배분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되, 운수권 회수시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토록 부대 권고
-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고, 이를 배분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연간 20주 이상 영공통과 이용권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영공통과이용권을 회수하여 재배분하도록 함(내용심사)
 - ☞ 배분 및 회수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민간투자자는 종합건설업 등록자 중 시공평가액이 해당 마리나개발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마리나항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정범위(법률 제9조 위임)를 정하고, 부적정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발생 가능한 부실시공, 중도포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마리나항만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등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마리나항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법률 제12조 위임)를 규정하고, 마리나항만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인·허가 받은 행위의 경우는 공사시행시 신고하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류, 환경영향평가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수용시의 그 세부목록 등으로 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규정(내용심사)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법률 제13조 위임)하여, 사업자의 임의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마리아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및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 정함(내용심사)

☞ 마리아항만의 기능을 저해하는 금지행위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법률제27조제7호 위임)을 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타인의 토지출입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내용심사)

-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는 150만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는 100만원 및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에 50만원을 부과

☞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타인의 토지출입 등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능하고 그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200만원보다 낮은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5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의 표시항목에 피난안전등급, 방법안전등급을 추가(신설)
 -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취지인 점, 규제비용(약 1억5,000만원)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8) 석도·궤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궤도운송법 제13조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200만원('93년) →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기준을 변경(내용심사)
 - ☞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상한액이 인상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한 내용으로, 기존 과징금 체계상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함으로써 금액을 조정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궤도운송법 제13조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조정(100만원→200만원)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변경(내용심사)
 - ☞ 과태료 현실화를 위해 상한액이 인상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한 내용으로, 기존 과태료 체계상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궤도사업자는 매일 궤도시설 운행 전 시운전 및 일상점검,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 발생시 즉시 정비해야 하며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내용심사)

- ☞ 궤도운송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법률규정에서 정기점검 의무 및 기록·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9)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궤도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궤도시설 점검·정비 요령’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기별 안전점검 결과는 6개월마다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등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내용심사)
- ☞ 궤도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록 보관기간 등 의무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궤도사업자 등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 사망은 8,000만원, 부상은 상해등급별 금액)에 가입하여야 함(내용심사)
- ☞ 유사제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부분이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추가적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구조안전확인서’는 내진설계를 수행한 사람만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내용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서식을 강화(내용심사)
* '07년 건축사(설계자)의 구조안전확인서 조작사건 후속대책의 일환임

☞ 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한 것*으로 실제 내진설계를 수행한 사람이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서식조작 및 허위작성을 방지함은 물론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

* 기존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허가시 제출

개정안 마련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및 '대한건축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점,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계수의 강화, 즉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중요도 계수를 적용하여 지반의 조건에 따른 지진 위험도에 따라 내진설계의 정도를 결정하도록 강화함(내용심사)

☞ 한반도의 지진은 주로 내륙에 위치한 도시계획구역보다는 그 외 지역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크에도 현재에는 중요도 계수를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의 개선 필요

* 그 외 지역의 계수는 도시계획구역의 80% 수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중요도 계수를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개정안 마련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61)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토지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내용 심사)

- ☞ 법 제39조에 명시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재량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다중이용 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화장실을 제외한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同규제의 도입취지는 음용수용 배관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돗물의 위생적 공급 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효과성이 낮고 건축주의 불필요한 부담만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규제보다는 오히려 음용수용 배관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비규제 대안의 활용을 통해 수돗물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를 권고

- 건축물의 냉·난방 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추가로 발견된 용도의 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던 도서관, 학원,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을 제출대상에 포함시키고,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과 공연장·집회장, 학교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냉·난방 방식(중앙집중식, 개별식)에 상관없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함(강화)

*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행 제출대상으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연구소,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병원·기숙사·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목욕장·실내수영장,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 및 상점(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설치),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학교 중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등

☞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를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여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구현할 필요성이 증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 유도를 위한 것으로 에너지 고효율 건축을 위한 일정정도의 비용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비용 산정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건축물의 개별 냉난방설치 사례가 증가하는데도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 발생

또한 제도도입에 따른 피규제자 수는 매년 2,000명 이하로 유추*되고, 해외의 건물 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번 개정으로 확대된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의 '08년 허가건수는 1,365건임

** 국내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200kwh/㎡를 넘는 반면, 프랑스 주택 설계기준은 80~130kwh/㎡

(63) 건축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건축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인식 및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없어, 건축심의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신설)

* 건축법상 사전결정(제10조제8항), 건축허가(제11조제7항), 건축신고(제14조제3항) 등에는 유효기간을 설정

☞ 현재 건축법상 건축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도 장시간 경과(5~10년)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심의를 받은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건축심의회에 반영되지 못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건축법상 이미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에도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건축허가 과정의 하나인 건축심의회에도 이를 설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건축허가를 유도할 필요가 큰 점,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조치를 위한 규정을 건축법에 신설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규정을 건축법에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기여 가능

상향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영향비용이 없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택시)의 면허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운송가맹점의 택시확보 기준은 특별·광역시는 구역내 총 택시대수의 10% 이상 또는 5,000대, 50만명 이상 도시는 구역내 총 택시대수의 15%이상, 50만명 미만 도시는 구역내 총 택시대수의 20% 이상으로 함

- 사무실 및 인력 확보기준은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실 및 호출상담실, 상담원을 확보하도록 함

- 통신설비기준은 승객에 대한 호출서비스 제공 및 비밀보호, 운송가맹점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

☞ 가맹사업의 택시 확보기준은 도시규모-승객호출시 적정시간내 도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도시규모별로 적절하게 차별화하고 있으며 택시업의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히 설정한 점, 사무실 및 호출상담실 기준은 형식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사업운영에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운송가맹약관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승객에 대한 책임 등 운송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운송가맹약관 신고서에 운송가맹약관, 운송가맹약관 신규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함(내용심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약관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5) 주택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신설)

☞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의 준비단계에서 법적 실체가 없는 추진위원회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공자가 선정되고 선정방법도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동주택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신고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자금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이외 기타자료(계약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법과의 불균형에 의한 법적용상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와 기타자료를 구분하여 과태료 수준을 정하고, 단순미신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6)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실 공고, 공고시 포함사항, 알림판의 설치, 다른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통보 등 자동차 운행제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신설)

☞ 교통물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운행을 제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것이며, 공고의 내용 및 방법(알림판, 신문방송 등) 등의 합리성이 인정

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5, 신설 2)

■ 심사내용

○ 운송가맹사업의 여객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발, 제공에 관한 사항과 여객의 호출(Call) 등을 위한 통신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명령 대상으로 정함(내용심사)

☞ 호출시스템은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운송부가서비스는 가맹사업자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개선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면허취소, 사업전부정지 및 사업일부정지 기준 정함(내용심사)

* 면허취소 : 부정한 면허취득, 사업정지명령 위반 등

* 사업전부정지(10일~90일) : 부정한 사업변경인가, 면허기준 미충족, 개선명령 미이행 등

* 사업일부정지(20일) : 운송가맹약관 미신고 등

☞ 법령위반의 정도 및 승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등 유사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정한 기준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 금지대상으로 정함(내용심사)

☞ 대인적 면허인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상속을 무제한 인정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의 사유화, 개인택시면허 대기기간 장기화, 택시 과잉공급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개선필요성이 있는 점, 법률 개정시부터 택시를 대상으로 도입된 규제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벌점제 대상을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고, 행정처분별 벌점부과 기준과 누적벌점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정함(내용심사)

* 벌점부과 기준 : 과태료 10만원(1점), 운행정지·사업정지 1대 1일(2점), 감차(600점), 4대 불편행위(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는 5배 가중 등

* 처분기준 : 면허취소(누적벌점 3,000점이상), 감차 10%(2,400점이상), 사업일부 정지(90일/1,800점이상, 60일/1,200점이상, 30일/600점이상)

* 처분벌점산정기간 : 최근 2년간의 누적벌점기준으로 산정

☞ 법률상 벌점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제한되는 대상 사업종류를 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한 것이며,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여 벌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내일반버스 운전자 보호시설 미설치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처분에 같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운전자보호는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제가 필요한 점, 유사 위반행위와 비교시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전 벌칙(벌금 1,000만원 이하)대상이던 운임 및 요금의 미신고, 운수사업의 상속 미신고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내용심사)

☞ 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제완화 취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차량 청결상태 확인 거부시 2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함(신설)

☞ 청결상태 확인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여타 위반행위와 비교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8)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해양오염 방제조치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신설)
- ☞ 현재 선박·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오염물질 방제에 대비하여 비치·보관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제시 형식승인 받은 약제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약제 사용으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대하여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을 제한(신설)
- ☞ 토지임대주택 건물가격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가·감정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분양가상한제 주택보다 저가로 공급되므로, 분양가상한제(5~1년) 주택보다도 재당첨제한 필요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0)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시 토지 및 시설의 처분방법, 절차, 가격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함(내용심사)

- 토지 등의 분양가격 : 공공용지(복합환승센터 건설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조성원가 기준), 공공용지 외 토지(상업, 문화 등 용지는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하여 결정)
- 공공용지 임대료 : 최초임대료(분양가 기준) 재계약임대료(개별공시지가 기준)
- 토지 및 시설 등의 공급방법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한 가격으로 추첨방법으로 공급하나 상업용 토지 및 시설 등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용지,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하게 낮아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수의계약에 따라 공급 가능
 - ☞ 공공교통시설인 복합환승센터의 기능 및 부대시설의 수익성 보장을 조화하기 위해 공공용지(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와 일반 상업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임대료, 공급방법 등을 차별화한 합리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합환승센터 시설 설치 전에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입주 업체가 처분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관리기관 등은 매수신청을 받아 양수인을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양도가격 산정시 양도일까지 물가, 제세공과금, 유지비용 등을 “이자 및 비용”에 계상토록 함(내용심사)
 - ☞ 공공교통시설인 복합환승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등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정함(내용심사)
 - ☞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연구결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참여자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각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설정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관련 위반사항, 특별교통대책시행시 조정 및 명령 위반사항 등 위반행위에 대해 종류별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기준을 정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1)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대행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취소
- * 최근 2년 이내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 등록취소
- *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계약 : 등록취소
- *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 작성 : 업무정지 6개월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건축뿐만 아니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강화)

* 기존에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건축물의 건축에 한정

- ☞ 미관지구내 도시 미관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 없이 허가 등이 이루어져 도시미관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향상이 어려워 이의 개선 필요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예) 경기도 성남의 경우 2009년 총 785건 건축허가 중 미관지구내 외부형태 변경의 대수선 건수는 4건에 불과함

- 건축지도원의 점검항목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와 에너지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을 추가(강화)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물분야에 대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지도원 점검항목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관리 내실화*가 필요

*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에 따른 인센티브(취·등록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를 받은 후 당초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는 등의 문제 발생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인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02년~'08년)은 총 931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실적(신축 공동주택 대상)은 총 230단지

(73)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주차장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설치기준을 강화(강화)
 - 설치대상 : 신축되는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뿐 아니라 규제도입

이전에 설치된 기존 주차장 및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이 아니라도 추락위험이 있는 주차장으로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은 추락방지 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하고 추락방지사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시설은 2010.12.31까지 추락방지사설을 보강설치토록 함

- 설치기준 : 차로와 주차구획 모두 동일하게 2톤차량/시속 20km 충돌을 기준으로 구조물 기준을 정하고, 안전시설 설계 및 설치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상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고시함

☞ 제도 도입시 안전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주차장에서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에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점, 건축물식이 아닌 주차장도 현황에 따라(후면에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어 추락방지사설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 전문적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주택건설업체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사업등록수탁기관(주택협회)에서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를 추가함(신설)

☞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 수 없어 영업정지 등 사유로 사업시행이 금지된 자에 대해 사업승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5)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항공기 기장·조종사·소유자, 철도 운영·관리자 등(통보의무자)이 사고유형, 일시 및 장소, 기종, 발생경위, 피해상황, 통보자 인적사항 등(통보사항)을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 ☞ 신속한 사고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해 도입된 항공철도사고 통보의무의 상세 내용을 정한 것으로, 통보의무자 및 통보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6)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로 선박 평형수처리설비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 등에 필요한 수단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관리법 제2조) :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
- ☞ 선박평형수관리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2007.12.21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선박평형수 처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선박평형수관리협약 제5조)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입항보고 위반 200만원, 교육실시 의무 위반 50만원,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비치 등 의무 위반 30만원 등으로 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제8조)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해당 당사국의 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7)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선박이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의 면제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과 선박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배출 또는 주입할 수 있는 긴급한 사정을 정하고,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의 시제품 시험 승인 절차 등을 정함(내용심사)
 - ☞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수용을 위해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07.12.21)하였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야야 하는 도면승인시 제출도면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과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하여 정기, 중간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절차, 검사시기 및 검사준비사항 등을 정하며 검사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내용심사)
 - ☞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 및 증서발급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절차와 위반행위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함(내용심사)
 - ☞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승인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절차를 정하고 신청시 직원훈련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및 직원훈련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저장시설의 요건 등을 정함(내용심사)
- ☞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처리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신설)
- ☞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유사자격사(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의 경우 정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점 및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취소 가능(강화)
- ☞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자격사인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의 경우 자격취소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감정평가법인 설립시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전 또는 증자하여야 함(신설)
- ☞ 유사자격사와 비교할 때(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5억원, 세무사 및 관세사 2억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감정평가법인 해산 및 감정평가사사무소 폐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서 보관의무 부과 가능(강화)
 - ☞ 재산권 관련 중요자료인 감정평가서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감정평가업자의 금지행위 대상에 대가수령 이외에 대가요구, 수주목적 이익제공 및 약속 등을 추가(강화)
 - ☞ 감정평가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제도 대상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나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영업을 한 경우를 자격등록 취소 및 2년 이내의 업무정지 등 대상으로 추가(신설)
 - ☞ 자격등록 및 갱신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한 공간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고, 지하층은 방화구획 설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함(강화)
 - * 기존에는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제외하거나 완화시켜 줌
- ☞ 최근 창고에서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강화를 통해 화재피해를 국부적으로 한정시켜 최소화할 필요성 등은 동의

다만,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로 인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조치를 개선권고

현재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고정식 랙을 대부분 사용하는 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통해 고정식 랙을 보관에 필요한 대형 기기설비로 보아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로 인정할 것

지하층의 경우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방화구획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지하층 벽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에 전면 노출되어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문구에 반영할 것(시행령 개정안 수정)

또한 하위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 창고의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것

-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치대상에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및 강당을 포함, 즉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도 내화구조로 건축(강화)
 - * 기존에 운동시설 중 체육관은 내화구조 대상이나, 이와 비슷하게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등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운동시설 중 체육관은 내화구조 설치대상이나, 교육연구시설인 학교에 설치하는 체육관 및 강당은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음

특히 학교 체육관 및 강당의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디는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건축물 화재시 연소 확대 및 도괴를 방지함으로써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물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마감 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토록 함(강화)

* 예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석면판 · 철망 · 알루미늄 · 유리 · 시멘트 모르타르 등

- ☞ 대규모 창고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를 방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80)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는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의 혼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거나 레미콘 수급이 부족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었다면 예외로 인정(신설)
- ☞ 공사 구조물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한 레미콘 혼용사용의 금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단서조항이 오히려 레미콘의 무분별한 혼용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서 조항의 수정을 권고

제5절 | 농림·수산 분야

1. 농림수산식품부

* 집필자 : 이종성 사무관(Tel. 2100-2308, ljss1@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검사 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2건, 강화 32건, 내용심사 20건 등 총 93건(중요-8, 비중요-85)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87건은 원안대로 의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3. 06)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 비중요 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3.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9. 04. 17)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5. 0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축산물위생검사 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5. 2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5. 2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6. 1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축산자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7. 0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7. 2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7. 28)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7. 28)	원안의결 4	신 설 4 * 비중요 4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8. 2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 비중요 3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8. 28)	원안의결 8	강 화 8 * 비중요 8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제385회 경제분과 (2009. 09. 10)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1	신 설 13 * 중요 2, 비중요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9. 09. 1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9. 22)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9. 2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9. 25)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 비중요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09)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20)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 비중요 4
21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29)	원안의결 8	신 설 8 * 비중요 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제387회 경제분과 (2009. 10. 2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 설 3 * 중요 2, 비중요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제387회 경제분과 (2009. 10. 29)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 중요 1, 비중요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30)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 비중요 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18회 본회의 (2009. 11. 1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1, 내용심사4 * 중요 1, 비중요4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89회 경제분과 (2009. 11. 2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 중 요 2
농약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01)	원안의결 9	신설 5, 강화 4 * 비중요 9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5)	원안의결 1	신설/강화 1 * 비중요 1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18)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 비중요 4
계	-	개선권고 5 철회권고 1 원안의결 87	신설 42, 강화31, 내용심사 20 * 중요 8, 비중요 85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강화 1)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내용심사)

- HACCP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위생관리프로그램 운용, 자체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및 교육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훈련 수료 요건을 갖추고 HACCP 적용을 최소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서 제출
- 지정받은 후 제조업자는 변경사유(대표자 및 상호변경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교부 신청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내용심사)

-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시정명령 사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정기심사

- 지정받은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되기 30일 전까지 신청

○ 사료검사의 종류 추가(강화)

- 기존 사료검사의 종류 중 현물검사 대상에 사료안전성이 우려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을 추가

- * 기존 현물검사 대상 : 사료공정예의 적합여부, 성분 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표시기준예의 적합여부,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여부, 중량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강화 1)

○ 수협 대의원·임원자격기준(강화)

- 대의원 겸직금지 강화

-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겸직 금지에서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 임·직원 겸직 금지 추가

-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임원의 결격사유를 당해 지구별수협에 일정 금액을 연체중인 자에서 중앙회·타금융기관 연체자 및 해당 조합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3)

○ 공해상 저층어업 조업허가(신설)

-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수심 및 대상어종의 해저수심도**가 포함되어야 함

* 저층어구 : 저인망, 통발 등 해저면 부근에 가라앉게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도구

** 해당 수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조업하는 스페인도 해저수심도 제출을 요구

〈관련법령〉

원양산업발전법 6조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해상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보고 및 조치(신설)

- 공해상 저층어업 조업어선은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하거나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정보 확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며,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보를 보고받은 후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 해당 조업어선에 대한 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UN사무국에 통보

- 조업어선이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 1마일 이상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한 경우에만 조업 재개 가능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견본거래를 위한 시설기준 및 거래방식 등을 정함(내용심사)

- 견본거래* 대상물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내에 있는 시설 중

• 330㎡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냉동·냉장업)을 등록하고 1,000톤 이상의 냉장능력을 가진 시설로 함

* 견본거래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도매시장내 거래방식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나, 이 경우 모든 물품을 도매시장에 반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견본거래는 경매장에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진열하고 경매하는 방식으로 하며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 승인절차 등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축산물위생검사 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강화 1)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강화)

- 지정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시, 부적합으로 평가된 기관은 지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재신청 가능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어구 사용량 제한제도(강화)

- 연근해 자망·통발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일정범위 내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연근해 자망 및 통발 어업의 어구 사용량

- 근해통발 : 3,200~7,000개(동해안 3,200~7,000), 단, 통발 설치 간격 10m 이내
 - 연안통발 : 2,500개 (동해안 4,000개), 단, 통발 설치 간격 10m 이내
 - 근해자망 : 1만2,000~1만6,000m(동해안 3만5,000~7만m), 단, 어선에 3,000~5,000m 이내의 별도 예비어망 적재가능
 - 연안자망 : 1만2,000m(동해안3만5,000m), 단, 어선에 3,000m 이내의 별도 예비어망 적재가능
- 동 규제의 존속기한은 연근해 자망어업의 경우 '09.6.30일, 통발어업의 경우 '10.6.30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규정을 삭제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강화)

-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단체의 대표자, 명칭, 도농교류사업 계획 등의 사항을 변경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수납기관의 수납금(의무거출금*)을 자조금 위원회로 지급 지연시 가산금 부과(강화)

- 수납기관(도축장)은 당월(1~31일)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한우, 양돈, 낙농) 자조금위원회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만큼 매월 1% 단리를 적용하여 가산금 부과

* 의무거출금 정의 및 결정

- 축산업자가 자조금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
- 대의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대의원수 : 한우 280명, 양돈 150명, 낙농 130명)

※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 ① 축산업자(농가) → 수납기관(도축장) → 위원회
- ② 축산업자(농가) → 중도매인(대납) → 수납기관(도축장) → 위원회

○ 의무거출금 미납자 및 대납금 미납자에게 과태료 부과(신설)

- 축산자조를 위한 의무거출금*을 미납한 축산업자(농가) 및 축산업자로부터 대납의뢰받은 대납금을 수납기관(도축장)에 미납(30일 이내)한 중도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우 - 2만원/두, 돼지 - 600원/두, 낙농 - 2원/ℓ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신설 1)

○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공개(신설)

-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기축방역기관 및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공개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강화)

-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양호 농가는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생산물 심사, 재배상황 점검 등의 관리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결과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증심의관이나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인증심의위원회(5명이상)를 구성하여 심의
- 인증기관은 인증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위반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했거나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물 심사, 재배상황 점검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4)

○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신설)

- 새만금위원회가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여 2년마다 물사용부담금 부과율 심의·조정
 - 물사용량은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와 새만금사업지역의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원수 취수량으로 함

- 다만,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
- 물사용부담금은 물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계정에 납입

○ 유보용지의 관리 및 활용(신설)

- 유보용지에 대하여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도록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임대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신설)

-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설립하는 의료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제한(신설)

- 종합유선방송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방송의 채널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내수면어업법 개정안(강화 2, 신설 1)

○ 사유 내수면 어업의 신고의무화(강화)

- 사유 내수면 어업을 임의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전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참고〉 신고어업 현황

- 내수면 어업 2,709개소 중 공유수면 신고어업은 39개소(1.4%), 사유수면 신고어업은 2,670개소(98.6%)
- 사유수면 신고어업 2,670개소 중 274개소(약 10%) 미신고

○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강화)

- 사유 내수면어업의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 공유 내수면어업의 미신고시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및 유어질서 행위 위반시 100만원 →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상향조정(강화)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강화 8)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강화)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 대하여 연1 회 정기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HACCP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는 제도 도입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강화)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 담당자는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
- 지정취소 또는 검사 정지명령사유 추가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능력 평가결과 검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제한

-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 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지정 신청 불가
-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지정 신청 불가

○ 위해 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등(강화)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존·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 영업의 신고(강화)

- 축산물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 영업의 허가(강화)

-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토록 함

○ 영업소 폐쇄조치(강화)

- 신고업 영업자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폐쇄조치 대상으로 추가
-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추가

○ 영업자에 대한 공표명령 확대 및 행정처분사실 공표(강화)

- 영업자가 축산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만 회수 사실을 공표하던 것을 부패·인체유해 축산물 등의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회수를 명령한 때에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 범위 확대
-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세부정보(처분내용, 영업소명, 축산물 명칭)를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공표

○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액 인상(강화)

-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최고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미신고 수축 도살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구분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신설 13)

○ 낚시 제한기준 설정(신설)

-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참고〉

* 어획량 추이

- '70~'80년대 : 연간 150만톤
- '02~'07년도 : 연간 100만톤
- 10년 후 : 연간 60만톤(예상)

* 낚시 포획량

- 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4~10%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신설)

- 낚시터에서 i)농약·유독물의 살포 ii)화약류·배터리의 사용 iii)낚시용 도구나 미끼 잔여물 등을 버리는 행위 iv)낚시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

-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i), ii)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iii), iv)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신설)

-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 금지

- 제조·수입·판매·사용이 금지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유해한 낚시도구 제조 등 금지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인의 안전관리(신설)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인에게 구멍조끼의 착용과 조명·통신망 등의 휴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퇴거, 그 밖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 지역의 출입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명령 거부, 기피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조치 명령 중 규명조끼 착용 및조명·통신망 등의 휴대는 낚시인에게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삭제(1호)하고 위반시 형별은 과태료(1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개선권고

○ 낚시터업의 등록(신설)

-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 낚시터업 등록기준

-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시설·장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낚시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매회 10년 이내로 2회까지 연장

- 낚시터업 등록 위반시 벌칙

-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시설·장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설·변경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낚시터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신설)

- 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의무
 - i) 방류금지 어종의 방류금지
 - ii) 도박·오락 등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확대하지 말 것
 - iii) 수질과 수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 iv) 낚시터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v)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 방류금지 어종 종류, 수질과 수산환경 오염기준 및 수산동물의 위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방류금지 어종을 방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ii)내지 v)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 허가 취소 등(신설)

- 낚시터업 등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한 경우
 -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 금지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사유수면에 대하여 등록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 허용

- 등록이 취소된 낚시터업을 계속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의 권리·의무 승계 등의 신고(신설)

- 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의 원상회복 의무(신설)

-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장비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의무 사유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개장한 때
 - 낚시터업 허가가 취소된 때
 -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때
 -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때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자가 필요한 조치 등을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음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시 예치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 예치금 부과 등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신고(신설)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는 자는 폐업이나 휴업 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미끼 제조기준 등(신설)

-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
- 미끼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
- 미끼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보관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결과 미끼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혹은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에게 해당 미끼를 회수·폐기하거나 안전상의 위해(危害)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신설)

-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신설)

-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낚시인 안전사고시 피해보전을 위한 것으로 부담(연소득대비 0.3%의 보험료)이 미미하므로 원안의결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농어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내용심사)

- 농어업경영체의 정보 등록 내용

- i) 농업인·어업인의 성명, 농업법인·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ii) 농업경영체가 경영하는 소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 iii)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 iv) 가축 사육시설 및 경영형태, 축종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 v) 어업 면허·등록 현황, 어선규모, 어선어업의 생산규모 및 경영형태, 어장 혹은 양식장의 경영형태·시설·면적, 품종별 양식규모
- vi)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어업경영정보

-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 중요한 사항은 i)호부터 v)호

○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취소(내용심사)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농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농어업법인이 해산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가 서면으로 등록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취소된 농어업 경영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농어업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음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6)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강화)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를 함께 제출 신고
- 휴업·폐업시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신고증(폐업에 한정)을 첨부하여 제출
- 양곡가공업 지위 승계시 승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종전의 신고증과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i)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ii)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iii) 그 밖에 해당하는 서류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7)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소유제한 완화 대상 한계농지의 기준(내용심사)

- 농지법 개정(공포 '09.5.27, 시행 '09.11.28)으로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농지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로 규정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

-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이면서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

-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내용심사)

-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i)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며, 또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물, 식염 기타 물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형제 등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하지 않은 경우
- ii)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 iii)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요인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 iv)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농산물위험평가 결과의 공표(강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에 게시

○ 농산물원산지 표시(강화)

-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현재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식육·포장육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추가
- 원산지 허위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일로부터 1년 동안 공표

* 공표사항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단속기관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치처분(강화)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1.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인삼류 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인삼류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강화)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일반검사기준(수분 제외)중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에서 검사정지 1개월로 강화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2)

○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여야 하는 조합기준(내용심사)

-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2,500억원으로 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축사육기준(강화)

- 지역 농협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가축사육기준을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1마리 → 2마리,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개) 3마리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토끼) 20마리 → 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명조, 거위) 30마리 → 100마리, 꿀벌 5군 → 10군으로 상향조정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제4조)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출자총액기준(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출자액은 출자금납입확약 총액을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 등이 시·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경제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한 설립한 법인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내용심사)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금융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
-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련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 재무, 감사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신설 8)

○ 친환경유기농자재는 공시등을 받고 판매(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농업용 자재를 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농자재 공시등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신설)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의 기간은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시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농자재 공시등의 부정행위 금지(신설)

- 부정행위 금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시험성적을 발급하는 행위
- 농자재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가 공시등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제품인지를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농자재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가 공시 등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인지를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 농자재 공시 등을 받지 않고 공시등의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공시 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등의 기관 지정취소(신설)

- 농자재 공시 등의 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공시기관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중 농자재 공시등을 하였을 경우

〈공시기관 업무정지(6개월 기간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 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자재 공시 등의 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조사결과 농자재 공시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 공시 등의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농자재 공시등의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경우 취소
-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농자재 공시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농자재 공시등의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제품표시의 변경(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농자재 공시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당해 농자재 공시등의 제품 유통업자에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업 양도시 그 지위를 승계(신설)

-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나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함

-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함

○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시 인증취소(신설)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 추가
 -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경우
 - 인증기관의 해산·부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인증의 취소사유 추가
 -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표시방법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신설)

- 과태료 부과 사항 추가
 - 농자재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관계공무원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나 농자재 공시등의 기관이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2)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3)

- 우수농어촌 식생활체험공간 지정(신설)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요건
 - i) 식당, 화장실, 체험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ii) 최소 30명 이상의 체험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iii) 신청일 직전 1년간 농어촌 식생활 체험실적이 있을 것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i) 농어촌 식생활의 체험에 필요한 운영계획서
 - ii) 신청일 직전 1년간 농어촌 식생활 체험실적을 적은 서류
 - iii)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및 주변경관의 현황을 적은 서류
 - iv) 농어촌 식생활 체험실적에 필요한 교육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 신청대상자를 사전적으로 제한지양 및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대상자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체험 실적' 삭제, 아울러 우수체험시설 지정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므로 지정요건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개선권고

○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신설)

- 식생활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
 - i) 국민의 식생활 인식을 높이는 등 공익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ii) 신청일 직전 1년간 식생활 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iii)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iv) 3명 이상이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이 상근 할 것

- 식생활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i) 식생활 교육기관의 운영계획서
 - ii)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식생활 교육실적을 적은 서류
 - iii) 재정현황, 재정확보 및 운용계획서
 - iv)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 서류
 - v) 상근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 신청대상자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대상자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식생활 교육 실적'을 삭제하는 개선권고

○ 우수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신설)

-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

ii)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지정취소)

iii)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1차-시정명령,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지정취소)

- 지정취소 처분시 14일 이내에 지정서 반납

- 지정 취소된 기관은 2년 이내에 재지정 받을 수 없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죽거나 병든 수산물의 신고(강화)

- 종전규제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9조에 의해 수산동물양식자 등이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강화규제 : 종전 신고대상자 외에 수산동물집합시설* 관리자도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수산동물집합시설 : 위판장, 활어공판장, 수산물도매시장

☞ 수산동물집합시설 관리자가 수산동물의 전염병에 걸렸는지의 식별이 사실상 곤란한데다 실효성이 낮고 처벌수준도 과도(형벌)하므로 수산동물집합시설 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삭제하는 철회권고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자격(신설)

- 종전규제 :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고 있음

- 강화규제 :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중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수산동물 관련단체”로 한정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

※ 현행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 i) 수산질병관리사(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iii)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iv)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는 학교
- v)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5)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내용심사)

- 인증을 받은 자가 농산물우수관리기준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 범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제출토록 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 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신청서 제출. 다만 첨부서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변경 신고서 제출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만료 1개월 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 시설갱신 신청서 제출. 다만 첨부서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농산물이력추적을 등록한 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서류 추가(내용심사)

-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에 법인의 정관 추가

* 지리적표시등록신청 서류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법인의 정관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내용심사)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안전성 검사업무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도, 감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명시

○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내용심사)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3에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위임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 등에 표시한 원산지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표시 옆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표시 위치 및 글자크기, 색도 등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규정에 따른 표시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품이 화면 또는 인쇄매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를 한다.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PC통신 등)

- 1)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한다.
- 2)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커야한다.
- 3)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다.

나. 방송매체 이용(케이블TV, IPTV, TV 등)

- 1)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막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화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자가 원산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2) 글자크기 등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한다. 다만, 방송자가 원산지를 말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방송 1회당 원산지 설명을 2회 이상 해야 한다.
- 3)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다.

다. 인쇄매체 이용(카탈로그, 신문, 전단, 잡지 등)

- 1)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한다.
- 2)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표시한다.
- 3)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다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절차, 검정기관의 지정·평가기준, 검정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내용심사)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43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정기관의 지도감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도, 감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검정기관의 지정, 평가기준 -별표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별표12〉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4)

- 매립지 등 농지 임대대상 자격자(강화)

- 매립지 등 임대 대상 자격자 중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농업인 및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외

- 다만, 농지를 임대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는 일부를 농어업인

에게 임대 가능

*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별도 보상

☞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 의결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내용심사)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시 제출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3.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4. 사업계획서
5. 사업대상지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사용승낙서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 변경, 해임의 방법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 4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 마을정비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마을정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함
-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음. 다만, 조합원 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마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절차와 서식 등을 간소화 하도록 개선권고(4개 사항)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을 삭제
 - 2. 마을정비조합 해산인가 신청시
 -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조합원 4분의 3 이상 동의서 제출로 완화
 - 3. 마을정비조합 규약에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포함하는 것을 삭제
 -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분의 4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 농어촌관광휴양지 및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제출(내용심사)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비중요규제심사로 원안동의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승계신고서 제출(내용심사)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비중요규제심사로 원안동의
- 무단점용료 징수(내용심사)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시 산출기준과 징수절차
 - 무단점용료는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무단점용료의 연체이자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이율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이율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이율 14%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이율 15%

-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26)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내용심사)

〈책임준비금 계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준함

〈비상위험준비금 계상〉

- 재해보험법 사업자는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매 사업연도 말에 보유보험료의 100분의 1.75부터 100분의 20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적립누계 한도는 보유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로 함

- 다만, 재해보험사업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위험손해율이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음. 다만, 환입액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전의 당기순손실액을 초과하지 못함

☞ 개정안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으로 4배 상향 조정할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추가 적립되는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보험수익 감소로 보험사업자의 법인세 감면효과 발생하나, 현 개정안은 적립상한 기준 조정시 발생이 예측되는 법인세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바, 개정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선권고

○ 과태료의 부과(내용심사)

- 보험업법 제95조 위반 : 1,000만원 이하
-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 미계상 또는 장부기록 누락 : 500만원 이하
- 보험업법에 위반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금지 행위자, 관계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서류 제출 등 : 300만원 이하

☞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동의, 다만,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 고의적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대 적립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을 부대권고

(27) 농약관리법 개정안(신설5, 강화 4)

○ 영업등록 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신설)

- 농약제조업, 수입업, 방제업, 판매업을 등록·신고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폐업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장,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식물보호제(농약)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보호제의 수거, 폐기, 반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미등록 수입식물보호제의 수입·판매시 제한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강화)

- 농약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식물보호제의 수입, 판매, 사용의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위해성이 판명된 식물보호제의 회수·폐기 명령(강화)
 - 등록 사용중인 식물보호제라 하더라도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제조, 수출입, 공급제한뿐만 아니라 회수, 폐기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등의 식물보호제 제조·수입·판매 관련 기록·보존 의무화(신설)
 - 농약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 식물방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한 때에는 식물보호제의 종류, 명칭 및 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함
-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시 행정처분(강화)
 - 식물보호제(농약) 판매업의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식물보호제 판매관리인 교육(5시간/연)을 이수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관리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신설)
 - 시험연구기관 지정 당연취소 사유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및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지정을 취소함
 -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미등록 식물보호제의 사용금지(신설)
-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식물보호제(농약)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수출입 식물방제업자 이외의 식물보호제 사용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천연보호제를 자가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식물보호제 통신판매 및 청소년 판매 금지(신설)
- 누구든지 식물보호제를 통신판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판매해서는 안됨.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통신판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해서는 안됨
- 영업정지 처분자의 시설·장비의 봉인 처분(강화)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수출입 식물방제업자가 그 처분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시설, 장비에 대해 봉인처분 등을 할 수 있음
- ☞ 모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강화 1)

○ 과태료 부과(신설/강화)

- 내수면 어업 미신고 : 500만원(신설)
-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미이행자 : 100만원(신설)
- 유어질서 위반자 : 30만원→100만원(강화)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9)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강화)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함
-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강화)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신설)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부정행위의 금지 등(강화)

- 금지대상행위에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추가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 집필자 : 이은영 사무관(Tel. 2100-2296, na5407@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신설 8건, 강화 2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2건)
- 심사대상 12건에 대해 모두 원안의결함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규제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규제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07.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규제 1
산지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09.07.22)	원안의결 3	강화 1, 신설 2 * 비중요규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규제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09.11.17)	원안의결 4	강화 1, 신설 3 * 비중요규제 4
계		원안의결 12	신설 8, 강화 2 내용심사 2 * 비중요 12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정·고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을 방화, 손상하거나 훼손, 절취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부과(신설)

*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되어 온 생활양식 또는 문화자원으로서 생태·경관적으로 희귀하거나 오래되어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물건·기록 등을 말함

☞ 산림문화자산 지정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보존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많은 봉포나 농서, 보호수림 등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이를 실효성 있게 보전·관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특히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어도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으며,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은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림문화자산은 기존의 산림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기존법률에서 규제하는 부분만을 준용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87개소 중 사유림은 83개소, 보호수는 1만2,696그루

○ 공·사유림의 소유자 등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준용함(신설)

* 산림욕장이란 건강한 일반인이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산책·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을 치유할 목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함

☞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 등을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계획 승인제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무분별한 난립과 산림훼손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또한 승인받은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제적 유인체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므로, 연간 규제영향비용은 제한적이며 피규제자 수도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치유의 숲 조성계획과 동일한 산림욕장은 '94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136개소가 조성되었으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수익성이 낮아 개인이 조성하는 사례는 없었음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함(신설)

☞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 등 합리적인 국유림경영 유도를 위한 것으로 산림경영 목적의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의 필요성이 크고 현재에도 작성이 일반적임. 더욱이 他용도 개발을 위한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의 실효성이 없음

연간 피규제자수 및 규제영향 비용은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고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연간 피규제자수 : 524명(08년말 현재 산림경영목적의 국유림 대부분
또는 사용허가 현황 : 524건 3만1,891ha 1건당 평균 60ha)

* 연간 규제영향비용 : 3,700만원(524건×709,800원÷10년)

※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비용 기준 : 51~70ha는 709,800원

※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작성

* 독일, 일본, 미국 등 모든 입업선진국에서는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국유림을 관리

(3)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제도 도입*(법 제6조의2)으로 수목원예정지 안에서
일정한 행위가 제한됨

*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09.5.8 공포, '09.8.9 시행

이러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 '허가'를 받고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내용심사)

- 산사태 등의 재해의 복구
- 공용·공공용 시설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 법 제6조의2제6항 각호의 행위 중에서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고
수목원전자원 및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법 제6조의2제6항 각호 -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은 일정한 행위는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은 미미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 연간 조성계획인 국·공립수목원 예정개수는 6개소며, 수목원 조성예정지 안의 개인토지소유자는 1개소당 평균 최대 3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피규제자 수 : $6 \times 30 = 180$ 명)

(4) 산지관리법 개정안(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기존에는 국유림 산지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 위반시(법 제36조제1항 각호)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지위에서 토석채취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따라서 기존의 매각계약 해제 또는 무상양여 취소 외에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제 등의 사유를 추가함(강화)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공·사유림과 달리 국유림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나 신고제도 없이 국가가 토석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를 하고 있으나, 법 위반시(법 제36조제1항 각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토록만 규정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채석중지·시설물 철거·산지로의 복구 등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 * 공·사유림 산지의 경우 산림소유자와 사업자간 토석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사업추진, 허가·신고를 한 자가 법 위반시 허가취소나 채석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同규제는 공·사유림 산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취소규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을 마련,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유림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위반시 채석중지·시설물철거·산지로의 복구 등을 매매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음

연간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 수는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음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 '08년말 현재 국유림의 토석매수 계약자 또는 무상양여자 : 30명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지복구시 재해발생·경관파괴·수질오염 등의 부실 방지를 위해 『산지 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신설)

* 감리자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산지복구시 전문지식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행하여 부실복구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산지복구의 부실발생시 최종적으로는 국가예산으로 복구를 시행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

* 산지복구 설계·감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07.10, 한국산지보전협회)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92% 찬성

연간 규제영향비용(2,036백만원) 및 피규제자 수(501명)가 크지 않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미약함. 다만, 입법예고 시 감리자의 자격범위 및 시행시기 유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일부 수용, 감리자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였고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비용산정 : 연간 2,036백만원

: 토석채취지 복구 - 1,191백만원(건당 644백만원), 산지전용지 복구 - 845백만원(건당 103백만원)

* 연간 피규제자 수 : 501명

: 산지전용 - 293건(최근 3년 평균 3ha이상 산지전용건수 366건의 80% 적용)

: 토석채취 - 208건

○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함. 또한 신설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의 경우에도 산지전용신고와 동일하게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신설)

* 현재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음. 한편, 산지전용신고 또는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지전용신고 및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입법 불비에 해당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 및 성실한 신고이행의 담보 등을 위해 개선 권고한 사항

또한 변경신고 없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인해 발생가능한 제3자의 피해 방지 위한 제재규정은 필요함

연간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의 수가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08년 위반사항은 3건에 해당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자격취소)을 부과(내용심사)

* 1, 2회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현행보다 완화(자격정지 3년 → 6월, 12월)

※ 同법 개정('09.5.27)으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고의의 경우 자격을 취소함

☞ 同법 개정('09.5.27)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세분화하여 1, 2회 위반시에는 현행 자격정지 3년보다 오히려 처분을 완화하면서, 3회 이상 위반시에는 고의성을 인정하여 자격취소를 부과하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였다고 판단됨

연간 피규제자수(산림기술자 1만3,000명) 및 규제영향 비용은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신설 3)

■ 심사내용

- 산림조사서(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 작성시 포함되는 입목축적 산정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을 규정(강화)

*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는 산림조사서 작성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2 및 별표4)에서 산림조사서 작성시 포함되는 입목축적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산림조사서 작성 관련해 입목축적 산정방법이 同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혼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미 산림조사서 작성시 同규정과 같이 운영되는 실정으로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허가·협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협의권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허가·협의권자는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허가·협의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함(신설)

-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同제도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 방지에 기여함

*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마찰 및 갈등이 발생, 이의 해소 위해 법 개정('09.5.27, 의원입법)

이의신청이 가능한 이해관계자 요건은 토석채취허가의 예*(동법 시행령 제36조)를 참조하여 정한 것으로, 이의신청자와 사업시행자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경우 가옥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검토결과 허가·협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협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허가·협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신설)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조사·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산지관리법」 상의 조치, 즉 허가·협의 반려나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시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유권해석 질의회신으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요건을 토석채취허가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법령에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해관계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연간 피규제자 수* 및 규제영향비용이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적 성격도 없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토석채취자 연 50명

제6절 | 방송통신 분야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1. 방송통신위원회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6건 등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7건은 원안대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82차 경제분과 (2009. 7. 1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 용 2 *중 요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제211차 본회의 (2009. 7. 23)	개선권고 1	내 용 1 *중 요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16)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16)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215차 본회의 (2009. 9. 2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강화 1, 내용 6 *중요 3, 비중요 4
방송법 개정안	제221차 본회의 (2009. 12. 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내 용 5 *중요3, 비중요 2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8)	원안의결 3	신 설 3 *비중요 3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8)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9. 12. 22)	원안의결 2	신 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7 개선권고 6 철회권고 0	신 설 6 강 화 1 내용심사 16 *중 요 8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2)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내용심사)

- 디지털 방송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민들에게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사항 준수
- 국민들의 디지털방송 시청여건 마련을 위해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 내용 홍보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홍보 및 시청자지원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집행 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신설)

☞ HD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방송사가 2개월에 1회 또는 수시로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규제 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 기간통신사업자는 5년, 그 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 이상 동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DB 접속기록의 보존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존기간 5년은 여타 사업자(6개월)에 비해 과도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용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자정노력을 수행중이므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09.6월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본인확인정보가 허위인 도메인이름 말소 위반자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함에 따라,

-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및 횡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고,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횡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가중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피규제자 수가 kr 도메인 등록대행자 28개 기업으로 제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4)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2012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TV방송 수신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디지털튜너를 내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전자제품을 고시에서 규정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 수신카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기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전자제품

☞ 디지털튜너 내장의무화 대상제품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시청권 보장 및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을 수용 하였으며 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6)

○ 개정 방송법에서 현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허위·과장 방송광고를 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하면서 처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시청자불만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제재조치 명령이 선택적으로 가능함을 추가로 규정(강화)

- 시행령에서 허위·과장 방송광고를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방송심의 및 협찬고지 위반, 시청자 불만처리 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방송사업자는 3,000만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등은 2,000만원으로 설정

☞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기준(과태료) 및 여타 부과기준(과징금)과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방송법에서 일간신문의 지상파(10%), 종편·보도PP(30%)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제출

- 일간신문은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주식·지분의 취득 사실을 지체없이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는 1개월 이내에 제출 자료와 신고사실 공개

☞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간신문의 제출자료 및 공개방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신문협회)의 이견이 없으며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적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방송법에서 구독률 20%를 초과하는 일간신문은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진입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구독률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장래 가구 추계 통계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주식·지분 취득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

☞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적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면서 허용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

☞ 위성방송 등 타 매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유사한 방송권역을 갖고 있는 지역민방과 종합유선방송의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방지를 위해 상호진입 허용 범위는 적정하므로 원안 동의하되, 동 규제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를 위해 시행 2년 후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 개정 방송법에서 허가·승인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승계사업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월 이내에서 방송연장 수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 중단,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승계사업자 정의 : 해당 사업자와 동일 방송구역에서 동일 유형의 방송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연장 수행명령 내용 : 방송연장 수행기간,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기타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

- 방송연장 수행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 : 방송연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방송연장 명령내용 시청자 고지, 이행결과 보고

- 현행 시행령 [별표1]의 처분기준 중 '허가 등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6월 이내에서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으로 조정

- 광고 중단은 업무의 일부정지에 포함되므로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포함

☞ 개정 방송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방송연장 수행명령의 세부내용과 새로운 처분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개정 방송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선수·심판·관중 위에 광고 노출 금지

-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 금지

- 해당 경기 주관단체, 중계방송권 보유자등과 사전 협의 필요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하로 노출하며, 운동경기 시작 전·후 휴식시간을 활용

-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광고 노출장소, 시간 등에 대한 가상광고 운영지침 수립·공표 의무 등

☞ 가상광고의 ‘시청자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는 과태료 처분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규제 일관성과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규제 가능성, 시청자의 감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필요시 가상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고

- 가상광고 운영지침 수립·공표의무는 방송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세부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

- 가상광고 자료제출의무는 이미 방송광고의 6개월간 자료보관 의무가 있고 사인간의 계약관련 자료제출은 과도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 개정 방송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로 간접광고를 도입하고,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내용심사)

- 간접광고는 오락과 교양분야에 한정
-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 저해·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 금지
-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 등의 구매 및 이용 권유·대사를 통한 언급 등 부적절한 노출효과 금지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하로 노출하며, 방송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표기
- 방송사업자는 간접광고 운영 및 시청권 보호방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 수립·공표 등

☞ 간접광고의 ‘시청자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는 과태료 처분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규제 가능성, 시청자의 감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필요하므로 제59조의3 제1항 3호를 삭제하고, 필요시 간접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고

- 간접광고 운영지침 수립·공표의무는 방송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세부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
- 가상광고 자료제출의무는 이미 방송광고의 6개월간 자료보관 의무가 있고 사인간의 계약관련 자료제출은 과도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6) 방송법 개정안(내용심사 5)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6 범위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을 '신규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납부 주체와 범위를 구체화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와 기타 방송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재도 부과하고 있는 출연금의 납부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미흡한 법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직접사용채널을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당해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지역채널은 제외)하는 방송채널'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시행령상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운용계획서와 다르게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 처분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사후규제만으로도 직접사용채널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계획서 제출은 삭제할 것을 권고

-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자료는 현행대로 제출하되, 방통위의 내용검증 및 자료제출·사실확인 검사권한은 방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재허가 등 사후규제를 통해 회계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 신설

☞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범위에서 KBS·EBS 위성방송을 삭제하고, 채널 운용 범위에 설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

- '06년 법 개정 당시 난시청지역의 시청자보호를 위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범위에 공익채널, 종교채널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있어 절충점으로 유효기간 3년을 두고 성과를 지켜본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상업적 전문 방송 송출이 가능한 일명 케이블 방송)의 경쟁력이 공고한 반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채널범위를 현행대로 유지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유효기간(2010.6.30)을 삭제하는 원안에 동의

(7)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신설 3)

○ 설비의무제공사업자(KT)가 보유하고 있는 전주, 관로 중 의무제공대상에 대해 이용사업자가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제공희망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공희망일 내 정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 등으로 통보

- 의무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요청사업자가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 요청시에는 7일 이내에 정보 제공
- ☞ 통신망 구성의 필수요소인 전주·관로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효율적 통신망 구축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일한 피규제자인 KT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이원화된 제공절차를 일원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시기를 통보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설비 요청수량별로 제공에 따른 처리기간을 설정
 -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 의무설비제공사업자는 설비제공지침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설비제공 협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공개 요청시 공개
 - ☞ 설비이용사업자의 신속한 설비사용을 돕고 설비제공과 관련된 제공·이용사업자의 신뢰향상 및 분쟁발생 억제를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인 주요 제공사업자와 수혜자인 주요 이용사업자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의무제공사업자(KT)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요청건수, 제공건수, 거부건수 등 설비제공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
 - 방통위가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사업자의 설비이용실태를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선·후발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확보하여 공정 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인 주요 제공사업자와 수혜자인 주요 이용사업자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8)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신설 1)

○ 회계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기준 규정

- 통신사업자가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와 변경 전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기재
-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제출시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함께 제출
-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산정 관련 업무분석 단위는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하고, 시간투입비중을 100분의 1 단위로 표시

☞ 최근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과 결합상품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회계정리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원가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자가 전담반에 참여하여 합의를 완료(’09.3~8월)하였으며, 추가 발생비용이 적고 해외사례 및 여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9)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 제정안(신설 2)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방송분야별 특성,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2010~2013년)로 단계적으로 확대
- ☞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의 HD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방송사의 HD 프로그램 편성현황과 비교시 규제 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를 제출
 - ☞ HD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제7절 | 노동·환경 분야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jyks@pmo.go)

1. 노동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공인노무사법」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13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회 예비심사 (2009. 3. 6)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제31회 예비심사 (2009. 3. 6)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회 예비심사 (2009. 3. 17)	원안의결 2	강화 1,내용 1 *비중요 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53회 예비심사 (2009. 5. 2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4회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5	강화 2,내용 3 *비중요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56회 예비심사 (2009. 6. 9)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56회 예비심사 (2009. 6. 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제69회 예비심사 (2009. 8. 14)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제69회 예비심사 (2009. 8. 14)	원안의결 2	신 설 2 *비중요 2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제405차 행정사회분과 (2009. 9. 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5차 행정사회분과 (2009. 9. 3)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기능장령법 개정안	제83회 예비심사 (2009. 10. 20)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제83회 예비심사 (2009. 10. 20)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제88회 예비심사 (2009. 11. 13)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95회 예비심사 (2009. 12. 8)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제410차 행정사회분과 (2009. 12. 17)	원안의결 1	강 화 1 *중 요 1
계	-	원안의결 2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2	신 설 6 강 화 13 내용심사 8 중 요 4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내용심사)

-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추가징수할 수 있음

-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횟수가 없는 경우 : 2배
-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횟수가 1회인 경우 : 3배
-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5배

☞ '08.12.31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추가징수(최대 5배)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동법 규제심사('08.9.18)시 비중요규제로 심사받았으며, 피규제자가 소수(456개소)이고, 규제비용이 약 41억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입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비용지원·용자관련 서류보존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용자받는 자와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08.12.31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 및 제48조에 의거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동법 규제심사('08.10.22)시 비중요규제로 심사받았으며, 피규제자가 소수(5,100개소)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비용지원·용자관련 서류보존 의무 등(내용심사)
 - 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비용을 지원·용자받는 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 훈련 관련 회계장부, 훈련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

- 훈련기관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증명서류
-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지원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 단서에서 정한 10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원·용자관련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음
 -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 용자를 받은 경우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용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 '08.12.31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에 의거 보존대상 서류 및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 규제심사('08.10.22)시 비중요규제로 심사받았으며, 피규제자가 소수(5,100개소)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탁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의 제재기준 등(강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 이를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지원 또는 용자를 받지 아니함
-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의 제재기준
 - 100만원 미만 : 인정취소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인정취소와 3개월 인정제한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인정취소와 6개월 인정제한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인정취소와 1년 인정제한
 - 2,000만원 미만 : 인정취소와 2년 인정제한
-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제재기준(강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 인정취소와 당해과정에 대한 1년간 인정제한
 -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의하여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 인정취소와 당해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강화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제한 기간(3년 범위내 지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지정(1년)하고, ‘출결관리 조작’ 등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5,100개소)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강화)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근로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 '07.12.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토록 하고 구체적 산입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산입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였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강화)

현 행	개정안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을 기준(2명)으로 매 700억원 또는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인씩 추가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을 기준(2명)으로 매 700억원 또는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인씩 추가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현행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최근 발생하는 사고와 같은 위험도 및 난이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한계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건설안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153개소(평균)이고, 규제비용이 약 27억원(추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면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대상 등(내용심사)

-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석면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 '09.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근로자를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사전조사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석면 사전조사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네거티브 방식)으로 한정하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두었으며, 대상물질 선정 등이 외국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쟁제한 요소가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내용심사)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평가,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 ☞ '09.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해체·제거토록 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하고, 예외 근거를 두었으며, 해체·제거대상이 외국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해체·제거업 등록요건 및 석면농도기준 등이 현행 기준을 준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가(강화)
 - 현행)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시설 등
 - 개정안)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 시설(건축, 설비 및 단열공사 포함) 공사 추가
 - ☞ 최근 냉동·냉장창고의 시설공사 중 대형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15개소(추정)이고, 규제비용이 약 3,100만원(추정)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기준(내용심사)
 - 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합격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 : 50
 - 그 밖의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 15
 - 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1,500
 - 법 제38조의4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도록 한 경우 : 500

- 법 제38조의4제3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법 제38조의5제1항에 의거 작업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법 제38조의5제1항에 의거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법 제38조의5제3항에 의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1,500
- 법 제64조제4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09.2.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액 미만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 작업환경 측정대행기관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09.2.6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미미하고, 피규제자가 소수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진폐요양 관리 등(강화)

- 노동부장관은 진폐로 인한 요양과 관련하여 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시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여 요양대상 환자 및 요양급여의 지급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입원위주의 장기요양, 고비용, 광산업종 산재보험 재정적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폐요양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3,772명(진폐요양기관 32개소 포함)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자사주 예탁기간 강화(강화)

-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
 -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 조합원이 출자한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 개정안(추가)
 - 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대응하여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 : 5년

☞ 우호주식의 장기간 확보로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응출연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응출연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 규제비용이 없으며,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보유기간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등(신설)

-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알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서류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자의 고용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 하는 국가자격증의 불법대여 조사에 대한 근거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 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입법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신설)

-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검정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 자격검정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시험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18만 7,400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공인노무사 교육 등(강화)

- 공인노무사 및 고용된 직무보조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함
 - 교육 시간·주기·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직무보조원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전문자격사의 유사법률을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규제 신설 필요성 및 적정성은 인정되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함. 한편, 직무보조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사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고용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직무보조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을 감안할 때, 공인노무사의 자율적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함

○ 노무법인 설립 요건(강화)

- 현행)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함
- 개정안) 노무법인은 5명 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함

☞ 노무법인 설립의 인력요건은 '99.2.8 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규제합리화(5명→2명)된 것으로, 규제합리화 이후 급격한 시장변화나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인력요건 강화와 전문화·대형화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법인에 대한 진입장벽과 시장내 사업자간 경쟁 제한 가능성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최저기준에 불과한 인적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화·대형화가

필요하다면 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자율적 경쟁에 의한 전문화·대형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함

○ 노무법인 구성원의 업무 제한(신설)

- 노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됨
- 노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 ※ 업무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해 징계함

☞ 노무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자유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성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약 700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유사법률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징계 처분(강화)

- 현행)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
 -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 개정안) 징계사유 추가
 -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 공인노무사가 정부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에 관련된 서류작성 등을 대행하더라도 범죄의도를 증명할 수 없어 제재가 어려우므로,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약 1,340명)이고, 유사법률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강화)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추가)

-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추가)

☞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보증보험 가입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1,340명)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유사법률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강화)

■ 심사내용

○ 원수급인의 서류보존 등(신설)

- 동일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1일 고용인원 명단을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류(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포함)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현장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것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자료관리 부실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고용관련 서류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됨. 다만, 실질적 고용책임이 없는 원수급자에게 자료보관 등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금 대장 작성·보존 의무를 활용한 누락 적발’과 ‘고의적 누락 사업주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등 기존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함

○ 과태료 부과(강화)

-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개정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연적용대상 공사에 종사하고도 퇴직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건설근로자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신고 기피로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법률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기능장려법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신설(신설)

-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근거 마련

☞ ‘명장’이 기능장려법 외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명장, 지자체의 도자기 명장 등과 중복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에서 대명장, 중소기업 명장, 명인 등 유사명칭을 다수 사용하여 품격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명장’을 ‘대한민국명장’으로 개칭하여 차별성을 부각하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으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 기술 장려정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강화)

- 노동부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이외에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훈련실시 능력·훈련성과 등에 대해 평가 및 공개 실시 근거 마련

☞ 노동부 외에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체계적 평가 미비로 훈련성과 미흡 및 예산낭비 지적이 있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결정기준 변경(신설)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 개정안(추가) 다만,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

☞ 장애인 고용의무(2%)가 있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1,551개 기업이나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른 단계적 유예 기간을 적용하였고,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11년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13년에 폐지하기로 한 부담금 완화조치와 병행 추진되는 점, 공정위 및 중기청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내용심사)

- 법 제31조에서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개정전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 : 150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

☞ '09.10.9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강화)

- 현행)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2%
 - ※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미고용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초과 고용시 장려금 수령

※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미고용시 부담금 납부가 없으며, 초과 고용시
장려금 수령

- 강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2.7%

※ 다만,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의 부담금 산정 시, '10년부터 '11년까지는
2.3%를,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 적용, '14년부터 2.7% 적용

☞ '93년 이후 유지되어 오던 의무고용률(2%)을 장애인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외국사례 및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였고,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 및 의무고용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2. 환경부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jyks@pmo.go.kr)
 김정일 사무관(Tel. 2100-2318, kim314@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4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2건, 강화 53건, 내용심사 7건 등 총 7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환경부의 2009년도 총 신설규제는 12건임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6)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3.10)	원안의결 3	강 화 3 *비중요 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4.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4.10)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06차 본회의 (2009.4.9)	개선권고 1	신 설 1 *중 요 1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5.6)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5.12)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5.12)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5.26)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5.26)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6.4)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14)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4)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212차 본회의 (2009.8.13)	개선권고 3 원안의결 5	강화 7, 신설 1 *비중요 3, 중요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8)	원안의결 4	강화 3, 신설 1 *비중요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28)	원안의결 4	강 화 4 *비중요 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28)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14차 본회의 (2009.9.10)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 요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9.18)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9.25)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29)	원안의결 4	강 화 4 *비중요 4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9.2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제216차 본회의 (2009.10.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강화 2, 신설 2 *비중요 1, 중요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23)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23)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17차 본회의 (2009.10.2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 화 4 *비중요 3, 중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3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30)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13)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09차 행정사회분과 (2009.11.19)	원안의결 2	강 화 2 *중요 1, 비중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20)	원안의결 2	강 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1)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8)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10차 행정사회분과 (2009.12.17)	원안의결 4	강 화 4 *중요1,비중요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22)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22)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2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4 개선권고 7 철회권고 1	신설 12 강화 53 내용심사 7 중요 13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공개(신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지도·점검한 때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04.10.29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부 훈령(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개정('05.6.29)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07년 기준 4,476개소), 규제비용(거의 없음) 및 정보공개에 대한 유사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강화)

- 토양정화업 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세부기준은 추후 환경부장관이 고시)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 반출·운반·반입·정화 및 사후 처리 과정을 서면 또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토양정화업 등록 시 제출서류 추가(반입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 현행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이 미흡하여 오염토양의 부적절한 처리, 2차 오염발생 및 주변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출된 오염토양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입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연간 준수비용이 약 17억원(추정)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경쟁제한적 영향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양오염검사 기준 및 방법(강화)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 질	현 행		개정안		
	가지역	나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5	12	4	10	60
구리	50	200	150	500	2,000
비소	6	20	25	50	200
수은	4	16	4	10	20
납	100	400	200	400	700
6가크롬	4	12	5	15	40
아연	300	800	300	600	2,000
니켈	40	160	100	200	500
볼소	400	800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10	10	30

물 질	현 행		개정안		
	가지역	나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1	4	12
시안	2	120	2	2	120
페놀	4	20	4	4	20
BTEX	-	80	-	-	-
벤젠(B)	-	-	1	1	3
톨루엔(T)	-	-	20	20	60
에틸벤젠(E)	-	-	50	50	340
크실렌(X)	-	-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2,000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4	4	25
벤조(a)피렌	-	-	0.7	2	7

- 시료채취방법 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 지점을 기존 3개에서 4개 지점으로 확대

※ 단, 철강슬래그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시료채취는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채취함

☞ 유류시설에 대한 검사를 종전 BTEX 총합기준에서 4개 물질별로 개별관리함으로써 발암물질인 벤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침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벤조(a)피렌을 추가하며, 토지이용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오염물질 노출정도와 정화목표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 시료채취 지점을 확대(3개→4개)하여 오염물질 발견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형식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체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의 형식적 검사부담은 경감

○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조정(강화)

(단위:원)

검사항목	현 행	개정안	비 고
카드뮴·구리·납	16,900	44,200	
비소	16,400	44,200	
수은	23,500	44,200	
6가크롬	23,200	44,200	

(단위:원)

검사항목	현행	개정안	비고
벤젠	40,600 (BTEX)	40,600	항목당 검사수수료는 TCE, PCE 수수료(26,900원)적용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벤조피렌	-	114,000	

☞ 동 규제는 분석방법의 변경, 유류(BTEX)의 항목별 분석 및 항목 추가(벤조피렌)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2만 2,400개 업체이고, 규제비용이 약 17억원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경쟁제한적 영향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심사)

부과대상	과태료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3조제2항(제해시설)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30	40	50
법 제30조제4항(배수설비)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30	40	50

☞ '09.1.7 개정된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50만원 이하)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동법 규제심사('08.8.21)시 비중요 규제로 심사받았으며,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추가(6종) 지정(강화)

구분	종명
포유류	1.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양서류 파충류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emys spp.)
어류	1. 파랑볼우렁(블루길)(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구분	증명
식물	1.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 7. 애기수영(Rumex acetosella) 8. 가시박(Sicyos angulatus) 9. 서양금혼초(Hypochoeris radicata) 10.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11. 양미역취(Solidago altissima)

☞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추가(6종) 지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함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신설)

-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총량초과부과금, 허가의 제한, 오염총량관리의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과태료
 - ※ 지역별 시행시기 : (서울·인천·경기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강원도·충청북도) 법 시행일로부터 8년 경과 후

☞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되,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의 시행시기는 경기도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해당 시·도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6)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취급금지물질 추가(강화)
 - 현재 59종의 취급금지물질에 1종(탈크) 추가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06-5-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14807-96-6)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 현재, 수입 탈크를 통관 보유하고 있어 지체시 민원 야기 및 국내 사용 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 석면 함유 탈크(인체발암유발)가 화장품 등에 사용되어 문제됨에 따라 불순물로 섞인 석면함유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긴급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 분류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허용범위 제한(강화)

현행	개정안
·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철도 폐침목을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제조 시설의 반침용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 허용범위를 산업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4,128개소('08년 기준)이고, 규제비용이 최대 58억원(추정)이며, 공익적 목적이 크고, 규제 타당성이 높은 반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등 산정(강화)
 -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마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에 의거 '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각 각 초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기총량제 도입시 규제심사('07.3.15)를 받은 1종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 산정 및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피규제자가 약 397개소이고 규제비용이 약 24억원(추정)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촉매제 관리제도(내용심사)

- 촉매제의 제조기준, 촉매제의 사용제한,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촉매제의 검사 방법 및 절차,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08.12.31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촉매제에 대한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부령으로 제조 및 검사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조 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하고, 검사 방법·절차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이 기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기준과 동일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경쟁제한 요소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추가(강화)

현 행	개정안
1. 단지조성면적이 150만㎡이상으로서 우수·폐수 등이 폐·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1. 단지조성면적이 150만㎡이상으로서 우수·폐수 등이 폐·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현행	개정안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인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으로서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으로서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4.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이 1천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동 규제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으로부터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315개소이고, 규제비용이 최대 48억원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규모조정을 통해 의무 회피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기준(강화)

- 실차시험 주행거리 강화
 - 현행) 저공해엔진의 실차시험 방법을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3만km 이상
 - 개정) 저공해엔진의 실차시험 방법을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5만km 이상

☞ 동 규제는 보증기간 동안 저공해엔진의 내구성 및 저감효율 유지정도 등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실차시험의 시험주행거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2~3건이며, 추가 규제비용이 약 1,040만원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경쟁제한 요소가 없으며, 사후관리 비용절감 및 기타 저감장치 시험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강화

- (현행) 4km 이상의 도로 신설·확장 공사
- (개정) 1km 이상의 도로 신설·확장 공사(강화),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추가)
 - 사용용도 : 도로보조기층용
 - 의무사용량 : 골재소요량의 15% 이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4km →1km, 택지개발사업 추가)을 반영하고, 추가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순환골재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와 의무사용량은 기존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 납부의무 승계 및 정보제공요청 근거 마련

☞ 법제처의 입법체계 정비권고('07.4)에 의거 훈령으로 시행중인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부담금의 납부를 유도하여 중·장기 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유사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명령 등(강화)
 - 공공수역에 배출 등이 금지되는 “유류”에 ‘유사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추가
 - 공공수역 방제조치의무 대상에 ‘다량의 토사 유출’로 인한 오염 행위자 추가

- ☞ 석유제품과 성상이 매우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는 공공수역에 유출·누출되면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질·수생계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수질오염 행위자의 방제조치 의무사항에 ‘다량의 토사 유출’ 행위자를 추가한 것은 하천 준설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 준설 등의 급증이 예상되어 제도적 보완 필요로 사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과징금 처분 기준 합리화(강화)
 - (현행) 영업정지 기간에 상관없이 위반행위 종별·영업규모별 일괄적인 과징금 부과
 - (개정) 과징금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규모를 보다 세분화(3단계 ⇒ 5단계)하고, 위반행위 종별 구분 삭제

- ☞ 영업정지 기간이나 사업자의 규모 등에 따라 영업손실 차이가 크어도 영업정지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의 효과가 미미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의 경우 현행보다 과징금액이 높은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신설 1, 강화7)

■ 심사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자(강화)

-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로 제한
-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300kg/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의무 대상에 포함(현재,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감량의무에서는 제외)

☞ 생활·사업장폐기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감량의무 등)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현행 규제수준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원안의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재활용 방법(강화)

- (현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자가 재활용에 대한 관리기준 미비
- (개정) 배출자가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업자 및 신고자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에너지회수기준, 수분함량기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 방법 및 용도 적용
 - 재활용된 폐기물은 재활용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품으로 인정

☞ 스스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적 방치 및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재활용의 용도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기술발달에 따른 다양한 재활용 용도·방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서 제시할 것을 부대권고

- 신고 내용과 다른 수입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강화)
 - (현행)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벌칙만 있고 반출 등 조치규정 미비)
 - (개정) 수입 유해폐기물에 대한 반출 등 조치명령제 신설(기존의무에 반출명령 추가)

- ☞ 부적절한 유해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어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됨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등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규제에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폐기물 재활용업 재정립(강화)
 - (현행) 재활용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제)과 재활용신고자(신고제)로 이원화
 - (개정) 기존 허가제를 재활용업(허가제)으로 명칭변경하면서 기존 재활용신고자를 허가대상으로 편입, 관리강화(허가제 전환에 따라 진입 요건 및 사전사업계획검토 등 의무강화)

- ☞ 일률적인 규제강화는 영세업체의 퇴출 등의 문제와 규제 미준수로 인한 불법영업 등의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 재활용신고업을 ‘폐기물처리 신고업’으로 변경
 - 재활용업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생략하고 시설기준 등만 구비하면 즉시 허가하도록 하며, 하위법령에서 폐기물의 성상·특성 및 업종별 위험성 등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장비기준만 구비토록 하고 영세 사업장 또는 유해하지 않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기술능력 기준 적용을 제외
 -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생계형업자 등은 신고제로 잔류토록 신고업의 영업범위를 확대

- 민간수집상의 재활용신고대상으로 전환(강화)
 - (현행) 민간수집상(고물상)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처리
 - (개정) 신고대상으로 강화

*신고대상에 따른 의무강화

- 재활용사업장 시설요건 구비
- 적합한 입지 확보

☞ 현재 무신고 고물상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신고업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 대규모 고물상에 한정하여 신고의무 대상자로 전환하고 생계형 · 소규모 고물상은 신고간주 대상에서도 제외하되 소규모 고물상도(본인 희망시) 신고 가능토록 조치
-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제외대상 규정은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

○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설정 및 인증제도 도입(신설)

- 재활용제품 중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기물로 인한 인체 위해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 “물질별” 유해성 기준 설정
-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인증취소 등(미인증 제품 유통금지)

☞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제도와외의 중복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제도는 철회하고 인체위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유해성 기준 설정하되 기준 준수여부는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권고

○ 부적합 판정 처리시설 개선 · 사용중지명령(강화)

-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관한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법 제31조제4항),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법 제65조제8호)
 -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작동상태 등에 관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제30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제65조제7호)
- (개정) 시설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시설대상에 설치완료 후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한 경우, 행정청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시설개선 및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검사수수료(강화)

-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수수료 징수 근거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서 전용용기 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정하고 수수료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 법적 근거 없이 받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적업체는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신설1)

■ 심사내용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과 개선명령 이행 확인(강화)
 - (현행)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
 - (개정)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이행보고 의무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완료보고 의무 부과(개선명령 행정 처분 이전에 자진 개선기회 부여)

-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도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행정절차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통해 행정처분사항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등 자료제출(강화)

- (현행)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
- (개정)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근거로 해당연도 발생량 명세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측정기관 인정절차, 측정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토록 함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발생량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실효성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은 수용가능한 합리적 수준이며, 측정기관 인정 등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강화)

- (현행)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대상
 - 절연유(PCBs 2ppm 이상 함유한 경우) 교체,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
- (개정)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대상 추가 및 첨부서류 구체적 명기
 - 소유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를 수리하여 다시 설치하는 경우
 - 첨부서류 : 신고증명서, 폐기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관리대상기기에 대하여 신고한 소유자의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되어도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결여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폐규제대상기기 : 한전, 민간기업 등 12만 3,000여개소)으로,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를 수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현행 규정 하에서는 신규 설치신고만 가능한 불합리(동일 기기에 대한 중복신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구체화(신설)

-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의 보관기준을 준용하던 보관기일(45일, 1년 단위로 연장)을 명문화
- 대형 폐변압기는 현장에서 해체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PCBs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변압기 내부부재(규소강판, 구리선, 나무, 종이 등)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기준 마련
- 수집·운반·보관·처리시 안전기준 마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형 변압기는 도로법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므로 현장에서 해체·처리할 수 있는 기준 필요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자체방제계획수립제도 개선(강화)

- (현행)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개정)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보완명령(위반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작성·제출한 자체방제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함으로써 자체방제계획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36종 · 고압가스 등 20종, 취급사업장 : 약 500개),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며 관련부처 의견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의 수출입(강화)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는 농도가 50ppm이상일 경우 제조 · 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
- (개정) 기준 규제에 부가하여, PCBs 농도 2ppm 이상인 절연유가 함유된 기기 · 설비 · 제품의 수출입 금지

☞ 스톡홀름협약상 50ppm인 PCBs 수출입 규제기준과 함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기기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PCBs 함유 폐기물의중고품 둔갑 수출로 인한 바젤협약* 위반으로 국가신인도 손상과 지정폐기물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며 관련부처 의견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국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강화)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 : 대기 · 수질배출 시설,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 (변경)신고자
-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설에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명시되지 않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기준(강화)

- (현행)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 (개정) 개선 기간 안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중지명령 가능토록 강화

☞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신설)

- (현행)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만 브롬산염 0.01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
 - ※ 바닷물의 경우 지하수에 비해 브롬 비율이 높아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브롬산염 기준 규정
- (개정) 오존살균 과정을 거친 '먹는샘물'도 브롬산염 0.01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
 - ※ 먹는샘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소독 및 살균을 위하여 오존처리를 하였을 경우, 소독부산물로서 '브롬산염' *이 생성
 - * 국제암 연구기관(IARC)에 의하여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0.01mg/l로 설정(WHO 권고기준)

☞ 먹는샘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소독 및 살균을 위한 오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79개 제품 중 오존처리를 한 7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0.01mg/l 초과(먹는샘물 제조업자 64개 중 20개가 오존처리)하였는 바, 브롬산염 검출 기준이 WHO 권고기준 및 동 규칙의 먹는해양심층수 기준과도 동일하며 선진외국의 사례에 준한 기준으로 적정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대상(내용심사)

-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 영업용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 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등록지역이 “군”인 차량은 제외))
- 택배트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제2호의 배형화물자동차로서 1톤 이하 택배용)

☞ '09.5.21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의거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세부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대상과 기간이 그 효과를 일반화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부담과 향후 설치대상의 추가 확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추가적 시범사업(약 2,800대)이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착 대상 및 시행 시기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후 추진토록 개선권고함

(2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추가 지정(강화)

(단위 : 종)

종별 내역	계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거미류	연체동물	해조류	고등균류	기타무척추
계	1,137	1	76	418	474	30	30	30	26	52
현재	822	1	76	319	426	-	-	-	-	-
추가	320	-	-	100	52	30	30	30	26	52
해제*	△5	-	-	△1	△4	-	-	-	-	-

☞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05.1)」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 및 국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승인대상을 추가·지정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 기준(신설)

- 놀이터 등의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동물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

☞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의 모래 바닥재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의 특성상 오염물질에 대해 민감하고 그 피해도 큰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비용은 9,000원/개소로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대상 확대(강화)

- (현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지역,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정착된 물건
- (개정) 수용 및 사용 대상 추가

- 시급한 정화가 필요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사업
- 표토보전 및 침식방지를 위한 현황조사사업
- 오염토양관리단지의 조성사업

☞ 오염토양 정화, 오염토양 관리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토양오염에 따른 시급한 정화가 필요함에도 협의 보상지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한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의 대상 추가(강화)

- (현행)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은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 정화 등의 명령 가능
 -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 5년, 10년, 15년, 이후 2년마다
 - 누출검사 : 10년, 이후 8년마다
- (개정)누출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도 토양정밀조사 등의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 조속한 조치를 통해 추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인정되며, 규제강화로 인한 추가비용은 총 6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반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확대(강화)

- (현행)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보관·운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금지
- (개정)정화된 토양을 반입정화시설 내에 방치하거나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도 금지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지목별 정화기준이 다른 지역에 방치, 사용 또는 버릴 경우 발생하게 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 미미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중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사항 추가(과태료 200만원 이하)

-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에 따른 반출정화계획서 또는 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양수, 상속, 합병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도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 규제비용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현 행	개정안
- 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1회) 및 수시점검 실시 - 시·도지사 등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 관리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동 지역외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08년 국정감사 및 '09.6.15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 및 필요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9개 업체)이고, 추가 규제 비용이 미미하며, 현재도 수시점검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먹는물관리법 개정안(강화 2, 신설 2)

■ 심사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기관 관리(강화)

- (현행)

-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함
-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를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

- (개정)

-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를 시·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게 함
- 수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위반시 영업정지처분 대상으로 규정, 신규 기술인력 고용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수질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과 신규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조정 및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시 사후신고(강화)

- (현행)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5년, 매회의 연장기간 5년

- (개정)

- 가허가 및 개발허가 받은 자의 명의변경신고의무 신설(1개월 내)
- 샘물허가 유효기간을 최초 3년, 1차 연장 5년, 2차 이후 매 10년으로 함

☞ 샘물 등의 개발허가나 가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신고는 허가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 최초 샘플개발허가 유효기간 축소(3년)의 경우 규제마련의 시급성이 낮고 기존 규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 등 규제하고자 하는 문제해소가 가능한 등으로 최초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5년)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최초 이후 유효기간 5년, 10년 개선안은 원안수용

○ 유통전문판매업·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및 냉·온수기 관리(신설)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제로 신설
-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설치신고 및 주기적 청소·소독의무 신설

☞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은 OEM으로 샘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통사업자가 먹는 샘물의 유통과정에서의 관리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동판매기영업 신설은 먹는샘물의 자판기 영업허용을 위한 법령근거 마련 차원이며, 냉·온수기 관리 강화는 다중이용시설에 한정하여 안전한 먹는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아울러, 먹는샘물과 식품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강구해 볼 것과 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을 부대권고

○ 품질인증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신설)

-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관리, 제조공정관리 등 전과정을 평가하여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혼합음료나 기타음료에는 ‘샘물’이나 ‘생수’ 등 소비자가 혼동할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 현재 자발적 협약을 통한 품질인증제를 정부가 법령화하여 개입하는 품질인증제 도입은 철회권고

-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필름류 포장재의 EPR 대상품목 확대(강화)

- (현행) 합성수지 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폐기물 관리제도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이원적으로 운영
 - ※ EPR대상 필름류 포장재 : 음식료품류 · 농수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 의약품 등을 포장하는 필름류 포장재
- (개정)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1회용 봉투, 의복류 · 위생용종이제품 · 가정용 고무장갑 · 전기/전자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류 포장재를 EPR대상으로 전환

☞ 폐기물부담금 대상 필름류 포장재 중 혼합 배출되는 양이 많은 품목을 EPR대상 품목으로 전환하여 폐기물 재활용비용을 실제 유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EPR대상과 비대상 품목의 구분이 어려워 주민들이 상당부분 혼합배출하고 있어 EPR대상 생산자가 비대상 필름류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으로(혼입비율 약 46%), 대상품목 전환에 따라 생산자의 비용부담이 2011년까지는 다소 증가하나(90원→111원/kg), 2012년 이후에는 폐기물부담금보다 20% 정도 감소(150원→119원/kg)하며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용기의 회수 · 재활용 취급수수료 인상 및 지급비율 조정 등(강화)

- (현행)
 - 제조업자 등이 도 ·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을 지급
 - ※ 취급수수료 : 5원/개~20원/개

-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 이상 지급
- (개정)
 - 취급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용기 규격별로 3원씩 인상하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지급비율 조정(55% 이상)
 - ※ 취급수수료 : 8원/개~23원/개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플라스틱박스 보급 의무” 추가

☞ 재활용보다 친환경적인 유리병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2002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23% 인상된 점 및 유통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취급수수료 현실화(개당 3원 인상)한 것으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비율 조정(50→55%)으로 소매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플라스틱 박스 사용확대로 용기파손 방지, 선별 용이성 증대 등으로 회수체계의 효율 증대가 기대되는 바, 각 업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하여 물가영향과 제도개선을 고려한 환경부의 중재안(2원/3원/7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기업현장 애로 개선과제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수변구역에서의 설치제한 시설(강화)
 - (현행)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공동주택,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 (개정) 공장 추가(단, 농산물 가공업중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
 - * 법률개정 의미: 폐수배출공장 → 공장(폐수비발생 포함)으로 강화
 - * 다만, 현재 고시로 폐수비배출공장에 대하여도 시·군에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반영
- ☞ 수변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입지를 제한하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수비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을 개선권고

- 법제7조제1항 2호 단서조항을 “다만, 제1호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로 농산물 가공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로 개선

○ 하천구역에서의 수질오염원관리(강화)

- (현행) 하천구역의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 *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규정. 한강수계법에는 규정 없음
- (개정) 4대강 통합법에 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에도 적용
 - * 단, 위반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에 대한 규제에서 시장·군수의 책임사항으로 변경

☞ 농약 및 비료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3대강 수계 규제를 한강수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규제에서 시장·군수에게 관리책임을 위임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농약 및 비료의 사용량 감소로 인한 경작손실예상 비용도 연간 3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취수구역 상류 집수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강화)

- (현행)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류 집수구역을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규정. 한강수계법에는 규정 없음
- (개정) 한강수계로 확대적용
 - * 단, 의무(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토록 함

☞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악화에 대비하고자 기존 3대강 수계의 규제사항을 한강수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의 인접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비용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 지정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지등의 수용(강화)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 가능
- (개정) 토지 등의 수용(또는 사용) 범위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으로 확대

* 단, 사업시행전 관할 행정기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사전 동의 및 심의 절차 마련

- ☞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수용(또는 사용) 범위를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변인접지역 중심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생태복원 등을 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사전 동의(심의) 절차도 마련하였고, 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용(또는 사용)으로 추가적인 지가하락 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 명시(강화)

- (현행)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인된 기관에서 에너지회수 기준 측정검사(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
- (개정)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에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 명시
 -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 업무처리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을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명시된 기관 외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환경부장관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진입제한 영향 미미하며,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고형물회수기준(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된 '고형물'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제품의 원료 또는 재활용제품 생산공정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

- 2012년 12월 31일까지 : 60% 이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 70% 이상

※ 고형물회수율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처리비 절감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파쇄하여 음폐수와 함께 처리하는 식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처리 업체의 저가입찰 경쟁으로부터 정상영업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에서 환경부에 법제화를 요구한 사안이며,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259개(공공97개/민간162개) 중 2/3정도는 별도의 시설보완 없이도 고형물 회수율을 60~70% 까지 달성 가능(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하고, 중소기업청, 협회, 경기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수율을 하향조정(70%/80% → 60%/70%)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0)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시 적용할 정화기준 명시(강화)

- (현행)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나, 정화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시장·군수는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

- (개정)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화기준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을 준용토록 함

☞ 지정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외의 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오염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정화기준이 없어, 이로 인한 지하수 관리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시설,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석유류 및 유독물의 제조·저장시설 등)

**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이고,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mg 이하일 것

(3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단계적 조정·부과(내용심사)

-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을 차등 부과

• 먹는샘물* : 4,150원/m²

*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물

• 기타샘물* : 1,300원/m²

*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

- (개정) 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금액으로 부과(전체적 완화)

구분(원/m ²)	현행	'10년	'11년	'12년
먹는샘물	4,150	3,400	2,800	2,200
기타샘물	1,300	1,600	1,900	2,200

☞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음료수·주류 등)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2단계 조치로 3년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에 2,2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단계 계획(2,500원)보다 경제사정을 고려, 하향조정하였고, 부담금 총액이 '09년보다 10% 감액된 규모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담금 변동 예상액(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총액	207	199	190	187
먹는샘물(68개소)	149	128	105	90
기타샘물(10개소)	58	71	85	97

(3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제도 마련(내용심사)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절차,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인증시험 대행기관 준수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등 규정
 -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09.6.9)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고시로 운영하던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인증시험의 수수료(내용심사)
 -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인증
 - 자동차 제작자(30만원), 이륜자동차 제작자(10만원), 개별자동차 수입자(1만원)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 자동차 제작자(3만원), 이륜자동차 제작자(1만원)
 -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 ☞ 감사원 특별감사('07) 결과 행정수수료 규정을 마련토록 지적되어, 인증서 발급에 따른 행정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였고,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약 17억원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강화)

- 자동차 분야의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항목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
-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 신설
 - 측정장비는 광원·검출부,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주제어 장치, 카메라, 교정장치, 이동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운행중 차량에 대한 검사가 원격측정장비(RSD)를 이용한 자동측정 방식으로 결정('07.7)되어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원격 측정기기에 대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통한 형식승인이 필요하여 측정기기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성 및 중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강화)

- 정도검사 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에 검정자동차 1대를 포함함

☞ 정도검사(법 제11조)를 통해 원격측정장비(RSD)가 형식승인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행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함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강화)

- (현행)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40(40)mg/l
- 총인(T-P) : 4(8)mg/l ('13년부터 2(2)mg/l)
- * ()는 농공단지

- (개정)

- COD : '13년부터 I, II지역은 20(40)mg/l로 강화
- T-P : '12년부터 I지역 0.2mg/l, II지역 0.3mg/l, III지역 0.5mg/l로 강화
- *I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 *II지역 : COD, 총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III지역 : I, II지역 외의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유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총인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배출업소의 부담은 업소당 연간 약 110만원(분담금 증가) 정도로 추정되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상수원 주변도로의 유해물질 등 수송차량 통행제한 도로·구간(강화)

- (현행) 28개 통행제한 도로·구간

- (개정) 29개 통행제한 도로·구간(서울시의 광진교(1.1km)를 통행제한 도로·구간에 추가)

☞ 5개의 취수장이 인접한 광진교 상에서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유발할 수 있는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로 인근 잠실대교등으로 우회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환경정보 공개, 검증, 과태료 부과 등(신설)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대상기관, 공개 내용, 공개 방법 및 절차, 환경정보의 검증,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 동 규제는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과 친환경기업 및 녹색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촉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공개 규정(제25조)을 개별법에 구체화하는 것임. 우선적용 대상인 친환경기업(185개소)의 99개소(53.5%)가 기 공개중이며 기존자료를 가공하여 공개하므로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하고,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36)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강화)

-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BOD : 10mg/l, COD : 40mg/l
 - TP : 2, 4mg/l, 총대장균군수 : 3,000 개/ml
- (개정) 1일 하수처리용량 500m³ 이상인 시설 기준강화
 - BOD : I, II 지역은 5mg/l로 강화
 - COD : I, II 지역은 20mg/l로 강화
 - T-P : I 지역 0.2mg/l, II 지역 0.3mg/l, III 지역 0.5mg/l로 강화
 - 총대장균군수 : I 지역은 1,000개/ml로 강화

* I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 II지역 : COD, 총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

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III지역 : I, II지역 외의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방류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하여 1일 처리용량 500m³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시설개선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오수배출가정의 부담증가는 연간 약 4,4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공정위, 중기청 이견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7)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규정(내용심사)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의거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위원회('08.9~'09.8) 자문을 거쳐 적정 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고, 피규제자가 소수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련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격 설정(강화)

- 탄화시설 중 숯 제조시설(30m² 이상)은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사업장인 경우 배출시설로 분류하도록 개선
 -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안의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
- ☞ 숯 제조시설 중 미판매 시설은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등에 따른 환경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판매와 관계없이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최대 39억 1,000만원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설정(강화)
 - 시멘트 제조시 사용하는 연료 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0.5mg/Sm³ → 0.3mg/Sm³로 개선
 -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 설정
- ☞ 현재 국내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업체가 강화된 총탄화수소,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3,4호기와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였으며, 피규제자가 9개 시멘트 제조업체 및 1개 발전소이고, 자체심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금지행위(강화)
 - 시멘트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광·채취공정을 추가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을 보완·개선
- ☞ 시멘트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일부 관리기준 미흡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9개 시멘트

제조업체이고, 규제비용이 약 13억5,000만원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운행차배출허용기준(강화)

- 현행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개선에 예상 부적합률이 약 15%인 미국 환경청(EPA)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5년부터는 예상 부적합률 약 25%인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배출허용기준에 준하는 기준 적용

☞ 배출허용기준 제도 도입 시 미국의 '83년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사의 제작기술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고, 부적합 차량의 대부분(약 83.6%)이 기본정비만으로 재적합 가능하므로 원안의결함

(39)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상향조정(강화)

- (현행) 재활용 목표율을 2년 주기로 설정
 - '06.1.1부터 '07.12.31까지 : 68%
 - '08.1.1부터 : 70%
- (개정) 2010.1.1부터의 재활용 목표율 설정 : 75%

☞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인 석탄재의 매립억제, 재활용용도 적극 발굴 및 재활용시설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현재 약 70%의 석탄재가 콘크리트 혼화재 및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08년 기준)되고 있으며, 규제강화로 발전 사업자들의 재활용비용 추가부담이 있지만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연 66억원) 상황으로 피규제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0)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조정(강화)

- (현행) 폐지, 폐유리 이용 목표율
 - '06.1.1부터 '07.12.31까지 : 70%,
 - '08.1.1부터 : 72%
- (개정) 2010.1.1부터의 재활용 목표율 설정
 - 폐지 : 80%
 - 폐유리 : 75%

☞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의 매립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폐지 및 폐유리의 이용목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폐지는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분리수거제도 정착에 따라 그 사용량이 현재 80% 이상 유지되고 있고 ('07년말 : 81%, '08년말 : 83%), 폐유리는 '06년 이후 이용실적이 73%이나 현재 기술·설비 수준으로 75%까지 재활용 가능하며 천연원료 사용시보다 원가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피규제자 및 관계부처 이견 없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4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폐수배출시설 등 입지제한(내용심사)

- (현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금지
- (개정) 입지금지 시설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추가

☞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건설폐기물 관련사항이 2005년 1월

1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른 법령정비 사항으로, 기존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입지규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규제수준이 현행과 동일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기상청

•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321, jmy59@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기상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신설 1, 내용심사 4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3건에 대하여는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기상청의 총 신설 규제는 1건임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5. 13~5.20일	예비심사	비중요규제 1	내용심사 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9.16~23일 제216회 규제개혁위원회 (10. 8)	비중요규제 2 개선권고 2	신 설 1 내용심사 3
계	-	비중요규제 3 개선권고 2	신 설 1 내용심사 4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상법 시행령(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기상청장 외의 자(단, 국방상 목적 및 등록된 경우 제외)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51조)에 따라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가.
- 나. [별표]
- 다. 부과대상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17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제한명령 위반	50	80	100

- ☞ 동 규제는 「기상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피규제자가 소수**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실적 없음

** 14개 민간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기상예보업 등의 인력·시설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인력
 1. 기상예보업은 기본면허인력 기상예보사 2명을 포함한 상근기상인력 3명 이상. 단, 특정 수요자 대상의는 경우 기본면허인력 1명 포함 상근인력 2명 이상
 2. 기상감정업은 기본 면허인력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3. 기상권설팅업은 상근 기사인력 2명 이상
- 시설 : 사무소(소유 또는 임대), 컴퓨터 1대 이상

☞ 일반 수요자 대상 기상예보업자의 인력기준 하향(3명 이상 → 2명 이상)

라. - 기본면허인력 1명 포함 상근인력 2명 이상으로 개선 권고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을 위한 필요 자격증(내용심사)

- 기상예보사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

☞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기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한 자격증으로 판단

○ 기상예보업자가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신설)

-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시에는 제출자료의 내용, 기한 등을 명시 서면으로 함

☞ 자료보존 의무기간 조정(3년 이상 → 3년)하고 제출자료의 범위를 최소화·명확화할 것을 개선 권고

* 예) 국민적 피해 규명 및 예방을 위해 수집이 불가피한 자료

○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20조 제2항에서 위임된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법 제6조 관련인력기준 미충족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1개월 이상시설기준 미충족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법 제14조 관련 시정요구 미준수	3회 이내 경고	4회 사업정지 1월	5회 이상 사업정지 2월
법 제20조 관련 거짓감정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감정지연, 조사 불충분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의뢰인에 관한 개인 정보 누설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면허취소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면허취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제8절 | 교육·과학 및 문화 분야

•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321, jmy59@pmo.go.kr)

1. 교육과학기술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신설 16, 강화 4, 내용심사 2건 등 총 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17건은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총 신설규제는 16건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제204회 규제개혁위원회 '09. 2. 19	개선권고 1	강 화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4회 규제개혁위원회 '09. 2. 19	비중요규제 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 화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 3. 30~4. 6	비중요규제 1	강 화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09. 3. 30~4. 6	비중요규제 1	내용심사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08회 규제개혁위원회 ('09. 6. 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6. 22~6.26	비중요규제 1	신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7. 2~7. 3	비중요규제 1	신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13회 규제개혁위원회 (‘09. 8. 27)	원안의결 1	신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10. 22~10.23	비중요규제 10	신설 10
계	-	비중요규제 17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6 강화 4 내용심사 2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대학 설립인가 요건(강화)

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개설분야의 학생 충원·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 여부,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의 명확성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 여부,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의 명확성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서”를 추가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나, “개설분야의 학생 충원·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진입제한 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②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금액 상향조정

- 대학(현행 100억원 → 150억원)

- 전문대학(현행 70억원 → 100억원)
- 대학원 대학(현행 40억원 → 60억원)

☞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14조제1항)은 신규 학교 법인에 대한 진입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신설 3)

■ 심사내용

○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현행보다 앞당겨서 수립·공고하도록 함(강화)(실시기일 30일 전까지 →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입학전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입학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운영 등(신설)

-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2.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자율형사립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

1.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 납입금의 5% 이상
2. 도 소재 고등학교 : 납입금의 3% 이상

☞ 피규제자는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립고등학교로서 약 200개소로 추정되고,

* 자율형사립고 지정계획(누계) : 30개('09) → 60개('10) → 100개('11)

- 법인전입금 부담 등을 규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가 부담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6개)는 납입금의 2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부터하고 있음

○ 자율형사립고 등의 입학지원 제한(강화)

- (특목고)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의 학생모집을 광역단위로 제한

* 교육감 합의결과('06.6)를 법제화하는 것임

- (자율형사립고) 광역단위 모집, 중복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납입금의 2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하는 학교는 교과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음

☞ 입시경쟁 및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시 입학전형 지원(지역단위 모집 등)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요건인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납입금의 25% 이상”)을 보다 완화할 것과, 자율형사립고 뿐만 아니라 과학고·외고·국제고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되면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할 것을 개선 권고

○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 방법(신설)

-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구술하는 방식의 면접실시를 금지

-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함

☞ 입시경쟁 및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시

입학전형 방법(필기고사 금지 등)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이상 선발 의무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이하 '학교운영 특례학교')에 대해 지정·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 다만,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학교운영 특례학교'가 법령위반 등 지정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경우 지정기간(5년) 종료 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피규제자는 '학교운영특례학교'로서 286개소*이며,

* '08.9월 현재 지정·운영중인 학교 수

- 규제비용은 지정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학생 및 교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취소시 일반학교로 전환할 계획임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학원 등의 표시·게시 의무(강화)

- ① 등록·신고 및 표시·게시 의무사항에 기타경비 추가
 -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
 - ※ 학원비 등=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기타경비(예 :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 ② 등록·신고 및 표시·게시 의무사항에 학원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추가
 - ③ 초과징수 금지 기준으로 '표시·게시한 학원비 등' 과 함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학원비 등' 을 추가
 - ※ 위반시 제재
 - 표시·게시의무 위반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과 징수금지 위반시 :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④ 학원 등에 대한 자체 게시 의무와 별도로 교육감이 학원 등에서 등록·신고한 학원비 등을 교습과정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 범위: 학원 등의 명칭,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학원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 ☞ 학생·학부모들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기타경비에 관한 사항과 학원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신고 및 표시·게시의무 등을 추가하고,

- 지역별 학원 정보 등 학원 선택에 필요한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학원비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피규제자 수 및 규제준수 비용 : 피규제자는 학원 등으로서 약 17만개소이고, 등록·신고 및 표시·계시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는 경쟁제한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며, 현재 공정위에서도 수강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07.7)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비영리 장학법인의 자료제공(내용심사)

-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보유 장학기금 100억원 이상의 장학법인을 말함

※ 대상이 되는 장학법인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9.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 비영리 장학법인의 학자금 관련 자료를 ‘국가장학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률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비영리 장학법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 제정안에서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임

- 피규제자 수 및 규제준수 비용 : 피규제자는 보유장학기금 100억원 이상의 장학법인으로서 약 86개소*이고(*전체 민간 장학법인 2,059개소의 4.1% 수준)
- 자료제공에 따른 행정비용을 규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검정도서의 가격을 발행자가 결정(내용심사)
 -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상한액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가격결정 하는 안(제206회 본회의('09.4.9))의 수정안
- ☞ 검정도서의 가격을 발행자가 결정 하게하는 교과부 수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6)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위한 서류제출·시정명령 이행 및 보고 의무(신설)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평생교육법 개정, '09.4.17)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 인정 등 행정관리 절차 마련
-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을 공표토록 하는 것도 평생학습계좌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됨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신설)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1, 2호 이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보수가 교사의 봉급체제와 유사하고, 정규수업을 담당하므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받게 되는 2급정교사 자격은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임용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자율학교 공모교장 자격 및 규모제한 등(신설)

- ① (자격기준)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교감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 원안동의

- ② (규모제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수를 자율학교수의 15% 이내로 제한

☞ 원안동의

* 2년 동안 일몰로 하고, 그동안 교장공모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부대권고

③ (연수의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특별연수 이수

☞ 원안동의

(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0)

■ 심사내용

○ 서울대학교 정관 기재사항(신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회, 학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서울대학교와 부속법인 기타기관의 관계,
10.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서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항,
14.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의 서울대학교 명칭과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사용 금지(신설)

○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 필요(신설)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과부장관의 승인 필요(신설)

○ 감사 중 1인은 교과부장관의 추천으로, 1인은 평의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과부장관의 승인 필요(신설)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대의 임원이 될 수 없음(신설)

○ 서울대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 필요,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교과부장관에 신고(신설)

-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가능(신설)
- 서울대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시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함(신설)
- 서울대 총장은 4년 단위로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며, 교과부장관은 대학운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결과를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신설)
- ☞ 법률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신장되므로, 정부는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본 제정안은 학교 내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서울대학교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항인 점, 유사입법이 규정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문화체육관광부

•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02-2100-2312, hsg36@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12건, 내용심사 7건 등 총 4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1건, 비중요규제 29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11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은 철회권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도 총 신설규제는 21건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	원안의결 3	강 화 3 *비중요 3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2.1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4.6)	원안의결 3	신 설 3 *비중요 3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40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6.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5, 강화 1 *비중요 4, 중요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9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6.1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 화 3 *중 요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3)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3)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저작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9)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7.22)	원안의결 2	신 설 2 *비중요 2
관광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9.11)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0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8.27)	원안의결 6	신설 2, 내용심사 3, 강 화 1 *중요 2,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연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8.27)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9.23)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16)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12.15)	원안의결 1	신 설 1 *비중요 1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10.16)	원안의결 2	신 설 2 *비중요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1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12.17)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5, 내용심사 2 *중요 4, 비중요 3
18개 법령	-	원안의결 32 개선권고 5 철회권고 3	신 설 21 강 화 12 내용심사 7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강화3)

■ 심사내용

- 10년 이상 지난 유기사설 등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단축(연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등 유기사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강화)

* 위반시 행정처분(사업정지 20일·1개월, 취소)

☞ 유기사설 등의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직결되는 바, 안전관리가 취약한 유기사설 등에 대해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등록 요건 중 검사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강화)

☞ 안전성 검사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검사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적용토록 강화(강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국외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교포의 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거주 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자 등에 대해 출입제한을 하고 있음(연간 2~3명)

(2) 전통무예 진흥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요건(내용심사)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법정 과목을 이수한 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의 이수증을 취득한 자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08.3월 의원입법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09.3.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취득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자격취득에 따른 혜택이나 의무부과는 없으므로 원안의결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 전담부서 인정 및 취소(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력 제고를 위해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창조성이나 창작영역은 개인역량으로 간주되어 기업자체적으로 창작개발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업이 창작개발 부서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창작개발력이 산업내부에 축적되고 기업이 창작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를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치평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신설)

☞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가 아닌 무형자산인 콘텐츠를 담보로 투·융자 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가치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 있는 콘텐츠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수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및 취소(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로, 경제·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문화기술개발사업자이거나 미래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 문화산업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우수한 문화상품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글로벌 성공작 창출에 의한 우리 문화산업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신설 5)

■ 심사내용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결격사유를 강화(강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

- 체육지도자 활동 중 도덕성, 윤리성 등의 문제로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체육지도자는 경기력 향상 등 실기방법의 지도와 함께 간접적으로는 인성·예절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지도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지도활동의 특성상 부적격 지도자의 진입 제한 및 퇴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령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또는 자격검정 중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 자격취득 이후 이루어지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후 징계를 받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자격취소 요건 중 '1. 체육지도자 활동 중 도덕성, 윤리성 등의 문제로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결격사유에 있어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교육활동과 관련된 형벌의 경우로 한정(그 범위는 법제처와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시 경기규칙 변경내용, 새로운 체육이론 습득 등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러한 보수교육은 자발적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무적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항은 철회권고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신설)

구분	급수	취득과정
스포츠 지도사	1급	서류심사-구술시험-실무연수-자격취득
	2급	서류심사-필기시험-실기검정-실무연수-자격취득
건강운동사	-	서류심사-필기시험-실기검정-실무연수-자격취득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1급	서류심사-실기검정-실무연수-자격취득
	2급	서류심사-필기시험-실무연수-면접-자격취득
노인스포츠 지도사	-	서류심사-구술시험-실무연수-자격취득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	서류심사-구술시험-실무연수-자격취득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증요건과 절차·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실무연수과정을

도입한 대신 이론연수과정을 폐지하여 자격취득응시자의 비용과 시간부담을 완화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체육지도자의 성격상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실무연수가 반드시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과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 자격검정과 실무연수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 연수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자격검정과 연수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검정기관이나 연수기관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격검증기관과 연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의 근거가 현행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부적합한 연수기관 등을 당해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신설)

현 행		개정안		비고
명칭	자격요건	명칭	자격요건	
1급, 2급 경기지도자	*1급 :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 지도경력, 2급취득 후 1년 이상 경기지도경력 *2급:체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이거나 대학졸업자로서 4년 이상 경기경력	스포츠 지도사 (1급전문, 1급, 일반 2급)	*1급전문 : 2급취득 후 5년 이상 선수지도경력 *1급일반 : 2급취득 후 5년 이상 일반이나 선수지도 경력 *2급 : 고등교육 · 평생교육기관에서 법정교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	통합
2급, 3급 생활체육 지도자	*2급 : 체육분야 학사학위이거나 3급취득 후 선수 · 체육 관련 행정 · 연구 · 지도경력 3년 이상 *3급은 학력 · 경력제한 없음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분야 박사 · 석사학위이거나 2급취득 후 선수 또는 체육관련 행정 · 연구 · 지도경력 3년 이상	건강 운동사	고등교육 · 평생교육기관에서 법정교과목 학점 취득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명칭	자격요건	명칭	자격요건	
-	-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1급, 2급)	*1급: 2급 자격취득 후 선수경력·지도경력 2년 이상 *2급: 고등교육·평생교육기관에서 법정교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	신설
-	-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2급 스포츠지도사 및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중에서 구술시험과 실무연수를 거친자	신설

☞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대상·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각각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하여 기 지정된 주최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하고, 주최단체가 해산하거나 법인설립이 취소된 때 등 일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신설)

※ 규제 신설배경·이유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운동경기를 안정적으로 책임있게 주최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주최단체로 지정될 경우 운동경기 개최실적에 따라 상당액의 수익금을 배분받게 됨(총수익금의 10%)
- 그러나 현재 주최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주최단체가 부실화되어 운동경기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수익금을 배분하게 되어 주최단체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음(주최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발매비율에 따라 배분, 외국 프로경기의 수익금은 균등배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주최단체에 대한 지정취소의 근거가 현행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 미비점 보완하는 것으로 부적합한 주최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부적합기관의 퇴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3)

■ 심사내용

-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별도(멀티방)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추가(강화)

* 준수사항 추가 : 영업소내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금지,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금지

** 시설기준 추가 : 투명유리창 설치,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보이는 곳에 배치, 영업소 출입구 및 청소년실 출입문에 ‘청소년출입가능업소’·‘청소년실’ 표지판을 각각 부착(청소년실 설치한 경우)

※ 멀티방 :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연습·영화감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형태(청소년이용불가, 전체이용가 모두 제공가능)

☞ 복합유통게임장(멀티방)은 청소년이용불가와 전부 이용가능 콘텐츠가 한 기기에서 제공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출입가능한 곳을 별도시설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청소년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경품제공 가능 게임기기 및 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강화)

* 5.2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다양한 대안 검토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

〈참고〉 게임제공업의 현황

종류	제공콘텐츠	청소년출입여부	영업시간 제공
일반게임 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가능	청소년출입금지	오전9시~오후12시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가·불가게임 가능 (종류에 따라 차이)	일반인, 청소년출입	종류에 따라 차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이용가·불가게임 가능 (접속시청소년, 성인 구분)	일반인, 청소년출입	24시간* (청소년출입만 09시~22시)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가 게임 가능	일반인, 청소년출입	24시간* (청소년출입만 09시~22시)

* 22시 이전 입장 후는 익일 09시까지 게임장내에서만 이용가능(출입제한)

-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현재 24시간→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제한)과 관련하여, 규제의 목적(불법 환전행위)과 규제의 수단(영업시간 제한)의 불일치, 청소년게임업소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후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분석한 후, 재심의키로 함

* 경품제공기기 20% 이상일 때

재심의결과는 조속한 불법사행행위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인정하되, 1년 존속기간 설정(일몰제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인정 등(강화)

- (서류)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업무의 사업계획서, 정관, (아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제작 및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와 인정신청 사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한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의토록 하였음. 재심의결과는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삭제한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조 :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함 → 표시장치는 성능만 인정하면 됨.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문제임

(6)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언론사의 계열회사(언론사닷컴)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 중 주간계재 기사 건수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터넷신문에 해당토록 함(강화)

*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라는 피해구제수단을 가지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 제공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는 특칙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따라서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언론사닷컴*에 신문법상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성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언론계열회사(약 15개사)로 제한한 점, 규제비용은 등록에 제출되는 서류와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의 계열회사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신설)

※ 언론중재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15조제8항)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전자기록 보도배열 보관시 보관 대상은 인터넷신문은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게재된 기사,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 및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의 단계구조 중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 전자기록에는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해당 화면에서 보도가 배열된 위치,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을 포함
-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하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배열 전자기록 보관의무 면제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의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 및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로 피해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09.2.6)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과 절차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인터넷신문(약 35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약 14개)로 제한한 점, 경쟁 제한적 요소가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인터넷신문 : 오프라인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않지만 인터넷공간을 활용해 뉴스서비스를 하는 매체로서 1,300여개 등록

(8) 저작권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함에 있어,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신설)

※ 「저작권법」 개정안('09.4.22 공포, 법률 제9625호)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i)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ii)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정(account) : 특정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허가받은 사용자의 식별, 관리 및 기밀보호를 위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생성하는 일종의 이용권리 계좌를 말하며, ID, Password, 정보접근 권한정보 등

* 게시판 :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 동 규제는 법개정(법률 제9625호, '09.4.22 공포)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써 법에서 위임사항인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기간에 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정지기간을 차등화한 것임. 피규제자는 계정정지에 관하여서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국내 헤비업로더*(현재 약 1,000명 내외 추정)이고

*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 웹하드, P2P 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에 대해서는 포털 및 웹스토리지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나, 주된 명령 대상은 불법복제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스토리지 사업자* 150여개)로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웹스토리지 :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임대하며 다수 사용자의 공유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 용도와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업체로는 (주)나우콤의 클럽박스, (주)아이팝미디어의 아이팝 등

(9)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발행자 등에게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하고, 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신설)

* 납본제도 : 출판사 등이 간행물을 출판하여 정부 및 기타 기관에 납본하는 제도로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부, ‘도서관법’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국회도서관법’에 의거 국회도서관에 2부를 납부(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일괄적으로 납본을 받아 납본처로 송부)

☞ 도서관법이 09.3.25. 개정('09.9.26 시행)되어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규정에서 위임한 납본대상에 대해 ‘디지털 파일형태’의 선정·종류·형태, 부수와 보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는 출판사 등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여 납본하는 자(총 1,000개 출판사 업체), 규제비용은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과 관련하여 비용상승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결과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온라인 자료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온라인 자료제공자는 이에 협조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집자료가 판매용(일부 또는 전부)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함(신설)

* 온라인자료(디지털) 납본(수집)제도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를 선정하여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이미 인쇄자료는 납본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온라인상의 디지털문서나 자료는 납본의무가 없는 상태임)

☞ 개정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온라인 자료수집에 따른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디지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 피규제자는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는 자(6,341개 업체)이고, 규제비용은 향후 출판업계와 협의 조정하여 선정 및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비용 산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0) 관광진흥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도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추가(신설)

* 현재 법령규정으로는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등록 및 관리업무의 민간 위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자격인정증 발급업무를 민관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현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연간 3,000여 건) 및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에는 단순행정 업무로, 자격요건 여부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예정) 대신 문광부에 등록제도를 마련(현황과약 등 목적)한 점, 피규제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자로 현재 3만 883명으로 추정되고 등록에 따른 규제비용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방법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6의 2와 같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담당직원은 연간 8시간 이상 한국관광공사의 교육을 받도록 함(신설)

- ☞ 동 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의료관광 교육기관의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정부가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양성 지원할 필요성은 있음. 다만, 객관성·투명성을 위해 사전에 마련할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준 중 시설·교육과정 시간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 의료관광 교육·지원제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사토록 하였고, 제40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8.27) 심사시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 의료관광 교육·지원제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사토록 한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사대상 규제가 없어 원안의결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 삭제로 시행규칙 제21조의 4, 별표 6의 2 삭제

〈당초안〉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교육의무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방법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
- ②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6의 2와 같음(시행규칙안 제 21조 4)
- ③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담당직원은 연간 8시간 이상 한국관광공사의 교육을 받아야 함(시행규칙안 제21조의 2)

〈수정안〉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 지원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 ② 시행규칙안 제21조 4 삭제(별표 6의 2 삭제)
- ③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방법 조항 삭제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삭제)

-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우수 숙박 시설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지정받은 우수 숙박시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별표 6] 우수 숙박시설 지정기준

1.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금할 것
7. 성인방음을 제공할 경우,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관광진흥법 개정('09.3.25, '09.9.26.시행)으로 법에서 위임한 우수 숙박 시설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숙박업소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숙박업자나 소비자에게 추가되는 비용·요금인상 요인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원안의결

-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음(신설)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39조의 2 별표 10의 2)
 - 정원 및 동시수용 인원 제한
 -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
 - 대장균균(5개중 양성 2개 이하/10ml) 등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 별표 2 및 별표 3)

〈행정처분기준 : 별표 2〉

-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0일, 3차:사업정지 1개월, 4차:취소
(신고업종은 사업정지 3개월)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3〉

- 종합유원시설업 : 2,000만원, 일반유원시설업 : 1,600만원, 기타 : 1,200만원

- ☞ 물놀이형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은 입장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합리적인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안전·위생기준(준수사항)

- 입장자 정원, 동시 수영가능 인원, 간호사 배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물의 여과기 통과횟수 등 모든 기준은 현재의 수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동일하며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선진국의 경우 수질기준은 수영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어린이 등의 입장에 관한 조항, 응급처치 기준에 근거한 안전 요원 배치 조항, 안전시설과 기구의 설치 조항, 안전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있음

- 물놀이형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유사한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위반행위 수준으로 규정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준공설계도서등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내용심사)

☞ 동 규제는 '09.3.25. 공포된 관광진흥법('09.9.26. 시행) 제58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령상 준공처리 절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어서 발생하였던 공공기반시설의 관리·운영주체, 국가귀속 등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여행업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강화)

☞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여행업자가 아닌 업종별·지역별 협회이므로, 동 규제는 피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보험증서 제출 및 사전고지의무를(추가) 부과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등록관청에만 제출 → 협회, 등록관청 2곳에 제출(여행업 업종별·지역별 협회)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등 4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일정 시작 전에 여행객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강화)

☞ 동 규제는 '09.3.25.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09.9.26. 시행)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조항(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상에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행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여행지 안전정보’에 대한 세부내용과 ‘여행일정 변경시의 여행자의 사전동의’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2) 공연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신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 4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한 경우
6. 제3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안전진단기관에 인가한 수수료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현행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법령이 미비된 상태임. 또한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연장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결과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영화의 광고·선전물 관련 조항 삭제(신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선전물 중 예외를 두었던 배너 형태의 광고선전물*도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 인터넷상에서 띠모양으로 게시하는 형태의 광고나 선전물

☞ 동 규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09.5.8 공포)됨에 따라(법 제32조 단서 삭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배너형태의 광고 선전물이 청소년유해성 여부 확인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동 예외를 삭제하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지역 제한(신설)

-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폐지(’08.10.30) 되고 ‘제한관람가’ 등급제도 신설의 법개정(’09.5.8)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을 공중에 시청 제공할 수 있는 장소(소극장) 규정을 신설

* 시행령에서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됨

〈시행령 신설내용〉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4곳의 지역 또는 시설을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상영 소극장 설치 금지지역 또는 시설로 지정

- ①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④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과 동일

- ☞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영역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4곳에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유해 비디오물에 대한 접근방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사실상 등급분류 거부 → 유통금지)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으로 전환

○ 비디오물의 표시의무로 분류등급의 '내용정보' 추가(강화)

- 비디오물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주제·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대사·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에 대해 위험성 등을 보통·다소높음·높음·매우높음 등 4단계로 나누어 표시함(비디오물의 앞면 하단에 표시)

* 위험성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표시에서 제외

- ☞ 비디오물의 표시의무제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09.5.8 공포)으로 당초의 '분류등급' 외에 '내용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이에 따른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비디오물의

선정성·폭력성·공포·모방위험 등 구체적 내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지정하는 사항을 2년으로 강화(강화 1)
- *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 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투·융자 활성화를 도모

☞ 동 규제는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행규정이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해도 적정하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재지정 경과기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6개월→2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결과(국민권익위) : 가치평가기관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지나서 재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행정제재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해도 적정성을 벗어남

(15) 관광진흥법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내용심사)

- ☞ 현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연간 3,000여 건) 및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법령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등록절차〉

- 국외여행인솔자 소양/양성 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 및 등록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등록 및 발급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을 현행 4회에서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함(강화)

- ☞ 동 규제는 카지노사업자가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6월말부터 12월말까지 4회 분할납부하던 방식을 당해연도 6·9월말까지 2회 납부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음연도 상반기 정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납부시기와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원안의결

* 연간 납부액 : 151,672백만원

(1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해 출연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통계관리, 시·도의 업무지원, 공공미술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동 규제는 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신설되는 공공미술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자체 및 미술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신설)

☞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공제사업 관련 타법률 사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18)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5,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신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09.7.31)에 따라 신설된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절차 등 규정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등록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뉴스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말함(신문법 제2조 제5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신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09.7.31)에 따라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 공개, 제공 또는 매개 기사와 독자생산 의견의 구분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첫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고, 동일서비스 영역에서 기사의 제공 언론사 병기, 언론사 제공 기사와 독자 생산 내용의 구분 등을 규정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뉴스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동 사업자의 준수사항(기사배열 기본방침 등) 구체적 실행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사업지위 승계 신고(신설)

- 신문 사업이나 인터넷신문사업의 상속, 매수, 합병 등의 경우 영업승계 시 이에 따른 신고방법과 제출사항 등을 규정

- ☞ 동 규제는 개정된 신문법에서 등록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사망·양도·합병 등의 사유로 영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인터넷신문 요건(내용심사)

-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지만 주간 자체생산기사가 30% 미만 1% 이상인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

☞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현재와 같이 자체생산기사 30% 이상일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언론 피해 등)하였으며 그 규모(30% 미만 생산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부족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진철회

○ 등록제외 대상 정기간행물(내용심사)

- 발행면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거나, 총 발행면의 60% 이상의 면에 자료를 게재하면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제외대상에서 제외(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 등록 제외

☞ 학습자료 및 상업광고 내용이 60% 이상일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언론 피해 등)하였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진철회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신설)

-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이 사실상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에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요건(확인사항 형식)〉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사실상 발행되지 않는 것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생산기사를 포함한 새로운 기사가 6개월 이상 게재되지 않은 때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6개월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않는 때
4.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의 부존재(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폐쇄(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동 규제는 단순한 폐업에 대한 사실확인 규제임에도 그 내용을 보면 직권등록 취소 사유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규정된 측면이 있어 규제가 부적정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 ①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사실상 발행되지 않는 것
⇒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후 6개월 이상 등 객관화 및 완화가 필요
- ②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생산기사를 포함한 새로운 기사가 6개월 이상 게재되지 않은 때
⇒ 직권등록 취소사유보다 더 강화된 요건으로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않은 때 등으로 완화할 필요
-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6개월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않는 때
⇒ 직권등록 취소사유보다 더 강화된 요건으로 새로운 기사가 1년이상 게재되지 않은 때 등으로 완화할 필요
- ④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의 부존재(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폐쇄(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⑤호는 대표자 존재 또는 주사무소 형식 요건으로서 실제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도 대표자가 없다고 직권말소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과잉해석의 소지가 있어 별도 요건이 아니라 상기 ① ② ③항과 동시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발행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수용자 입장, 공익 등을 고려하여 발행정지에 갈음하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설(신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 등을 발행한 경우	5억원 이하
2.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5억원 이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
4.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10억원 이하
5.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10억원 이하

☞ 당초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기간 등을 고려한 일정 액수 부여방식에서 영업정지 기간은 별도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 등을 발행한 경우	2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경우	15만원
3.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 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2만원
4.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10만원
5.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10만원

제9절 | 보건복지·여성 분야

• 집필자 : 전창현 사무관(Tel. 2100-2317, chjeon@pmo.go.kr)

1. 보건복지가족부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안,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시행령 등 6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4건, 강화 57건, 내용심사 49건 등 총 18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0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5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신설규제는 총 74건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21) 제202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2. 5)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3, 철회권고 2	신 설 4 강 화 13 * 중요 8, 비중요 9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21) 제202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2. 5)	원안의결 9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내용심사 12 * 중요 6, 비중요 6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 14) 제39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2. 5)	원안의결2 개선권고1	신 설 2 강 화 1 * 중요 2, 비중요 1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안	예비심사 (2009. 2. 11) 제204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2. 19)	철회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2. 18)	원안의결 15	신 설 15 * 중요 3, 비중요 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09. 2. 18)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 비중요 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2. 18)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예비심사 (2009. 3. 1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요양급여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1)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실험동물법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9. 3. 11) 제207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3. 19)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1 * 중요 6, 비중요 5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1) 제206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4. 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내용심사 4 * 중요 3, 비중요 1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 제정안	예비심사 (2009. 4. 1) 제206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4. 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 설 8 * 중요 4, 비중요 4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8)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8)	원안의결 2	강 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중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3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20) 제39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5. 21)	원안의결 4	강 화 4 * 중요 2, 비중요 2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13)	원안의결 10	강 화 10 * 비중요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13)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이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21)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3	신 설 3 * 비중요 3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제40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6. 11)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강 화 4 * 중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4)	원안의결 6 강화 3	신 설 3 * 비중요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11)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1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제210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7. 7)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 설 2 * 중요 1, 비중요 1
요양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신의료기술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0)	원안의결 3	강 화 2 내용심사 1 * 비중요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7) 제40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7. 23)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1	신 설 2 강 화 4 내용심사 8 * 중요 1, 비중요 1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9) 제40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8. 13)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 설 2 * 중요 1, 비중요 1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7. 22)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정신요양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예비심사 (2009. 8. 24)	원안의결 4	신 설 4 * 비중요 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4)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31)	원안의결 5	신 설 4 강 화 1 * 비중요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6) 제40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10. 8)	개선권고 3	신 설 3 * 중 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한의학육성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4	신 설 4 * 비중요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5)	원안의결 3	신 설 3 * 비중요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20) 제223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12.1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2	신 설 3 강 화 2 * 중요 3, 비중요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2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1. 24)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2. 8)	원안의결 1	강 화 2 *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55 개선권고 16 철회권고 9	신 설 74 강 화 57 내용심사 49 * 중 요 45

나. 2009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신설4, 강화13)

■ 심사내용

○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한 식품과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동일한 식품 (동일사 동일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로 신고 수리해 주고 있는데, 이에 동일수입자요건을 추가(신설)

☞ 수입 목적외의 용도로 부적합하게 수입식품을 사용 ·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수입업자를 바꿔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자도 동일한 경우에만 서류 · 관능검사로 대체해 주도록 강화하는 것으로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등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성적서 허위발급 등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능력관리 평가결과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함(신설)
 - ☞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하는 등 문제사례가 발생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자가품질검사기관이 검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식약청장과 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함(신설)
 - ☞ 피규제자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100개소,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된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하여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기준·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강화)
 - ☞ 국내 제조사가 외국에서 반가공품 수입시 서류검사만 받아 식품안전에 문제가 초래되어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자가품질검사 비용이 1회당 5만4,000원 정도로 업체의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위해 식품 차단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고, 피규제자의 특별한 이견도 없어 원안의결
- 식약청장이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 과정 중 이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금속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 자석, 여과망 등 이물을 검출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강화)
 - ☞ 최근 새우깡에서 쥐머리, 참치캔에 칼날이 나오는 등 식품 이물질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물질 감지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규제준수 비용 341억원), 시설

기준에 이물질 감지장비 설치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준수 사항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를 신고받은 경우, 식약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함(강화)

☞ 최근 식품안전 사고에서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을 식약청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증거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약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함(강화)

☞ 대기업에게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2년마다 전항목 실시(현행은 ‘3년마다’)(강화)

☞ 피규제자수는 전체 관련업소 중 지하수 사용업소(7.9%)로, 약 6만5,649개소이며, 규제비용은 약 28억원으로 추정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시 및 수질검사 미실시시 과태료 금액 인상(강화)
 -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처음 발생시 : 과태료 300만원
 - 2회 이상 발생시 : 과태료 500만원
 - ※ (현행)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과태료300만원
 -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과태료 50만원
 - ※ (현행) 과태료 30만원
- ☞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등)는 판매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등 항목에 대한 검사를 1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강화)
 - ☞ 생산단계의 책임을 유통·판매단계(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일반 소매점과의 형평성, 검사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횃집 등의 활어용 수족관은 여과장치 등을 청소하고 물을 교환하여 수족관의 이끼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강화)
 - ☞ 규제내용이 모호하고 식품공전에 유사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등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강화)

☞ 규제의 필요성·타당성 모두 인정되나, 업계의 부담을 감안,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식약청장에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첨부서류에 “4. 영업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을 추가하고,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강화)

☞ 현재 식약청 고시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HACCP 지정신청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수는 현재 HACCP 지정업체수 457로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영업정지 1월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HACCP 지정을 취소(신설)

※ (현행) 영업정지 2월이상의 행정처분시

- 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HACCP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피규제자수는 HACCP 지정업체 457개소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현행 위해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위반한 때 외에 회수사실을 은폐하고 회수하지 않은 때에 대한 행정처분근거 마련(강화)
 -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피규제자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약 2만6,500개소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강화)

☞ 식품위생법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를 영업개시 전으로 명확화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수는 총 10만명으로 추정되나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으며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학교의 장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등이 훼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내용 심사)

☞ 표지판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이므로 이를 학교장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철회권고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별표2)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문구 등의 기준을 마련(별표3)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밖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경고 또는 시설개수 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내용심사)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시설기준, 로고, 처분기준 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조리하지 않는 업소와 조리업소의 시설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학교의 집단급식소, 학교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내용심사)

☞ 학교 집단급식소, 학교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우수 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제한·금지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내용심사)

-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로 함.

- 식약청장은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 이외에도 만화·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식약청장은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① 광고와 어린이 비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고 식품업계 및

광고주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광고 제한 시간을 17시~20시로 축소할 것을 개선권고

- ②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어린이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는 원안의결
- ③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내용변경 또는 광고금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④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규제일몰제 도입할 것을 개선권고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 범위 설정(내용심사)

-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가맹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외식업체의 점포수(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를 말함

☞ 업계에서는 직영점만으로 100개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식업체가 자율적 시범실시중인 사안임을 감안, 원안의결

○ 영양성분 색상표시 대상식품 기준 마련(내용심사)

- 법 제12조 2항에 따라 '우수식품'으로서 영양성분을 녹색 등 색상표시 하여야 하는 대상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외한 식품 중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식품으로 함

☞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녹색 등 색상표시식품(우수식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신청 및 취소기준 마련(내용심사)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5와 같음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이나 품질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부적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식약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6과 같음

☞ 취소기준은 유사입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기준 등을 참고로 제정하였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신청 및 표시방법(내용심사)

- 건강친화기업의 지정기준은 식약청장이 고시함
-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이나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7과 같음

☞ 피규제자수는 건강친화기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소로 약 2,199개소로 추정되나,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 자료·정보제공 등 협조의무(내용심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피규제자로 일부 민간기관(사립 초·중·고교 1,609개소)이 있으나,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내용심사)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신청서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등록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 피규제자수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최대 9,967개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 최대 232명임. 절차규정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내용심사)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증을 교부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 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식약청장은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집단급식소를 등록·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에게 경고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고 등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식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절차규정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시 자료제출 협조의무(내용심사)
 - 식약청장은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항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피규제자수는 행정·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관(사립 초·중·고교
1,609개소)이나,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계획 수립 협조의무(내용심사)

- 식약청장 및 시·도지사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피규제자수는 행정·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관(사립 초·중·고교
1,609개소)이나,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의무
(제2항) 또는 등록증 양도·대여, 유사표시 사용 금지의무(제5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여야 함

☞ 현재 장애인 등록증 반환규정은 있으나 등록 취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행정처리가 어려워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①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②장애인이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③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등록증 유사명칭·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임

①, ②의 경우는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③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이고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 있으므로, 제5항은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지말고 현행처럼 장애인등록증만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장애인보조견 훈련관계자 출입거부 금지(강화)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자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1. 장애인(현행)

2. 전문훈련기관의 보조견 훈련자 및 보조견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추가)

-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현행) 또는 보조견 훈련관계자(추가)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 일부 시설 및 업소 등에서 장애인보조견 및 그 훈련관계자 출입으로 인한 위생문제 등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향후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고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훈련이 필요한 점, 연간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되는 장애인보조견이 60~70마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이를 통한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력할 것을 부대권고

○ 장애수당 지급 신청, 조사, 급여결정 취소 등(신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일종의 절차규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강화)

-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제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에서 제외되어 의약분업약국이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문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자료가 부족하여 철회권고

(5) 정신보건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요양과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할 때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함(신설)

1. 입소자의 투약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등
3. 기타 의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신과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함(신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부금 등에 의해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3.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위임사항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6) 실험동물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1.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령에 따른 영업자·사업자·기관 또는 법인
2.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법률에서 위임한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동물실험 시설(약 960개소)의 대부분이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규제 준수비용은 거의 없고 농수산식품부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

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자격 요건(내용심사)

-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 위임사항으로 관리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 48억원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실험동물의 범위(내용심사)

-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픽, 토끼, 개, 돼지, 원숭이

☞ 법률 위임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실험동물 공급자의 범위(내용심사)

-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자, 수입하는 자, 판매하는 자

☞ 법률 위임사항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공급자 등록에 필요한 문서비용 등)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과징금 산정 기준(내용심사)

- 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음

- 식약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률 위임사항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행정처분기준(강화)

-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구성부분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구성부분품이 주기능 장치인 경우 : (1차) 업무정지 6월, (2차) 제조·수입금지
 - 구성부분품이 부기능 장치인 경우 :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제조·수입금지
- (개정) 의료기기 구성부분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제조·수입금지

☞ 첨단기술이 융합된 복합 의료기기의 출현으로 구성품이 주기능인지, 부기능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행정소송이 빈번,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부기능 구성품 변경허가·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비용으로 약 6억원임.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보육비용지원 신청 방법 등(내용심사)

- 보육비용지원 신청자가 보육비용 지원 신청시 동의서면을 제출토록 하면서 동의시 일부 개인정보를 취급기관에서 조회가능토록 함

☞ 종래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내용심사)

- 금융정보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 등에게 금융정보 제공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함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점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9) 요양급여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사전검사 범위(신설)

- 요양기관 대표자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변경시 관련내용 변경일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심사청구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장에게 변경내용 심사신청을 하여야 함(제6조제4항)
- 그중 문제점이 많은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변경 등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고시 시행일 이전에 사전검사를 신청(단서 신설)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점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재검사(신설)

- 공급업체가 기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임의변경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확인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적정한 소프트웨어에서 제외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점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0)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교육 소요경비 징수, 생물학적 유해물질 보고범위, 동물실험현황기록보존의무, 행정처분 기준, 수수료 기준 마련(내용심사)

- ☞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마련(내용심사)

- ☞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 전반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수입실험동물의 기준 마련(내용심사)

- ☞ “수입실험동물 기준” 중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충족” 요건은 법 제13조에 의해 당연히 준수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 인력기준 중 “수의사 확보”는 동물실험의 품질 관리 및 실험결과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정기준은 국제적 수준의 실험실, DATA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원안의결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기준 마련(내용심사)

- ☞ 실험동물의 안전성과 건강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1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의료사업 유치행위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 정함’ (내용심사)

☞ 규제 필요성 및 규제 수준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결하되, 추후 법률 정비 필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내용심사)

가. 의료기관

1.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다만, 치과 및 한의과는 제외)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1인 이상
3. 보건의료 및 출입국관련 법규, 소양교육,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매년 8시간 이내 교육 이수

나. 유치업자

1. 보증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2. 자본금(1억원),
3. 담당인력 1인 이상
4. 담당인력의 매년 8시간 이내 교육이수
5.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담당인력 및 교육이수 요건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삭제하되, 그 외 전문의 1인 요건 등은 유지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보고하여야 함(내용심사)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여부 및 사업 지원대책 마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100로 정함(내용심사)

☞ 유치병상수 5% 제한은 일부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12)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 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신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을 위해 수요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최소한의 요구자료로 판단되며, 규제준수비용이 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른 경비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사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대여·양도하거나 이용권을 제시하고 정해진 사회서비스 이외에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신설)

☞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용권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며, - 규제 준수에 따른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신설)

☞ 지정(허가)제는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등록제로 수정하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개선권고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의무 및 준수사항(신설)

① 사업자는 사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내용, 시설·인력 등을 공개하여야 함

② 사업자의 준수사항

1. 서비스 제공신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2.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4. 다음 각호의 부정행위 금지
 - 사회서비스의 제공없이 이용권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하여 이용권을 결제하는 행위
 - 기타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행위

③ 동 사업자는 폐업 및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지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지정기관은 폐업 및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정기관의 휴·폐업 철회권고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삭제하되, 그 밖의 요건은 원안유지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취소 및 과징금(신설)
 - 지정기관은 동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나 영업의 정지(6월이내)를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 업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3. 사업자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사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폭력,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
 6. 종사자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지정기관은 영업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처분(1,000만원 이하)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종사자 교육훈련 미이수시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종사자 교육훈련(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종사자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에 대한 검사, 자료제출, 과태료(신설)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 정보제공 목적 또는 서비스의 제공내역 확인, 사업자 관리·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또는 업무보고, 관계 물품·서류 요구
 -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하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자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국가가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던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신설)

☞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전자적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전담기관(복지부 센터)에 개인정보가 전자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별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마련(내용심사)

☞ 법령 위임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 평가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실시중인 선진국에서도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고, 세부 지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조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장기요양기관 평가절차 및 방법(내용심사)

- 공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수시평가 실시

* 평가를 신청한 기관(임의적)에 대해서만 실시

☞ 평가주기와 관련하여 외국사례에 비추어 2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평가를 신청한 시설에 한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요소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표 및 사후조치(내용심사)
 - 건강보험공단은 평가신청결과 및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실시 및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쟁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4)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행정처분 감경기준 상한선 설정 및 감경 제외대상 명시(강화)
 - 형사벌과 연계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 기소유예시 1/2 감경 → 1/2 감경(최대3개월)
 - 선고유예시 1/3 감경 → 1/3 감경(최대2개월)
 - 의약품판매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대상 제외
- ☞ 중한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감경받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규제강화로 인한 경쟁제한, 진입제한적인 요소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병원이 선택진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내용심사)
 -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의 지정비율(80%) 초과
 - 자격이 없는 자를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
 -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1인 이상 두지 아니함
 - 선택진료 관련자료 심평원에 미통보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08.11.28 공포)으로 선택진료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시 처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긴급 전염병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검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대상에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추가(강화)
 - ☞ 돼지 인플루엔자(급성호흡기 증상)에 대한 긴급검역 및 환자발생시 격리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입법이 지연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향후 예견되는 신종전염병증후군을 추가지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이사항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6)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이·미용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강교과목, 수강시간 또는 학점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강화)
 - ☞ 획일적인 교과목·학점 상한을 설정할 경우 대학 학과 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되나, 교과목 및 이수학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영업시설의 멸실이나 철거된 경우 또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철회 또는 영업소 폐쇄(직권폐업)(강화)

☞ 기존 영업자가 무단 폐업할 경우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신규 영업자의 영업도 방해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업소 폐쇄절차에 앞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강화)

☞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여 행정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제82조)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고, 규제준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적 요소와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위생서비스 평가 수행자가 공중위생영업자 등의 위생실태 평가를 위해 영업소 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강화)

☞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위생서비스 평가 수행시 영업장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소 출입에 따른 영업자의 불편을 예상할 수 있으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7)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와 함께 현장조사 실시 비용을 부담(강화)

☞ 현재 식약청 고시 등에 의해 각종 현장조사 실시비용을 허가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상향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3억원의 비용 발생이 추정되나 새롭게 부과되는 비용은 아니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보존(강화)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자료 보존기간 단축 : (현행) 5년 → (개정) 3년
-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신설 : 경고(1차) → 제조업무 정지 1개월(2차) → 3개월(3차) → 4개월(4차)

☞ 현재 식약청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보존기간을 단축하되 이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관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은 감소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 곤란하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 신고를 하는 자는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함께 현장조사 실시 비용을 부담(강화)

☞ 신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비용 부과 법령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2억3,000만원의 발생이 추정되나 새롭게 부과되는 비용은 아니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임상시험 승인 제외 대상 축소(강화)

- (현행) 1.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상시험
 2. 시판중인 의약품 등의 새로운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임상시험
- (개정) 1. <삭제>
 2. 시판중인 의약품 중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 그간 '상업적 목적'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식약청장 승인 제외범위를 벗어나는 임상시험 행위가 빈번하여 시정(제1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이 없으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규격한약품 품목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제조업자 준수사항(강화)
 - (현행)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된 품목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마다 식약청장에게 신고
 - (개정)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지정된 품목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에 한해 해당품목의 목록제출만으로 품목신고를 갈음하고 그 대신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추가
제조업자는 동 품목에 대한 성질,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 현행 품목별 신고절차를 목록제출로 간소화함에 따라 기존의 준수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경쟁제한요소가 없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입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중 일부 변경(강화)
 - (현행)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약품 제외진단용의약품
 - (개정)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
- ☞ 국내제조약품과 수입약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간 관리소홀 문제를 해소하고자 허가(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가(신고)절차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약 4억여원 발생하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사항 작성시 글자크기, 줄간격, 효능·효과, 용법·용량, 그밖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 기재방법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동 고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함(강화)
 - ☞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시 용법·용량·기타주의 사항에 대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제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고 소진이 가능하여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안전용기·포장의무 대상인 품목 확대(강화)

-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대상 의약품을 추가(5개 → 8개)

☞ 의약품의 오용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의약품 중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크지 않고 경쟁제한적 요소와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수입혈장 관리기준 강화(강화)

- 국내 혈장수입업소가 대한적십자사에 해외 혈장수출예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혈장수출업소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고, 혈장수입업소는 동 실태조사에 협조 의무
- 수입혈장(후천성면역결핍증바이러스 및 B·C형간염바이러스) 검사방법 변경
(현행) 효소면역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
(개정) 효소면역검사+핵산증폭검사

☞ 수입혈장을 사용하여 제조된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혈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혈장 검사 추가 비용 10억원, 정기실태조사 비용은 약8,000만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행정처분 대상 법령위반 행위 추가(강화)

- 위해의약품등 회수·폐기 준수사항 위반
- 식약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의 판매, 저장, 진열 금지의무 위반

- 황사마스크 중 흡기저항, 분진 포집효율 기준 위반
-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체 대상업소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위반시의 행정처분 사항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가입자 등은 동일상병으로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속임수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처방·조제 금지(신설)
 - ☞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급여기준 외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처방·조제받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이 필요하여 원안의결

(19)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범위 등(신설)
 - 국가, 지자체장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를 정함
 - 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학교장 신청 ⇒ 지자체장 지정
 - 나. 보육시설 : 보육시설장 신청 ⇒ 지자체장 지정
 - 다. 도시공원 : 공원관리자 신청 ⇒ 지자체장 지정
 - 아동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간으로 함

-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정범위와 관련,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강화)
 - ☞ 1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능한 만성,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증가 등 의료자원 활용상 비효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상안에 대하여 정부, 근로자·사용자대표, 시민·소비자단체, 의약계 대표 등의 합의가 있었으며 추가로 징수하는 재원으로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 진료비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공익상 필요성이 있어 원안의결

(21)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지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때는 이자를 합산하여 반납하도록 함(신설)
 - ☞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합산, 반납토록 한 것은 퇴직금 수령 없이 연계신청한 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고, 반납금액 산정,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연계사례가 많은 「공무원 연금법」을 인용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연계급여 지급 청구시 신분증, 수급권자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실명 확인통장 사본 등 제출(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의무자가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함(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서식을 정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의결

(22)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강화 4)

■ 심사내용

- 인공 임신중절 수술 허용기간을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강화)
 - ☞ 모체의 건강보호, 태아의 생명존중, 법과 현실과의 괴리 등의 합리화를 위해 단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등) 및 전문가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건강진단 대상자를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모든 자로 확대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강화)
 - ☞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임산부가 집단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이므로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가 모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책임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부담케하여 책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강화)

-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산후조리원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을 3층 이상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되 내화구조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내화구조인 경우에도 3층 이상 설치 금지(강화)
-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수의 기존업자(약 89%)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향후 소수의 신규업자에게만 적용하여 정책 효과에 의문이 있고, 동규제로 인해 신규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진입제한, 기존업자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회 권고

(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3)

■ 심사내용

- 보육시설 인가신청 구비서류(강화)
 - 보육시설 신규인가시 구비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 보육시설 변경인가시 구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보육시설운영계획서,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전기확인안전점검확인서, 가스안전관련 완성 검사필증, 방염처리 여부” 추가
 - ☞ 신규 인가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유권과 운영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설 소유 및 운영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련(신설)
 - 타인에게 사용권의 판매·대여·양도 금지

- 이용권을 제시하여 현금 등 다른 대가 수령 금지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보육시설의 준수사항 및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신설)

① 보육시설의 준수사항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보육서비스 이용권 수수료를 사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보육서비스의 제공 없이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보육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는 행위
3.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금지하는 행위

② 보육시설 놀이터 설비 기준 강화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보육시설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보육시설 놀이터 안전기준 강화 등을 위해 보육시설 설비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에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서” 추가(강화)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규 채용 전에 관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시설운영정지명령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 부과(강화)

- ☞ 보조금 허위청구, 교사배치기준 위반 등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특별한 이견도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시설장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신설)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에서 위임한 처분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액 지급기준을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5% 범위내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함(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감액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사례(건강보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등)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불량의료기기 자진 회수, 폐기 기준·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진 회수 기준·절차를 구체화하여 불량 의료기기 회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회수·폐기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은 유사제도인 「위해의약품 회수 절차」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부당하게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도입으로 영유아보호자에게 직접 보육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위법행위 등으로 부당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 및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 보호자에게 1년 이내 기간 동안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중단(신설)

☞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자의 영유아가 피해를 입어 과잉규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 권고

(27) 요양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가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중복투약 받을 수 없음(내용심사)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험재정,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과 “환자의 부담,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8)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복합유통게임장 및 일반게임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추가(강화)
 - ☞ 복합유통게임장(멀티방)의 경우 기존에 금지된 비디오방, 노래방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으로 각종 탈선 행위가 발생하여 청소년 출입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게임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의결

(29) 신의료기술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조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보험약가 인하
 - 약가인하 시행 후 1년 이내 재차 문란행위 발생시 최대 30%까지 약가 인하
 - 하시행 이전에 발생한 문란행위가 약가 인하 시행 후 추가 적발된 경우 종전 인하율과 추가 인하율의 차율만큼만 인하
-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규칙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업계 의견을 대체로 수용한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약가 결정·조정신청자나 관련단체·학회 등에 관련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자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추가(강화)
 - ☞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의 조정을 위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장의 자료 제출요구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보험약가가 고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재평가시 적용하는 환율기준을 “매년 상반기 6개월 평균 환율”에서 “최근 3년간 평균

환율”로 변경(강화)

- ☞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 재평가연도에 따라 인하율이 달라지는 등 가격 왜곡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0)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4, 내용심사 8)

■ 심사내용

-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내용심사)
 - 법률에서 같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는 소비자의 대표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장에게 피해 내용을 제출하여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위생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바 시행령에서 “일정수”를 “20명”으로 정함
 - ☞ 식품안전 감시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출입·검사로 인해 영업정보의 공개, 준비에 대한 부담 등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종래에도 식품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식약청장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추가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시기, 범위, 절차 마련(내용심사)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내용심사)
 - 법률에서 정한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에서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 이때의 판매량은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소매가격을 산정함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과징금 부과액 연간 15억원으로 추정되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빙과류 추가(강화)
 - ☞ 외식 가공식품 소비 확대에 따라 위생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기호식품 중 어육소시지,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빙과류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여 건전한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유예기간(4개월)을 두어 부담을 완화시킨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약청장이 긴급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위해식품사례에 대한 과학적 근거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시 해당 식품의 생산·판매 금지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위해사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에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등에 한함), 위해정보 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강화)
 - ☞ 국내 제조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나 OEM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 근거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이 예상되나 대기업의

- 경우 자체 실험이 있거나 국내 유사제품을 인용할 경우 그 비용은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우수수입업소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신고사항, 준수사항, 등록취소기준 마련(내용심사)
 -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우수수입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의무,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60~30일까지 식약청장에 신청하고,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 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내용심사)
 - ☞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 연장신청 절차·방법 및 처분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의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정함(내용심사)
 - ☞ 검사기관의 지위승계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군사시설 내에서 예비군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토록 함(강화)
 - ☞ 종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군사시설(예비군 훈련장)내 민간위탁 음식점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위생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대상 등(내용심사)

- 보고대상 이물 기준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섭취과정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물질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차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신설)

☞ 이물의 범위를 “유리, 금속 등”에서 “칼날, 동물(쥐, 바퀴벌레)의 사체”로 구체화하고, “영업자가 이물발생 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로서 “이물 검출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다고 식약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개선권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지정취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신설)

☞ 그간 HACCP 지정업소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평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대상에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정부기관이 인증·보증한 내용은 제외)를 추가(강화)

☞ 일부 민간협회·학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하여 표시한 제품을 소비자가 국가에서 인증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민간협회 등의 “인증”·“보증” 표시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중·경감 기준을 구체화(내용심사)

- 가중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따름
- 경감기준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감

☞ 행정처분 가중·경감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권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기관의 보고의무(신설)
 - 교육실시기관장은 수강료 결정, 변경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시행규정, 교육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이행 후 그 결과 보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요구한 경우, 강의교재·녹취록 등 제출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에 유사한 규정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식품관련 협회·단체에서 실시중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6개월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신설)

☞ 동 규제는 법률에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철회권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육 계획, 교육실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요구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강의 교재, 녹취록 등 제출(신설)

☞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의 객관성 및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4)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응시자격 기준 중 시행령에서 위임한 “보건교육 업무

경력” 및 “민간단체 보건교육 양성과정 이수” 범위(신설)

- ☞ 시행령에서 위임한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응시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격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보건교육사 채용은 권장사항이므로 자격취득 없이도 보건교육이 가능하여 경쟁제한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5)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정함(신설)
- ☞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보고대상 의약품과 보고서식에 관한 것을 정한 것으로, 규제비용은 보고서류 작성·제출 비용으로 미미하여 원안의결

(36) 정신요양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을 현행 정액제(월 18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현금 급여와 연동하는 적용방법으로 변경(월 25만2,000원)(강화)
- ☞ 2001년 입소비용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이후 경제상황(물가 등) 변화에도 적정 금액이 수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37)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을 정액제에서 물가 등 경제상황과 연계 하도록 변경(강화)

☞ 1997년 입소비용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도 적정 금액이 수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38)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본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일정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신설)

☞ 기초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기초노령연금법 등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신설)

-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장애등급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자료의 이용 등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애등급 재심사, 자료요청 등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연금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수급자로 선정된 자도 매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어 확인조사 등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법 등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 원안의결

○ 금융기관 등의 장의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시에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되, 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유지 여부 판단을 위해 금융재산의 조사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로 인해 수급자의 제공동의서 제출의무(매년)가 경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신설)

☞ 교정시설 수용시 생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국가자원의 중복 지원을 막고, 장애연금의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재정법 등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9)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강화)
 - (현행) 수련기관 지도·교수요원 명단 제출
 - (개정)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상근), 위촉 증명서(위촉)
-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지도요원의 적격여부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수련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 “종료 전 14일 전”에 제출토록 함(강화)
 - ☞ 교육종료 후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수료와 동시에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강화)
 - 유전자 관련기관의 변경신고 사유에 명칭 변경을 추가
 - 유전자 관련기관의 변경·폐업·휴업 신고를 사유발생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류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추가
- ☞ 유전자 검사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고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제출서류, 등록기준(신설)

①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신청 ⇒ 자료 심사 ⇒ 등록증 교부

②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2.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잔여배아 난자 또는 체세포 기증
동의서 서식
3.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잔여배아·난자이용목록

③ 줄기세포주 등록 기준

1. 수립 방법이 법 제17조, 제22조, 제2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일것
2. 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였을 것
3. 줄기세포주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을 것

☞ 법률에서 위임한 줄기세포주 등록시 제출 서류, 등록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등록시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배아·난자 “동의서 일체”를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 “서식”만 제출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며, 배아·난자 이용목록의 경우 개별 배아·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등록기준은 동법 타 조항에
있는 내용과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을 요건으로 한
것으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줄기세포주 제공시 심의사항, 보고절차, 청구비용 등에 관한 기준(신설)

① 줄기세포주 제공시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1. 줄기세포주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의기관위원회 심의결과서
2. 제공을 요구한 줄기세포주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② 줄기세포주 제공현황 관련 대장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보고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연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제비용은 연구계획 승인절차 준수에 따르는 비용이나 부담이 크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유전자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는 치료동의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신설)
- ☞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유전적 변이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의서를 보존케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은 자료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4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신설)
- ☞ 2군 원료물질의 경우 일반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반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핵심물질이 아닌 점을 감안, 1군 원료물질에 한해 신고의무를 적용토록 개선권고하고, 차후 마약전용 위험성이 낮은 물질을 1군 원료물질에서 제외하는 등 원료물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토록 부대권고
-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가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한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출입·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신설)

☞ 범죄 관련성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까지 거래내역을 일괄 보고토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판단되므로, 마약범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신설)

☞ 1군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대상자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시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약류 취급자보다 완화토록 부대권고

(42)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한약 생산, 제조, 유통업자 중 한약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하되, 시행령으로 정할 일부 품목의 경우 등록이 강제(신설)

☞ 수입한약재 국산 변조, 불량제품 유통 등 한약 관련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변조 방지, 불량제품의 신속회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업계에서도 대부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유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금지(신설)

☞ 이력추적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표시, 혼합판매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력추적관리제를 실시 중인 농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원안 의결

○ 한약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신설)

☞ 한약 이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력 추적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법률에 수수료 부과규정이 존재하고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을 고려, 원안의결

○ 이력추적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신설)

① 의무적 등록대상자(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의무등록대상임에도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 선택적 등록대상자(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약 이력추적관리등록제 신설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대상 위법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 금액은 이력추적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등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4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자체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적격여부 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용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전산망의 범위를 정함(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상 자료의 상당부분은 법률에서 이미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며, 시행령에서 추가되는 자료의 경우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조사 항목 중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이력”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신설)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중복지원 방지, 연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관련 자료 관리시 질병명을 나타내지 않고 개인별 보건의료비 지원 이력만 관리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4)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한 기관의 수행기관 명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신설)

☞ 중증장애인 업무수행기관 관련 명의 도용 및 불법 명의 대여사례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취소 근거 조항(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업무수행기관의 지도·감독 회피 등 불법행위시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이 없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도·감독 근거 규정(신설)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지도감독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장기구득기관 지정 기준(신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뇌사추정환자의 파악과 관리,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구득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②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2.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 현재 “병원 중심”의 장기구득기관 운영방식을 국가 지원 하 “독립적인” 장기구득기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장기구득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나 국가의 예산지원도 있으며, 이해 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신설)

- ☞ 뇌사추정환자의 신고대상을 ‘장기구득기관’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로 변경(同 센터는 뇌사추정환자가 장기기증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토록 개선권고하고, ‘장기구득기관’ 용어도 국민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순화토록 부대권고

○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장기구득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신설)

☞ 현재는 75개 뇌사판정 의료기관만이 뇌사판정이 가능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환자이송에 따른 시간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 장기구득기관에 대하여도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동의만으로 장기 기증 허용(강화)

☞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철회권고

○ 본인이 사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였으나 가족이 없는 경우 뇌사판정신청 주체를 “법정대리인, 진료담당의사”에서 “장기구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가족의 동의 없이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철회권고

(4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강화)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후원금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지침상 간접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준수가 의무화 되어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7)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 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혈액원에서 채혈·수혈 부작용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추후 부작용자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금 재산정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하며, 매반기별로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신설)
- ☞ 현재 채혈·수혈 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것으로, 보상금 재산정 관련 설명의무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보상금지급현황 정기보고의무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48)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의료기관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혈액 등으로부터 오염된 세탁물을 소각처리(외부위탁 포함)하여야 함(강화)
- ☞ 전염병환자 세탁물 중 특별히 감염 우려가 높은 것은 재사용하지 않고 소각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세탁금지(재사용금지) 세탁물 범위에 “외과용 패드” 추가(강화)
- ☞ “외과용 패드”의 경우 현재 재사용이 금지된 붕대·거즈 등보다 오염도가 높아 세탁금지 물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 식품의약품안전청

• 집필자 : 김광현 주무관(Tel. 2100-2313, bobo@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의약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검사 세부처리규정 개정안, 생약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고열량저영양 영양성분표시 기준제정안,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정안 등 3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33건, 내용심사 7건 등 총 6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5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2009년도 총 신설규제는 23건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의약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2. 11)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검사 세부처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2)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생약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3. 18)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22)	원안의결 8	신 설 3 강 화 5 * 비중요 8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4. 22)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신 설 3 강 화 5 * 중요 1, 비중요 7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고열량저영양 영양성분표시 기준제정안	예비심사 (2009. 4. 27) 제396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4. 30)	원안의결 1	신 설 1 * 중 요 1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제정안	예비심사 (2009. 4. 27) 제39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4. 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중 요 1
어린이기호식품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4. 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12)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 5. 2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11)	원안의결 7	신 설 1 강 화 6 * 비중요 7
의약품 등 표준제조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18) 제40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7. 2)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18) 제40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7. 2)	원안의결 1	신 설 1 * 중 요 1
대한약전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화장품 등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6.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17)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9) 제40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8. 13)	철회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6)	원안의결 2	강 화 2 * 비중요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우수수입업체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주문자상표 부착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8. 26) 제40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9. 3)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3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19) 제213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8. 27)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 화 4 * 중요 1, 비중요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9. 9. 26) 제40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9. 10. 8)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8. 25)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오남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16) 제220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11. 26)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09. 10. 16) 제222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12. 10)	개선권고 1	신 설 1 * 중 요 1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3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30)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09. 9. 2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09. 12. 30)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55 개선권고 7 철회권고 1	신 설 23 강 화 33 내용심사 7 중 요 1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생리처리용 탐폰의 기준 및 시험방법(신설)

- 에틸렌옥시드(EO)가스로 멸균하는 생리 처리용 탐폰에 한해, 에틸렌옥시드(EO) 및 에틸렌클로로히드린(ECH) 가스 잔류량을 각각 25ppm 이하로 제한
- 생리처리용 탐폰의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피규제자수는 생리 처리용 탐폰 수입업소 4개소, 제조업소 1개소 등 총 5개소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발암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멜라민 기준(신설)

☞ 외국 기준을 반영하고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검사 세부처리규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원료용으로 수입된 자사 제조용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유통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후관리(강화)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생약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 마련(5 μ g/kg)(신설)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것으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생약의 건조·저장과정에서 불량하게 관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에 대한 검사대상 품목에 ‘팔루인’ 등 10개 품목을 추가(강화)

☞ 피규제자수는 총 410개소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플라스틱 가소제(유연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신설)

☞ 동물실험 및 국내여성 등 대상 노출량 조사결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국에서도 장난감, 의료용구,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제를 시행중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3, 강화5)

■ 심사내용

○ 옥수수, 호밀 등 곡류에 오염되기 쉬운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 및 오크라톡신의 용출 기준 마련(신설)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가검사비용이 미미하고, 미국, EU 등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이매조개류에 검출되는 설사성 독소 기준을 마련(0.16mg/kg이하)(신설)

☞ 연간 생산 및 수입되는 조개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나,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 및 출하금지 조치가 기 시행중으로 추가 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추가(노르네오바테나필, 옥소홍데나필 : 불검출)(강화)

☞ 최근 중국산 인삼제품 및 식품원재료에서 노르네오 바테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되어, 불법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규제준수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원안의결

○ 한약재로 쓰이는 숙지황 및 건지황의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 마련(용출기준 : 5.0 μ g/kg이하)(신설)

☞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지황, 숙지황 모니터링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기준마련이 필요한 점, 국제기준과 유사하고 한약재의 안전성과 결부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에서 유통되는 신선편의식품(샐러드),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기준(강화)
 - (현행) 일반냉장식품과 같이 취급(10℃ 이하)
 - (개정) 리스테리아균* 오염방지를 위해 5℃ 이하에서 보존
- ☞ 식품의 온도관리는 식중독예방의 중요요소로서 식품별 보존온도에 대한 기준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샐러드, 훈제연어는 현재까지 대규모 매장에서만 유통·판매중으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원안의결
- 콩, 보리, 옥수수 등을 이용한 액상차 중금속 관리기준(강화)
 - 납 : 2.0mg/kg 이하 → 0.3mg/kg 이하
 - 카드뮴 : 0.1mg/kg 이하(신설)
- ☞ 식습관의 변화, 다양한 차류의 개발 등으로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증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독성 등을 이유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목록 추가(46종)(강화)
 - ☞ 사용불가 품목 등의 설정은 “전문가 자문”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비용 발생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는 점을 고려, 원안의결
- 농산물 및 식품에 잔류되어 섭취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제·개정(강화)
 - ☞ 식품을 통한 항생물질의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원안의결

(8)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신설3, 강화5)

■ 심사내용

- 판매제품 중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면 중 제일 큰 면의 면적이 30cm²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해당열량, 유통기간 (품질유지기간, 영양성분 표시(신설))
 - ☞ 과자류, 초콜릿류 등 제품 포장을 뜯어 임의대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학교앞 등) 내포장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하고,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1년)을 두어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크기의 2분의1 이상의 활자크기의 한글로 “주문자 상표부착(OEM)제품” 또는 “OEM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함(신설)
 - ☞ ‘OEM표시’를 ‘원산지표시(관세청고시)’와 중복표기를 하지 않고 ‘원산지, OEM’의 두가지 의미가 함축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하고, OEM표시에 따른 국제적 마찰 소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부대권고
-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식품가열 ·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신설)
 - ☞ 멜라민수지 등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주의표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은 기존 스티커에 활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미미하여 원안의결
-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함유)” 표시(강화)
- ☞ 착향료만을 사용하고 그림, 사진 등을 표시함으로써 특정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 원안의결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하는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를 의무화(강화)
- ☞ 특정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 함량을 현재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뒷면에 작게 표시하고 있어,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 원안의결
- 혼합제제류의 구성성분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괄호를 사용하여 모두 표시토록 함(강화)
- ☞ 혼합제제류의 명칭과 그 구성성분인 식품첨가물명을 단순 나열하여 의도적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 원안의결
-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강화)
- ☞ 영양성분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 원안의결

○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함(강화)

☞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정보 제공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비용은 포장지 활자 추가에 따른 인쇄비용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 원안의결

(9) 고열량저영양 영양성분표시 기준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신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09.3.21 공포)’ 제8조에 의하여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우선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규제대상 기준(하한선)을 정함

☞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전문가 협의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0)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기준 마련(내용심사)

①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

나. 조리식품 : 모범업소 기준 준수, 표준조리법 준수, 분기1회
식중독검사, 영양성분 표시 등

② 영양에 관한 기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포화지방, 당류 등을 제한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등 특정영양성분을 일정 수준이상 갖추어야 함

③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 식용타르색소(14개), 합성보존료, 그밖에 MSG 등 화학적 합성품
사용금지

☞ 인센티브 제도 취지를 고려하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1) 어린이기호식품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10%),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관리
실적(70%),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실적(10%), 외적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10%)

☞ '09.3.22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신청에 따른 지정제도로써 직접적인 규제 준수비용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식품 등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는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을 식품

첨가물 품목에서 제외(신설)

- ☞ 해당 첨가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외국에서 동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만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13)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유전자 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LMO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시기를 “품목 허가신청서”에서 “임상시험 전”으로 조정(강화)
- ☞ 실험대상자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LMO사용 의약품은 피실험자의 인체에 처음 적용하는 임상시험단계에서부터 위해성 평가를 할수 있도록 자료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14)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신설1, 강화6)

■ 심사내용

- 신약 개발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약사가 식약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강화)
- ☞ 신약개발 촉진 및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문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 안정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진단용시약의 일부를 제외진단용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심사대상에 포함(강화)

☞ HIV 감염여부 등에 대한 진단은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중요하나 현재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허가(심사)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별도조치 마련 등 업계요구를 수용한 점,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황사마스크에 대한 기준 규격(신설)

☞ 황사차단효과가 없는 황사마스크가 시중에 고가에 판매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사실상 동 기준에 의해 허가심사를 받고 있어 추가 비용 발생이 크지 않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복제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허가대상)으로 변경하고, 정량분무용제제 중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시험방법에 유효입자량시험을 추가(강화)

☞ 생동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 복제의약품 등은 사실상 허가대상 의약품과 같은 본청의 심사를 거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약사의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다이아지논 함유 살충제” 등 7개 성분 추가(강화)

☞ EU,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호흡마비,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된 성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자료 요건(강화)

☞ 미국, 일본, EU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해외 의약품 허가시

중복시험을 방지케 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천연물신약 중 주사제는 개발단계별로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 제제의 경우 2상 시험과 3상 시험을 실시하되 안전성 등이 확보된 경우 3상 임상시험만을 실시(강화)

☞ 천연물 신약 등의 경우에도 혈액에 직접 투여되는 주사제의 경우에는 1~3상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의약품 등 표준제조 기준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불소 성분 함유 치약제에 한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불소 함유량 및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기재토록 의무화(강화)

☞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중 “치약의 불소 총 함유량은 1,000ppm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1,000ppm 이하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완두콩 크기의 소량을 사용”을 기준을 명확히 하여 “1회당 완두콩 크기의 치약을 사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모든식품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급식소를 적용대상에 추가(신설)

- ☞ 신설되는 규정 중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명확한 조항,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 등을 수정·삭제하여 원안의결

(17) 대한약전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의약품 「탈크」 불순물 기준 규격(강화)

- ☞ 「탈크」 원료 제품에서 석면 검출 사례가 발생하여 의약품 기준 규격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원안의결

(18)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한약재 중 활석 기준 규격(강화)

- ☞ “활석”에 포함될 수 있는 석면 등 불순물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강화하여 소비자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한약재 “활석” 관련 기준 규격을 양약 “탈크” 기준 규격(대한약전) 과 통일시킨 것으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탈크 등 4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순물 한도 기준(강화)

-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조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20)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인체에 접촉·삽입되는 의료기기 제조에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 규격에 적합한 탈크 사용(강화)

☞ 탈크가 함유된 의료기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보건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고,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화장품 등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에 “석면 함유 탈크” 추가(강화)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탈크성분 사용 화장품에 대하여 석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사용금지 원료에 “오공” 등 17개 원료 추가(강화)

☞ 독성이 있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원료는 일반식품에 대하여도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인 점, 현재 해당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없어 추가 규제비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합성수지 중 폴리에틸렌 등 4종에 대하여 용출규격 항목 추가(강화)

- ☞ 일상생활에 밀접한 합성수지제품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것이나, 해당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조사·검토를 실시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24)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강화 2)

■ 심사내용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한약재 수입·제조업자” 제외(강화)

- ☞ 수입한약재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수입·제조업자를 검사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비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 정밀 검사대상 수입한약제에 활석 추가(강화)

- ☞ 석면함유 활석제품 유통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등 4종의 건강기능식품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규격(강화)

- ☞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기준·규격은 일반식품 및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기 적용되고 있거나 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6) 우수수입업체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기준을 마련(신설)
-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규제비용은 위생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우수수입업체 등록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7) 주문자상표 부착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기준 마련(신설)
- ☞ 위생점검주기를 보다 연장하되 우수업체 또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 점검을 면제하고, 식품의 종류(예 : 유아용 식품, 통관시 부적합 식품)별로 점검 횟수를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점검기관에 현지의 공신력 있는 점검기관도 포함되도록 개선권고

(2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신규등록된 사이에노피라펜 등 2종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대상 농작물 범위가 확대된 나프로파마이드 등 10종의 농약에 대하여 해당 작물에 대한 기준 마련(강화)
- ☞ 신규 등록된 농약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기준 준수에 따르는 비용이나 해당 농약의 사용법을 준수할 경우 기준치 이내가 되어 추가 비용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9)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에 “스테아르산아연 함유제제 중 산제(Powder)” 추가(강화)
- ☞ 흡입시 폐렴 등 안전성 문제발생 가능성이 보고되어 제한 필요성이 있으며, 피규제자 수가 적고 대체 성분이 다양하여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4)

■ 심사내용

- 「원자력법」에 의해 관리되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소속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 개인피폭이력을 함께 제출(강화)

- ☞ 「원자력법」상 방사선 종사자가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 변경시 개인별 피폭선량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검사·측정기관 지정 요건(강화)
 - 검사기관을 제조·수입·수리업체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 검사·측정기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유지하도록 요구
 - '기술책임자' 요건 강화
- ☞ 영리법인 및 전문대 졸업자 등에는 과도한 진입제한적 요소이므로 진입가능토록 하고, 경력요건도 적정수준으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성적서(사본)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추가(강화)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된 부적합판정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되기까지의 시간소요 문제와 부당보험급여의 환수 문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대상기기로 추가된 양전자방출전산화 단층촬영장치(PET-CT)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함(강화)
 - ☞ '06.2월 규칙개정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에 PET-CT가 포함되었으나 검사항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아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비용이 발생하나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안(신설)

■ 심사내용

○ 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 지정기준(신설)

- ☞ 인력기준에서 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졸업자의 경력기준을 차별하고 있는 바, 전문대학도 3년 과정, 4년 심화과정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졸업자에 대한 경력기준을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32)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 심사내용

○ 민간 식품위생검사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교육계획·결과 보고의무 등 (신설)

- ☞ 식품위생법 개정('09.2)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 대표자·검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기관에서도 교육을 실시케 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기준, 교육 계획·결과 보고 의무 등은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3) 오남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오남용의약품에 “다독세틴 함유제제” 추가(강화)

- ☞ 추가되는 “다독세틴 함유제제”의 경우 인체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규제자는 해당 제제 제조업체 1개소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4)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식품 등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영업자가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범위 및 이물보고절차(신설)

☞ 금속, 유리, 플라스틱, 사기 재질 이물의 경우 보고대상 크기를 3mm로 확대하고, 식품공전상 이물이 아닌 돌·모래 토사류는 보고대상 이물범위에서 제외하며, 해당 고시 일몰기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토록 개선권고

(35)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

■ 심사내용

- 의료기기 기술문서 제출자료에 대한 유효기간 등 심사기준(신설)

☞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도 제출이 가능한 경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36)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검체 보관 의무 신설 및 정기 검사실적 보고대상 확대(강화)

☞ 수입한약재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확인을 위해 검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체를 보관하고 있으나, 검사기관별로 보관기관이 상이하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검사기관별 검사실적 보고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7)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

■ 심사내용

○ 점토원료 화장품에 대한 납, 비소 기준규격 신설(강화)

- ☞ 시중 유통 중인 황토팩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점토함유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허용기준은 일반화장품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8)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의약품 글자크기, 줄간격, 전문용어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신설)

-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기재되는 사항을 소비자들이 이해·식별하기 쉽도록 “글자크기, 줄간격, 기재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약업체·약사·의사·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9)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표시대상 영양성분, 표시방법 관련 기준 마련(신설)

-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시범사업실시('08~)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여성부

• 집필자 : 전창현 사무관(Tel. 2100-2317, chjeon@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여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7. 22)	원안의결 1	내 용 1 * 비중요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9. 7. 22)	원안의결 4	신 설 4
계	-	원안의결 5	신 설 4 내용심사 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가정폭력 방지시설 등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준 마련(내용심사)
 - 보수교육 과정, 보수교육 기간·방법, 강사 자격기준

☞ 법률에서 여성부장관, 시·도지사가 실시토록 한 보수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규칙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기간·방법 및 강사기준 등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에

의해 현재도 이미 실시되고 있어 추가 비용발생이 없는 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면서 보호시설에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인가기준 등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비영리 시설로서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시설의 지역별 균형과 일정수준의 서비스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성격 및 운영체제가 비슷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점, 신규시설이 많지 않아 진입제한요소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상담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기준(신설)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시설 종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종사자 자격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함(신설)

☞ 현재 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이며, 교육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어 종사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상담소 준수사항(신설)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엄수 의무자에 피해자지원 종합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유사명칭사용금지’ 대상에 피해자지원 종합센터 추가

☞ 시설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비영리시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제10절 |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yjks@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5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56회 예비심사 ('09.6.9)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1, 내용 4 * 비중요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8회 예비심사 ('09.6.23)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 2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65회 예비심사 ('09.7.17)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81회 예비심사 ('09.10.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0	신설 1 강화 5 내용심사 4 비중요 10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방문승인시 방문기간 부여(내용심사)

-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현행)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규정만 있고, 방문기간 부여 조항은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9.1.30)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방문기간의 범위를 설정하여 방문기간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북한방문자로 연간 약 18만 6,443명(’08년기준)이며, 규제비용은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문승인 등의 경우 조건부(내용심사)

-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등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구분	조건 부가 내용 (개정)
방북 승인시	1. 방문목적, 방문대상자, 방문지역, 방문경로 등을 포함한 활동 범위의 제한 2. 출입통행계획의 제출 3. 북한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북한주민 접촉 신고수리시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접촉 방법 등을 포함한 접촉 범위의 제한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질서유지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반출입 승인시	1.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 2. 법 제15조제3항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사업 승인시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사업범위의 제한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사업 신고수리시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사업범위의 제한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연간 투자 금액 확인서의 제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송장비 운행승인시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을 포함한 운행 범위의 제한 2.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09.1.30)에서 자의적인 조건부가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건 부가를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약 19만명(추정)이고, 규제 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반출·반입 승인 신청시 서류 제출(내용심사)

-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출·반입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반출·반입 승인제도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기존 고시에 명시된 사항을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반출·반입 업체로 제한적이며, 연간 규제준수비용이 미미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내용심사)

-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

☞ 남북협력사업 승인제도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기존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협력사업 신고자 등으로 제한적이고, 연간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신설)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자, 동 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은 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음 등

☞ 지도·감독 규정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행정조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부 관리감독권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연간 규제 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강화)

-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300만원 이하)
- 교역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50만원→100만원)

☞ '09.1.30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약 19만명(추정)이고, 연간 규제준수비용이 미미하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취업보호의 제한 : 고용지원금 지원중단(강화)

- (현행) 고용지원금 지급 관련 취업보호기간 연장사유, 신청절차, 자료제출요구 등을 명시
- (개정)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기간을 '최초 취업일' 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인 보호대상자로 제한

- 취업보호대상자가 사업주로서 본인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가 사업주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최초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제한하는 것임. 피규제자는 약 1만6,168명이고, 규제비용은 미미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호변경 : 보호 및 정착지원 중지 또는 종료(강화)

- (현행) 보호변경 사유

-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특별임용된 경우
- 교수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개정) 보호변경 사유(추가)

- 제3국 망명 신청이 확인된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국내 정착 이후 제3국 망명 등을 요청하는 위장 망명자, 주거 별도 배정을 위한 위장 이혼자, 정착금을 더 받기 위한 허위진술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피규제자가 약 1만 5,057명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승인대상 반입물품 추가 지정(강화)

- (현행) 반입 물품으로서 농수산물 등 189개 품목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
- (추가) 조미오징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추가 지정

☞ 북한산 조미오징어가 포괄승인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북한산 조미오징어 생산량 현지확인 불가 등으로 위장반입 우려가 있고 국내 관련업체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반입을 규제하는 것임. 피규제자는 남북 교역관련업체로 30여개로 예상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협의결과 이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승인대상 반입물품 추가 지정(강화)

- (현행) 반입 물품으로서 농수산물 등 190개 품목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
- (추가) 송이버섯, 모래, 무연탄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추가 지정

☞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을 위해 ‘포괄승인 품목’ 중 단일품목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큰 3종을 ‘개별승인품목’으로 추가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외교통상부

•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Tel. 2100-2312, hsg36@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비중요규제 2건)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7.6)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9.10.26)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은 3억원, 10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차등 조정하도록 강화 (강화)

보증보험가입금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보증보험가입금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해외이주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액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경쟁제한적 요소와 이해관계자의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현행 3억원의 보증보험가입금액으로는 피해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고, 3억원 초과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

(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남극활동허가 및 남극활동 감시원 등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고,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1년내 동일행위로 3차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하는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위반시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남극활동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위반자(법 제4조 또는 제9조 위반)	500	700	1,000
신고해야 할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제2항 위반)	300	500	700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 또는 활동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위반)	500	700	1,000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3항 위반)	300	500	700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3항 위반)	700	1,000	1,000
정당한 사유 없이 남극활동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00	700	1,000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2항 위반)	300	500	700

부 과 대 상	위반시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보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4항 위반자)	500	700	1,000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제2항 위반자)	700	1,000	1,000

☞ 동 규제는 법 제27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위반행위 차수 산정의 기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감경 범위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제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 감경 상한선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3. 국가보훈처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jyks@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52회 예비심사 ('09.5.29)	원안의결 1	내 용 1 *비중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3회 예비심사 ('09.5.29)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8차 행정사회분과 ('09.10.2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 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 설 2 강 화 1 내용심사 1 중 요 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내용심사)

위반행위	과징금
1.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2. 취업자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4.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원
5.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 '08.3.28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피규제자가 약 1만7,063개소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료 분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대상 추가 (강화)

- (현행) 신청인,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 (추가) 신청인의 주장을 증언하는 사람(인우보증인), 근로복지공단의 장, 보험개발원의 장, 그 밖의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관계인

☞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의 충실화를 위해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없으며,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기간 및 상이처 추가인정 신청기간 설정(신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요건이 성립한 경우
 - 이 법 시행 이전 그 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10년의 신청기간을 설정
 - 이 법 시행 이후 그 요건이 성립한 때에는 5년의 신청기간을 설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보훈심사제도의 안정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만, 등록 및 추가인정 신청요건 발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개선권고함

○ 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기관 등의 자료제공의무(신설)

- 생활조정수당 등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동 규제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수준 결정의 충실화를 위해 수급권자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정보 미제공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고, 유사법률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4. 국방부

•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Tel. 2100-2320, kwjyks@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간지뢰제거업법」 2건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3회 예비심사 (09.10.20)	원안의결 2	신 설 2 *비중요 2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제88회 예비심사 (09.11.13)	원안의결 6	신 설 6 *비중요 6
계	-	원안의결 8	신 설 8 *비중요 8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신설)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내에서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 금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
-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관련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하고, 민간 공항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거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내 일부

건축물의 설치 및 용도를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항공법과 동일한 구역(1,2,3종) 및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심의회 심의(09.9.4)를 거쳤고, 외국사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른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과 출입(신설)

- 소음대책수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측량 및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과 출입 근거 마련

☞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측정망 설치 및 자료수집 등 공익적 업무 수행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과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신설 6)

■ 심사내용

○ 지뢰제거업의 등록 및 운영(신설)

- 지뢰제거를 영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을 등록하도록 함
 -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영업의 운영,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위반 시 과징금 처분
 - 신고·통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자기 토지내의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 등록된 지뢰제거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등록 및 운영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군의 한계상 국방과 관련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뢰제거의 인가(신설)

-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발주자로서 지뢰제거를 위한 지뢰제거 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지뢰제거의 도급, 하도급 금지, 도급계약의 해지
- 지뢰제거의 착수신고 및 관할부대장의 현장조사, 처리, 완료신고, 감독, 재해예방, 작업기록 등의 보존 및 제출
- 신고·통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위험폭발물인 지뢰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뢰제거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지뢰제거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지뢰제거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지뢰제거업자의 평가 및 공개(신설)

- 발주자가 지뢰제거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제거업자의 시공능력과 실적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재정상태의 건전성 등을 평가 및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뢰제거업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를 통해 발주자와 지뢰제거업자간 계약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가격경쟁에 따른 지뢰제거 작업의 부실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안전관리(신설)

- 지뢰제거는 위험폭발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뢰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각종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지뢰제거업자에게 부과하고 시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위험폭발물인 지뢰의 안전한 제거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지뢰제거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지뢰제거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점,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뢰제거사의 요건 등(신설)

- 지뢰제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뢰제거사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이의 자격 인정과 의무,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정지 및 실무교육에 관한 근거 마련

☞ 위험폭발물인 지뢰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뢰제거에 따른 위험성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지뢰제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뢰제거기술협회 설립과 인가(신설)

- 지뢰제거업자와 지뢰제거사의 권익보호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술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과 이 협회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완전한 지뢰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뢰사고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협회 회원의 부담금으로 피해 보전적립금을 설치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뢰제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절차와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에 따른 협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보전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제11절 | 일반행정 분야

526

1. 행정안전부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2, koreaeco@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행정사법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12 건 등 총 1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5건, 비중요규제 10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5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신설규제는 총 3건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3회 본회의 (2009. 02. 12)	개선권고 1	강 화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 07. 2~3)	원안의결 1	강 화 1 *비중요 1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제340회 사회1분과 (2009. 7. 7)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강 화 7 *비중요 5
행정사법 개정안	제405회 사회1분과 (2009. 9. 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4	신 설 3 강 화 3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4	신 설 3 강 화 12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지역제한경쟁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강화)

* 일반공사(현행 7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현행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인정되므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70억원 미만→100억원 미만)하되,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시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범위 확대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경우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한사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여하게 하는 제한경쟁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 규정되어 있어, 현재도 법령해석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여타 제한기준과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새마을금고법(강화 7)

■ 심사내용

○ 새마을금고 설립절차 강화(강화)

-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안 제7조제1항)

☞ 출자금,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설립인가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시에 “연합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연합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설립인가요건 이외의 의견까지 제시할 경우 사실상 연합회가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므로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를 “제7조의2에 규정된 설립인가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로 의견제시범위를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설립인가요건에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을 추가하는 것은 “출자능력”은 출자금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여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고,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설립인가 요건보다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행정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금고 법정 적립금 확대(강화)

- 법정적립금의 적립률을 상향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적립
하여야 함

☞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산 건전성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주민 스스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개발,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협동조직인 점을 감안시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주 고객인 지역 영세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점, 마을금고는 유사기관인 농협·

수협·신협 등과 달리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의결

○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추가(강화)

- 금고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인가요건의 출자금)에 미달한 경우

☞ 설립인가 이후 기준에 미달된 부실금고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가 후 출자기준 미달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신설)

- 해임이나 징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개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임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으로 부적절한 자들이 해당 금고나 다른 금고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고의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강화)

-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으며 위반시 주무부장관과 연합회장이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에 상근하는 임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법정화하는 것은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금고 등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강화)

- 연합회에 대해서도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추가하며, 연합회장은 연 1회 이상 연합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 보고

☞ 현행법상 일선금고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명할 수 있으나(법 제76조), 연합회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근거가 없음. 외부회계감사시 비용은 4,000만원 정도이고 현재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제도(강화)

- 금융사건(횡령, 배임, 수재, 사금융알선 등)으로 형사기소중인 임직원 직무정지제 도입

☞ 새마을금고가 주로 금융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금융알선 등의 금융관련 위법행위는 새마을금고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4) 행정사법(강화 3, 신설 3)

■ 심사내용

○ 행정사의 결격사유 추가(강화)

-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해임된 후 3년 미경과자를 행정사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 행정사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번역 등을 대행하는 자격제도로, 행정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내용이 법무사·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제도와 유사한 수준인 점, 제354차 행정사회분과위('07.11)

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사의 의무 추가(강화)

-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보관해야 함

☞ 행정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부 작성·보관 의무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타 자격제도도 직무 관련 장부 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54차 행정사회분과위('07.11)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조사(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이 법의 위반 여부 확인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항 보고,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사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타 자격제도도 출입조사·검사·명령 등 실시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4차 행정사회분과위('07.11)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사협회의 정관인가, 감독(신설)

- 행정사협회 설립 및 가입은 자율로 하되, 설립된 협회에 대한 감독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는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사협회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 유사한 타 자격

제도도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54차 행정사회
분과위('07.11)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사 업무정지(신설)

-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타 자격제도의 경우 법령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상기 항목과 동일 내용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획일적 업무정지는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령위반 수준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조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 견책,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 행정사업의 등록, 교육 등(강화)

-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취소 요건 등 규정.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1개 사무소 설치제한은 '99년 1개 사무소 설치 제한을 폐지한 이후,
무자격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및 불편 초래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행정사 시장을 감안시 행정사 1인이 여러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용 실익이 거의 없어 사무소 설치제한 규제가 없어도
문제발생 우려가 크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금지는 별도의
벌칙(개정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최근 관련영업이 특정한 사무실(공간) 개념에서 다양한
영업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 시 사무소 운영 제한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다만, 행정사업무의 조직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합동사무소 설치허용은
필요(분사무소 수 제한은 불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업형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법인설립 허용 여부도 검토할 것을 개선권고

2. 소방방재청

• 집필자 : 김정일 사무관(Tel. 2100-2318, kim314@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 및 고시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6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신설규제는 총 2건임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3.3)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3.24)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4.22)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고시 개정안	제398차 행정사회분과 (2009.5.28)	개선권고 1	강 화 1 * 중 요 1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99차 행정사회분과 (2009.6.4)	원안의결 1	강 화 1 * 중 요 1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9.7.17)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9.8.18)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철회권고 0	신 설 2 강 화 6 내용심사 0 중 요 2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2)

■ 심사내용

- 정비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위제한에 관한사항을 준용함(신설)

☞ '08.6.5 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비지구 안에서의 제한행위 세부내용 등을 정하는 것으로, 행위제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는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음 각 호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함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등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5. 법 제12조에 따른 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기술자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호 중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자(신설)

☞ '08.6.5 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대상 및 대행기관 지정 등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의 대부분은 공공기관(또는 업무위탁) 종사자이며, 실질적 피규제자인 5호는 약 90명에 불과하고 경쟁제한적 영향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축광방식이 아닌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방식)을 설치하여야 함
 - 내부통로의 폭 기준(대상 : 고시원)
 - 기준 : 최소 90cm 이상
 - 개정안 : 양 옆에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cm 이상으로 설치
 - ※ 시행 후 새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하는 경우 적용
- ☞ 빈번히 발생하는 고시원 화재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다수 사망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고, 관련기준을 준용하였으며,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연간 준수비용이 약 31억원(추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대상을 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의 영업장,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에 설치하도록 함(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있는 경우 제외)(강화)

☞ 특별법 개정('09.1.7)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전체 다중이용업소(약 17만7,114개소) 중 화재시 진압과 인명구조가 어려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고시원에서 '03~'08년에 8건 발생하여 27명 사망, 32명 부상)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최소화(피규제자 약 472개소, 규제비용 약 42억원 추정)하고, 설치의무의 예외를 두었으며, 경쟁제한적 영향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고시(강화 1)

■ 심사내용

- 손해평가인의 양성 및 보수교육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함(강화)
 - 양성교육 : (현행) 연간 5시간 이상 → (개정) 3일 이상~5일 미만
 - 보수교육 : (신설) 2일 이내(2년마다 1회 실시)
- ☞ 손해평가 업무가 미숙할 경우 국가예산 낭비, 손해배상 소송, 불신에 따른 가입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손해배상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손해평가인의 교육부담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장소·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간을 양성교육은 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보수교육은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 보수교육의 경우 숙식 등이 불필요하여 지방 순회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교육장소를 국립방재연구교육원(천안 소재) 외 각 시·도로 확대할 것을 부대권고

(5) 소방공사업법 시행령(강화 1)

■ 심사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또는 출자)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등록관청(시·도지사)에 제출하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제도」를 도입

- ☞ 자본금 요건이 추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 보유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자본금 내실화를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활성화를 통한 동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으로 원안 의결

(6)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강화 1)

■ 심사내용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추가

-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옥내소화전설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용을 위해서는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능시험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신기술 소방제품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강화 1)

■ 심사내용

- 위험물탱크 설치자가 위험물 탱크를 설치한 후 소방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탱크안전 성능시험자가 발급한 탱크시험필증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비파괴 시험성적서’를 ‘탱크시험성적서’로 변경

* 탱크시험성적서로의 변경의미 : 비파괴시험성적서와 함께 충수·수압 시험의 시험성적서도 첨부토록 의무화

- ☞ 탱크시험성적서는 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류이나 현행 법령에는 비파괴시험성적서만 규정하고 충수수압시험성적서는 누락되어 있는 법령미비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 성능시험자는 탱크 시험성적서를 기존에 발급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경찰청

•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321, jmy59@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신설 1, 강화 3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2건은 예비심사로 종결하고, 2건에 대하여 대면심사 결과 원안의결 되었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경찰청의 신설 규제는 총 4건임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9.9~16일 제406회 행정사회분과위 (9. 24)	비중요규제 2 원안의결 2	신 설 1 강 화 3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신설1, 강화 3)

■ 심사내용

- 운전면허 취득절차(강화)
 - 현행의 연습면허 운전자 준수사항에 동승자 옆좌석 승차,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금지 추가
- ☞ 현행 기능시험(검정) 합격 후에 발급되는 연습면허를 학과시험 합격 후 발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연습운전자의 연습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의결

-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장내기능시험(검정) 및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3일 이상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 불합격시 재응시 제한 기간을 자율적인 운전 연습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3일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원안 의결**

○ 운전학원 종사자 제재강화 및 행정처분 승계(강화)

☞ 자격증이 없는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과 일반학원 강사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해임요구 및 이와 결부된 2년간의 재취업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시 행정처분의 효과를 일정기간 양수인·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단 양수인 등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효과 승계 제한

☞ 행정처분의 승계규정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 금지요건(강화)

-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운전교육 실시 금지(법 안 제116조)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행위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에서 효력 정지

☞ 피규제 대상이 중요규제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등록운전 방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원등록시 기능교육장 등 학원시설의 현황측량성과도 추가제출(신설)

☞ 비용발행이 과다하지 않고(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1,2종 기능교육장 기준 약 200만원, 신규등록 년 5개소),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 법무부

• 집필자 : 이정연 사무관(Tel. 2100-2312, koreaeco@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국적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등 6개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2건, 비중요규제 10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무부의 2009년도 신설 규제는 총 7건임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9.6.25~26)	원안의결 3	신 설 3 * 비중요 3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9.7.3~4)	원안의결 2	신 설 2 * 비중요 2
국적법	예비심사 (2009.7.17~18)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출입국관리법	제212차 본회의 (2009.8.1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 화 4 * 비중요 2
공증인법 시행령	예비심사 (2009.11.9)	원안의결 1	신 설 1 * 비중요 1
국적법	예비심사 (2009.12.6~7)	원안의결 1	강 화 1 *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1	신설 7, 강화 5 * 중요 2, 비중요 10

(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3)

■ 심사내용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 등(신설)

- 자격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법무부에 직접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의무 및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규정

☞ 기 타결된 EFTA, 미국, ASEAN과의 FTA협상에서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 허용을 약속하였고, 이행입법인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자격승인절차를 규정(법률 제정과정에서 규제심사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특히 서류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약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등(신설)

-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할 증빙서류

☞ 미국, ASEAN 등과의 FTA 협상에서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을 약속하였고, 그 이행입법인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설립인가절차를 규정(법률 제정과정에서 규제심사 완료)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재사항과 증빙서류를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법자문사무소 구성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신설)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외국 로펌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 과중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를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 부과할 경우 이들의 국내진출이 저해되고, 국내 로펌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변호사법상의 기준과 균형을 맞추어 내용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신설)

-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위법 및 타법에서 기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이고, 추가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신설)

-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할 외부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
-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대상 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할 능력,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정취소 요건도 일반적인 취소요건과 유사하고 피규제자의 수,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국적법(강화 1)

■ 심사내용

○ 국적상실 요건 신설(신설)

-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행위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중국적자의 증가가능성(우수인재에 대하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국적선택 미촉구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피규제자 수가 특정소수로 한정되며,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아니한 점,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출입국관리법(강화 4)

■ 심사내용

○ 지문 등 개인정보 제공의무 확대(강화)

-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 '외국인등록 대상인 자로서 17세에 달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 다양한 분야의 여론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부처안 : 2011년)를 정하고,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토록 개선권고

* 외교·경제·국방상 필요 → 학술·문화행사 입국자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능토록 확대

* 예외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부부처, 각종 경제사회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 동시에 이 사항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이 타당함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의무(강화)

- 기존 입국에 관한 정보 외에 출국에 관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자료제출 의무를 추가

☞ 운수업자로부터 승객의 ‘여행출발지 및 경유지’, ‘예약번호’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불법 입·출국 사전 단속 등에 필요성이 있어 원안의결

○ 난민인정의 취소 요건 추가(강화)

- 국제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추가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차후에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적용 배제대상이 되는 경우 그 취소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안에 따라 난민인정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동향조사 대상 확대(강화)

- 방문하여 질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중개한 자 또는 업소” 추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지·질문권 신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상당수 혼인 당사자들이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중계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질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길거리 단속은 출입국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불심검문의 근거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에 대한 정지·질문권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공증인법 시행령(신설)

■ 심사내용

○ 공증인 임명·인가 절차

- 임명공증인 임명 절차 및 인가공증인 인가 절차를 규정

☞ 공증인법 제15조의11('10.2월 시행)에서 공증인 임명·인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따라서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임명공증인(개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등)에 대한 임명·인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국적법(강화)

■ 심사내용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 및 절차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함

☞ 동 개정안에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선천적 복수국적자, 우수 외국인재, 결혼이민자 등)함에 따라 향후 복수국적자 증가에 대비, 대한민국내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도 병역 등 각종 의무를 회피하거나 외국인 학교 입학 등을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국무총리실

•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Tel. 2100-2312, hsg36@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대해 신설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3건, 비중요규제 1건)
- 심사대상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제203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2. 1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 설 4 * 중요 3, 비중요 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신설 4)

■ 심사내용

-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제조자 부담금의 감면,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신설)

☞ 녹색기술 등의 품질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인증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 이고, 별도로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환경·신기술 분야 등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존 인증제*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규제비용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제정시 구체화 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환경표지인증, 신제품인증,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등

- 정부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별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또한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고해야 함(신설)

☞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기반이 필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에 대해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보고의무를 정비할 계획인 점, 개선명령 이행시 지원제도가 병행된다는 점,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정부의 개선명령에 대해 관리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작성,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량 감축 담합 등의 반(反)경쟁행위 가능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정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여 배출권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신설)

☞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편입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축의무국 중 대다수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규제 방식과 비교할 때 시장 원리를 통해 동일 수준의 배출량을 최소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실시방법 등은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시 규제 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정부는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의 구매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의 구매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신설)

☞ 타 부문에 비해 감축잠재량이 큰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수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시 타 법령에 의한 관련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의 중복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6. 국민권익위원회

• 집필자 : 김광현 주무관(Tel. 2100-2313, bobo@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1건, 등 총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9. 10. 20) 제220차 규제개혁위원회 (2009. 11. 26)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 1

나.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부패방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범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지자체 예산·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교·학교법인을 추가하고 공직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원 추가(강화)

☞ 부패방지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학교·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것은 여타 정부보조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사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이 있으므로 “학교·학교법인”을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7. 감사원

•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321, jmy59@pmo.go.kr)

가. 200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9년도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신설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 예비심사로 종결

감사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7.3 ~ 6일	비중요규제 1	신설 1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임용자격 제한(신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 관련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그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유능한 적임자를 임용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에 비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앙행정기관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 자격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경력기준

제12절 | 평가

• 집필자 : 이혁우 박사(배재대학교)

554

1. 규제심사 현황 평가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안건은 총 215건으로 본위원회 116건, 경제분과위원회 42건,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총 57건의 규제안건을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활동이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 비해 활발했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동의 비율은 전체 33.3%로 세부적으로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43.9%)>본위원회(32.8%)>경제분과위원회(23.8%), 권고결정 비율은 전체 51.6%로 세부적으로는 경제분과위원회(66.7%)>본위원회(51.6%)>행정사회분과위원회(45.6%), 재심사 결정 비율은 전체 13.2%로 세부적으로는 본위원회(16.5%)>행정사회분과위원회(10.5%)>경제분과위원회(9.5%)를 보임.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제분과위원회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안건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았음. 그러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안 역시 과반수가 권고나 재심사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규제형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즉 이런 현황은 각 부처는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피규제자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집행가능성,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규제형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1〉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비교

	본 위원회	경제분과 위원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총계
의결규제 총계	116건	42건	57건	215
	100%	100%	100%	100%
원안동의	38건	10건	25건	73
	32.8%	23.8%	43.9%	33.3%
권고(개선/철회)	59건	28건	26건	113
	51.6%	66.7%	45.6%	51.6%
재심사	19건	4건	6건	29
	16.5%	9.5%	10.5%	13.2%
기타	4건	0건	0건	4
	3.4%	0%	0%	1.8%

* 참고 : '기타'는 원안의결, 권고, 재심을 결정하면서, 일몰제 설정 등과 같은 추가적 권고를 한 것으로 중복계산 된 것임.

2. 규제심사 내용 평가

가. 재심사 및 철회 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1)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규제안 2)입법체계상 흠결이 있는 규제안 3)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규제안 4)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규제안에 대해 재심사 및 철회 권고를 내림.

(1)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 미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사회 2009-237)'은 폴리에틸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합성수지 4종에 대해 용출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가 유발하는 위험정도, 동 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철회권고를 받음.

(2) 입법체계상 흠결이 있는 규제안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경제 2009-308)’은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우수체험시설의 지정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므로 지정요건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음.

(3)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 미비

법무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본 2009-129)’은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지문찍기 등 개인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 예약정보도 확대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국가이미지 실추 가능성과 같이 동 규제의 신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재심사 결정을 함.

(4)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 미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본 2009-415)’은 재가(在家) 급여기관에 대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시설연면적 확대와 같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방문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투입적 측면에 치우친 규제와 함께 이들 기관의 최종 성과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같은 성과측면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심사 결정을 함.

나. 개선권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규제안 2) 민간의 자율적 문제 해결능력을 경시한 규제안 3)규제대상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규제안 4)규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불가능한 규제안 5)규제목적의 달성과 무관한 규제안 6)규제대상이 불명확한 규제안 7)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규제안 8)피규제자에게 지나치게 강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안에 대해 개선권고 결정을 하였음.

(1)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존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본 2009-297)’은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에 방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 방해’라는 요건은 과태료 처분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자의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동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음.

(2) 민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경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사회 2009-129)’은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함.

그러나 보수교육은 체육지도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무적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하였음.

(3) 규제대상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안(사회 407회)’은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설하여, 검사원의 수를 정하면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이화학분야 3명, 미생물분야 2명은 대학원 또는 대학졸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식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분야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도 3년 과정, 4년 심화과정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졸업자에 대한 경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개선권고 하였음.

(4) 규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불가능

농림수산식품부의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경제 2009-286)’은 낙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멍조끼의 착용과 조명 및 통신망의 휴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오히려 낙시인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낙시인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음.

(5) 규제목적의 달성과 무관한 규제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개정령(사회 2009-129)’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였음.

그러나 체육지도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하였음.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고,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교육활동과 관련된 형벌의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6) 규제대상이 불명확한 규제안

보건복지가족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사회 2009-126)’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산후조리업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동 규제안은 다수의 기존 산후조리업자(약 89%)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소수의 신규업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동 규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나아가 동 규제안으로 인해 신규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진입제한, 기존업자의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회를 권고하였음.

(7)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규제안

국토해양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 2009-219)’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동 규제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와의 장기계약 회피,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변경과 같은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켜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회를 권고하였음.

(8) 피규제자에 지나치게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개정안(본 2009-205)’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여타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보관기간을 부과하는 데 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5년의 보관기간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하였음.

다. 제시된 대안의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심사과정에서 1)규제대상의 다양성·규제준수 능력의 고려 2)예외적 허용 가능성 도입 3)규제적응기간의 제공 4)투입규제에서 성과규제로 5)제재수단의 유연화 6)규제효과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7)정책실험 후 전면적 실시 8)구체적인 대안 혹은 보완의견의 제시 등 다양한 규제대안을 제시하였음.

(1) 규제대상의 다양성/규제준수 능력의 고려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본 2009-7) 제정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및 지정절차를 설계하면서 이들 기준을 모든 업소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를 조리하지 않는 업소와 조리업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한 이유는 조리를 하지 않는 업소는 조리업소와는 시설기준이 매우 간소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규제안을 조리하지 않은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2) 예외적 허용 가능성 도입

환경부의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본 2009-313)’은 수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변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에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개선권고 하였음.

(3) 규제적응기간의 제공

국토해양부의 ‘해운업 시행규칙 개정안(경제 2009-212)’은 현행 외항정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으로 선박보유량은 총톤수 5,000톤에서 1만톤 이상으로, 자본금은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동 규제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도한 투기 성용·대선 관행 등 해운업계의 부실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 하였으나, 다만 현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음.

(4) 투입규제에서 성과규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본 2009-15)’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금속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 등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업종별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동 규제안에 대해 이처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이물질 감지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준수사항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음.

(5) 제재수단의 유연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사회 2009-250)’은 행정사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휴업신고나 사무소 이전을 하지 않거나, 업무처리부를 비치 혹은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출입검사를 방해 혹은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규제안에 대해 타 자격제도의 경우 법령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견책·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상기 항목과 동일 내용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획일적 업무정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령위반 수준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조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하였음.

(6) 규제효과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본 2009-92)'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여 경품제공 게임기기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경품 환전을 통한 불법사행행위의 방지대책이 조속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서 동 규제안을 수용하되 1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일몰기한 도래 시까지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음.

(7) 정책실험 후 전면실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본 2009-273)'은 대기환경의 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대상을 시내버스, 영업용택시, 택배트럭(1톤 이하)로 규정하였음.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대상 지정은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해서 1년 간 시행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전면적 실시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하였음.

(8) 구체적인 대안 및 보완의견의 제시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경제 2009-286)'은 음용수용 배관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도물의 위생적 공급 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음.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동 규제안이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불필요한 부담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오히려

음용수용 배관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비규제 대안의 활용을 통해 수돗물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 철회를 권고하였음.

3. 합의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례 분석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주는 합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안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2009년의 경우 의결안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본위원회와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안은 모두 120건에 불과함. 이는 한 해 동안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규제안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대안제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009년 규제심사 권고사례분석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주로 권고나 재심사의 이유를 논의하는 면에 좀 더 치중해 있음. 물론 다수의 규제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규제대상의 다양성 고려, 예외적 허용가능성 검토, 규제 적용기간의 제공, 규제효과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재수단의 유연화 가능성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규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음.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좀 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권고사례의 분석은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규제개혁의 방향은 위원의 교체, 정권의 교체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방향, 그리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이유로

규제개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심사한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해 두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방향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스스로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됨.

넷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함. 규제권고 사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린 규제 중 원안 동의되는 경우는 33.3%에 불과함.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제공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가이드는 대부분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원칙만을 나열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그런 일반론적 원칙이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된 결과 규제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교육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의 물적,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함. 규제개혁위원회가 양적으로 심사기능을 확충하고, 질적으로도 규제심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각자의 개인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개혁실의 현재 인적·물적 자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전문화가 필요함.

나. 각 부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례 분석이 각 부처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규제형성시스템에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함. 현행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안을 설계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비용편익의 분석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를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규제 중 개선권고 비율은 무려 51.6%에 이르며, 심지어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 자체도 불가능하여 재심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도 13.2%에 이릅니다.

둘째, 규제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함. 각 부처는 규제목표를 최적의 대안으로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제 도입 그 자체에 치중한 결과 보다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형성해 옴.

규제심사 권고 사례 분석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해당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규제대안만을 안으로 상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2007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부처가 중요규제에 대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무려 90.2%가 대안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 규제심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자체규제 심사과정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임.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Regulatory Reform Book

- 제1절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 제2절 미등록 규제 정비
- 제3절 규제정보화 추진
- 제4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 제5절 행정조사 제도 운영
-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제7절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추진

제1절 |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 집필자 : 오성호 사무관(Tel. 2100-2280, osh9759@pmo.go.kr)

569

제
1
절
—
규
제
일
몰
제
확
대
도
입

1. 규제 일몰제 개요

일몰제도 또는 일몰법(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은 정부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폐지기한(deadline)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종결(automatic termination)되도록 하는 제도로 각국에서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규제영역에 대한 일몰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규제실패를 방지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양적 축소,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기한도래시 규제에 대한 존속필요성 검토로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 및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둘 것을 명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기존 규제 일몰제 운영의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는 '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제 일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5년 존속기한의 규제 일몰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몰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존속기한 도래시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법령이 영속을 전제로 만들어져 존속기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방안이 없는 한 일몰제의 확대적용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일몰설정여부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실제 일몰제를 적용한 실적이 미진하였다.

3.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

이러한 기존 일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일몰제인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재검토행 일몰제'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달리 일정 기간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로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일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규제 일몰제 유형

구분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행 일몰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도래시 효력을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을 재설계 -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불필요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09.11월 1차적으로 28개 부처 총 2,148건의 경제적규제 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일몰제인 효력상실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14건(2.5%)이며 재검토행 일몰이 적용된 것은 544건(97.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일몰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재검토행 일몰’은 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입되었고, 경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신고의무, 부담금관련 규제에 중점적으로 설정되었다. ‘효력상실형 일몰’은 법적인정성을 고려하여 존속 필요기한이 예측되는 규제 등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이 5.4%를 차지하였다. 부처별로 보면 평균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관세청·중기청·환경부 등은 규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일몰을 적용하였다.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266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하였다.

일몰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해져 앞으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또한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2단계로 '10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규제 및 추가등록규제 5,100여건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여 규제 일몰제를 전체 규제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 미등록 규제 정비

•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 2100-2276, bhlee@pmo.go.kr)

572

1. 개요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체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80년대와 '90년대 전반에도 규제개혁이 있었지만 '80년대는 행정개혁의 성격이 크고, '90년대 초반에는 행정쇄신위원회 등 여러개의 조직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바로 규제등록제도이다. 규제등록제도는 각 중앙부처가 자신의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에 있는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 중앙부처에 존재하는 규제총량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규제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규제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시스템 미비로 미등록 규제가 다수 존재하여 전체 정부규제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시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2. 미등록 규제 정비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제등록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09년 한 해 각 부처의 미등록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09년 2월 '미등록 규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는 규제수가 많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청, 하반기에는 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청의 소관법령을 전수조사해 2,298개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등록을 독려해 '09년 말 현재 1,912건(주 규제 기준)을 등록시켰으며, 현재도 미등록 규제 발굴 및 추가 등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등록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 결과, 미등록 규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 경우 부처에서는 규제 등록수 증가를 우려하여 규제개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의 규제 등록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주규제와 부수규제를 분리등록토록 하였으며, '09년 8월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RIS)을 구축해 규제등록을 하지 않고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미등록 규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미등록 규제 정비 등의 효과로 전체 중앙부처의 규제 등록수는 작년 초 5,186건에서 1,554건이 증가하여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6,740건이 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규제관리가 가능해졌고, 모든 규제가 등록됨에 따라 규제개혁에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등록 규제 정비 등 규제등록제도의 내실화 작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규제등록 제도가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리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제3절 | 규제정보화 추진

• 집필자 : 이미경 사무관(T.2100-2322, lmgjae@pmo.go.kr)

574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이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했고, 필요한 규제 정보의 검색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관련 정보의 전산화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업무 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08. 3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08.4)하여 규제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7월에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ISP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4개월 동안 ISP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09년에는 ISP결과를 바탕으로 2월부터 8월까지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09.8.10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다.

2.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내용

가. 규제정보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기존의 규제등록 시스템이 단순한 규제등록 정보를 부처별, 법령별로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규제정보화 시스템은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생성·변동·소멸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검색어 입력을 통해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등 다양한 검색 항목 제공과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규제에 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수규제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절차별로 규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나. 규제개혁 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 이행상태 점검, 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관리와 규제등록, 규제심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규제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다. 규제심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규제심사대상심의, 예비심사, 분과위 및 본회의 등 규제심사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부처별로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제출하고 규제심사관은 시스템 상에서 안전을 접수, 예비심사 진행, 검토보고서 작성, 안전상정 등 규제심사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규제심사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지난 심사정보를 검색하여 규제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10년에는 '09년에 이어 규제정보화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4월경에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월 구축완료를 목표로 한다.

구축내용은 각 부처 자체규제심사 지원시스템 등 지난해 구축된 규제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더욱 다양한 규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4절 |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 집필자 : 오성호 사무관(Tel. 2100-2280, osh9759@pmo.go.kr)

577

제 4 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①항 5호)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시 규제 및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을 망라하여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토록 하여 합리적 규제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1)」, 「경제법령 사전심사 제도(1995~1997)」등에서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심의 등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7월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요소를 단순화하고 대국민 공표의무를 강화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와 대안검토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2.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2006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분석요소간 중복 및 다양한 대안검토의 부재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피규제자·이해관계자 확인·의견청취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입법예고시 동일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위와 중기청·공정위에 송부하여 중기·경쟁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각 부처 담당자의 중복된 자료 작성에 따른 행정부담과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지적이 일부 존재하였다.

3.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가. 규제영향분석 관련 협의 및 활용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08.12)하여 '09년부터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피규제집단과 이해관계인 등의 현황, 규모 등을 파악·기술토록 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화하였으며, 규제심사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규제심사시 착안 및 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하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력 낭비 예방과 충실한 분석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에서 심사안건 자료를 중복 작성치 않고 영향분석서 원문을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절차간소화를 통해 입법추진부처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추진부처는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중기청·공정위에 별도로 송부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만 제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09.12),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 평가요소의 조정

기존 요소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대안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항목에 '대안검토' 요소를 추가하여 복수의 대안을 상정·검토토록 하고, 대안 선택시 비교·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제의 강도·방식, 시장경쟁제한여부,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영향 반영 등을 제시토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08.12)하고 '09년부터 시행하였다.

기존 (3개 항목 8개 요소)	개정 (3개 항목 7개 요소)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1-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1-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1. 규제의 필요성 1-가. 문제정의 1-나. 정책목표 및 규제의 필요성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가. 대안검토 2-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3-나. 규제의 명료성 3-다. 이해관계자 협의 3-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가. 규제의 적정성 3-나. 이해관계자 협의 3-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다. 기타

관련 지침 개정시 충분한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여 각 부처 담당자들의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08.12월 개정, '09년 시행).

제5절 | 행정조사 제도 운영

• 집필자 : 박노극 사무관(Tel. 2100-2279, nkpark1125@pmo.go.kr)

580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09년도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운영계획에는 조사종류, 조사근거 및 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체 및 대상,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 계획에는 정비구분, 정비내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행정조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또한,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방지 등의 기본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09년도에는 22개 부처에서 총 393건의 행정조사를 운영하였고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50건, 통계청 40건, 문화체육관광부 38건, 환경부 34건, 국토해양부 30건의 순이었다.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가. 추진 배경

국민의 권익침해방지 및 기업의 실질적인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점검

나. 행정조사 정비 기준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2) 행정조사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완화·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on-line 등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

(3) 공동조사 대상발굴 및 실시

- 기업 및 사업자 단체·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조사 자체 발굴
- 동일·유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 실시

(4)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면, 이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기업의 행정조사 자율준수 program의 도입을 확대·활성화

(5) 행정조사 근거법령의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령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자의적, 편의적인 지침·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금지
-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3. 행정조사 정비내용('09년도 정비사례)

전체 393건의 행정조사 중 59건(15%)의 행정조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중 47건(80%)을 정비완료하고, 아울러 다수의 관련 개별규정들을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가.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농산물품질인증품 생산자 및 단체에 대한 조사를 폐지하고, 대형선박 및 유조선의 특정해역 운항시 운항사항 통보의무를 폐지하는 등 6건 정비

나. 행정조사기준 완화

- 수입검역대상이 되는 물품의 검사를 현장검사에서 서류검사로 완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시험검사를 서류·현장검사 2회에서 현장조사 1회로 완화하는 등 17건 정비

다. 공동조사 실시

- ‘가축전염병병원체관리요령’ 상의 특별보존병원체에 관한 조사를 기관별 조사에서 공동조사로 전환

라. 자율관리체제로의 전환

- 공정거래협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 받는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등 6건 정비

마. 행정조사 근거법령 정비

- 공정위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중복조사 방지시스템 구축,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등 17건 정비

제6절 | 규제개혁 국제협력

• 집필자 : 전예진 사무관(Tel. 2100-2307, yjchun@pmo.go.kr)

584

1. 개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구 규제개혁 작업반회의)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추진성과와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의의 참석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 등의 대외협력 업무가 있다.

OECD 회의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작업반회의('09.5월, 9월)와 규제정책위원회('09.11월)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세계은행그룹 주관 워크숍 및 컨퍼런스('09.3월, 6월)와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International Regulatory Reform Conference, '09.11월)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대외협력도 강화하여, 방글라데시('09.1월, 2월) 및 인도네시아('09.10월, 11월, 12월)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와 주요 성과를 홍보했다.

2. OECD 국제회의의 참석

가. OECD 규제개혁 작업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09.5.11~12, 프랑스 파리)

'09.5.11~12 개최된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분야 규제 개선, 규제관리지수, 규제감독기구 관련 연구, 행정부담 감축 방안, 이탈리아의 규제 개혁 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분야 규제 개선

- OECD 사무국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금융분야에 있어 더 좋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회원국은 금융분야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 규제관리지수

- '08년 규제관리지수 조사 결과 초안이 발표되었고, 조사 방법의 수정 필요성,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우리나라는 규제심사와 일몰제, 규제감독기구 역량, 투명성과 규제 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05년에 이어 '08년에도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
 - 조사 방법에 대해 덴마크 등 일부 국가가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일 기준에 의거한 국가간 비교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 사무국은 향후 조사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활발한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규제감독기구 관련 연구

-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기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연구의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동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하였으며, 규제감독기구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에 조정능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다수 회원국도 동 연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표명하였으나,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닌 규제 품질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4) 행정부담 감축 방안

- 새로운 행정부담 보고서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 방안, 다양한 설문지에 응답해야 하는 회원국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우리나라는 ICT를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 노력(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민원 선진화 추진계획,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소개하였으며,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를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로 인용하였으므로, 향후 동 보고서 작성시 긍정적 평가가 기대된다.
- OECD 사무국은 기존 응답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회원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임을 밝혔다.

(5) 이탈리아의 규제 개혁 심사

- 이탈리아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규제 개혁의 걸림돌이 아닌 추진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또한 규제 관리에 있어 중앙·지방정부 측면에서 다층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보완 및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나. OECD 규제개혁 작업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09.9.21~22, 프랑스 파리)

'09.9.21~22 개최된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관리지수, 행정부담 감축 방안, 규제개혁 국제협력 강화, 호주의 규제개혁 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의장단 선거 및 회의 주재

- 우리측 수석대표(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가 의장단을 3선 연임하였으며, 의장 대행자격으로 9.22일 회의를 주재하였다.

(2)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 OECD 사무국은 한국의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 등 5개국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와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소개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회원국은 규제개혁이 위기극복의 중요 수단임에 동의하고, 금융 분야 감독 강화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소개했다.

(3) 규제관리지수

- '08년 규제관리지수 최종 보고서의 출판과 관련하여 보고서 보완 필요성,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우리나라는 규제심사, 규제감독기구 역량, 투명성과 규제 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05년에 이어 '08년에도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
 - 회원국들은 보고서 출판에 동의하고, 각 국가별 규제관리 현황을 보고서에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청했다.
- 사무국은 향후 진행될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연구에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체감도 조사 운영위원회에는 참여하되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혔다.

(4) 행정부담 감축 방안

- 행정부담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었고, 추가 자료수집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는 행정부담을 먼저 감축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한국 정책의 특징*을 강조하고, ICT를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 노력을 소개했다.

*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수의 회원국은 행정부담의 양을 먼저 측정한 후 2010년까지 총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자발적인 사례 제공을 요청하고, 향후 간단한 설문지를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5) 규제개혁 국제협력 강화

○ 사무국은 APEC, MENA(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인도 등과의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주재 워싱턴·하노이 컨퍼런스 참석 경험을 소개 하면서 아시아 등 개도국을 위한 규제개혁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6) 호주의 규제개혁 심사

○ 연방제 국가인 호주는 개혁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국적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 회원국은 호주정부의 규제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과 다층적 정부에서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호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09.11.5~6, 프랑스 파리)

'09.11.5~6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구 규제개혁 작업반회의가 위원회로 격상됨)에서는 단기적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정책위원회 임무안 및 향후 활동계획, 호주의 규제개혁 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규제 심포지엄도 열렸다.

(1) 단기적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 한국과 영국, 멕시코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98년의 50% 규제 감축 및 최근의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소개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 회원국은 위기를 규제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 동의하고, 각국의 은행 개혁과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2) 규제 심포지엄

- 규제의 정치적 측면 및 다층적 규제 거버넌스 관련, 각국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우리나라는 최병선 규제개혁위원장이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하여 규제포획 방지 및 규제개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규제자인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각국 패널들은 규제영향분석의 활용도 제고 필요성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3) 규제정책위원회 임무안

- 규제개혁 작업반회의가 격상되어 신설된 규제정책위원회의 임무안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은 임무안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 그러나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방지 등의 요청도 있었으므로, 사무국은 향후 회원국의 의견수렴 후 최종 임무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4) 규제정책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 향후 규제정책위원회는 국제협력 증진, 비회원국 참여 확대, 국가별 규제심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 사무국은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원국 선호도를 반영하여 최종 활동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5) 호주의 규제개혁 심사

- 호주는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결정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확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GDP 증가 등에 기여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향후 지속적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회원국은 규제영향분석과 주정부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호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세계은행 주관 워크숍 및 컨퍼런스 참석

가. 세계은행 워크숍 “규제개혁을 통한 위기의 기회로의 전환”(World Bank Institute Global Workshop on "Turning Crises into Opportunities through Regulatory Reforms", '09.3.19~20, 미국 워싱턴)

'09.3.19~20 개최된 세계은행 주관 국제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각국의 사례발표와 규제개혁 모멘텀 유지 및 지역적·세계적 협력방안 관련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1) 규제개혁을 통한 위기의 기회로의 전환 사례발표

- 한국의 '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경험과 성공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규제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빠른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 지지 등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행정규제기본법 마련 등 확고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소개하였다.

(2) 규제개혁 모멘텀 유지 방안

- 관련 토론의 패널로 참석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 워크숍 관련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이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있어 지역적 협력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나. 세계은행그룹 컨퍼런스 “동남아시아지역 규제개혁 경험 공유”(World Bank Group Conference on "Smart Regulation in South and South East Asia: Sharing Approaches to Regulatory Reform", '09.6.24~25, 베트남 하노이)

'09.6.24~25 개최된 세계은행그룹 주관 컨퍼런스에서는 동남아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규제개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규제개혁의 제도적 추진 동력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1) 동남아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의 '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경험과 성공요인 및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규제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빠른 기간 내에 극복하였음을 강조하고,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 지지 등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확고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소개하였다.

-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기업 영업활동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히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유예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 항구적 폐지·완화 추진 및 새로운 규제개혁 도구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규제개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 한국의 규제개혁 네트워킹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국이 APEC과 OECD, ASEAN+3 등 국제적 협력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지역협력을 통해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알리고, '08년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최 및 CMI 기금 확대제안 등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최근 노력을 소개하였다.
 -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및 규제개혁 경험을 타국과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의 위험관리 메커니즘으로서 지역협력 및 상호학습과 경험공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 참석 (International Regulatory Reform Conference, '09.11.5~6, 스웨덴 스톡홀름)

'09.11.5~6 개최된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독일의 Bertelsmann Stiftung 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 컨퍼런스로, '09년에는 스웨덴 기업자원통신부와 공동 주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전략, 더 좋은 규제를 위한 향후 우선순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규제개혁,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규제절차, 규제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전략

- 한국의 '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경험과 성공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규제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빠른 기간 내에 극복하였음을 강조하고,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 지지 등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확고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소개했다.
- 한시적 규제유예,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등 최근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기업 영업활동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히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유예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 항구적 폐지·완화 추진 및 새로운 규제개혁도구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향후 미래 신기술개발과 사회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헬스케어, 방송통신융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중임을 소개하였다.

나. 더 좋은 규제를 위한 향후 우선순위

- 규제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미국 규제개혁의 향후 방향, 더 좋은 규제의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규제개혁

- 베트남, 르완다, 잠비아가 규제영향분석 등을 활용한 최근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였다.

라. 규제 집행 :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규제 절차

-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행정조사 및 집행 개선방안, 기업의 보고의무 감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 규제 효율성 : 규제의 이유, 방법 및 시기

- 유럽의 독립적인 규제감독기관, 규제집행 후 점검 활성화 방안,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 규제개혁 경험전수 : 개도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가. 방글라데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09.1.7, 2.16)

KDI 주관 규제영향평가 워크숍 등과 관련하여 방한한 방글라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규제개혁을 통한 '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 성공요인,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규제만족도조사 등을 소개하였다.

나.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09.10.21, 11.25, 12.7)

KOICA 주관 인도네시아 정부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규제개혁을 통한 '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및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및 규제심사절차, 규제개혁 성공요인 등을 소개하였다.

제7절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추진

•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75, smlee@pmo.go.kr)

595

제
7
절규
제
개
혁
과
제
이
행
실
태
현
장
점
검
추
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환경개선과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핵심규제를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비완료된 주요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개혁의 실제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

현장점검 개요

- 점검과제 : '08.3월 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높은 5개 분야 8개 과제 선정
 - ① 창업 및 투자활성화(산업단지 제도개선, 공장설립 및 창업절차 간소화)
 - ② 환경규제 합리화 ③ 토지이용 효율화(농지관련 규제개선, 산지관련 규제개선) ④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⑤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소상공인 영업활동지원, 소방검사 제도개선)
- 점검지역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민원증가, 신규투자 발생 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군·구 지역 선정
 -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조사결과가 되지 않도록 현장외 지역에도 서류조사를 병행
- 점검일정 : '09.8.20~9.1(2주간)
- 점검대상기관 : 규제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기관), 제도개선 수요자(기업체, 민원인)
- 과제별 주관기관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11개팀 구성
(주관기관 과장급을 팀장으로 팀별 4~5명 총 51명)
- 점검방식은 서류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정책수요자 대상 만족도 실시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

2. 현장점검 총평

8개 점검과제 대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었으며, 제도개선 성과 및 체감효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제도개선, 산지·환경규제개선 등 지자체 및 민원인의 오랜 숙원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과 신규투자유발 및 고용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투자 및 시장여건제약으로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은 규제개혁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문화재 조사의 경우, 전문인력 확충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간소화를 반영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계류중이라 체감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개혁관련 정책수혜자 및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으로 투자를 고려중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 최근 공장설립과 관련된 4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80%가 규제개선으로 사업확장 등 투자를 고려중인 것으로 답변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적용사례가 있었고, 제도개선된 사항에 대한 정책수요자 홍보부족으로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체감도가 저하되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3. 세부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제도개선의 성과

8개 과제의 제도개선 이후의 성과를 통계수치 및 민원처리율 등 객관적인 수치,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가. 창업 및 투자활성화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24~48개월 → 6개월)

* 2단계 승인체계(개발계획,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주민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08.9) 이후, 42건(승인완료 13건, 진행중 29건)의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을 준수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승인완료	6개월 이내			기간 초과
	계	3개월 이내	3~5개월	
13건	9건	1	7	4건*

* 주민반대 및 사업시행자 자원조달계획 제출지연 등으로 기간 초과

-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하여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 효과 유발

주요 수혜사례

-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는 (주)신해중공업이 실수요 목적으로 조성한 단지로서, 기업 입주시기가 약 2년 6개월 단축
 - 인·허가 비용 절감 6억원,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절감 332억원
 - * 1㎡당 조성원가 : 511천원 → 473천원(△38천원, 7.4% 인하)
 - 사업기간 내 건설인력 약 5,172명 고용창출, 조성 후 고용유발효과로 약 1만 4,700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특례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6인)의 87.5%가 특례법 시행에 만족 (나머지 12.5%는 보통이라고 응답)

②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소규모공장에 대한 특정업종 입지규제를 폐지하고, 사전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을 완화

- * 1만㎡ 미만 공장설립시 특정업종(79개) 입지규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폐지
- * 계획관리지역내 5,000㎡ 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폐지

- 특정업종(철강·화학 등 79개)에 대한 소규모공장 입지제한을 폐지('08.9) 한 이후, 88개 기업이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을 얻음
 - 해당 기업의 신·증설로 인한 신규투자효과는 590억원, 고용효과는 2,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된 2,556개사 중 1,343개사(52.6%)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이 승인된 3,346개사 중 2,103개사(62.9%)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08.8.26 이후)
 - 용역비용 절감(410억원), 공장설립기간 단축(보고서 작성 30일, 협의기간 20일) 등의 직접적 효과 발생
 - 또한 규제완화로 인한 간접적 투자효과는 3조9,000억원, 고용효과는 4만1,8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주요 수혜사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장증설 가능
 - 백운상사(전남 광양시 소재, 제조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배수펌프장 설치 등 요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공장증설 포기('08.7)
 - 1만㎡ 미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폐지로 공장증설을 재신청, 승인('08.10)

-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83%가 동 규제개선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개선내용에 대하여 97.9%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

* 지자체(52개) 및 최근 설립공장과 관련된 기업체(47개) 대상 설문조사

- 규제개선에 따른 투자의향에는 80.8%가 고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효과확산에는 시간 필요
- 한편 애로사항으로 인·허가 서류반려 및 처리지연(25.6%), 불필요한 서류요구(25.6%) 등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여전히 들고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행태 개선 필요
 -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시 인·허가 처리현황 공개 및 제출서류 표준화로 동 사항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10년말 구축완료 예정)

③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법인설립시 채권매입 폐지, 벤처집적시설 입주대상 및 등록면적 확대*, 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개혁 추진

-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집적시설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현행 1,000㎡에서 2,000㎡로 확대
- ** 창업투자조합이 등록 후 3년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CB, BW 등에 투자하는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50%에서 40%로 완화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및 채권매입제도 폐지를 통해 회사설립비용 경감, 채권매입에 따른 은행방문 생략, 구비서류 감축 등 절차간소화로 회사설립이 보다 빨라지고 쉬워짐

* 비용절감액(추정) : 5만원(채권매입액)×32,416개('09.1~7월 신규법인수)
= 1,621백만원

- '09.7월의 신설법인수가 6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2개월 연속 5,000개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임

* '09.7월 신설법인수 5,501개, 6월 5,393개(전년동월 대비 15.6% 상승)

○ 그러나, 경제위기에 따른 보수적인 투자경향 등으로 인해 벤처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나 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의 제도개선효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신규법인 설립자, 벤처집적시설 운영자 및 입주기업, 창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제도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나. 환경규제 합리화

- ①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08.12)

* 광역상수원 20km, 취수장 15km 이내 입지제한 → 취수장 7km 이내 입지제한

-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68개 공장이 신규허가되었고, 이를 통해 796억원 투자효과 및 1,150명 고용효과 창출 예상('09.8월 기준)
 - 특히 김해시의 경우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47개 공장 신규허가 등 활발한 투자 진행

주요 수혜사례

- 밀양 하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
 - 밀양시에서 조성중이던 하남산업단지 예정지와 취수장과의 거리가 8.5km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사업추진 중단('07년)
 -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가 완화('08.12)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
- 남양주 등 일부지역은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가 완화된 지역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어서 여전히 공장입지가 제한
- ②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해 사업규모별로 사전환경성 검토(15만㎡ 미만)와 환경영향평가(15만㎡ 이상) 중 하나만 실시하고 절차를 간소화
 - * 종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거치고, 4계절 조사 실시
- 개발사업자 및 대행업체 등은 비용과 기간이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평가 (전국적으로 40여건 환경성평가 실시, 향후 5조원 투자 추정)

주요 수혜사례

-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시, 환경분야 협의기간이 총 70일 소요
 - 종전에 환경분야 협의기간이 총 236일 소요되었던 사례('06.6월 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다. 토지이용 효율화

① 토지이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보안림 해제요건 완화 및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

- 산지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산지관련 규제개선으로 기업투자 8,760억원 및 세수증대 연간 24억원 기대
 -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산지전용시설 및 연접제한개발 완화로 총 513건 산지전용허가 등 직접수혜 발생
 - *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등으로 투자금액 1,100억원, 고용효과 연간 2,000명(소매점 운영시)

주요 수혜사례

- 보안림내 고등학교까지만 시설허용되었으나, 대학교 시설 설치 허용
 - 투자금액 961억원(원주 동우대학교 234억원, 파주 신흥대학교 727억원)
 - * 세수증대는 연간 1억원, 고용효과는 연간 400명, 간접수혜자 약 5만명 (상가, 주택임대사업자, 지역주민 등)

②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소득관련시설의 규모제한을 완화

-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균 13일 정도 소요기간 단축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규모제한 완화로 시설규모 확대가 가능해져 농업종사자 소득증대에 기여

라. 문화재조사 제도 개선

① 개발사업자의 문화재 조사·발굴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요건 완화, 활동지역제한 폐지

-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요건 완화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이 증가
 - * 조사기관 : ('08.12) 123개 → ('09.6) 147개
 - * 조사인력 : ('08.12) 2,046명 → ('09.6) 2,393명

- 조사기관의 활동지역 폐지로 타지역 조사 활성화
 - * 타지역 조사 : ('08.3) 0건 → ('09.8) 49건

-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공급 확충으로 개발사업자의 문화재조사 대기기간이 평균 85.9일 단축
 - * 문화재조사 대기기간 : ('08.3) 178.6일 → ('09.8) 92.7일

- 그러나 신규인력의 유입이 충분하지 못하여 문화재조사 대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② 불합리하고 복잡한 문화재조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재조사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
 - * 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50일→30일, 지표조사규정 개정)
 - * 발굴허가 및 유적미확인시 행정처리기간 단축(62일→10일, 발굴조사지침 개정)
 - *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월 1회→수시,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

- 다만,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28일→0일)를 반영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규제개혁 성과가 제한적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08.11.28)

- 234개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DB화를 완료하고, 문화재 분포 확인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생략근거를 마련

마.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

- ①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 * 1,000만원 이하 보증은 약식 심사방식 적용, 협약된 일부금융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취급기관 확대, 금융기관 연체여부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 보증심사기간은 기존의 2주에서 6일로 축소되었고,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특례보증 이용도도 향상*

- * 전체 보증건수 대비 특례보증비율 : ('08년) 43% → ('09년 상반기) 63%

- * 전체 보증액 대비 특례보증비율 : ('08년) 25% → ('09년 상반기) 40%

② 재래시장내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확대와 민간자부담 면제, 시·도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 * 국비보조금 확대(최대 70억원→100억원), 고객휴게실·문화시설·공동작업실 등 설치시 민간자부담 면제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증가 점포비율이 26.1%(미실시 시장은 1.9%), 고객증가 점포비율이 26.8%(미실시 시장은 1.8%) 나타나는 등 지원성과 가시화

③ 소규모 영세자영업소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 유예 및 검사 통합시행

- *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1년 한시적 유예, 6개월 이내 중복검사 자제, 민간전문기관의 소방점검결과를 소방검사실시로 대체

○ 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 면제조치로 약 100억원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예상

- 14,498개(2008년 준공대상) × 696,605원(점검단가) = 약 100억원

- * 점검단가: 2008년 엔지니어링 산업기준(1일 점검인원 3인)

(2) 집행기관 이행실태 및 추가 건의사항

- ①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제도개선 내용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며, 후속조치 마련 및 변경된 제도 적용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미숙지로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징구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례도 발견

주요 미흡사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08.7)에 따른 토석채취 허용기준 규제완화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도 ○○군)

- ② 허가처리기한 축소 등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증가된 민원수요에 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담당인력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주요 지적사례

- 산지전용허가 처리기한이 30일에서 25일로 축소('09.4)되었으나, 업무량에 비해 담당인력이 불충분하여 처리에 평균 35일 소요(○○도 ○○시)

- ③ 기존의 제도개선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법령규정의 명확화 등 집행기관 건의사항이 있었음

- 환경·산지규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내 높은 개발압력 등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

-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 집행기관 건의사항도 있었음

4. 향후 후속조치 계획

집행기관 담당자의 업무미숙지 및 홍보미흡 등 이번 점검결과로 지적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경험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과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Regulatory Reform Book

제1절 2009년 규제개혁 평가

제2절 2009 규제개혁 : 평가와 향후과제

제3절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1절 | 2009년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75, smlee@pmo.go.kr)

609

제
1
절2
0
0
9
년
규
제
개
혁
평
가

1. 규제개혁 평가 개요

매년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 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가대상은 30개 중앙행정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2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 규제 개혁과제나 신설·강화규제가 없는 통계청과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 과제발굴,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평가를 하였으며, 계획과 집행보다는 규제개혁의 효과와 만족도 등 산출과 결과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2. 2009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미래산업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토지·기업·서비스업·환경·노동 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였다. 2009년에는 총 1,327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963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09.5월)하여 280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반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추진('09.11월)하여 175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미등록 규제정비와 일몰제 확대 적용 등 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전 부처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였고, 모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높였다.

*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2,011건 발굴·등록('09.3~10) 및 나머지 15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규제 발굴·등록 추진('09.8~12)

** 1단계로 경제적 규제(2,184건) 대상으로 558건 일몰 설정

기업 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의 품질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혁만족도가 64.1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61.9점) 대비 2.2점 상승하였다.

다만,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중임에 따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기관중심의 일방통행식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적실성과 규제개혁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부문별 평가결과

■ 계획 단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9년에 정비할 1,327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경제단체·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다.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 집행단계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57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71건의 중요규제 중 110건(64.3%)에 대해 철회·개선을 권고하였다.

2009년부터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규제대안분석이 강화되어 규제의 적절성 및 대안검토는 충실히 작성하였으나, 비용편익분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다수이며, 집행·단속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규제집행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상 예상 문제집'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주요 규제개혁정책 발표 및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보도 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고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표명을 위해 장·차관 등 고위간부들이 강연·인터뷰·현장방문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일부부처에서는 Blog·UCC 제작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국민·전문가집단·해외 오피니언 리더 등 특정고객집단에 맞는 홍보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사례

- 민관합동의 “한국금융바로알리기 지원단”을 구성, 애널리스트·해외주요언론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실무적 홍보(금융위원회)
- 고객을 정책니즈에 따라 재분류(다출원기업, 특허분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하여 집단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홍보전략 구사(특허청)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언론매체 및 국민과의 상호소통보다 기관중심의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 산출/결과단계

2009년 규제개혁 만족도는 64.1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61.9점) 대비 2.2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3.4점 상승)하였다. 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66.5점으로 일반국민(62.9점), 내부고객(63.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총합			
	'07	'08	'09	증감	'07	'08	'09	증감	'08	'09	증감	'07	'08	'09	증감
전체	54.8	59.5	62.9	↑3.4	63.0	66.3	66.5	↑0.2	60.7	63.6	↑2.9	58.8	61.9	64.1	↑2.2

* 내부고객은 '08년부터 처음 실시, 증감은 '08년 대비

II. 규제개혁 평가 틀

OECD(2002)는 규제개혁의 구성요소를 규제정책, 규제수단, 규제기관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혁 요소들 간 조정과 일관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표적 수단으로는 규제영향 분석(RIA), 규제대안의 체계적인 고려, 이해관계자 협의, 책임성제고를 위한 제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잘 조직화된 규제감독기구 역시 규제정책과 개혁의 성과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OECD(2004:20)는 규제수단과 기관에 대한 사후평가의 개념적 분석틀로 정책평가의 일반 유형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순응 테스트(Compliance tests)는 규제 품질제고의 수단과 기관의 개별 요소들에 대한 공식적인 순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성과 테스트(Performance tests)는 절차적 요건을 초월해서 수행된 정책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 테스트(Function tests)는 규제수단이나 기관이 규제품질의 결과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김정해·이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OECD(2004)에서 논의되었던 순응, 성과, 기능평가 유형을 보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유형을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투입평가는 규제정책의 정향, 전략과 같은 무형의 투입 요소 등을 평가한다. 둘째, 활동/과정평가는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및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한다. 셋째, 산출평가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산출물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정비실적, 신설강화규제의 증감률 등 각 종 양적 질적 산출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결과평가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목표대비 달성도, 규제개혁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나타낸다. 다섯째, 효과평가는 규제개혁이 궁극적으로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2009년도에 이루어진 OECD의 규제관리시스템 조사(the OECD's survey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지표는 다음의 4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정책 및 제도(institutional arrange-

ment)이다. 여기에는 규제정책과 감독(oversight), 정책 통일성(policy coherence), 규제 품질 기술 교육훈련, 규제정책에서 의회의 역할과 다차원의 조정(coordination)이 포함된다. 둘째는 투명성과 개방성(open processes)에 관한 것으로 의사소통, 자문 절차, 의사결정의 명확성 및 적절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도구로서 여기에는 대안(alternatives), 규제영향분석(RIA), 순응(compliance) 및 집행(enforcement) 등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넷째는 기존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 간소화 전략(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trategies)과 사전사후 규제검토 및 평가(ex-post regulatory review and evaluation)가 포함된다(OECD, 2009a).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논리모형 접근과 OECD 규제관리시스템 지표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논리모형의 틀 속에서 규제정책 정향과 추진체계(투입),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과정), 규제개혁의 양적 변화와 품질(산출), 규제개혁의 효과(결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OECD의 선진적 규제관리시스템 관점을 활용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I. 2009 규제개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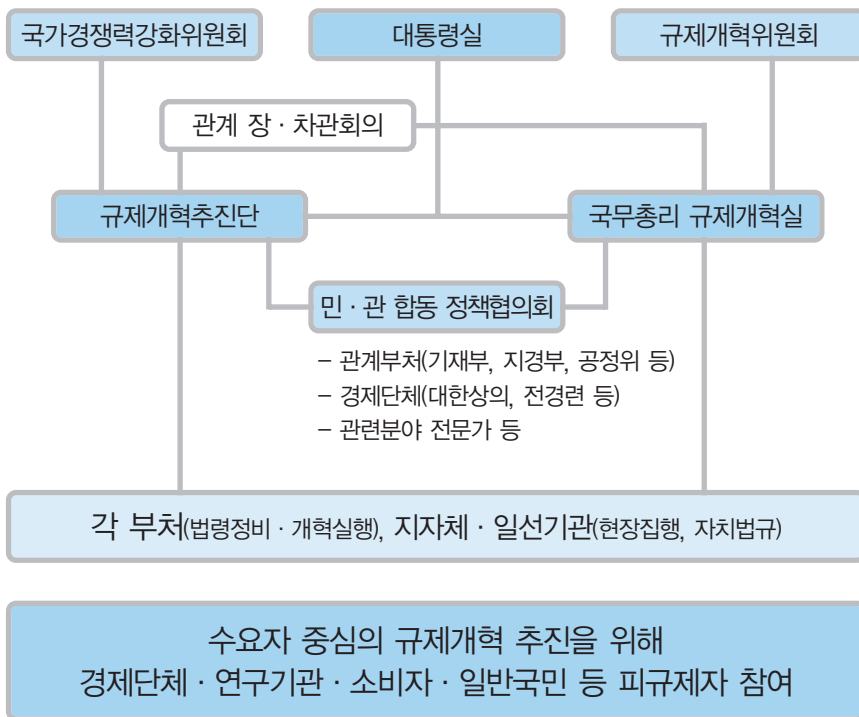
1. 투입 측면: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했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권한을 시장에 넘겨주는 시장중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친기업(business freindly) 정책을 표방하고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부처간 이견이 많았던 규제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 개선(국경위), 기업애로 현장성 강조,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총리실)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치우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디딤돌을 놓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i)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ii)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iii)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iv)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제시하고 속도감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규제개혁 추진체계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처간 이견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핵심 규제들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이 적극 추진하고 개선하였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현장성 강조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과

기등록, 비규제, 기폐지 등에 속하였다(규제개혁위원회, 2009. 6. 25.).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및 신성장산업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수단 및 절차의 합리화 노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수단 및 절차의 개선 (2008~2009)

구분	주요 내용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7월 3개 항목 8개 요소로 통합 단순화, 2008년 12월에는 평가 항목을 3개 항목 7개 요소로 재조정 - 분석항목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논리성 및 대안검토 기능을 강화 • 규제영향분석절차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규제대안분석을 강화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고 규제관련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입법절차 간소화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전문을 규제위와 중기청·공정위에 송부토록 하여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노력 강화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관보 및 부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
미등록규제 일제 조사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처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 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2,011건을 발굴·등록('09년 3~10) - 나머지 15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규제 발굴·등록 추진('09년 8월~12월)
일몰제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 확대 강화를 통한 규제관리 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등록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 - 1단계로 경제적 규제(2,184건)를 대상으로 558건 일몰 설정
규제이력관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신설·강화 규제심사 내역, 규제완화·폐지 변경내역 등 규제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규제검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159건), 중소기업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30건) 등 3개 중점 분야 총 280건의 과제를 선정 - 2년을 원칙으로 규제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유예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하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항구적인 폐지나 완화를 추진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1월 정부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성장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총 175건 발굴 - 신재생에너지 분야 15건 방송통신 융합 24건, 그린수송시스템 16건, MICE 관광 14건, 글로벌교육 27건, 글로벌 헬스 31건,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22건, 콘텐츠 SW 11건 등

구분	주요 내용
규제심사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중요규제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사 가능하게 함 - 비중요규제의 심사 간소화 - 12개 분야 17명의 규제심사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규제심사의 전문성 제고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 및 규제등록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09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보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 규제개혁 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규제심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2010년 부처와 연계한 규제정보화 포털 시스템, 2011~2012년에는 지방자치 단체까지 확산을 목표로 함
규제개혁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 부처청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행정조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기본법 근거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방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국민 권익보호 - 22개 부처에서 총 419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부 64건, 통계청 60건,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51건, 국토해양부 30건 등
규제개혁 건의 과제 수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건의 과제 수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고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 접수 - 규제건의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건의수렴 창구를 통하여 규제개혁 제안 접수 - 2008년도에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2,198건, 해소율은 2008년 12월 현재 67.8%

그러나,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수단의 도입과 절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평가는 높지 않다. 우선, 2009에 이루어진 규제개혁평가결과(국무총리실, 2009)를 보면, 시행의 적정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평가는 추진기반의 적절성, 시행의 적정성, 규제개혁만족도, 규제개혁성과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는데, 부문별 100점 환산점수를 비교해 보면 특히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 부문은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다. 비용편익 분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다수이며 집행 단속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규제집행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상 예상 문제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국무총리실, 2009. 11). 또한, 2009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64.1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항목별로는 규제의 내용에 관한 만족도가 67.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관간 업무협조, 의견수렴, 정책집행의 신속성 등 규제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6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산출 측면 : 양적 수준과 규제 품질

1) 양적 수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우선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의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폐지 및 완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등록규제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09년 7월까지 325개가 신설되고 407개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160개의 규제가 감소되었다.

규제의 양적 감소 측면에서 현 정부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5월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총 28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하위법령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며 유예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작은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의 성격, 규제유예에 따른 효과 발생 시기,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하여 2년을 원칙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유예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회복하며 다만, 규제유예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항구적 폐지·완화를 추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159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30건) 등이며, 주요 과제는 <표 3>과 같다.

〈표 3〉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적용 주요 과제

분야	주요 내용
창업 투자 애로요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증축제한 완화)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연접개발제한 완화 • (창업 투자 요건 완화) 근로자 파견업 등 시설요건 완화 • (부담금 한시적 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약 275억원),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면제(약 500억원)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동 제한 완화)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대상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1년→2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1년간 유예 등 • (집합교육 신고의무 완화) 식품영업자 등 교육의무 완화, 공장 운영현황 조사 완화 등
중소기업 서민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담완화)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대상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1년→2년),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의무 1년간 유예

2) 기존 규제 품질 제고

규제 품질 제고 측면에서는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 제고와 기존 규제의 품질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 부처 차원의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되었다.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조사 정비를 통해 행정 간소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미등록 규제 정비가 병행되었으며 신성장산업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되었다.

(i) 먼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10월말 현재) 총 1,327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과제 발굴에 있어서 핵심 정책성 규제개혁 과제를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까지도 폭 넓게 발굴하였다.

(ii) 규제개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규제의 정비를 통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였다.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2011건을 발굴 등록(2009년 3월~10월)하고 나머지 15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발굴 등록 추진하였다. 총 1만 2,486건을 검토한 결과 등록대상 규제로 분류된 것은 5,487(44%)건이며, 이 중 주 규제는 2,011건(현재 규제는 주 규제 단위로 등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999건은 기등록, 비규제, 기폐지 등이다. 당초 부처 자체검토에서는 비규제로 분류했으나 등록대상으로 재분류된 것이 2,883건에 달한다.

〈표 4〉 부처별 미등록 규제 정비 결과

부 처 명	계	정 비 결 과				
		주규제	부수규제	기등록	비규제	기폐지
기획재정부	166	18	35	24	76	13
금융위	603	131	148	168	44	112
교육과학부	774	173	150	135	310	6
지식경제부	1,676	85	695	375	468	53
특허청	302	12	26	1	262	1
중기청	156	39	71	16	30	0
보건복지부	1,170	139	427	351	249	4
식약청	18	8	0	8	2	0
노동부	695	81	207	58	311	38
환경부	627	57	162	108	271	29
기상청	41	5	4	12	20	0
문화관광부	407	75	89	64	177	2
문화재청	85	17	7	42	19	0
농림수산부	2,131	202	497	460	884	88
산림청	421	9	139	117	156	0
농진청	22	5	5	0	12	0
국토해양부	3,120	924	812	443	868	73
해경청	72	31	2	19	19	1
계	12,486	2,011	3,476	2,401	4,178	420

자료: 국무총리실 (2009. 6. 25)

(iii) 2009년 11월에는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융합, 글로벌 헬스, 바이오·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MICE 관광 등 175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추진과제 현황

- 분야별 : 신재생에너지(15건), 방송통신융합(24건), 그린수송시스템(16건), MICE·관광(14건), 글로벌교육(27건), 글로벌헬스(31건), 바이오제약·의료기기(22건), 콘텐츠·SW(11건), 기타(15건)
- 효과별 : 기술기준 마련(27건), 시장수요 창출(57건), 경영애로 해소(91건)
- 부처별 : 보건복지가족부(41건), 방송통신위원회(26건), 국토해양부(18건), 문화체육관광부(14건), 식품의약품안전청(13건), 지식경제부(12건), 환경부(10건) 등
- 법령별 : 법률(23건), 시행령(29건), 시행규칙(42건), 고시 등 기타(81건)

자료: 국무총리실, 2009. 11.19

3) 신설·강화 규제 품질 제고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 제고는 규제심사의 강화, 규제영향분석 충실화,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일몰제 적용이 강화되었다. 현 정부 들어 일몰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보다 진화되었다. 분석 항목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대안검토 기능 및 논리성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을 제고에 노력하였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설정, 규제대안의 분석, 순응친화적 집행방식의 선택 등 규제 합리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결과 및 효과

규제개혁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 국민편의 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하는 과제에 둬으로써 그 효과가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및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의 조치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경련 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개혁 과제 중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개혁 과제 중 우수 개혁 사례

순위	과제명	득표수(%)
1	대기업 관련제도 개선	43건(16.3%)
2	수도권 규제 완화	28건(10.6%)
3	각종 세제 개편	27건(10.3%)
4	지주회사 제도 개선 (현재 국회 계류중)	26건(9.9%)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22건(8.4%)

자료: 전경련(2009)

실제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09년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64.1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 조사결과(61.9점) 대비 2.2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규제개혁 만족도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인	58.2	54.8	59.5	62.9
전문가	67.7	63.0	66.3	66.5
내부고객	-	-	60.7	63.6
종합	62.7	58.8	61.9	64.1

자료: 규제개혁백서, 감사원(2009), 국무총리실(2009.11)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 체감도 및 만족 증가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그간의 규제 개혁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기 보다는 기업들의 단기적 애로 개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이루어진 855개 규제개혁 과제를 분류해 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과제 387개, 서민취약 계층 및 국민불편해소 과제 256개, 중소기업 부담경감과제가 212개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먼저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현 정부는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를 국정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기업 부담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금융·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덩어리규제를 개선하였는데,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규제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에서 규제개혁 과정을 합리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참여

정부에서는 규제지도의 작성, 행정부담의 측정 등을 통해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미등록 규제 정비, 일몰제 확대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개별 규제의 정비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일몰제와 같은 규제 시스템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등록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그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등록 규제들을 발굴하고 등록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신설 및 강화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는 핵심적 수단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인데, 참여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영향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활용성을 높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운영 실태를 보면 여전히 제도와 실제 운영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 수준을 보게 되면 참여정부에서는 규제 등록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현 정부에서는 규제등록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때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등록규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2년에 7,724건이었던 등록규제 수는 2003년에 7,837건, 2004년에 7,846건, 2005년에는 8,017건, 2006년 8,0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¹⁾ 이는 참여정부가 규제의 양보다는 규제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정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규제완화(deregulation)’에 보다 강조를 두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규제 부담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규제 총량 측면에서도 축소 노력이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가 참여정부 보다 양적인 감소에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규제 양적 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 2월 정부출범 당시 등록된 규제 수는 5,247개였으나,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5,088개로 160여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양적 감소는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사회적 규제 분야의 규제 품질의 제고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규제 분야는 특히 규제다원주의 및 정책 혼합의 관점에서 규제정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자율규제, 정보 공개, 시장유인적 수단, 시장 감시

1)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의 개편으로 등록규제 수가 5,114건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2008년도에는 5,247건으로 증가하였다.

2) 동기간 중 규제 신설과 누락규제의 등록 등으로 증가한 규제는 483개이나 규제 폐지 등으로 감소한 규제는 643건이다.

제도화 등 보다 비용효과적인 규제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사회 규제 분야 규제개혁은 절차의 간소화, 규제완화 등 주로 절차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 평가결과에서도 사회적 규제개혁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적 규제 분야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 합리화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의 효과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에는 정책성 핵심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성 핵심규제로는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금산분리 완화를 들 수 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수도권 공정설립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종전의 48개월 걸리던 인·허가절차를 개선하여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정책적인 핵심규제 개혁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규제의 적극적 개혁,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현 정부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에는 대기업 관련 규제,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규제, 등 정책적 규제들이 형평성 등의 목적으로 신설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표 7〉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비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 규제개혁 방향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 형평성 목표 갈등 • 국정 우선순위가 낮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국정 최고 우선순위 • 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초점
• 규제개혁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이원화: 정치적 리더십 발휘 반면 규개위 위상 상대적 약화
• 규제개혁의 대상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및 이념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대상에서 일정부분을 원칙적으로 배제 • 규제개혁 사각지대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주의와 경제논리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규제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중제, 금산분리 완화 등 • 규제개혁 사각지대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규제개선
•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정비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된 법령 규정을 하나하나 별개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적 접근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정비, 예산 · IT 조치 등 - 일몰제 정비
• 평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관점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중심의 평가단 - 과제 발굴을 · 이행율 등 진도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관점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위주의 평가단 -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 규제개혁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측면의 완만한 증가 • 규제 품질 제고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의 형식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양적인 측면의 감소 •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한시적 규제 총량 감소 • 규제 품질 제고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의 형식화 등
• 규제개혁의 결과 ·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 과정에 비하여 결과에 대한 만족 ·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만족도 · 체감도 증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 시민의 참여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기업 애로 개선 중시

자료: 규제개혁백서(2008: 628) 참조하여 재구성

IV. 향후과제

1. 규제관리시스템 개선 분야

OECD는 규제개혁 단계를 규제완화 단계, 규제품질관리 단계,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규제품질관리의 성숙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2009. 12.).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행정규칙상의 미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표 8〉 OECD의 규제개혁 단계

단계	정책목표	특징	방향
1 규제완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수의 감소 • 규제의 부담과 비용감소 • 경쟁과 자유무역 저해규제 제거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정부 지향 • 현존 규제중심의 규제완화 	규제 완화, 탈규제
2 규제품질관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합리적 양질의 규제 창출 • 규제과정의 개선: 규제영향평가 • 현존규제의 검토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중립적 • 품질중심의 개별적 규제 결정 • 기존규제와 신규규제도 검토 	
3 총체적 규제관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역의 효율화 및 유연성 등 총체적 규제효과 검토 • 장기적 규제추진체계의 구축 및 가동 • 대안적 규제의 우선고려 •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전략적 시각 •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 • 종합적 정책목적과 관련한 결과지향적 • 규제의 총체적 영향에 관심 • 정부의 크기에 대해 중립적 	대안적 규제 재·규 제

자료: 김정해 외(2007: 17)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의 목표 및 우선순위가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기업 애로 개선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규제개혁 추진이 기업 투자로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규제전문가의 45.5%가 그간의 규제개혁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단기적 애로개선에 치중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규제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OECD 규제관리시스템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관리시스템 지표와 그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볼 때, 우선 (i) 규제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의회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ii) 투명성 및 개방성 측면에서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iii) 신설 규제의 품질 제고 수단 측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및 범위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집행방식의 합리화 및 순응 제고가 필요하다. (iv) 기존 규제 품질 제고 전략 측면에서는 행정부담 측정 등의 행정 간소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기존 규제 정비 분야

행정간소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 등 행정간소화 전략은 최근 OECD 및 EU 국가들에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행정간소화 전략 도구로는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전략, ICT, 조직 재설계, 정책조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 맵 작성을 통해 중복 규제 개선과 행정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과 같은 경우는 구조적 조정 및 통합 전략을 통해 행정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차 간소화 중심의 행정부담 감축에서 벗어나 좀 더 구조적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보건, 안전 등 사회 규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대안의 분석 및 위험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은 사회적 규제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의 초점이 기업 부담 완화 및 국민 생활 편의 제고에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규제대안 분석 및 집행방식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다 비용효과적인 규제대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규제에 대한 심사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ECD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규제대안은 다음과 같다(OECD, 2009c). (i) 성과기준 규제(performance based regulation)와 같이 보다 유연하면서 덜 지시적인 규제형태로서 성과기준 규제는 결과(outcome)에 대해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로서 비규제자들이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을 제공한다. (ii) 관리기반 규제(management based regulation) : 과정 기반 규제(process based regulation)라고도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결과를 성취하도록 고안된 관리 과정을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공동규제(co-regulation) 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 정부와 산업 연합이 공동으로 규제 기준을 도입하고 시행한다. (iv) 인센티브 및 시장 기반 도구(incentives and market based instrument) : 조세, 보조금 거래가능한 허가권, 기타 시장 중심 접근. 환경 분야에서 많이 나타난다. (v) 정보 접근, 교육 및 설득 등이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제도가 적용된 과제의 경우, 그 이행상황을 점검 검토하여 향후 규제준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규제의 경우는 위험분석을 통해 수용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사후관리 및 다차원 규제 거버넌스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노력이 절실하다. 규제 개선 성과와 관련하여 개선안 마련 이후 규제개혁 일선 현장의 규제집행절차 및 행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타난다(감사원, 2009). 감사원에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지했다고 발표된 규제 중에서 상당수의 후속조치 미비, 선례 답습 등으로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계기관간 협의 지체, 발표 당시 검토 잘못 등으로 인하여 유아무야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2009: 83)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현장에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 등 일선 집행현장에서 집행절차 및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재정지원 위임(unfunded mandate)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RIA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규제 거버넌스 관리는 규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행정간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한 수준의 정부에서 규제 품질을 높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다른 수준의 정부에서 규제정책이나 관행이 좋지 못하다면 규제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과와 기업 및 민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차원 규제 거버넌스(multi-level regulatory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수준간 규제정책(inter-level regulatory policy)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규제품질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조정을 포함하는 조화 규제정책(harmonization regulatory policy)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09). 「감사원이 바라본 규제 현장」.
- 감사원 (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보고서」.
- 고영선 · 윤희숙 · 이주호 (2004).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해 외 (2007).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5」.
- 김정해 외 (2008). 「규제개혁 전달체계 및 사후감독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해 · 이해영 (2008).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 (2).
- 산업연구원 (2008) 「규제개혁의 집행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 이종한 (2008). 외부전문가 평가: 2008년 규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규제개혁백서」.
- 이해영 · 최성락 (2009). 규제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의 비재정지원위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2(4)
- 이해영 · 김정해 (2007).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6(2).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보완과제, 2009.8」.
- 최진욱 외 (2007).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1).
- 규제개혁백서, 2002~2008
- McNamara, Carter. (1988). A Basic Guide to Program Evaluation, downloaded form http://www.mapnp.org/library/evaluatn/fnl_eval.htm
- OECD. (1997). Report on Regulatory Reform. Paris: OECD.

- OECD. (2000). Regulatory Reform in Korea, Paris: OECD.
- OECD. (2004). Regulatory Performance: Ex-Post Evaluation of Regulatory Tools and Institutions- Draft Report by the Secretariat, September 27-28, Paris: OECD Headquarters.
- OECD. (2007).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OECD.
- OECD. (2009a).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Policy Brief.
- OECD. (2009b). Joint OECD/EU Initiative-The EU 15 Country Reviews
- OECD. (2009c).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 국무총리실 및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료 및 홈페이지.

제3절 |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75, smlee@pmo.go.kr)

633

제
3
절2
0
1
0
년
규
제
개
혁
추
진
방
향

1. 규제개혁 추진여건 및 방향

2009년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민간부문이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체감형 규제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 진입을 도모해야 할 시점인 만큼,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기극복 이후 경제도약과 국격향상을 위한 미래대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0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민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규제 개선 등 인적자본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위기 이후 경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규제는 개방화 사회에 걸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2.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

2월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하였다. 1,071개 과제 중 기업투자환경개선, 고용창출분야 투자유도 등 투자활성화 과제(374개)와 서민생활안정 과제(257개)가 59%이다.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과제수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미래성장 기반 구축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1,071개	374개	257개	115개	325개
비중(%)	35%	24%	11%	30%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248개), 식품의약품안전청(102개), 환경부(97개), 금융위원회(9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과반수가 넘으며, 연내 완료대상과제는 538개(53.4%)이다.

■ 규제개혁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관리

이번에 발굴한 1,071개 규제개혁과제 외에도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저출산대책’, ‘금융규제 합리화’,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생활 규제개선’ 등 핵심국정과제 관련 전략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ombudsman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와 협력하여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의,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의 인프라정비·확충

법령상 미등록규제 정비('09)에 이어, 각 부처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상의 미등록 규제에 대해 전면조사를 추진한다. 우선 3개 부처청의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등록·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나머지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적 규제 일몰제 적용('09)에 이어, 사회적 규제 및 법령상 미등록 규제 정비에 따라 추가된 규제에 대해 일몰제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재검토형 일몰제 신규 도입에 따라 일몰제운영지침 마련 등 일몰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한다.

지난해 기 구축('09.8)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다양한 기능(부처 자체심사지원, 규제건의관리 등)을 추가하고 전 부처 규제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련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등 규제심사 결과를 환류하여 부처 자체규제심사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대면심사 실적 등 부처 자체규제심사의 내실화 정도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법령안 및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법령안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규제심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규제심사 사전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규제 심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고, 경제위기 극복 법안,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령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할 계획이며, 신성장산업(녹색기술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생산을 억제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중요규제는 각 부처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성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심사과정에서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기고



Regulatory Reform Book

제1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제2절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유연성과 절제 :
위기극복의 필수 조건

제1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 집필자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

639

제
1
절일
자
리
창
출
을
위
한
규
제
개
혁
의
방
향

1. 서론

기업투자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의 부족은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 실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풍자하는 자조적인 용어들을 유행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청년 실업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와 직결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빈곤층이 증가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의 부담이 가중된다.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결국 재정과 조세부담자들의 사업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저해 또는 왜곡시켜 경제사회적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다. 과거 ‘영국병’, ‘독일병’ 등 유럽 선진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정체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2010년 들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노력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금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회의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제 발굴,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시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계도 실질적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계의 대표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017년까지 8년 동안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경련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업종 단체장 등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와 경제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성공적이면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라 하여 재정을 투입하여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은 투자를 진작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규제개혁은 이러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은 채 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고용상황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말 2,406.3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59.7%였으며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7.6%,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62.6%였다. 실업률은 3.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고용률 60.9%를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의 고용률의 정체상태 지속을 보여주는 것이다.¹⁾ 이러한 고용률은 미국·영국·캐나다 등 앵글로 색슨형 국가들이나 스웨덴·덴마크 등 북구국가보다는 크게 낮고, 독일·프랑스 등 대륙형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러한 고용률의 정체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어 실질 성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도 2000년 이후 0.75% 포인트 상승하여 약 17만 5,000명 정도의 실업이

1) 2003년 이후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3년에는 59.3%, 2004년에는 59.8%, 2005년에는 59.7%, 2006년에는 59.5%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병유(2008),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pp.3을 참조할 것.

2) 2004년 15세 이상 64세 이하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은 미국 71.2%, 영국 72.7%, 캐나다 72.6%, 스웨덴 73.5%, 덴마크 76.0%, 일본 68.7%, 독일 65.6%, 프랑스 62.8%인 반면 우리나라는 63.6%였다. 자료: 전병유(2008), wssp.4.

3) 이하의 논의는 김대일(2008),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창출(강의자료),"에서 인용한 것임.

향구적으로 증가하였다.³⁾ 이렇게 증가된 실업은 주로 20대 남성과 20~4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남성 청년층의 실업률은 1995년의 5.4%에서 2005년에는 9.0%로 상승하였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에 4.2%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무직자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15세 이상 29세 이하 남성 비재학자 중 무직자 비중이 1995년에 19.7%이던 것이 2005년에는 28.5%로 증가하였고, 30세 이상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8.4%에서 13.0%로 증가하였다.

일자리 부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실업률은 15.1%에 달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 3.9%를 무려 3~4배 초과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할 일이 없어 쉬는 사람 167만명, 취업준비자 56만명, 구직단념자 17만명 그리고 불완전취업자 51만명을 합하여 사실상의 실업자가 291만명이며 이에 정식으로 집계되는 공식 실업자 89만명을 더할 경우 실질 실업자수는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은 경제사회적인 심각한 손실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기준 1,41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체 고용의 86.6%를 차지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⁴⁾ 또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도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1994년 대기업 대비 43%에서 2003년에는 35%까지 떨어졌다.⁵⁾ 이러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연히 중소기업 투자의 위축은 일자리 창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의 57%, 일자리의 66%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크다.⁶⁾ 또한 영업이익률의 증가율도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2.5%에 불과하여 실질성장률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들도 대개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

4) 1990년부터 1995년까지 8~9%대를 유지하던 300인 미만 상장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3~6%대로 떨어졌고 이는 다시 2000년대 들어서는 3~0%대로 떨어지는 하락추세를 지속하였다. 구체적인 영업이익률 추이는 임경묵(2004),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 (그림 9), pp.132를 참조할 것.

5) 중소기업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를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김대일(2005),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창출(강의자료)", pp.9를 참조할 것.

6)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006년 기준 2,821만원으로 제조업(5,036만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 pp.10.

등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⁷⁾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의 고용유발 효과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자본집약적 투자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율은 1996년 46.6%에서 2005년에는 33.4%로 하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제성장,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는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1%p 상승 시 9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었으나,⁹⁾ 2006년에는 이것이 6만개로 줄었고, 다시 2008년에는 더욱 작아져서 5만개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 축소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가가치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전 산업을 평균할 경우 1995년에 34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20명으로 축소되었고,

7) <표>서비스 산업 취업구조의 국제비교(2003년)

(단위: %)

서비스 부문	유통	생산자	사회	개인	전체
선진국 평균(A)	20.3	16.8	24.1	13.2	73.3
한국(B)	23.5	11.2	12.6	16.2	63.5
B-A	+3.2	-5.6	-11.5	+3.0	-9.8

자료: "서비스 사이언스 전국포럼 2007," (2007, 8)

8) <표>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유발 계수 추이(2003년)

(단위: 명/10억원 %)

서비스 부문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중소기업(A)	26.7	25.2	23.4	21.8	20.8	19.1	18.7	17.8	18.0	17.5	17.0	15.9	15.1
대기업(B)	12.5	11.0	9.2	8.8	8.1	7.5	6.5	6.4	6.2	5.7	5.7	5.0	5.1
B/A(%)	46.6	43.8	39.4	40.3	38.9	39.2	35.0	35.8	34.6	32.5	33.9	31.7	33.4

자료: 산업중조사, 통계청

9) 삼성경제연구소(2006), "최근 일자리 창출의 특징과 향후전망,"에서 인용함.

2003년에는 다시 절반인 17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007년에는 다시 1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1995년에는 31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5명, 2003년에는 13명, 2007년에는 9명으로 감소되었고, 수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도 1995년 22명에서 2000년에는 11명, 2003년에는 9명으로 감소하여 수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4. 고용창출 제약요인과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고용현황에 따르면 향후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을 알려준다. 이제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들과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지난 10년여에 걸친 투자 부진으로 발생한 잠재성장력의 저하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그리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실질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향후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세계화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국가간 이동의 원활화와 국가간 정책 공조의 강화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 주권 약화는 불가피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즉,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나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셋째, 기술진보로 도래한 지식·기술기반사회는 노동절약적 성격의 산업과 기업이 주가 되는 산업구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기업(micro business)들을 기술자본가들이 설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옥션이나 이베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을 출현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보편화되고 있고 과거 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이제 자발적이든

10) 자료: 한국은행(2008), 「2008 산업연관분석 해설」

비자발적이든 일단 이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통해서 사업자로 변신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현존하는 제조업 종사 대기업들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인 반면, 많은 일자리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기업에 의해서 창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양식의 변화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정책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규제와 세제 합리화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경제성장이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하락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상태의 지속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세금에 기반한 재정투자로 소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하지도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향후 필요한 일자리 확보도 투자 활성화, 수출확대, 소비를 진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의 대부분이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산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확고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구성요인을 일자리로 끌어들이 수 있는 규제, 세제 등 법적·제도적 제약요인들에 대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의 촉진, 수출 확대, 그리고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투자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이나 투자,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상황이므로 과거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더 높은 성장과 수출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성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투자는 수익성 있는 투자처의 부족, 강성노조에 기인한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다양한 형태의 승자필벌(勝者必罰)적 경제활동 제약 규제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WTO나 여타 국가들과의 정책조화의 틀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세계화 진전 상황으로 볼 때 그 유효성과 효율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내수의 침체국면도 여전히 타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단시간 내에 소비의 진작이 이뤄지거나 음식료 및 숙박업을 포함한 영세 서비스 기업들의 재산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활성화는 단시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감춰진 세금(hidden tax)”인 규제를 축소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대다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¹¹⁾ 기업규제개혁을 시행하면 투자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은 응답기업(1,127개)의 77.6%에 달하고 있고¹²⁾, 특히 정부가 규제개혁을 해줄 경우 지금 당장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이 6.1%, 1년 이내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이 13.8%, 2년 내지 3년 이내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이 31.9%에 달하여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65.8%가 규제개혁이 이뤄질 경우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기업규제가 중소기업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비용은 매출액 대비 평균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세분할 경우 그 비용부담이 수도권 기업은 15.9%, 지방 기업은 2.8%로 나타나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규제부담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조병선(2008), “기업 규제완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희망중소기업포럼 발제자료, 기은경제연구소를 참조할 것.
 12) 규제완화 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의 규모별 비중은, 100인 이상 150인 미만 기업 41.4%, 150인 이상 200인 미만 기업 27.2%, 200인 이상 기업 9.0%로 나타났다.
 13) 20인 미만 기업의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은 매출액의 10.9%에 달하여 가장 많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4.6%,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2.8%, 100인 이상 기업은 3.3%의 비용부담을 규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규제에 의한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³⁾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의 개선과 폐지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18.8%), 사업 및 업종을 전환하거나(5.9%), 해외이전을 하겠다고(3.5%)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혁은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물건만 만들어 팔아서는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개발을 시작한 1961년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엔진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미 제조업에 기반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우리나라가 현재 비교우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우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지 못하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화하는 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추세는 저급한 기술에 기반한 경공업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지식기반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에서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은 BRICs를 포함한 각국의 경제개발 노력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고도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새로운 신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 팔 수 있는 상품 이외의 중요한 품목은 땅, 돈,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땅을 파는 일은 결국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살거나 와서 즐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시간이 4시간 이내인 지역에 약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가운데 1억명이 우리나라를 관광, 사업, 회의, 유학 등으로 방문하게 할 수 있다면 내수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치나 외국 고급인력의 유치에 유리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땅을 팔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차별 없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나 인센티브에 역행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내외의 기업이나 외국의 고급인력이 수요 하는 땅을 내놓는 것이 땅을 파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종 토지이용 및 부동산

관련 규제, 수도권 규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경제특구 관련 규제 등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땅의 수요자들이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땅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등의 기반시설 인프라는 물론 환경, 식품위생, 안전 등 사회적 인프라를 최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정리하여 사업과 투자를 계획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의 제공과 수요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도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돈을 파는 일도 상품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이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또 국제금융질서도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인 신용으로 외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서서 차관을 빌려오고 이를 은행(금융기관)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개발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돈 장사’를 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는 86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¹⁴⁾, 시중의 부동산자금은 500조원에서 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금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서 팔 수 있다면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¹⁵⁾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돈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 장사를 잘하는 기업과 돈 장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금융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치금융적 성격을 가진 금융시스템의 획기적인 재편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상의 결함들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돈장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금융 전문가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미 이루어진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우수한 금융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경쟁에 뛰어들어 제조기업들이 성취한 것과

14) 2006년말 현재, 자료: 한국은행(2006), 「기업경영분석」

15) “1억 달러짜리 대형선박을 수주해 3년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땀 흘려 배를 만들어 수출하면 적당 500만 달러나 600만 달러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금융기관은 선박 건조자금을 1억 달러 빌려주고 단번에 엇비슷한 금액을 벌여줍니다.” 어느 조선회사 임원의 말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대두될 신구제 금융질서에 적합한 감독 및 위기대응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기능의 보완과 합리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파는 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성장전략이자 일자리 창출전략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풍부한 노동력을 해외에 제공해 왔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1970년대부터는 중동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인력수출을 한 경험이 있다. 이 시기의 인력수출은 저급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동력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팔 수는 없다. 지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보통교육이 아니라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탁월한 인재들이 선별되고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 세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관련 규제와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급선무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획일적인 교육관련 규제들이 철폐되고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경제자유를 포함한 경제특구들에서라도 영리법인 학교의 설립 허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교육규제의 폐지조치를 시행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교육규제의 개편에 나서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일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제도도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으로의 재편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규제의 개혁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독점하거나 사실상의 유사규제로 개입하고 있는 부문이나 산업에서의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들 인재가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제를 포함한 보상체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이러한 고급 인재들이 시장에서 적재적소에 최소의 비용으로 배치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고급인재들은 현재의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업들에 많이 종사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함한 법·제도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대일(2005),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창출(강의자료)
- 김대일(2008),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창출(강의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6), “최근 일자리 창출의 특징과 향후전망”
- 임경목(2004),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
- 전병유(2008),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 조병선(2008), “기업 규제완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희망중소기업포럼 발제자료, 기은경제연구소
- 한국은행(2008), 「2008 산업연관분석 해설」
- 한국은행(2006), 「기업경영분석」

제2절 | 규제개혁을 통한 ¹⁾ 정부의 유연성과 절제 : 위기극복의 필수 조건

• 집필자 :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

글로벌금융위기의 충격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정부는 그 역량과 수단에 있어서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단의 다양성은 극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스마트한 정부라면 이제는 충분치 않은 자원(재정과 규제)을 꼭 필요한 곳에 정교하게 확인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준 높은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제유예, 중기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정된 규제개혁시스템의 실질적 확보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이거나 규제의 차원에서 민간에의 개입이 적고 작은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가 구현되어야 한다. 심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정부의 절제와 유연성이 가장 주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격심한 두려움을 충격적으로 안겨주었다. 이 위기는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더 나아가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대하면서도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 줄 것이라고 한다. 향후에 불어닥칠 급격한 글로벌 변화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모든 국가들이 춘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위기의 극복, 그리고 그 후 변화될 세계에서의 자리매김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검토한 후에 행정과 정책의 영역에서의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1) 본 글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하는 행정포커스 제82권 제4호(2009)에 기고한 시론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1. 구조 : 한국의 경쟁력 현주소와 함의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 2008. 08) 1970년대에 8%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성장률 역시 1986년에서 1990년까지는 평균 9.8%포인트에 달하였으나 2001년에서 2007년까지는 평균 4.6% 포인트로 급락하였다. IMD국가경쟁력 순위(기획재정부, 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2009. 05.)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10년간 정체되고 있으며, 홍콩(2위), 싱가포르(3위), 중국(20위), 대만(23위), 등 주요 경쟁국 중 한국 (27위)이 가장 낮은 순위이다. IMD에서 지적한 한국의 경쟁력의 주된 취약분야는 아래 표와 같다.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취약 분야들이 규제나 정부 개입으로 인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경직성과 폐쇄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IMD에서 지적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주요 취약 부문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53위)	노동규제 (54위)	노사관계 생산성 (55위)	환경· 보건규제 (50위)	기술규제 (55위)	가격통제 (53위)	외국인 직접투자 (54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편의성 (54위)	문화적 개방성 (55위)
-----------------------	---------------	----------------------	----------------------	---------------	---------------	----------------------	------------------------------	---------------------

이렇게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장잠재력 하락의 차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주된 요인은 자본형성 및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우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 10%포인트를 상회하던 설비투자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서 4%포인트 안팎으로 급락하였다. 한편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을 보면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관찰은 명료해진다. 경제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FDI 비중은 세계 17위 수준이 기대치인 데 반해, 현재 유치실적은 115위권이다. 당연히 GDP 대비 FDI 잔액비중은 세계 최저권이다. 즉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투입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중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앞서 IMD의 지적에서와 같이 정부 제도 혁신의 부진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결국 투자확대와 중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며, 특히 행정과 정책의 영역에서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핵심인 것이다.

2. 충격 : 글로벌금융위기의 진전 양상과 대책 및 그 함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 설비투자, 고용, 소비 등이 일제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²⁾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의 비중이 높아지자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바 있었다. 이에 비하여 최근의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은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금융위기로 초래된 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의 악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에서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 역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내수부양,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역시 2009년 2월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의 강화, 수출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의 대폭 확대 등이 정책조합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대중적 재정정책과 신용공여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위기의 첫 번째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³⁾ 이번의 금융위기가 초래할 심대하면서 심층적인 전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들이다. 금융위기로 초래되는 변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특히 행정과 정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 이 소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 국회 국회경제위기 대응시리즈, 2009. 03)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및 정리한 것임.

3)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은 이미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보았으며, 이제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정책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즉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KDI(조동철 외,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KDI FOCUS, 2009)가 제시한 출구전략의 요소의 대부분은 위기 대응 정책의 대부분을 철회 및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충격 이후의 전세계적 변화의 본질 : 끝을 알 수 없는 심대한 불확실성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블랙스완의 저자 탈레브는 현실에 대한 어떠한 분석과 관찰도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차익종 역, 2008, 동녘사이언스), 그렇다고 손을 내려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세계 경기가 현재(2010년 초)와 같은 추세로 서서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불확실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세, 주가지수의 회복세, 중국의 높은 성장률,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성장률의 미미한 회복 등의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전세계적인 실업률의 상승, 국제교역의 축소 가능성, 투자 부진 등의 불안요소들도 만만치 않다.

한편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글로벌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달러화 기축통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이 과연 계속 협조할 것인지, 기축통화체제의 불안이 교역과 해외투자에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인지, 등의 오래된, 그러나 이제는 현실로 나타난 국제금융체계의 재편과 관련된 논란과 변화 역시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은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역진적 분배가 일어나고 있으며, 실업의 위협이 팽배해 있으며, 한계기업들의 도산과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달러화, 금, 에너지, 자원,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가격들의 급격한 재조정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압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은 안전 지향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의 역동성 역시 감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발로 폭발적인 격변의 분출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격변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정부는 그 역량과 수단에 있어서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는 민간의 부실을 떠안게 되어 재정의 압박이 커지게 되었다. 규제를 통한 기업과 국민들의 강제 동원 역시 많은 경우 가능하지도 않고, 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정치, 행정, 정책의 과제,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단의 다양성은 극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스마트한 정부라면 이제는 충분치 않은 자원(재정과 규제)을 꼭 필요한 곳에 정교하게 확인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현명함이야 언제나 필요한 미덕이지만, 특히 유연성과 절제가 미래 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4. 유연성과 절제의 아름다움 : 규제개혁

정부가 유연하고 절제를 유지하려면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규제는 국가를 경직시킨다. 규제로 경직된 정치, 경제, 사회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 게다가 규제는 자기증식적이다. 나뉠대로 선의로 규제를 만들게 되더라도⁴⁾, 그 규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자기증식은 계속된다. 따라서 정부는 애초에 규제를 만들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선 필요한 조치는 규제유예이다. 그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가 되었건, 영구적 규제효과가 되었건, 일단 현시점에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규제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규제유예는 우선 그 자체가 내수부양 대책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 예를 들면 투자활성화, 노동시장유예, 창업촉진 등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 완화, 합리화하여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유예는 각종 내수부양 대책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케 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타깃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규제유예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원정책의 규제적 속성을 파악하여 그 규제적 요소를 유예해주면, 금융위기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 등을 법정신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실현하려는 각성 역시 시급하다. 현실에서 신설 규제의 정당성을 객관적,

4) 사실은 이렇게 선의로 규제를 만드는 경우는 필자가 알기에는 극히 드물다

분석적으로 확인하는 규제영향분석은 현재 유명무실해졌으며, 규제정비 역시 각 부처의 미봉책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좌해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역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규제개혁 시스템이 이렇게 유명무실하면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규제개혁이 불가능해지고, 정략적이며 편의적인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불협화음만이 성행할 것이 자명하다. 어쩌면 규제개혁이 사회통합을 이루기는커녕 평지풍파만을 초래한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유연성과 절제를 잃고 휘청거리는 무분별한 변덕쟁이로 전락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작은 정부란 꼭 해야 할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절제력이 있는 정부이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뛰어나야 한다. 미지의 급변에 대응하려면 국고가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사업을 줄여야 한다. 즉 정부는 재정적으로 작은 정부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야만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창발하는 지성과 피를 무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즉 규제가 적고 작아야 한다. 공무원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부처의 수가 늘고 줄고의 문제는 모두 작은정부와 관련된 피상적인 논의이며, 본질을 흐리는 음모까지 개입되어 있을지 모르는 허구이다. 재정지출과 규제를 절제하는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이며, 정부가 작아야만 유연할 수 있다.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본다.

부록



Regulatory Reform Book

제1절 규제개혁 관련법령 등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제1절 | 규제개혁 관련법령 등

가. 행정규제기본법

- 제 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9. 3.25 법률 제9532호
- 일부개정 2010. 1.25 법률 제9965호

제1장 총칙(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조(적용 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항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조(규제 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5]

제5조(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0조(심사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개선 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5조(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2조(조직 정비 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雇)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개정 2010.1.25>**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0. 1.25]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0.1.25]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부칙<제5368호,1997. 8.22>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法 施行당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같음하여 이 法 施行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 및 그 施行 結果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訓令·告示등의 再檢討)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結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중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第3號중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第5號중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 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結果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부칙<제5529호,1998. 2.28>(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行政規制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6條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칙<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52호,2008. 2.29>(정부조직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2호,2009. 3.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제9965호,2010. 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 <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개정 2008.2.29〉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삭제 〈2006.3.31〉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 1998. 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 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24호,2008. 2.29>(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일부개정 2008.1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2조의2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08.10.2. 신설)

제3조(의안의 제출)

-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 (중요규제 등의 결정)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 여부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 여부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전검토 의견을 정한다. (’08.10.2.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검토 의견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08.10.2.

신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삭제)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08.10.2. 개정)

제6조(소관)

-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양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 ② (삭제)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의 소관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삭제) (’08.10.2.)

제7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8조 (삭제) ('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08.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08.10.2. 개정)
-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08.10.2. 개정)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08.10.2. 개정)

제15조 (삭제) (’08.10.2.)

제16조(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08.10.2. 개정)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규제개혁위원회

• 집필자 : 이병호 사무관(Tel. 2100-2276, bhlee@pmo.go.kr)

회 수	부처명	호수	상 정 안 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01회 ('09.1.22)	공정위	2009-8	'09년도 경쟁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규개위	2009-9	'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제202회 ('09.2.5)	기재부	2009-13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2009-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1	6
	복지부	2009-15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2	8
	총리실	2009-16	'08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계획	보고				
제203회 ('09.2.12)	행안부	2009-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총리실	2009-2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의결	2	1		3
	교육부	2009-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4회 ('09.2.19)	교육부	2009-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1		2
	교육부	2009-24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2009-2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205회 ('09.3.19)	복지부	2009-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6회 ('09.4.9)	교육부	2009-5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재상정
	환경부	2009-5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련 기존 규제 심사	의결		1		1
	복지부	2009-5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3
	복지부	2009-59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	의결	1	3		4
	복지부	2009-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1		4
제207회 ('09.5.21)	행안부	2009-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8회 ('09.6.11)	문화부	2009-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법무부	2009-12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교육부	2009-5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규개위	2009-145	한시적 규제유예관련-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의결	1			1
	규개위	2009-146	상반기 규제개혁 평가 결과	보고				

회 수	부처명	호수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09회 ('09.6.25)	행안부	2009-134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규개위	2009-179	미등록 규제 정비 방안	의결	1			1
제210회 ('09.7.7)	금융위	2009-16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1		1	2
	지경부	2009-15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행안부	2009-134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2009-174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의결			1	1
제211회 ('09.7.23)	규개위	2009-203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1
	방통위	2009-205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2009-2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3	2	7
제212회 ('09.8.13)	국토부	2009-16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2
	환경부	2009-189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교육부	2009-23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13회 ('09.8.27)	법무부	2009-12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2
	환경부	2009-189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교육부	2009-23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14회 ('09.9.10)	복지부	2009-257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규개위	2009-256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수정안	의결	1			1
	환경부	2009-27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215회 ('09.9.24)	국토부	2009-2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2009-279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1
제216회 ('09.10.8)	방통위	2009-297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2		3
제217회 ('09.10.29)	지경부	2009-2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2009-314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1	3
	기상청	2009-30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의결		1		1
제218회 ('09.11.12)	권익위	2009-3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2009-313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2009-339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규개위	2009-371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제219회 ('09.11.19)	식약청	2009-350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재상정			
	농림부	2009-354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2009-3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220회 ('09.11.26)	규개위	2009-398	신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제221회 ('09.11.26)	복지부	2009-339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권익위	2009-3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방통위	2009-394	방송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회 수	부처명	호수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21회 (‘09.12.3)	방통위	2009-394	방송법 개정안	의결	1	2		3
	규개위	2009-416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의결	1			1
제222회 (‘09.12.10)	금융위	2009-412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2009-340	보고대상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규개위	2009-42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보고				
제223회 (‘09.12.17)	복지부	2009-35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2	3
	복지부	2009-415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복지부	2009-4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규개위	2009-438	법정 검사인증 및 검사대행기구 관련 규제 합리화	의결				재상정
	규개위	2009-439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경제분과위원회(2009년)

•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Tel. 2100-2298, kky21@pmo.go.kr)

회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375회 ('09.01.09)	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2		3
376회 ('09.01.19)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377회 ('09.01.22)	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378회 ('09.04.13)	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379회 ('09.06.11)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380회 ('09.07.02)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등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381회 ('09.07.07)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382회 ('09.07.16)	방통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383회 ('09.07.23)	공정위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384회 ('09.08.13)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385회 ('09.09.10)	농식품부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의결	1	1		2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1	1		2
386회 ('09.10.08)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387회 ('09.10.29)	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농식품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388회 ('09.11.12)	공정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을 개정안	의결		3		3
389회 ('09.11.26)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390회 ('09.12.03)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1		1
391회 ('09.12.10)	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392회 ('09.12.22)	지경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국토부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의결		1		1

행정사회분과위원회(2009년)

• 집필자 : 전민용 사무관(Tel. 2100-2321, jmy59@pmo.go.kr)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94차 (`09.2.5)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2	1		3
제395차 (`09.3.6) (서면)	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제396차 (`09.4.30)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고열량 저영양 영양성분 기준 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정안	의결	1			1
제397차 (`09.5.21)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결	2			2
제398차 (`09.5.28)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99차 (`09.6.4)	소방방재청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400차 (`09.6.11)	문광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401차 (`09.7.2)	식약청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재심의			
제402차 (`09.7.23)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403차 (`09.8.13)	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예규) 개정안	의결			1	1
제404차 (`09.8.27)	행안부	행정사법 개정안	의결		1		1
	문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405차 (`09.9.3)	행안부	행정사법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의결		1	1	2
제406차 (`09.9.24)	식약청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기준 제정안	의결		1		1
	경찰청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407차 (`09.10.8)	복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의			
	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3
제408차 (`09.10.22) (서면)	복지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제409차 (`09.11.19) (서면)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410차 (`09.12.1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문광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4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00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0.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 인쇄 : 엔더블유기획정보(02-2235-6114)

2009 규제개혁 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2009

발간등록번호 11-B090045-000002-10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ww.rrc.go.kr